

2012

사 업 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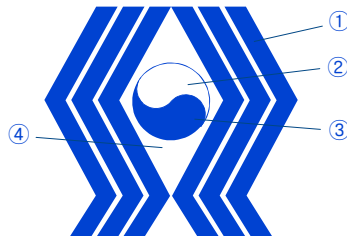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련기에 대한 설명



1. 손 : 즉 양손을 모았으며 그것이 6개가 됨으로써 금속 연맹의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조선,비철 금속의 업종별, 분과를 표상하고 다양한 가운데 통일 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합심단결을 과시하였으며 또 날카로운 직선은 금속의 무한한 창조성을 나타냄.
 2. 태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뜻함.
 3. 원 : 공존공영의 번영을 나타냄.
 4. 다이아몬드 : 금속의 빛과 정열, 견고함을 나타내고 정밀, 중화학공업의 중핵으로서의 가치와 불변함을 나타냄.
- ※ 색깔 : ①의 색은 영광으로서의 황금색 ③의 바탕은 남 청색으로서 노동은 문화창조의 근원을 나타냄.

금속노련가

정태암 작사
나규호 작곡

(씩씩하고 힘차게)



떠 오 르 는 태 - 양 의 이 상 을 안 고
비 - 지 땀 기 림 손 의 노 동 의 보 람
용 - 광 로 흐 른 용 액 불 꽃 튀 기 듯



선 언 강 령 구 현 위 해 몽 친 우 리 - 들
하 - 늘 과 바 다 물 을 세 계 로 뻗 - 는
우 - 리 의 핏 줄 속 은 불 고 뜨 거 - 워



거 - 칠 은 가 시 발 길 꺾 어 넓 히 머
영 - 광 의 산 업 대 열 맥 박 이 뻗 다
잘 - 사 는 평 생 터 전 우 리 손 으 로



나 가 자 금 속 깃 발 강 - 철 의 대 오
" " " "



손 모 - 은 여 섯 분 과 무 궁 한 길 을
일 - 하 며 교 류 하 는 국 제 유 대 로
뜻 모 - 은 투 혼 속 에 내 일 은 밝 다



정 의 의 사 회 퍼 갈 금 속 노 — 련
인 류 의 평 화 지 길 금 속 노 — 련
복 지 를 다 저 가 금 속 노 — 련

위원장



김만재

지도위원



박인상



유재섭



이병균



장석춘



변재환



강영섭



최웅길



김장선

임원



수석부위원장 석호진



부위원장 정일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성수

부위원장



강영석



김광호



김기태



김길섭



김동준



김봉영



김수환



김영국



김준수



문광주



박상규



박은미



박태석



배상호



서갑순



서성묵



석승희



설승욱



신석곤



오기순

부위원장



왕용호



윤동현



윤자심



이기동



이동철



이상철



이영자



장준영



전광언



정금순



정덕순



정상욱



정상준



조경주



최정열



한명선



황대선



한창욱

회계감사



강 호 석



신 영 래



이 재 성



한 규 속



황 성 원

사 무 처



조직강화본부장 김홍룡



여성실장 김영미



조직실장 김정균



총무국장 박선자



정책국장 전종덕



홍보차장 정태교



조직차장 박강원

2012 정기대의원대회



- ▶ 2012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한 정기 대회를 개최함.
(2012. 5. 10)

사진으로보는 금속노련!

2012 정기대의원대회



▶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만재 위원장이 당선되어 23대 집행부가 출범함.

2012년 전국노동자대회



- ▶ 노조법 전면재개정!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선승리! 의 기치를 걸고 전국노동자대회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림. (2012. 11. 17)

169차 중앙위원회



- ▶ 우리노련 회의실에서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및 파견전임자 관련 특위결과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함. (2012. 5. 3)

170차 중앙위원회



- ▶ 우리노련 회의실에서 지역본부 간담회, 2012년도 임단협 결과보고 및 재정사업 진행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개최함. (2012. 12. 4)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회의



▶ 우리노련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선거인 대회 및 우리노련 재정사업에 관한 건으로 회의 개최함. (2012. 8. 8)

중앙집행위원 임명식



▶ 금속노련 중앙집행위원 임명식을 개최함. (2012. 12. 4)

자동차분과회의



- ▶ 우리노련 회의실에서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와 회의를 열고 대책위 구성 및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함. (2012. 8. 21)

3.8 세계 여성의 날 평등상 수상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본 노련은 여성할당제시행, 조직강화, 및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등으로 평등상을 수상함.(2013. 3.8).

자동차부품 업종 대책위 기자회견



- ▶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자동차 대책위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부품 사업장의 어려움을 호소함. (2012. 12. 4)

자동차부품 업종 대책위 워크숍



- ▶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자동차 대책위 워크숍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함. (2012. 10. 9)

사진으로보는 금속노련!

경영분석학교



▶ 금속노련은 단양 대명콘도에서 강의와 실습을 통해 노동조합 관점에서 경영분석 교육을 실시함. (2012. 6. 13~15)

여성간부교육



- ▶ 여성의 양성평등 및 건강권 확보, 간부의 자세와 역할 등을 통한 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 (2012. 10. 25~27)

노동문화교육



- ▶ 금속노련의 문화일꾼을 대상으로 노동자의식, 역사, 레크레이션 활동 및 품물 교육을 실시함. (2013. 3. 20~22)

KAI매각투쟁저지



-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간매각 반대투쟁! 민간매각을 반대하며 조합원 2,000명의 상경투쟁, 노조간부 결의대회등 투쟁을 전개함. (2013. 5. 25)

볼보건설기계코리아출정식



-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노동조합은 임금 투쟁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평택공장 운동장에서 조합원들이 모여 결의를 다짐. (2012. 8. 29)

머 리 말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지난 2012년 한해를 되돌아 봅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개막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 그리고 “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현장에 엄청난 과급효과와 조직에 큰고통
을 안겼습니다.

우리노련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법 재개정투쟁과 지난 연말 치러진 “
대선공간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
못했습니다.

노동법 개막과 함께 엄습해온 노동유연화 정책 또한 조합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임단협에서 제기된 실노동시간 단축
과 통상임금관계변화에 따른 대응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 사업으
로 자리잡았고 더 많은 투쟁과 단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현장에서 진행된 가열찬 투쟁과 몸부림속에서 우리노련은 한정된 자원과 인원
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함에 머리를 숙입니다.

2012년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또다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거울삼아 2013년을 “
준비하러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쉬움과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장의 동지들과 함께했던 1년의 시간을 이 보고서에 소중하게 모았습니다. ”

지난 일년간 우리노련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셨던 것처럼 2013년 우리노련
의 사업과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참여,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
니다.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김 “”판 “”재

목 차

화보	
머리말	
1.연혁	19
2.총론	35
3.정책기획활동	71
4.조사통계활동	151
5.총무활동	205
6.조직활동	223
7.국제연대활동	281
8.법규활동	291
9.산업안전활동	335
10.교육활동	353
11.홍보선전활동	367
12.여성문화활동	393

선 언

역사 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불평등한 사회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사회중심 세력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참된 민주·평등·복지·평화 통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강 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평화·민족 대 단결에 입각한 통일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4. 우리는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확보, 모성보호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남녀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5.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운동의 대통합을 실현한다.
6. 우리는 노사 대등의 원칙 아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민주화와 경제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7.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횡포와 경쟁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이룩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연 혁

서기 1959년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구 철
공노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탄생하였으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여 오던중 서기 1960
년 10월 대한조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금속노동조합연
맹을 결성하여 사실상 제 2 노조로 등장하게 되어 긴요한
총단결 과제는 혼미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시노련에서는
또다시 서기 1960년 10월에 인천중공업회사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전국철강노동조합연맹 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3 노조가 등장하는 과정에 처하여 오던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노동단체가 해체되고 동년 8월
3일 공포된 법률 제 672 호에 의하여 단일산업별 체제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0 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
라 1981년 2월 23일 개최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혁 일람표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 성 대 회	59. 3.	유 익 배	한승용, 이원석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 성 대 회	60. 10	임 한 식		김 사 옥	
전국철강노동조합	60. 10.		준비위원회: 임한식 준비부위원회:송영준,김재범		
전국금속노동조합 결 성 대 회 제 2차대의원대회	61. 8.25 62. 7. 2	지 연 일 (인천 중공업)	김재범(대한중기),이수영(삼양 산업),이령(금천철공)	박 종 현 (삼성기계)	609
제3차 대의원대회 (임시대회)(선출)	63. 4.12	박 종 현 (삼성기계)	유귀형(한국전력기계),이수영(삼양산업),권종오(한국기계)	김 득 성 (기아산업)	5,034
제4차 대의원대회	64. 4.30		유귀형(한국전력기계), 박세천 (한국기계)	“	8,455
제5차 대의원대회	65. 4.30		최종규(금성사),이명구(인천강 업)	이 건 성 (인천중공업)	9,110
제6차 대의원대회 (임기)	66. 1. 8	박 세 천 (한국기계)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산 업),박종선(한국공업)	허 만 성 (인천중공업)	9,984
제7차 대의원대회	67. 4.27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산 업),이의용(인천중공업)	홍 순 모 (일진기계)	14,038
제8차 대의원대회	68. 4.30		“	“	15,223
임시대의원대회 (보선)	68. 9.20	김 병 용 (기아산업)	최종규(금성사),이성학(조선기 업),문익모(이천전기),이규운(봉 신주철),강준석(한국베아링)	이 택 용 (인천중공업)	17,947
제 9차대의원대회	69. 4.29	“	문익모(이천전기),이규운(봉신 주물),강준모(한국베아링),허재 업(조선공사)(보선),강기태(금 성사)보선	이 헌 구 (한국기계) - 보선	23,960
제10차대의원대회 (임기)	70. 4.30	김 병 용 (기아산업)	강기태(금성사),정남수(조선),하 준(조선기업),이우년(한국기계)	최 종 규 (금성사)	25,217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11차대의원대회	71.1.16	김 병 용 (기아산업)	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문 익모(이천전기)(보선)	최 종 규 (금성사)	27,306
제12차대의원대회	72.4.28	“	“	“	
제13차대의원대회 (임기)	73. 4.25	김 병 용 (기아산업)	문익모(이천전기),강준석(한국 베아링),정부경(금성사),한달수 (대한전선),팽종출(조선공사), 김정배(대한중기)	최 종 규 (금성사)	27,246
제14차대의원대회	74. 4.30	“	“	“	43,856
제15차대의원대회	75. 4.23	“	“	“	53,293
제16차대의원대회 (임기)	76. 4.21	“	강준석(한국베아링),정부경(금 성사),하준(승리기계),한달수(대한전선)	“	72,809
제17차대의원대회	77. 4.27	“	“	“	92,756
제18차대의원대회	78. 5.20	“	“	“	112,891
제19차대의원대회 (임기)	79. 5.11	김 병 용 (기아산업)	하준(경북지부),정남수(부산지 부),이현구(대우중공업),팽종출 (조선공사),이중석(남서울지부 ,)정낙균(금성전선)	최 종 규 (금성사)	138,668
제20차대의원대회	80. 6.17	“	“	“	126,140
제21차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 임시대의 원대회,정기대의원 대회 같음)(보선)	81. 2.23	팽 종 출 (조선공사) -보선	최종규(금성사),민정식(금성사 ,)박인상(조기),이준(화천),한창 석(인천제철),김장선(대한전선 ,)이상숙(금성통신),권수태(대 림자동차)	김 성 문 (대한전선)	108,846
제22차대의원대회 (임기) (1983,1984년은 중 앙위원회로 같음)	82. 5. 7	팽 종 출 (조선공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 기),민정식(금성사),김장선(대 우전자),한창석(인천제철),조태 식(효성중공업),최정원(대전조 선),이성균(새한자동차),허성원 (금성전선)	김 성 문 (대한전선)	99,594
제23차대의원대회 (임기)	85. 5.30	민 정 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 기),김세민(기아산업),김장	한 창 석 (인천제철)	19,636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선(대우전자),최경환(금성알프스),강창령(동부제강),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아자동차),유철규(평화크랏치)		
제24차대의원대회	86. 5.23	민 정 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알프스), 강창령(동부제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아자동차),유철규(평화크랏치)	한 창 석 (인천제철)	119,445
제25차대의원대회	87. 5.22	“	“	“	138,990
제26차대의원대회 (임기)	88. 5.27	박 인 상 (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유철규(평화크랏치) 강영섭(금성사),임창기(대한중기),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이영복(현대자동차),이금수(크라운전자),양동생(대우조선),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김 성 문 (대한전선)	295,864
제27차대의원대회	89. 5.26	“	김장선(대우전자),강영섭(금성사),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이영복(현대자동차),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	356,900
제28차대의원대회	90. 5.11	박 인 상 (조 기)	김장선(대우전자),강영섭(금성사),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김 성 문 (대한전선)	389,060
제29차대의원대회 (임기)	91. 5.15	박 인 상 (조 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 웅 길 (동양강철)	272,078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30차대의원대회	92. 5.13	박 인 상 (조 기)	박기식(연합철강),유재섭(금성사),박병윤(대우통신),정기춘(화천),차경준(한국중공업),정학균(대동조선),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피희중(동해전장),염성태(대우중공업),양재석(동부제강),강규석(기아특수강),박영구(럭키금속),전덕진(현대전자),허관무(기아자동차)	최 응 길 (동양강철)	262,078
제31차대의원대회	93. 5.20	박 인 상 (조 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유재섭(금성사),박병윤(대우통신),정기춘(화천),차경준(한국중공업),정학균(대동조선),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피희중(동해전장),염성태(대우중공업),양재석(동부제강),강규석(기아특수강),박영구(럭키금속),전덕진(현대전자),허관무(기아자동차),김영철(현대전자),김관태(기아자동차)	정 창 영 (금성전선)	
제32차대의원대회 (임기)	94. 5.17	박 인 상 (조 기)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응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박천석(기아서비스),진재환(대우중공업),정기춘(화천),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정 창 영 (금성전선)	243,271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금성전선),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		
제33차대의원대회	95. 5.12	박 인 상 (조 기)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박천석(기아서비스),전재환(대우중공업),정기춘(화천),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금성전선),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이병균(대우전자),장지태(경창산업)	정 창 영 (금성전선)	183,200
제34차대의원대회 (보선)	96. 5.15	유 재 섭 (LG전자) -보선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정기춘(화천),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LG전선),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이병균(대우전자),장지태(경창산업)	정 창 영 (LG전선)	160,327
제35차대의원대회 (임기)	97. 5.16	유 재 섭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이 병 균 (대우전자)	169,628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정기춘(화천),김경조(쌍용중공업),나찬경(LG전자),김영철(현대전자),하영일(LG전선),강익화(대한전선),강창영(동부제강),백종부(세아제강),황창배(대우전자),김복천(정일공업),강석수(창원공업),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강한우(삼신),김윤주(범양냉방),강진호(연합철강),김상수(동아건설),지수식(삼영전자),이정석(기아특수강),박영구(LG금속)		
제36차대의원대회	98. 5.20	유 재 섭 (LG전자)	상임: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김경조(쌍용중공업),김영철(현대전자),하영일(LG전선),강익화(대한전선),강창영(동부제강),백종부(세아제강),황창배(대우전자),김복천(정일공업),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강한우(삼신),강진호(연합철강),김상수(동아건설),지수식(삼영전자),이정석(기아특수강),김만재(현대전자),이병균(대우전자),박병용(대창단조),김수도(대우전자)	이 병 균 (대우전자)	138,858
제37차대의원대회	99. 5.20	유 재 섭 (LG전자)	상임: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장석춘(LG전자),허원(칩팩코리아),도정복(LG전선),김두형(대성공업),신성균(한화구로),박병도(LG정밀),신향철(대한전선),문광주(세진전자),강영철(현대반도체),변재환(LG필립스)	이 병 균 (대우전자)	124,097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38차대의원대회 (임기)	2000. 5. 24	유 재 섭 (LG전자)	상임: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파견), 문광주(세진전자), 김만재(현대전자) 장석춘(LG전자),강창영(동부제강),김상수(동아건설),김수도(대우전자),서갑순(한국특수공구),하영일(LG전선),김영철(현대전자),지수식(삼영전자),도정복(LG전선),허원(칩팩코리아),황창배(대우전자),손종홍(대한제당),이병욱(태양금속),강한우(삼신),김무호(한국과워트레인),김경조(쌍용중공업대구),김두형(대성공업),강진호(연합철강)박병용(대창단조),LG필립스(변재환),강영철(현대반도체),박병도(LG이노텍),배동한(한국철강),이정석(기아특수강)	이 병 균 (대우전자)	106,126
제39차대의원대회	2001. 5. 25.	유 재 섭 (LG전자)	보선-정상영(하이닉스반도체), 조병철(대한전선), 김인배(LGPhilipsDisplays)	이 병 균 (대우전자)	102,770
제40차대의원대회 (보선)	2002. 5. 10	이 병 균 (대우전자)	보선-김한모(칩팩코리아),김준수(하이닉스반도체청주),김한성(충북본부),신택기(울산본부),정일진(LG전자),김길주(기아특수강),김광호(안산시흥본부),이문호(경남본부),김도론(포항본부)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101,985
제41차대의원대회 (임기)	2003. 5. 22	이 병 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정창영.문광주.정일진.김만재. 장석춘서갑순.최경호.김순호.하영일. 지수식.도정복.정상영.조병철.김한모. 황창배.손종홍.이병욱.김광호.김두형. 강한우.강창영.김한성.김준수.이문호. 최해경.강진호.권동재.신택기.손은진. 김경조.김무호.변재환.강영철.김인배. 강학중.김길주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100,850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장	조합원수
제42차대의원대회	2004. 5. 20.	이 병 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정창영.문광주.정일진.김만재. 장석춘.서갑순.최경호.김순호.하영일. 지수식.도정복.정상영.조병철.김한모. 허 원.이복교.황창배.손종홍.이병욱. 김광호.김두형.강한우.강창영.김한성. 김준수.이문호.최해경.강진호.권동재. 신태기.손은진.김경조.김무호.이복교. 변재환.강영철.김인배.강학중	이정석 (세아베스탈)	100,942
제43차대의원대회	2005. 5. 25	이 병 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문광주.정일진.김만재. 장석춘.서갑순.최경호.지수식.도정복. 정상영.조병철.허 원.손종홍.이병욱. 김광호.김두형.강한우.김한성.김준수. 이문호.최해경.권동재.신태기.손은진. 김경조.이복교.변재환.강영철.김인배. 강학중	이정석 (세아베스탈)	105,445
제44차대의원대회 (임기)	2006. 5. 3	장 석 춘 (LG전자)	상임-김만재. 정일진 서갑순.허 원.정상영.윤동현.변재환. 지수식.노남섭.정종철.유은식.김재업. 백승탁.김정근.손창두.강영석.김광호. 이병욱.김두형.배승천.장재성.고석희. 왕용호.김한성.김준수.박정민.박병용. 주해식.황대선.김희근.권동재.박한봉. 장준영.박준수.정진용.이상협.김순창. 이복교.정한근.신석곤.강영철.김인배. 김병수.강학중.최정열.하헌준.김홍배	손종홍 (대한제당)	114,919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장	조합원수
제45차대의원대회	2007. 5. 22	장 석 준 (LG전자)	상임-김만재, 정일진 서갑순,허 원,정상영,윤동현,변재환, 지수식,노남섭,정종철,유은식,김재업, 백승탁,김정근,강영석,김광호,이병욱, 김두형,배승천,장재성,고석희,왕용호, 김한성,김준수,박정민,박병용,주해식, 황대선,김희근,권동재,박한봉,장준영, 박준수,정진용,이상협,김순창,이복교, 정한근,신석곤,강영철,김인배,김병수, 강학중,최정열,하헌준	손종홍 (대한제당)	108,206
제46차대의원대회 (보선)	2008. 5. 22	변 재 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정일진 서갑순,박준수,조병철,김정근,허 원, 정상영,윤동현,지수식,노남섭,정종철, 유은식,문광주,김재업,백승탁,손창두, 손종홍,강영석,김광호,이병욱,김두형, 오기순,배승천,장재성,고석희,박정용, 왕용호,김한성,김준수,박정민,조경주, 박병용,황대선,김희근,권동재,이상철, 장준영,최해경,정진용,이상협,김찬중, 김순창,정한근,신석곤,김동준,강영철, 김인배,김동의,김병수,강학중,최정열, 하헌준,석승희	김성수 (OTIS엘리 베이터)	103,429
제47차대의원대회 (임기)	2009. 5. 7.	변 재 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 정일진 서갑순,박준수,김정근,조병철,오용환, 허원,김길섭,윤동현,박종현,박덕규,정 종철,문광주,노남섭,김덕수,백승탁,박 상규,오인상,강영석,김광호,김형기,오 기순,배승천,박정용,고석희,정덕순,왕 용호,이승현,김준수,조경주,윤종남,권 동재,황대선,박병용,조용석,김희근,전 광언,주해식,이상철,최해경,박한봉,장 준영,정진용,박한배,김순창,김동준,윤 승오,김채민,신석곤,나영섭,강영철,김 인배,김동의,조성륜,김병수,정상준,이 동철,장복이,하헌준,최정열,석승희	김성수 (OTIS엘리 베이터)	106,897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장	조합원수
제48차대의원대회	2010. 5. 4.	변 재 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 정일진 서갑순,박준수,김정근,조병철,오용환, 허원,김길섭,윤동현,박종현,박덕규,정 종철,문광주,노남섭,김덕수,박태석,백 승탁,박상규,오인상,강영석,김광호,김 형기,오기순,배승천,박정용,고석희,정 덕순,왕용호,이승현,김준수,조경주,윤 종남,권동재,황대선,박병용,조용석,김 희근,전광언,주해식,이상철,최해경,박 한봉,장준영,정진용,박한배,김수환,김 동준,윤승오,김채민,신석곤,나영섭,강 영철,김인배,김동의,이상덕,김병수,정 상준,이동철,장복이,김찬중,하헌준,최 정열,석승희	김성수 (OTIS엘리 베이터)	106,804
제49차대의원대회	2011. 5. 18.	변 재 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 정일진 서갑순,배상호,김기태,허 원,윤동현, 김길섭,박종현,박덕규,정종철,박태석, 김덕수,문광주,노남섭,이기동,박상규, 김정근,오인상,강영석,김광호,김형기, 오기순,배승천,박정용,고석희,정덕순, 왕용호,이승현,김준수,조경주,윤종남, 황대선,주해식,박병용,조용석,김희근, 전광언,이상철,최해경,배동한,박한봉, 장준영,정진용,박한배,정상욱,이동철, 장복이,김찬중,김수환,김동준,윤승오, 김채민,신석곤,나영섭,강영철,김인배, 김동의,이상덕,석호진,김병수,정상준, 최정열,하헌준,설승욱,석승희	김성수 (OTIS엘리 베이터)	108,178
제50차대의원대회 (임기)	2012. 5. 10.	김 만 재 (SK하이닉 스)	수석부위원장-석호진, 상임-정일진, 서갑순,김길섭,김영국,강영석,오기순, 정덕순,왕용호,황대선,이상철,이동철, 김수환,서성목,정상준,최정열,설승욱, 석승희,배상호,김기태,박태석,윤동현, 이기동,문광주,윤자심,박은미,이영자, 박상규,김광호,한명선,정금선,김준수, 조경주,전광언,정상욱,장준영,김봉영, 김동준,신석곤,한창욱	김성수 (OTIS엘리 베이터)	126,690

● 임 원

직 책	성 명	소 속 조합명	직 책	성 명	소 속 조합명
위 원 장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이천	수석부위원장	석호진	LG디스플레이
부위원장	정일진	LG전자	부위원장&사무처장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부위원장	서갑순	서울지역본부	부위원장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김길섭	경기지역본부	부위원장	이기동	LG이노텍
부위원장	김영국	인천지역본부	부위원장	문광주	세진전자
부위원장	강영석	안산.시흥지역본부	부위원장	윤자심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오기순	대전지역본부	부위원장	박은미	팬택
부위원장	정덕순	충남지역본부	부위원장	이영자	용성전기
부위원장	왕용호	충북지역본부	부위원장	박상규	동국제강
부위원장	황대선	부산지역본부	부위원장	김광호	대덕GDS
부위원장	이상철	경남지역본부	부위원장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부위원장	이동철	울산.경주지역본부	부위원장	정금순	인팩
부위원장	김수환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위원장	김준수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서성묵	구미지역본부	부위원장	조경주	매그나칩반도체
부위원장	정상준	포항지역본부	부위원장	전광언	YK스틸
부위원장	최정열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위원장	정상욱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위원장	설승욱	전북지역본부	부위원장	장준영	쉐플러코리아
부위원장	석승희	강원지역본부	부위원장	김봉영	고려아연
부위원장	배상호	LG전자	부위원장	김동준	평화발레오
부위원장	김기태	오티스엘리베이터	부위원장	신석곤	평화산업파브코
부위원장	박태석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한창욱	LG실트론

● 지도위원

박 인 상	유 재 섭	이 병 균	장 석 춘
변 재 환	최 웅 길	강 영 섭	김 장 선

● 회계감사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호석	대신기계	신영래	대우일렉서비스
이재성	희성금속	황성원	대철
한규숙	LG디스플레이		

● 중앙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장세중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하영규	LG전자
윤혜진	LG전자	이권언	대성사
박덕규	팬택	김은겸	GMB코리아
박종현	신한일전기	박한봉	삼성공조
이현희	스태츠칩팩코리아	장복이	영신정공
이기봉	동부제철	김원출	대한제당
김제곤	린나이코리아	이해식	이수페타시스
윤석진	광명전기	윤정일	타이코AMP
장영기	PN풍년	박칠규	에스엘
고석희	오스텝	권오탁	삼성제침
이창수	존슨컨트롤즈	김성용	노벨리스코리아
장재성	새론오토모티브	김영철	텔코

전병준	삼화전기	권동섭	LGDisplay
이해관	LS산전	김미희	LGDisplay
모경림	현대모비스	김이두	조선선재
박성균	유니온스틸	손제형	홍화
윤각열	대한제강	김학송	대유신소재
안병철	부산주공	남규현	로케트전기

● 중앙집행위원

2013. 3. 31 기준

직책	성명	소속조합명	직책	성명	소속조합명
조직강화본부장	김홍룡	본노련	여성실장	김영미	본노련
총무국장	박선자	본노련	조직실장	김정균	본노련
정책국장	전종덕	본노련	정책2기획국장	김해광	LG전자
조사통계국장	박기철	LG디스플레이	대외협력국장	이영득	대림통상
조직2국장	허일욱	대덕전자	정치국장	안교신	삼동
통일사업국장	하두호	태광SCT	노사대책1국장	이종욱	화천기공
문화국장	남재환	노벨리스코리아 울산	노사대책2국장	김성수	세원셀론텍
쟁의국장	배준호	매그나칩반도체	법규국장	윤재욱	AST
산업안전국장	진선일	선화이엔지			

총론

1장. 2012년 정세 전망

1. 경제분야
2. 정치분야
3. 남북관계
4. 사회분야
5. 노동분야

2장. 2012년 금속산업의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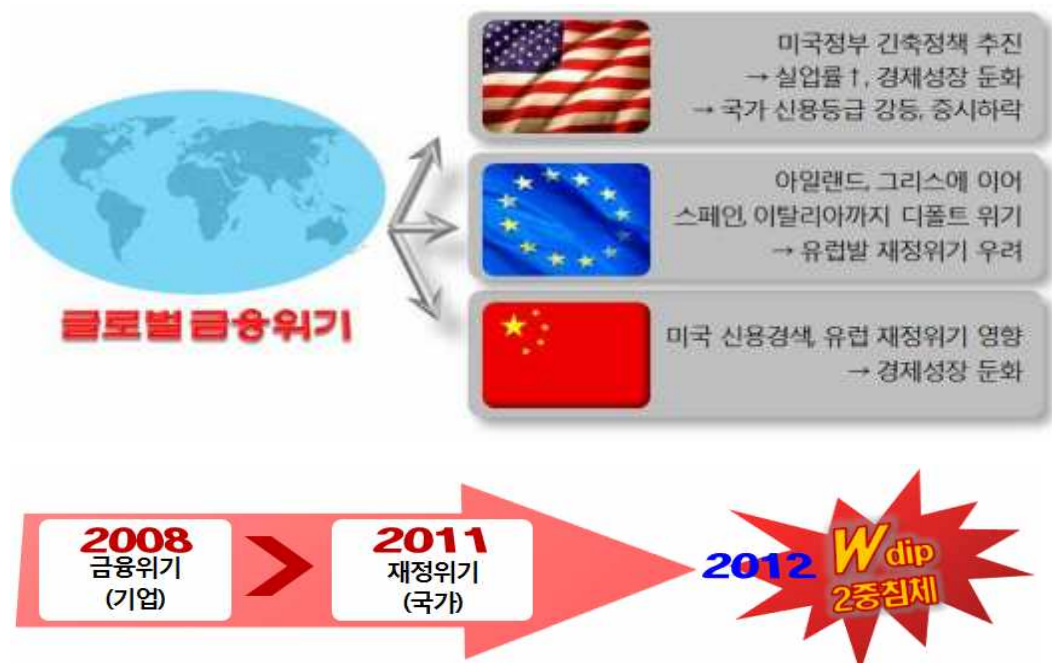
1. 금속산업전망
2. 금속산업 노동조합의 방향과 과제

1장. 2012년 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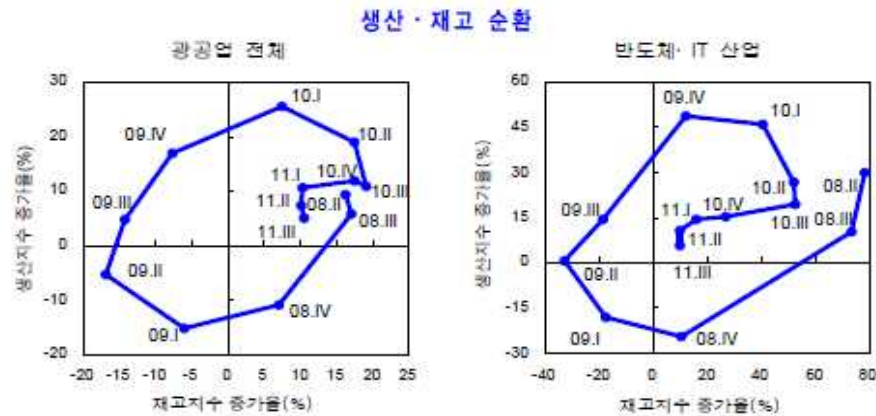
1. 경제분야

① 2012년 ‘한국경제호’는 또다시 빨간불이 켜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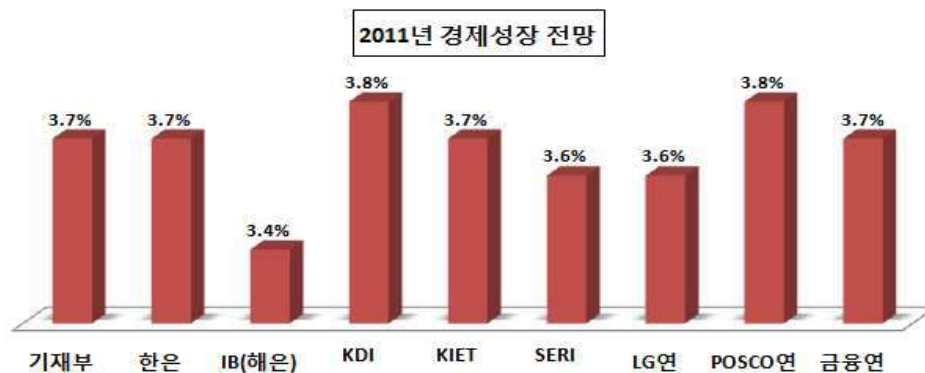
미국발 신용경색과 유럽발 재정위기 충격, 물가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등 안팎으로 겹겹이 악재가 즐비한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이어 제3의 ‘상시 위기’ 즉, 경제위기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IMF(국제통화기금)는 2011년 9월20일 “세계경제가 더블딥(W-dip)에 진입했다”는 선언을 하였고, 한국정부는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며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위기’국면을 공식화하였다. 이로서 한국경제의 쌍두마차인 ‘내수’가 97,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미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수출시장’마저 빨간 불이 켜지게 되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과 원자재 가격이 요동칠 경우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내수경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체질이 약한 한국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1년 1/4분기 4.2%성장을 기록하였지만 2/4,3/4분기에는 3.4%로 둔화되어 2011년 경제성장은 평균 3.8%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원인은 미국발 신용경색과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歐美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상황이 크게 나빠져 외부 악재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국내 제조업 생산자 재고 및 출하지수가 2011년 2/4분기부터 둔화, 하강 국면으로 재진입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경향이 2012년에도 지속되어 실물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1실제로 2011년 말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감원 등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고, 철강, 전자, 조선 등 중견 제조업체들은 3/4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비관적으

로 2012년 1/4분기는 마이너스대 성장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2일, 2012년 경제성장을 3.7% 하향조정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해외투자은행(IB)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보다 낮은 3.4%로 제시하였다.

2012년 국내 경기하방요인은 △대외적 변수는 구미 선진 경제권의 재정위기, △대내적 변수로서 생활비·가계빚 부담 급증으로 인한 가계부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물가 급등, 취업률 하락과 실업자 증가로 인한 고용률 저하 등을 꼽을 수 있다.

②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 가계빚 1,000조 시대 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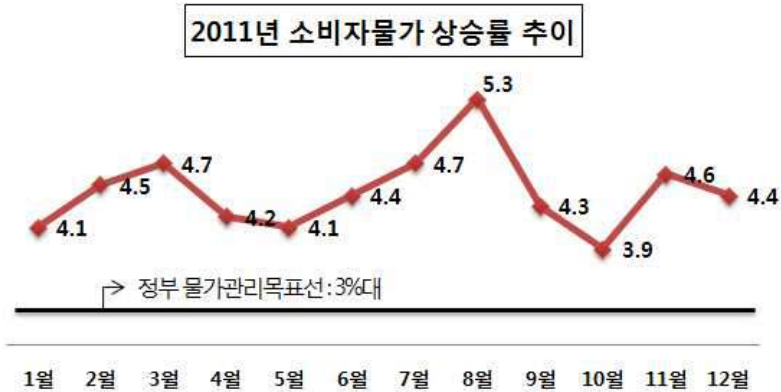
가계 부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부채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다. 2011년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892조4,5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3조원 넘게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상승하였다. 이는 한 가구당 4,500만원, 1인 당 1,540만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단순 계산되며, 전체적으로는 GDP 대비 90%수준(OECD평균 70%),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155%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생활비·학자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250조원을 넘어섰고, 특히, 2012년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대출이 21%로 상환만기가 2012년에 도래하여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향후 우리경제의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③ 물가대란 지속, 물가상승 압력 가중

이명박 정권의 고환율 성장정책, 4대강 사업, 구제역 초등대응 실패로 2011년 상반기부터 정부 물가관리 목표(3%대)가 핑크가 났고, 미국·유럽발 재정위기 충격으로 환율 변동폭 확대, 수입물가 불안,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전세값 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2012년 물가 상승률은 3% 중반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1년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4%이상 올랐다. 그나마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품목을 바꾸면서(소비자물가 품목 新지수¹⁾)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1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상승했다. 하지만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상승률은 4.4%가 된다.



주 : 통계청의 舊 물가지수 적용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정치 분야 : 2012년은 총대선이 치루어지는 권력재편기

민심을 잃고, 쇄신에 골몰하고 있는 집권세력은 내홍에 시달리며 한나라당은 창당 이래 최대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잇따른 탈당사태 그리고 향후 분당, 신당 등 내우외환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친이계 배척과 MB탈당 그리고 ‘박근혜 조기 등판 카드’로 총선체제를 준비하면서 ‘당 쇄신’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단일화’가 ‘국민의 선택’임을 확인한 야권은 통합의 길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민

1) 2011. 11. 28, 통계청은 '201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을 발표, 이를 적용함. 이에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로 크게 하락함. 이에 정부가 개편 발표를 한 달이나 앞당긴데 대해 '물가 안정' 목표인 年 4%로 맞추기 위한 인위적 하향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음. 변경된 물가 조사 대상품목은 489개에서 481개로 축소되었는데 스마트폰 이용료나 인터넷 전화료, 애완동물 미용비용, 막걸리 등을 새로 포함하였고, 대신에 공중전화나 유선전화기, 캠코더, 금반지 등을 제외함. 이 영향으로 물가인상률이 약 0.4% 하락함.

주통합당'은 이미 각급조직에서 의결을 마쳤고, 1월 15일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를 선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1년 12월 11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은 통합진보당을 출범하였다. 야권의 잇따른 통합과정은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연대 방식의 또다른 단일화를 거쳐 전국적으로 한나라당 보수집권세력과 야권단일후보간의 1:1구도를 만들어 19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야권이 4.11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이명박 정권의 연쇄적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 청문회 개최, 차기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박근혜 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으로 이어질 것이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안철수 소장 등 야권인사의 대권단일화 과정을 거치며 대선전에서 유리한 국면을 연출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에 공식 참여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명제를 실현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며, 당면한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19대 국회가 개시되는 6월부터 최우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표> 2011~2012년 정치,경제 상의 주요 일정 및 흐름

	1~3월	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정치흐름	총선·대선국면 본격화					
정치		4/11 총선	대선후보 경선개시(5월)	대선후보 확정 (8월)	김약단체장(?) 보궐선거(10월)	12/19 대선
정당	야권 총선연대 가시화(23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경제흐름	내수경기 침체 지속, 세계경제 둔화세 지속 → 더불업 현실 가능성					
사회흐름	경제·복지 아젠다 대선국면에서 집중부각					
국제	러시아 대선	프랑스 대선			중국 당대회	미국 대선(11월)
	북한 강성부흥의 해					
기타	핵안보 정상회의(3/26,서울)	세종시 중앙청사 일부준공	여수엑스포 (5~8월)	런던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아날로그 방송 종료

3. 남북관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는 당분간 요동칠 전망이다.

‘북’은 최근 들어 한·미 양국과 북핵대화 재개를 모색하면서 중·러 양측과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김 위원장의 급서로 인해 이 같은 대외행보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커졌다.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규정한 ‘북’은 최근 들어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이후 뚜렷해진 고립화 경향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이 같은 모색은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정세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때처럼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김 주석 사망 이후 1~2년간 대외행보를 삼간 채 체제 이완 방지를 위한 내부 다지기에 주력한 바 있다.

먼저, 북·미 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측은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과 함께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수용하고 미국은 총 24만ton의 대북 영양지원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북·미 양측은 12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미 3차 대화를 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국들이 모색해온 북핵 6자회담 재개 움직임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양측도 식량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매개로 대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었으나 남북대화도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특히, ‘북’은 김 위원장의 추모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조문을 제한한데 대해 이명박 정부를 ‘역적패당’, ‘만고대죄’ 등 노골적으로 맹비난한 바 있어 남북관계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4. 사회분야

<2012년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현실>

- 자살율 OECD 1위 (2011년 통계청 발표)
- 노인빈곤율 OECD 1위 (2010년 통계청 발표)
- 대학등록금/GDP OECD 1위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 저임금근로자비율 ILO 주요14국 중 1위 (세계임금보고서 2010/2011, ILO)
- 출산율 OECD 꼴찌 (2011 OECD Fertility)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한국행정연구원·연세대학교출판부)
- 최저임금수준 / OECD 꼴찌에서 2위
- 소득불평등 / 멕시코, 미국이 꼴찌에서 3등

부끄러운 금융동
이제는 그만

▶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강행의 결과물

① 임금 및 노동시간

가. 임금 동향 : 2011년 명목 임금 0.6% 인상, 실질임금 -3.7% 기록

< 분기 내역별 월평균 임금 추이 >

(단위: 천원, %)

분기	전 체	상 용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10.1/4	2,825 (7.0)	3,030 (7.0)	2,210 (4.1)	183 (17.4)	637 (15.1)	1,052 (-2.4)
'10.2/4	2,666 (6.2)	2,903 (6.3)	2,223 (4.8)	198 (13.4)	483 (10.7)	1,062 (0.1)
'10.3/4	2,904 (9.0)	3,144 (8.1)	2,234 (4.7)	196 (8.9)	714 (20.1)	1,063 (0.3)
'10.4/4	2,873 (5.2)	3,112 (4.4)	2,270 (4.3)	206 (9.8)	636 (3.3)	1,047 (-4.4)
'11.1/4	2,830 (0.2)	2,992 (-1.3)	2,308 (4.4)	168 (-8.4)	516 (-18.9)	1,149 (9.2)
'11.2/4	2,703 (1.4)	2,869 (-1.2)	2,316 (4.2)	183 (-7.4)	369 (-23.5)	1,192 (12.3)
'11.3/4	2,923 (0.6)	3,109 (-1.1)	2,345 (5.0)	182 (-7.1)	581 (-18.5)	1,232 (15.8)

주: ()내는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2011년 실질임금이 2010년보다 감소하였다. 감소폭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3년 이후 세번째²⁾로 컸다. 명목상의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폭이 더 커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까지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92만3천원으로 전년도 동기(290만4천원) 대비 0.6% 인상에 그쳤다.

2011년 3/4분기 현재 월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2010년 대비하여 0.6%로 2010년 동기 월평균 명목임금 상승률(9%)을 크게 밑돌았다. 임금 중 정액급여 인상률(5%)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초과급여와 성과급 지급이 부진(2010년 성과급은 전년보다 20.1% 늘었지만 2011년은 전년 대비 -18.5%가 감소)하였고, 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이 곤두박질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월까지 평균 4.3%에 달해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 효과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3.7%)를 기록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임금교섭 타결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은 5.2%로 집계되어 전년도 0.4%p 상승하였다.

한편, 2012년도 임금은 경기 부진이 예견되고 있어 임금인상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1년 하반기부터 년초까지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되었고, 생필품 물가가

2)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9.3%),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8.5%)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함

상승하고 있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위 노조 차원에서는 임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월급제 전환, 숙련급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총연맹은 서울, 부천 등지에서 생활임금 조례운동을 전개하여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전략사업을 2012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나. 노동시간 동향

2011년 월평균 총노동시간은 172.9시간으로 전년동월(178.6시간)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178.6시간으로 전년동월(187.4시간)대비 4.7% 감소, 임시·일용직은 120.8시간, 전년동월(113.7시간)대비 6.2% 증가하였다.

월평균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	
	'10.10월	'11.9월	'11.10월	
전체노동자	178.6 (2.2)	169.9 (4.7)	172.9	(-3.2)
상용노동자	187.4 (1.7)	175.7 (3.8)	178.6	(-4.7)
소정실노동시간	169.7 (1.0)	161.9 (5.7)	164.1	(-3.3)
초과노동시간	17.7 (9.9)	13.8 (-14.8)	14.5	(-18.1)
임사·일용노동자	113.7 (0.4)	117.9 (10.7)	120.8	(6.2)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또한,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소정실근로시간은 164.1시간으로 전년동월(169.7시간)대비 5.6시간(-3.3%) 감소하였고,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4.5시간으로 전년동월(17.7시간)대비 3.2시간(-18.1%)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가장 긴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1.6시간, 전년동월대비 5.1% 감소)이며, 가장 짧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149.2시간, 전년동월대비 3.3% 감소)이고, 규모별로는 상용직 5~300인 미만 사업체의 총노동시간은 17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171.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였다. 30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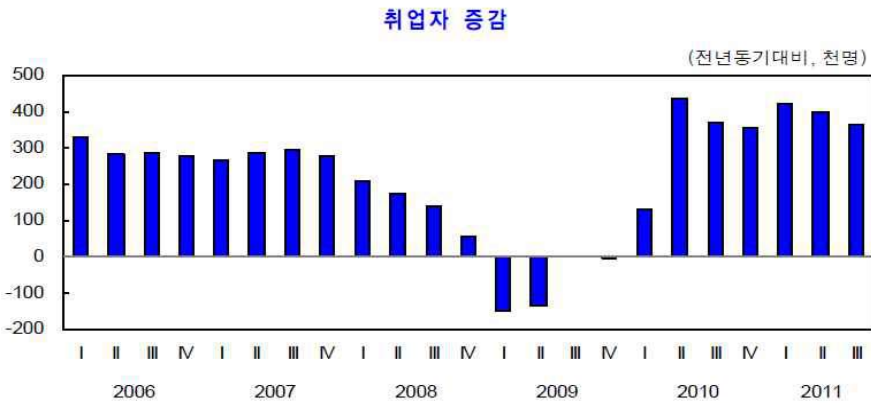
이상 규모의 노동시간 증가는 초과노동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사업체규모별 월평균 총근로시간		(단위: 시간, %)	
	'10.10월	'11.9월	'11.10월
5인 이상	178.6 (2.2)	169.9 (4.7)	172.9 (-3.2)
300인 미만	180.6 (2.7)	170.4 (4.1)	173.2 (-4.1)
300인 이상	170.9 (0.2)	168.0 (7.0)	171.6 (0.4)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② 노동시장_고용전망

2011년은 이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10년의 고용 증가(32만3천명)는 금융위기 동안의 고용 위축(2009년 7.2만명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였으나, 2011년에는 40만명 내외의 높은 고용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같이 높은 고용증가는 대부분이 자영업·고령자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 둔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데 기인한 것으로서 '자발적 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고졸 채용확대 장려, 일자리 나누기 등 정책효과가 결부되어 있고, 대학진학률 하락 현상(2008년 83.8% → 2010년 79.0%)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고용 전망은 미국,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구미 주요 나라들의 수요 감소가

수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공공 일자리가 축소되어 취업자 증가는 2011년의 40만 명 수준보다 크게 후퇴한 20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2011년 수준을 유지하여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시적 경제위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사정의 개선 때문이 아니라 구직자들이 구직활동³⁾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2012년에는 공공일자리 창출 폭이 축소됨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에 지원하는 구직자 수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져 고용이 부진하게 되면 민간의 여유자금이 줄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어 경기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2011년 고용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이 총·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2012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남유럽 일부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디폴트 상황으로 연결될 경우 국내 고용상황은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고용빙하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12년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보육, 교육, 요양, 보건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녹색 일자리 등의 고용창출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차별철폐, 청년, 고령자 등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을 통한 고용보호 확대가 필요하다.

③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가. 절반의 불안정 노동

3) 일반적으로 년초에는 실업률이 상승하는데 2010, 2011년에는 공공일자리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실업률이 급등한 바 있음

통계청의 ‘경향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865만 명(임금노동자의 49.4%)이고, 정규직은 886만 명(50.6%)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9.7%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6%(865만 명 가운데 844만 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임금격차는 정규직이 272만 원으로 6만원(2.4%)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5만 원에서 132만원으로 7만원(6.1%)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6.9%에서 48.6%로 1.7%p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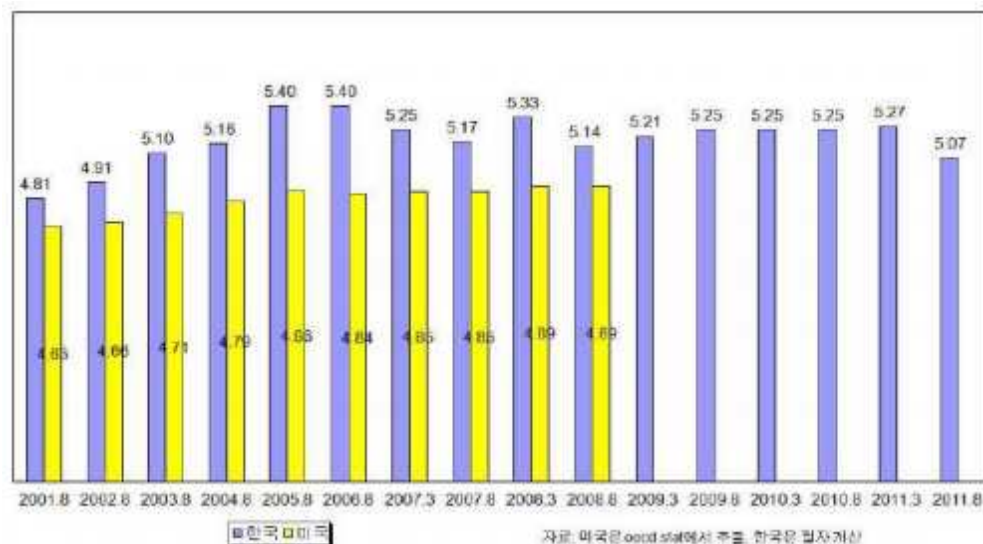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나. 임금 불평등 심화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0년 8월 195만 원에서 2011년 8월 203만 원으로 8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월 임금총액은 각각 70만 원으로 변함이 없고, 상위 10%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했다.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10년 8월 5.14배에서 2011년 8월 5.43배로 확대되었다.

임금불평등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P9010)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0년 8월 10,646원에서 2011년 8월 11,259원으로 613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3,838원에서 4,221원으로 383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0,148원에서 21,403원으로 1,255원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10년 8월 5.25배에서 2011년 3월 5.07배로 축소되었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그동안 임금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하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임금은 2008년 8월 63.4%에서 2011년 8월 62.5%로 0.9%p 확대되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0.6%에서 51.3%로 0.7%p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1.0%에서 51.7%로 0.7%p 축소되고, 여자 정규직은 67.4%에서 66.4%로 1.0%p 확대되고, 여자 비정규직은 40.4%에서 40.5%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어 있다.

다.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8,635원)의 2/3’인 ‘시간당 임금 5,757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751만 명 가운데 468만 명(26.7%)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61만 명(6.8%), 비정규직은 407만 명(47.0%)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5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11년 8월, 단위: 천 명)



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11년 8월 26.1%로 2008년 8월(21.2%)보다 4.9%p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6.7%로 2008년 8월(26.8%)보다 0.1%p 감소했다.

5. 노동분야

2011년 노사관계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사용자들이 노조설립에 개입하여 어용노조가 출현하고, 기존노조에서 분화하는 조직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획 탄압 등이 진행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사용자의 민주노조 파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개악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노사분규 양상을 보면 파업건수는 30건으로 2010년보다 줄었으나 파업으로 인한 전체 근로손실일수는 8.0%나 증가했다.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경제위기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2011년 성장률은 3%대로 하락하였고, 금융시장의 혼란과 물가급등으로 2012년 노동시장은 저고용, 고실업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 저임금취약계층 증가, 임금불평등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침체를 이유로한 기업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활개를 쳐 고용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위기 재발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또다시 ‘상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 경우 불리한 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복수노조는 중장기적으로 노사간 교섭력 변화가 사용자 우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간 선명성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다만, 2012년 정치적 환경은 노동조합운동이 총·대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조직적 요구를 분출하고, 노조법 개정 등의 숙원과제를 달성하기에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2012년에 경기침체와 복수노조의 수세적 환경을 권력재편기 과정에서의 우호적 정치환경과 결합시켜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야할 임무가 있다.

① ‘노조법 개정’을 중심으로한 핵심 노동의제의 제도화를 달성하는 해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진보정치진영은 신자유주의 재벌체제 개혁

등 경제사회개혁과 노조법 재개정을 필두로한 노동 핵심의제의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에 우호적인 ‘민주진보정치진영’과 함께 손을 잡았다. 2011년 12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반노동자정권인 이명박 한나라당 세력을 심판하기 위하여 민주진보중심의 민주통합당에 참여기로 결의하였다.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에 공식 참여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명제를 실현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며, 당면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19대 국회가 개시되는 6월부터 최우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전략’에서 제시한 노동-복지 12대 핵심 과제⁴⁾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와 여론화 작업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핵심 노동의제의 제도화를 위하여 먼저, 2012년 1월 15일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한국노총 7대 노동정책 요구안’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9명 모두 한국노총과의 노동연대를 재확인하여,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노조법 재개정을 비롯한 노동의제의 제도화의 현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한국노총은 19대 총선, 18대 대선의 노동-복지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관련분야 최고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2월내로 공약을 마련하고, 3월초 민주통합당과 조율을 거쳐 총선 공약으로 발표, 한국노총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낼 계획을 갖고 있다.

셋째, 새로운 의회 정치권력과 총노동, 이해와 요구가 일치하는 총자본간의 사회적대화를 추진 한다. 4.11총선직후부터 19대 국회 개원 전 사이에 노사관계-노동시장 최우

4) △노조법 전면개정, △정리해고 남용규제, 고용불안기업에 고용보험상 패널티 부과, △실업안전망 확충, △양극화 해소, △저임금 해소(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조례 제정),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모든 대학생에게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연금 지급,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사회적 대화체계 개선

선 제도화 실현과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 사회개혁의 제도화를 위하여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제안하고, 대합의를 도출시켜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국회에서 이를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한국노총 정책의 공약화를 위한 정책활동과 연계하여 총선투쟁과 임단투 시기의 결합과 집중, 사회개혁과제와 노동-복지과제의 결합 등 대중투쟁을 활발히 전개한다.

② 총·대선과 결합한 임단투, 사회개혁투쟁

2012년은 총·대선을 열리는 시기로 정치적 이해와 요구가 분출하는 과정이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재개정을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고, 국민적, 사회적 요구를 담아 대중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12-12 전략 : 사회개혁 5대 과제 +핵심 노동 7대 과제 실현을 위한 총대선투쟁 전개

사회개혁 4대 과제	핵심 노동 8대 과제
△조세개혁 : 금융소득 배당과세, 부가 증세 △한미FTA 폐기 △재벌개혁(상호출자금지, 금산분리 재 도입, 초과이익공유제 등) △중소기업활성화 대책(표준하도급계약 서 작성 의무화, 납품단가 원가연동 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등)	△노조법 재개정 △노사정위 개편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확보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철폐 △실업부조 도입, 노사주도 고용거버넌 스 구축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체계 개 선

이를 위하여 2012년 대중사업과 투쟁의 방향을 △시기를 묶는 총선과 임단투의 결합, △요구를 묶는 ‘노동법 개정+핵심 노동과제’와 ‘사회개혁 요구’의 결합시켜 추진한다.

2012년 임단투에서는 노동시간단축, 고용안정 확보 등을 단위노조 임단투의 필수요구

안으로 제기하여 반영하고, 한국노총 핵심노동 8대 과제의 총선 공약화와 사회개혁 4대 과제로 조세개혁, 재벌개혁, 중소기업활성화 대책 등을 제기한다. 또한, 노사정위 개편을 위한 사회적대화,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운동을 추진해 나간다.

③ 공세적 조직활동으로 '복수노조 시대'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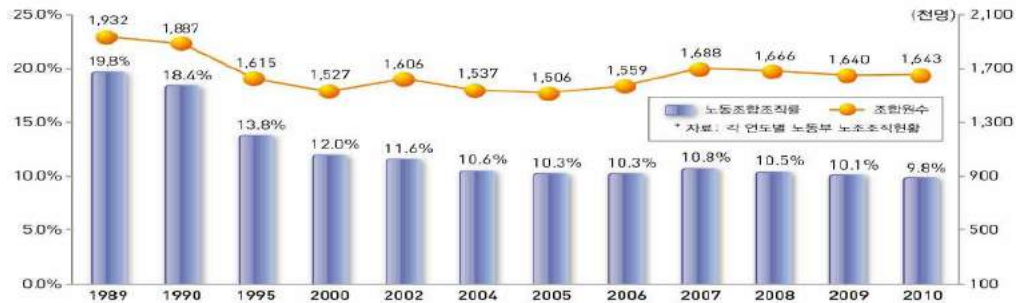
복수노조 시행이후 사용자 편의 위주로 설계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사용자 위의 노사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이후 타임오프로 인한 현장 전임간부 축소와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한 사용자의 노조선택권 강화로 인하여 노사관계 판세는 자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결권 확대, 조직률 개선 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기대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용자의 노사관계 우위 확보의 더욱 큰 문제점은 노사관계가 사회적 안정장치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볼때 한국 사회는 사용자 일방에 의한 결정, 힘에 의한 정글의 법칙으로 인해 사회안정망이 파괴되어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복수노조 허용이후 때를 같이해 2011년 하반기에 노동부가 발표한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11년 현재 9.8%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노조 조직률 감소는 현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저항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률이 하락하면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복수노조의 긍정성은 단결권의 확대로 노조활동에서 소외되어온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단결권의 확대가 기형적인 노조법으로 인하여 작동하지 않고, 집단적 노사관계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수 추이



한국노총은 2012년을 공세적 조직활동으로 복수노조시대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과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노총은 비정규, 청년, 이주, 고령자 등 미조직부문의 조직화, 유사산별 통합을 통한 조직체계 개편, 조직운영의 혁신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나간다.

가. 조직률 제고를 위한 미조직부문 조직화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산업구조 및 고용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지난 20년 동안 노조 조직률이 꾸준히 하락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조직확대사업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미래전략에서 실천가능성에 목표를 두고 2015년까지 사업장내 평균 조직률을 70%(현재 60%)로 끌어올려 최소 100만 조합원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정한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조직강화특별위원회⁵⁾’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조직강화특별위’의 2012년 주요 사업은 단위노조내 사무, 관리, 연구, 영업, 비정규직 등 미가입부문의 조직화를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2015년 12월까지 사업장내 평균 조

5) 미래전략 조직분과 보고서에서는 미조직, 비정규, 전략적 조직화 사업을 위하여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 조직확대형 사업풍토를 조성하여 모든 조직이 ‘행사 중심적 사업’에서 ‘조직확대형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힘 (예 : 여성분부는 여성조직화, 중앙법률원은 청년(대학생)노동자 조직화, 산업안전분부는 중소기업사업장노동자 조직화, 대외협력분부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등)

직률을 현재 조합원 88만, 조직률 60%에서 70%, 100만 조합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며,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진영의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조직확대 캠페인, 조직활동가 양성 및 현장 배치, 지역일반노조 활성화,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조직화, 청년조직 담당자 배치 및 청년위원회 설치, 준조합원제도(유니온 서포터스)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조직화사업 가운데 청년조직화, 준조합원제 도입 등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 조직화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노동자의 경우 청년실업의 고착화로 사실상 예비노동자를 넘어선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처해있어 조직화 및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기존에 조직화 방안 및 대응이 필요하며, 신규채용 감소, 노동유연화로 인해 조합원의 평균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일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접근과 조직화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부서와 위원회가 필요하며,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노총 조직본부내에 청년조직을 담당할 청년국(부)장을 두도록 한다.

노총, 산별, 지역본부, 지역지부에 청년노동자 조직화를 담당할 간부를 배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며,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개발하고, 예비직장인학교, 일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노동법 특강 등의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학생회, 청년 조직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연대사업 추진하고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상달 및 해결 등 구체적인 권리구제 활동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준조합원제도(유니온 서포터스) 도입은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는 조직적, 환경적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교류와 연대, 협력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장기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노선 또는 조직 정서로 상급단체 가입을 주저하는 중간공무원노조, 청년·학생단체, 은퇴 및 고령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직능단체 등을 포함한다.

중앙과 지역차원에서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실업, 일자리, 연금문제, 법률 지원 등 직접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적 의제화하도록 한다.

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현장 혁신”

한국노총은 2012년 사회변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선도하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의 내부혁신을 위하여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무장해야 하고, 경제적 이익에 앞서 정치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며, 사회부조리를 혁파하기 위한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 강화를 목표로 조직운영 집행체계를 재정비, 강화하고, 재정자립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의제로 의사결정단위의 현장 참여 확대, 정책감사(사업감사)제 도입, 의무금 부과체제 개선, 정부보조금에 대한 원칙 정립, 단위노조의 조합가입 범위 확대, 임단협 총회인준, 임원선출 직선제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 노동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제시 : 전략적 연대를 넘어 단결과 전선의 통일로

복수노조에 따라 결사의 자유와 단결선택의 자유는 강화되지만 노동진영의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국민노총 등장과 같이 정권과 자본의 분할지배로 노동운동의 힘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연대노동운동을 실천하는 광범위한 노동진영의 통합을 통해 노동운동 진영을 집중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96년 날치기 노동악법 무효화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투쟁과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노동제 쟁취투쟁, 비정규보호법안 쟁취를 위한 양대 노총 공동투쟁, 2006년 김태환 열사 투쟁 등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에 맞서 각종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양대 노총의 내부적 온도차에 따라 사실상 전략적 연대 수준이었다.

따라서 상호비방 중단 및 신규 조직확대에 주력(울산본부 사례)하고 노동전선의 통일이 그 어떤 가치보다 위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안전망구축, 올바른 사회개혁과 노동운동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등 공동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조직내부의 관료주의와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조직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 하는 등 통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운동의 국제적인 연대 강화로 자본의 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 미국노총(AFL-CIO)은 1959년 조직침탈 금지규약을 제정했으며 이후 조직침탈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2장. 2012년 금속산업의 전망과 과제

1. 금속산업전망

1) 2012년 산업전망기상도⁶⁾

	내수	생산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자료 : 산업연구원 전망.

주 : 1) 전망 :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임.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임.

10대 주력 산업은 2012년에 세계시장 부진과 경쟁 격화가 예상 되는 가운데 수출 주도 성장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 됨. 특히 자동차 · 일반 기계 · 철강 · 석유화학 등 대비IT산업이 수출과 성장을 견인 할 것으로 전망 됨. 수출 성장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그 동안 개도권 시장 개척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 임. 2012년에 중국

6) KIET,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20호, 2011.12.13.

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50%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 됨.

조선 산업은 유럽 재정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 되며 수출 · 생산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됨.

IT산업군은 반도체를 제외 하고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 되나 글로벌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세계 시장재편이 가속화 될 것이므로 대응 여하에 따라 성장 진폭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 함.

2) 2012년 금속산업 전망⁷⁾

① 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

제조업내수는 고용불안·가계소득 부진 ·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세둔화와 소비 심리위축으로 전반적으로 둔화 될 전망이다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지속과 가전의 수요회복이 예상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 회복기조로 전환 될 전망 임. 정보통신기기는 4G 서비스 활성화와 신규스마트기기 수요 증가로 9% 증가하고 가전은 런던 올림픽 및디지털방송전환 완료에 따른 특수에 힘입어 5% 증가할 전망 임. 2011년10% 이상 감소 했던 디스플레이는 기저 효과로 인해 11% 증가하고 반도체는 시스템 및 아날로그반도체의 수요 확대로 6% 증가할 전망임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 내수는 양호하나 자동차와 조선은 부진 할 것으로 전망 됨. 일반기계는 신성장 동력 생산장비 개발용 신규투자로 3% 증가하나 자동차는 소비 심리 위축과 신차효과 약화로 0.3% 증가로 정체되고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으로 발주가 침체국면인 조선도10% 감소 할 전망 임.

7) KIET,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20호, 2011.12.13.에서 일부 발췌

소재산업군은 건설경기 부진 전방산업의 성장둔화 구매력 둔화 등으로 0~5%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임. 철강은 건설 · 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수요둔화로 0.3% 증가에 그치고 석유화학도 자동차등 수요산업 부진과 기저효과로 0.2% 증가에 그칠 전망 임.



자료 : 산업연구원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②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조선 급락으로 6.5% 증가에 그칠 전망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신흥시장 수출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6.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됨. 다만 급락세가 예상되는 조선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10대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2009년과 2010년의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2006년 13.9%, 2007년 14.9%, 2008년 9.2%, 2011년 15%로 대체로 10%대 이상 수준 이었는데 2012년의 증가율은 예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 임. 자동차 · 일반기계 · 철강 · 석유화학 등 4개 산업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을 주도해 나갈 전망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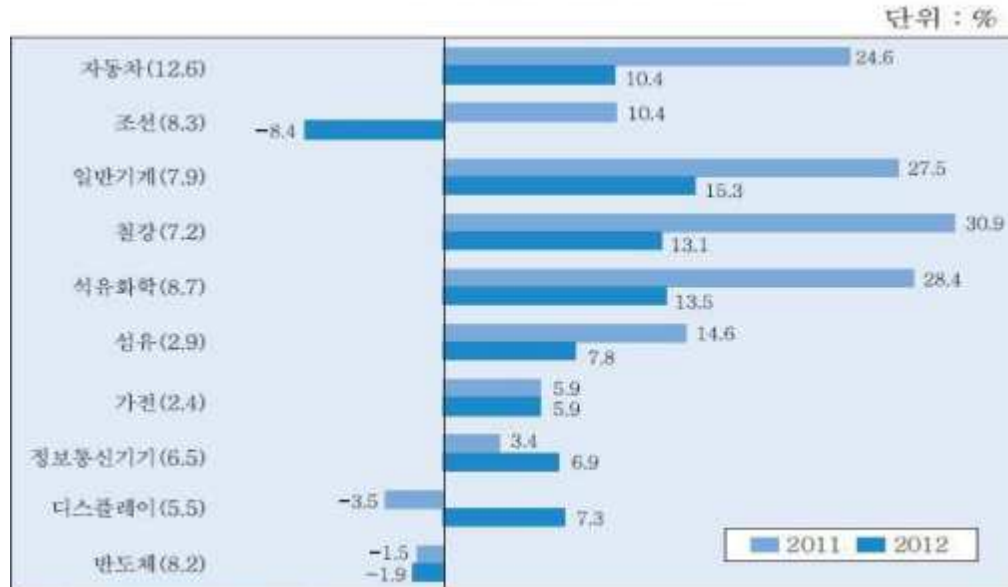
소재산업군은 중국 ·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 수요가 유지되고 국내업체들의 수출확대 노력에 힘입어 12% 증가 할 것으로 전망 됨. 석유화학은 신흥국의 상대적 고성장세에 따른 합성섬유 중간원료 · 합성원료 · 합성고무 등의 수요확대로 14%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은 중후판 · 봉강 · 철근 등의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적극적 수출 확대 전략과 신흥국의 철강 수입 수요지속으로 13% 증가할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은 신흥국 수요증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일반기계와 자동차 수출은 호조이나 조선은 건조 선박의 인도 불투명으로 인해 5%의 낮은 증가가 예상 됨. 자동차는 EU FTA 및 미FTA 수혜 ·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신흥국 수요증가 등으로 10% 증가 할 전망이다. 일반기계는 제 수출시장인 중국의 높은 고정자산 투자지속과 중동지역의 플랜트 기자재 수요 · 굴삭기 등 건설 중장비 수요확대로 15%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조선은 금융위기 이후 수주 공백기 영향 및 수주잔량 감소로 8% 감소할 전망이다.

IT산업군의 수출은 런던 올림픽특수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3.5% 증가하면서 2011년 2의 부진에서 회복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올림픽특수와 IT기기의 글로벌 수요증가 · 패널가격의 안정화 등으로 2011년 2의 감소에서 7% 증가로 전환 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입지 강화 및 4G 이동 통신시장이 확대되는 정보통신기기는 7% 증가 · 국내기업의 경쟁력 우위 지속 및 디지털TV의 올림픽특수가 기대되는 가전은 6%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스마트폰 등의 시장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트북PC 기능을 스마트폰이 대체하면서 D램 수출이 급감하는 반도체는 2% 감소 할 전망이다.

10대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수출 대비 비중이 2011년 70.7%에서 2012년 70.3%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2012년 총수출 대비 비중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 12.6%, 석유화학 8.7%, 조선 8.3%, 반도체 8.2%, 일반기계 7.9% 등으로 5개산업의 총수출대비 비중합계는 45.7%에 이를 전망이다.

2012년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자료 : 산업연구원 전망.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안은 2012년 총수출 대비 점유율.

③ 내수와 수출 둔화로 생산도 증가세 둔화

생산은 내수 회복세 미약 · 수출환경 악화 · 해외 생산확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가 둔화 될 것으로 예상 됨. 다만 가전 · 정보 통신기기 · 디스플레이 등 IT산업군은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율이 소폭 상승 할 전망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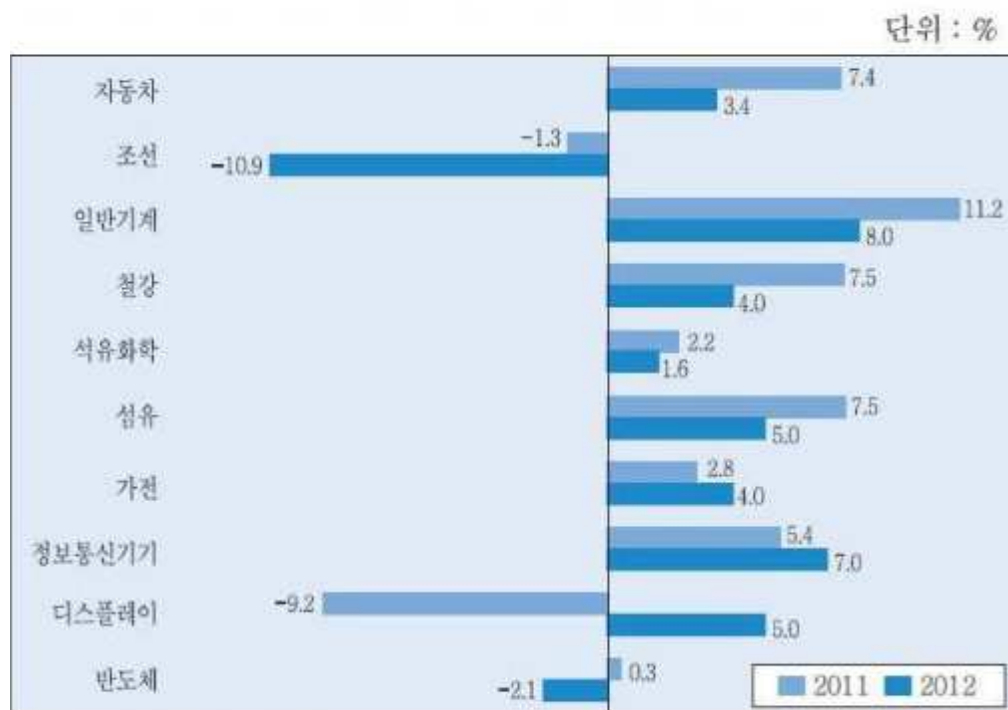
기계산업군은 일반기계와 자동차생산이 수출호조로 증가하나 조선은 해운 시장 부진으로 감소 할 전망 임. 일반기계는 해외 수요 증가로 8%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나 내수 정체를 수출이 보전하는 자동차는 3% 증가에 그칠 전망 임. 조선은 수주량이 건조량 규모에 못미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11% 감소 할 전망 임.

소재 산업군은 설비 능력 확대 · 상대적으로 호조세인 수출에 힘입어 1~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 임. 철강은 신증설 설비가 증가하고 제철 원료가격이 안정세로 전

환되면서 4% 증가.

IT산업군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임. 정보통신기기는 통신 인프라 증설 및 고도화 투자와 수출 확대로 7% 증가할 전망 임. 디스플레이는 경쟁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AMOLED 경쟁력 격차 확대로 5%의 높은 증가가 예상되고 가전은 올림픽 특수에 기인한 디지털 영상기기의 내수 및 수출 증가에 따라 4% 증가할 전망 임. 그러나 반도체는 후발업체의 기술 추격이 국내업체를 압박하는 가운데 노트북의 수요 감소로 2% 감소할 전망 임.

2012년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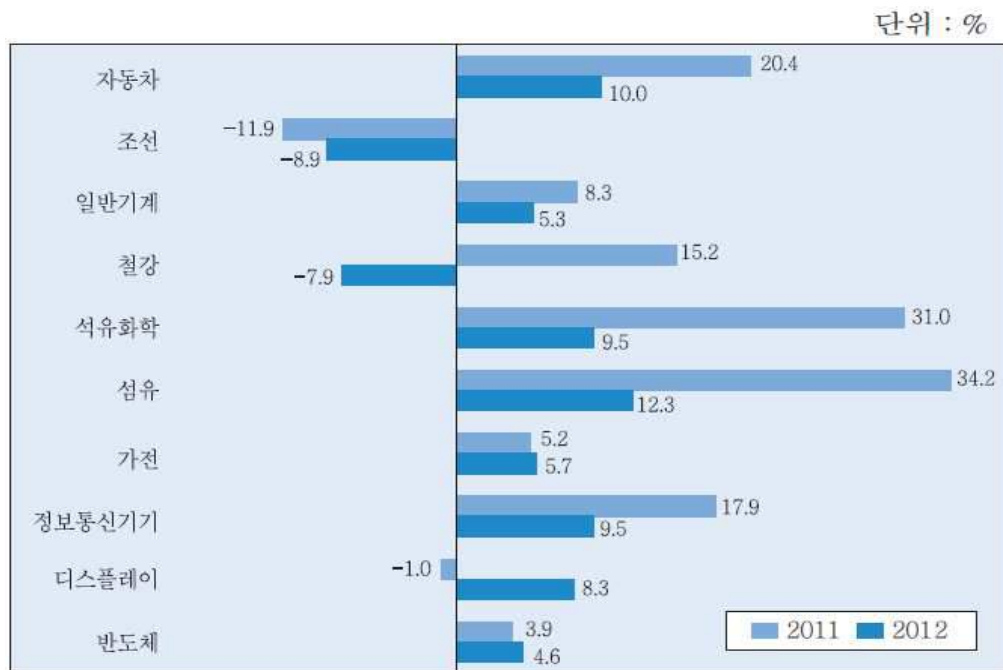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선유는 선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④ 10대 주력 산업의 수입은 내수 및 수출 둔화로 4%의 소폭 증가

10대 주력 산업의 수입은 해외 생산제품의 역수입 및 저가 제품 수입등으로 3.8% 증가하며 IT산업군의 수입 증가율이 높을 전망이다

2012년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자료 : 산업연구원 전망.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IT산업군은 국내 생산이 부족한 부품의 수입 · IT 신제품수요 확대 · 해외 생산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증가 외 국브랜드들의 국내 시장 공략 강화 등으로 6.5% 증가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는 신규외산제품 출시 확대와 경쟁국 기업의 저가 전략 강화로 10%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IT용 소형 패널 공급능력 부족분과 수출용 수입수요가 늘어 나면서 8% 증가할 전망이다. 가전은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제품 역수입 및 저가제품 수입 증가로 6% 증가하고 반도체는 국내 미생산 시스템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의 수요 증가로 5% 증가할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은 수입차 증가와 외국산 첨단장비 도입이 늘어나면서 5% 증가할 전망 임. 자동차는 EU FTA 및 미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와 신규 브랜드 진입으로 완성차와 부품수입이 늘어나 10% 증가 할전망 임. 일반기계는 반도체 장비 ·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첨단장비 수입으로 5% 증가할 전망 임. 반면 조선은 국내 건조량의 감소로 중국 현지공장에서 가공한 블록의 반입 규모가 줄어들면서 9% 감소할 전망 임.

소재산업군은 업종별로 수입 수요편차가 큰 가운데 수입 규모가 큰 철강의 수입 감소로 1% 감소 할 전망임. 철강은 열연과 후판 제품의 국내 공급이 늘어나면서 동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8% 감소 할 전망 임.

2. 금속산업 노동조합의 방향과 과제

1) 2012년, 노동자의 반격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동진영은 지속적인 양보와 굴종적인 타협을 해왔다. 특히,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그 정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각종 부패와 비리는 이제 보수 · 수구진영을 수세적인 국면으로 몰아넣었고, 노동진영은 반격의 시점을 맞았다.

특히, 2012년은 4월 총선, 12월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권력재편기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이러한 권력재편기에 지난 12월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통합당’을 출범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일궈온 금속노동자들은 이제 2012년 ‘심판’을 넘어 ‘노동의제’를 국정의제의 한 중심에 두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대거 입성

시켜,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여 복수노조 자율교섭쟁취 · 근로시간면제제도철폐등을 통해 사업장 내 현장권력의 주인이 노동자임을 선포하여야 한다.

2)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통한 현장권력의 쟁취

노조법이 재개정된 이후 노사관계의 중심축이 사용자의 일방주도로 기울었다. 전임자들의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반대급부인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해, 일반 조합원 및 간부들의 노조활동마저 옥죄려는 시도들이 여러 사업장에서 나타났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편승해 시정명령을 남발하였었다. 또한, 경기 안산의 아페리오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켜 사용자가 친사용자노조 결성에 앞장서기도 하는 등 사용자는 기존의 노사협력적 현장통제를 깨뜨릴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2012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노조법은 재개정이 불가피하게 보이고, 이러한 노조법 재개정과 아울러 현장에서 잃어버린 노동조합의 현장권력을 다시금 되찾아 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속노련은 지난 2011년 5월 · 12월 두 번의 지침을 통해 악법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이기는 하지만 현장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섭대표노조’ 지위의 확보를 소속노조에 시달리고, 이를 통한 노조활동의 위축을 막고 사용자 일방주도의 노사관계시도를 차단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제, 2012년 임단투에서 노동자의 ‘반격’은 현장에서 ‘교섭대표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유리한 국면 등을 전략 · 전술적으로 활용하여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조법이 파놓은 함정인 노-노갈등에 빠지지 말고, 복수노조 또는 다수노조가 현장 내에 존재한다면 노동조합이 먼저 선도적으로 배타적 교섭창구단일화가 아닌 노동자의 힘을 극대화할수 있는 ‘자율적 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권을 확보하여야 한다.⁸⁾

8) 금속노련, 2012단체교섭지침 제1편 단체교섭권확보지침, 2012. 12. 6~10면 참조

3) 근로시간단축과 생활임금의 확보

2011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53조에도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행정해석⁹⁾을 통해, 사실상 장시간근로를 묵인해 왔던 기존의 태도를 버리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이렇듯 노동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버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려고 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의도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향상이 ‘질’이 아닌 ‘양’으로 일자리를 기계적으로만 늘릴려고 하는것에 있다. 금속노련 소속 사업장은 주로 중소기업사업장이고,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은 도시근로자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아무런 보완책 없이 단순히 휴일근로(특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임금감소폭은 20~30%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려는 의지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그로 인해 줄어드는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보전문제를 함께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속노련 소속노조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속에서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OT수당에 의존하던 조합원들의 시간급제 임금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기존임금을 상승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현장에서 구축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되어온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임금의 개념을 단체협약에 다시금 정리해내고, 각종OT수당의 산출근거인 통상임금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¹⁰⁾ 또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주40시간제 시행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기존의 임금을 보전 받아¹¹⁾, 근로기준법 상 12시간의 연장근로만으로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의 임금까지 확보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9)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현재 제53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 68207-2855, 2000. 9. 19)

10) 금속노련, 2012단체교섭지침 제1편 단체교섭권확보지침, 2012. 12. 47~50면 참조

11) 금속노련, 2012단체교섭지침 제1편 단체교섭권확보지침, 2012. 12. 50~54면 참조

4) 비정규직 및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금속산업은 주로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파견근로자들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도급을 위장한 불법적인 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시간단축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정부는 시간제등의 비정규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들의 임금이 낮고 해고가 자유로운데 기인한다. 따라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러한 비정규직 및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을 정규직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보호’의 문제가 아닌 ‘정규직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정책 기획 활동

⇒ 기간활동 평가 및 개선방향

1장. 대정부 요구서

1. 기자회견문(2012.12.04)
2. 기자회견문(2013.02.06)
3. 대정부 요구사항

2장.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편 대책위 활동

1. 배경
2. 목적
3. 구성
4. 일정별 활동 경과
5. 자동차 대책위 소식지

3장. 노사정위 활동

1. 배경
2. 목적
3. 경과
4. 관심 의제
5. 노사정위원회 간담회 자료

4장. 2013년 임투 표준 요구서

기간활동 평가 및 과제

정책기획 업무는 금속노련의 중심적 활동이다. 법·제도 개선 활동을 핵심으로, 금속노동자를 둘러싼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천 과제를 제시해야 하는 활동이다.

지난해(2012.04.01~2013.03.31) 금속노동자의 핵심 화두는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주지하듯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장시간을 노동하고 있다. 금속노동자는 산업과 특근이 일상근무가 된지 오래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계부품, 돈버는 기계로 전략한 금속노동자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인간성 회복운동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이 금속노동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경우, 조직적 반발은 물론 전체 금속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킬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우리 금속노련은 장시간노동 해소를 위한 시대과제에 적극 부응하되, 금속노동자의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와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새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조직 내부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업종별(자동차산업) 노사정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축, 약화시키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우리 금속노련은 지난해 활동을 토대로 금년도에도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책위의 ‘대책위원의 참석률이 저조’, ‘대책위 활동에 크게 관심이 없고’, ‘자동차 업종에 한정되어 지역 차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처럼 산하 단위노조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정책기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으며 성과도 낼수가 없다.

금속노련은 산하 조직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고 제시할 계획이다. 산하 단위노조도 우선적, 희생적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개별사업장 문제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기업별노조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해야 해야 한다. 연맹과 가맹 단위노조의 역할을 구분하는 현재의 조직체계를 재차 점검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의 절규와 외침을 들어라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이하 ‘금속노련’)은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 전환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공정거래 확립, 범정치권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 산업 노동자들은 제조업

중 최장시간을 노동하고 있다. 대부분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의 잔업과 주1회 이상 특근을 한다. 반면, 시간외 근로 수당의 비율이 월 총급여의 50%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선지 오래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과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잔업과 특근도 마다하지 않는다.

법정 노동시간만 일하고, 여가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건강과 자아 실현을 위해 취미생활도 하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군들 거부하랴! 그러나 육아와 교육, 주택, 의료, 노후 등 공공지출의 대부분을 개별 노동자가 부담하는 우리의 사회의 취약한 복지수준에 기인해 노동자 스스로가 잔업과 특근을 선호하기도 한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일 중독 국가” 바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바로미터다. 장시간 노동과 밤샘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트린다. 나아가 기업과 국가의 미래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

현대차 등 완성차 노사는 2013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기로 합의했다. 이번 완성차의 합의가 자동차 부품 산업 노동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렇

지 않다. 오히려,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완성차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지는 않을까! 또다른 걱정과 근심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낮은 감은 있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을 위해 “자동차 업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장·단기적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이 없다.

새로운 미래는 현재를 바꾸어야만 도래한다. 오늘의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는 현재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그저 오늘을 연장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유력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고 기업의 재정 능력도 부족하다. 게다가 임금 감소를 염려한 일부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과연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속노련은 자동차 부품 종사 노동자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차기 대통령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재정 지원 방법을 다각화하고 교대제 지원금 및 지원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부품사는 최대 설비능력으로 가동되고 편성효율도 극대화되어 있다. 부품사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현재의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비증설과 신규채용을 통한 교대제 근무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설비투자나 신규 인원 충원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의 교대제 재정지원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방법을 다각화하고 지원금 및 지원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완성차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부품사와의 공생없이 완성차의 지속적인 성장은 어불성설이다. 원,하청간 공정거래 확립은 자동차 부품사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때문에 완성차는 공정 거래질서의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현재의 ‘단가 후려치기(CR)’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된다면 부품사의 노동시간 단축은 요원하다.

끝으로 범정치권의 노동시간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노조와 기업, 원·하청의 자정 노력과 함께 노동시간 규제 및 공정거래 규범도 강화하여야 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제도가 무시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한 사회라고도 할 수 없다. 정치권은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금속노련 자동차 부품사 노조는 그동안 쌓아올린 노사화합과 신뢰를 기초로 기업내 자구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권 강화,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밤샘노동 축소 또는 철폐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일수불퇴의 시대정신이다.

2012년 12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실노동시간 단축 / 밤샘근무 해소 / 노동열사 현안 해결

양대노총 금속노련·금속노조 '대정부 요구' 공동기자회견

- 순 서 -

1. 참가자 소개
2. 인사말(허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3. 회견문 낭독(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4. 질의 · 응답
5. 구호 제창
6. 마무리

세부 요구안 별첨.

양대노총 금속 공동대책회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실노동시간 단축 / 밤샘근무 해소 / 노동열사 현안 해결

양대노총 금속노조금속노련 '대정부 요구' 공동기자회견문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밤샘노동 해소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공동대책회의’(약칭 ‘양대노총 금속 공동회의’)는 금속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직적 총의와 역량을 모아 내기로 했다. ‘양대노총 금속 공동회의’(이하 ‘금속공동회의’)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의 실노동 시간을 줄여야 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감소 없는 교대제 개선, 나아가 밤샘노동 철폐를 위하여 공동대책 활동을 전개기로 하였다.



‘금속공동회의’는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라 진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데 대해 주목한다. 당선인이 원칙과 약속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공언해 온 만큼 공약 이행을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시간 상한제 및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왔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 금속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인해 온 것이다. 장시간 노동 체제를 해소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행정해석을 즉시 폐기하고, 실노동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일·시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노사합의를 통한 고정급 중심의 월급제로 전환하고 시행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사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과 교대제 개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편성효율이 극대화된 현 시점에서 요원한 바램일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밤샘노동 해소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고용창출 지원 사업중에서 지원 대상 및 방법, 기간을 확대해야 하고 생산 설비 보완과 증설, 신규설비 확충의 경우에도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원청의 CR유예, 기술지원 등 부품 및 협력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재벌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

셋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원청의 일방적 단가 인하, 일명 ‘단가후려치기’는 전산업에 걸쳐 널리 알려진 대표적 불공정 거래 행위이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정부가 ‘슈퍼 갑’의 눈치만 보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소기업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 왔고 존립 기반마저 훼손해 왔기 때문이다. 우선은 원청의 일방적 단가 인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규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집단조정제·집단소송제 등 중소기업이 실효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책도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단가책정에 있어 원가·물가연동제 도입해야 한다.

넷째, 재벌·기업집단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힘은 막강하고,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재벌은 몸집 부풀리기와 경제력 집중, 초과이윤의 확보수단으로 활용해온 내부거래 고리를 끊고 이익공유제 도입 등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 정부도 공정거래법 강화, 출자총액제부활, 재벌세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선 이후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등 고인들의 절망과 바램이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 정권도 여전히 불통과 배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이 확정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연이라 말할 수 없다. 양대노총 금속공동회의는 고인들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고, 노동조합 죽이는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금속공동회의’는 금속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한다. 불통과 아집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소통과 대통합, 참노동과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굳게 닫힌 인수위의 철문부터 활짝 열어야 한다.

‘금속공동회의’는 이후에 ‘양대노총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을 목표로 임단협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제조업 전체 노동자가 단결하고 총력투쟁 할 발판을 만들 것이다. 금속노동자의 저력을 모아 뚝심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며, 재차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실천 및 노동열사 등 노동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6일

양대노총 금속 공동대책회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실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박근혜 당선인 공약 이행!

대통령직 인수위 / 대정부 요구사항

2013년 2월 6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금속노련 요구사항

<주요 요구사항>

☐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과도한 행정해석 폐지
- 실노동시간 주당 52시간으로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 고정급 중심의 월급제 시행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 교대제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 시, 재정 지원 확대
- 기업의 설비보완 및 증설, 신규설비 확충 시, 재정, 세제지원 확대
- 재벌의 부품사 지원과 사회적 책무 강화

☐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경제민주화

- 원청의 일방적 단가 인하 해소
- 원하청간 납품 단가의 원가·물가 연동제 실시
- 집단조정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재벌 내부거래 규제 및 원하청간 이익공유제 도입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내용과 요구 배경>

□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

-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늘·지·오** 정책을 약속 함.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하였고, 5년 안에 15~64세의 고용률을 EU목표와 동일한 수준인 70%까지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 함.
- 박근혜 당선인은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나눔형 동반고용 전략을 시행하며,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함.
-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 추진”, “근로기준법의 초과근로시간 규정 보완 및 근로감독 강화 및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 지원”하겠다고 함.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시급하게 지켜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실천을 요청 함.

□ 요구 배경과 이유

- 주야 맞교대제 근무에서 비롯된 장시간 노동 체제 : 박근혜 당선인의 진단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장시간 노동체제는 근로

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임. 특히 자동차 산업은 주야맞교대 근무체제에서 장시간근로가 관행화 되어 있음. 따라서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리는 정책은 유효 함.

-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합의 : 현대차, 기아차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 및 밤샘노동 해소를 위해 2013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에 합의 함. 일정한 노동효율(노동강도)을 높혀 물량과 임금을 보전하는 원칙에 합의한 것임.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시행은 자동차 부품사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자동차 부품사의 실태와 문제점 : 자동차 부품사는 현대차 등 완성차보다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음. 규모가 적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일수록 근무시간이 더 길고, 주야 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매일 잔업과 매주 특근을 하며 잔업과 특근이 정상근무처럼 되어 있고, 편성효율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설비도 최대 능력으로 운영 중임.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방식의 주간연속2교대 개편이 쉽지 않은 조건 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설비증설과 교대조 개편이 필수적이거나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각적인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함.
- 장시간근로 해소와 일자리 창출 :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기를 희망 함. 그러나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편성효율이 극대화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현재적 조건을 볼 때, 쫓아갈 수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 양대노총 금속노련과 금속노조는 자동차 부품사의 어려운 제반여건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 확대 및 공정거래 확립을 요구하기에 이룸.

<세부 요구 내용>

□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

- 박근혜 당선인의 진단을 재차 언급하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임.
-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서 제외시키는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인해 왔음. 이에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즉시 폐기하고 오히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행정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 함.
-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 함. 다만 현실여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강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임.
- ‘주당 52시간 상한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해당 노동자의 기존 노동조건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일·시급제에서 노사합의를 통한 고정급 중심의 월급제 도입을 시행하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 함.

□ 교대제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 자동차 부품사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설비를 증설하고 현행 주야맞교대 근무형태를 개편해야 함. 하지만 회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편성효율이 극대화된 상태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실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우선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원 기간을 2년, 지원 방법도 2개월 단위로 할 것을 요구 함.
- 교대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사업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중점대상’으로 우선 포함하여 시행하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함.
-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및 교대제 전환 사업장에 대해 ‘고용환경 개선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생산 설비 보완과 증설 및 신규설비 확충’의 경우에도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완성사와 생산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교대제 전환 중소기업사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CR유예, 기술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함. 재벌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높임과 동시에 부품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지침을 수립하여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함.

[참고1] 정부의 고용창출지원 시행 지침(2013년) 요약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 1) 개요 : 일자리 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인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
- 2) 대상 : 대기업 포함 모든 사업주.(예산 부족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우선권 부여 가능)
- 3) 지원 요건
 - ① 일자리 순환제 : 1년 이상 재직자 대상 30일 이상 유급휴가 후 120시간 이상 훈련 또는 30일 이상 안식휴가
 - ② 교대제 시행 사업장(4조 이하로 실시)
 - ③ 실근로시간 단축 : 시행일 6개월 전보다 시행일 월부터 6개월간 전체 근로

자의 월평균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4) 지원 수준 및 한도

- ① 6개월 마다 도입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도입 전 월평균근로자수 보다 초과한 인원.
- ② 6개월 마다 신규 인원 1인당 360만원씩 2회 지급.

* 교대제 우대 지원

1) 교대제 도입 및 확대 사업주에 대해 지원기간과 지원액을 우대 지원

< 교대제 증가근로자 1명당 지원기준 >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대규모기업*	1년	450만원	9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중점지원	2년	540만원	2,160만원

* 대규모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중점지원 대상의 요건

- ① 교대제를 주야 2조에서 3조대(3조3교대, 3조 2교대 등)로 개편하거나, 3조(3조3교대, 3조2교대 등)를 4조(4조 3교대, 4조 2교대 등)로 하는 경우.
- ② 제조업에 해당

□ 납품단가의 원가·물가 연동제 및 집단조정·소송제 도입

- 원청의 일방적 단가 인하, 일명 단가 후려치기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 행위로 납품대금 지불시 CR금액을 선제외 지급하거나, 재료비 인상분의 일부만 반영하거나, 관리비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원청의 일방적 단가 후려치기는 뿌리 깊은 악행으로 반드시 해소해야 할 중요한 요구 내용임.

-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원하청간 갈등구조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의 해당부서 조차도 재료비 연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납품단가가 원자재가, 물가 등의 변동에 연동하는 체계가 될 때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장기 성장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임.
- 재료원가 연동제는 재료비 총액 전체를 어떻게 단가에 반영하도록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 함. 매출 대비 재료비 등을 고려할 때, 재료비 가격 상승분 총액의 80%는 무조건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20%는 물량 변화, 원청업체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강제력이 있는 조정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함. 나머지 20%를 반영하는 방법 역시 객관적인 기준을 미리 결정하여 원청업체에 의한 임의적인 개입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함. 현재 정부의 문제는 반영방식을 협조적인 원청업체에게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의무 이행’으로 강제하고 그에 따라 메리트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 됨.
- 인건비나 제조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지표는 물가상승률 임. 따라서 실질 노동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은 원칙적으로 모두 반영되어야 함. 반영방식은 $\text{도·소매물가 상승률} \times \text{관련경비 비율}(\text{관련경비}/\text{매출})$ 만큼 단가에 반영하면 됨. 기술개발비에 투입된 비용은 두가지 방법을 결합시킬 수 있음. 실제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한 결과 성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개발비 투입비용과 그 성과 중 일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공유제를 적용한 것임. 다른 하나는 적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투입비용의 경우, 해당 기술이 명확하게 원청업체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성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식 임.
- 납품단가의 집단조정에 있어서는 자율권장 또는 협의 수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을 원청업체로부터 독립적인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공익위원 중심으로 하고, 그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만 고발권이 국한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각 업종협동조합 등이 직접 납품단가 관련 공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함.

[참고2] 불공정거래 행위 (Cost-Reduction)에 대한 의견

“납품가는 내려가고 재료비, 인건비 상승하고 차값은 올라가는데 왜 납품가는 몇 년 전 보다 싸게 납품하는 건가요, 부품업체 노동자를 전부다 비정규직으로 만들 건가요” (자동차부품 A노조)

“20년 전 우리 사업장의 주력제품의 납품가가 3만원 중반대였다. 그런데 현재 2만원 중반대로 납품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Y노조)

“CR은 횡포다. 강도짓이다. 정책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사회 양극화의 절대적 주범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미래를 설계한다면 한 시 바빠 척결해야 할 굶아터진 상처이다. 협력업체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의 도요타사태가 없으리란 법 없다.” (자동차부품 I노조)

“CR로 인하여 협력업체 조합원들은 노동강도 상승, 임금삭감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뿐인 동반협력이 아닌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자동차부품 D노조)

“CR을 상생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이 통할 것인가? 법으로 정한 강력한 규제만이 결론이라 생각한다.” (자동차부품 S노조)

“상급단체가 정부(공정위, 검경, 노동부 등)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 (자동차부품 N노조)

“경영의 자율성 보장 재무재표 확인 후 일방적인 CR을 단행한다.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협력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자동차부품 H노조)

“대외적으로 CR을 공론화하기에는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므로 공론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자동차부품 P노조)

□ 재벌 내부거래 규제 및 원하청간 이익공유제 도입

- 재벌은 핵심연관산업 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금융 등을 통한 수직계열화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초과이익 확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재벌의 내부거래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의 강화, 출자총액제의 부활, 재벌세 등을 통한 순환출자 수익에 대한 과세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도입해야 함.
- 더불어,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이익공유제의 도입을 통해 하청업체의 평균이익율을 상화하는 이윤의 일정한 몫을 하청에 대한 지원으로 강제해야 함. 초과이익 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기한 바 있으나, 전경련등의 반발로 대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이익배분제등으로 축소되었으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함. 하청업체의 평균이익율을 초과하는 이윤의 일정액(예를 들어 30%)을 하청업체에 되돌려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 함.

2장.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편 대책위 활동

1. 배경

- 각 정당 총선(4.11)과 대선(12.19)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공약
- 근로시간 단축(근기법 준수) 및 밤샘노동 근절 사회 여론 조성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점검, 위반 업체 시정 명령
- 현대차, 기아차 12.03.04, 한국지엠 13.01.01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합의

2. 목적

- 자동차 업종 노조 조합원의 실노동시간 및 교대제 근로의 문제점 진단
- 완성차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시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조사 및 대응체계 마련
- 장시간근로 및 밤샘노동 축소 및 완화, 철폐로 조합원의 건강권 강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3. 구성

- 지역본부 추천을 통해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노조 대책위원회” 구성
- 의장(정일진 부위원장)과 부의장 5명(권역별 1명)으로 의장단 구성
- 홀수(1,3,5,7,9,11)월에 전체회의, 짝수(2,4,6,8,10,12)월에 의장단 회의 개최
- 금속노련 자동차 업종 대책위 및 의장단 구성 현황

구분(22명)		성 명	소 속	직 위
1 권역	경기	문형호(부)	인알파코리아	위원장
		민한기	리한	위원장
	안산시흥	윤여경	아이아	위원장
		윤석진	광명전기	위원장
	인천	오인상	삼성공업	위원장
		류성룡	대동하이텍스	위원장

2 권역	충남	장재성(부)	새론오토모티브	위원장
	충북	이상용	한국보그워너TS	위원장
		이종필	우지막코리아	위원장
	대전	이남철	진합	위원장
	강원	이병국	오토리브노조	위원장
3 권역	경남	유재현(부)	GMB코리아	위원장
		장원혁	NEK	위원장
	대구	황성원	대 철	위원장
		허도영	평화정공	위원장
		방상훈	대리정밀	위원장
4 권역	부산	박창혁(부)	대창단조	위원장
	울산경주	문부근	동국실업	위원장
		조영철	대동산업	위원장
	포항	정천균	성우오토모티브	위원장
5 권역	전북	김학송(부)	대유신소재	위원장
	광주전남	김홍관	캠스노동조합	위원장

4. 일정별 활동 경과

□ 자동차 업종 노조 간부 교육 (노사발전재단 공동 주관)

- 일시/장소 : 2012. 7. 18(수) ~ 7. 19(목),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석 : 자동차 업종 20개 노조 대표자 및 간부 58명
- 내용 :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제” 경과와 전망, 협력업체 대응 과제 등

※ 자동차 협력 및 부품업체 노조 대표자 간담회(2012. 7. 18)

: 조속한 시일내에 노조 대표자 회의 또는 교육을 통해 “자동차 업종 노조 대책위 구성”

□ 자동차 업종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토론회

- 일시/장소 : 2012. 8. 16(목) 14:00, 중소기업중앙회관 중회의실(여의도)
- 주관 : 금속노련, 금속노조 공동 주최
- 내용 : 부품사업장에 대한 정부 및 원청의 지원책 모색 등

□ 자동차 업종 노조 대표자 회의

- 일시/장소 : 2012. 8. 21(화) 14:00, 금속노련 회의실
- 참석 : 자동차업종 13개 노조 대표자
- 내용 : 자동차업종 노조 대책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 논의

□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대책기구 실무협의

- 일시/장소 : 2012. 8. 23(목) 15:00, 금속노조 회의실
- 참석 : 전종덕, 곽상욱 (금속노련), 이정희, 김성상, (금속노조)
- 내용 :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대책 기구 설치안 협의

□ 금속노련 지역본부 의장단 회의

- 일시/장소 : 2012. 8. 30(화) 16:00, 대구지역본부 회의실
- 참석 : 대구지역본부등 8개 지역본부 의장
- 내용 :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실태조사 협조 및 대책위원회 추천 요청

□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노조 대책위원회 구성

- 지역본부 추천을 통해 대책위원회 구성 통보(정책 제138호, 2012.09.20)

□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대책기구 제1차 집행단 회의

- 일시/장소 : 2012. 9. 21(금) 10:00, 금속노조 회의실
- 참석 : 정일진, 전종덕, 곽상욱 (금속노련), 박상준, 김성상, 엄교수 (금속노조), 이익재(현대차노조), GM대우 집행위원장의외 1명
- 내용 : 현대차 노사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내용 설명 및 공동대책기구 향후

활동 내용 공유(사회여론화, 전문역량강화 사업)

□ 금속노련 자동차 부품사 노조 간부 교육

- 일시/장소 : 2012. 10. 9~10,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
- 내용 : 현대차 노사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내용 및 교대제 실태, 부품사 노조 향후 대응방향

□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 제1차 회의

- 일시/장소 : 2012. 10. 9. 17:00,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
- 내용 : 대책위 운영 및 활동방안 등 논의하고 ①필요한 경우 대책위원 추가 선임. ②대책위원회 의장 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 ③조기에 제2차 회의 개최하고 미진한 부분은 논의기로 함.

□ 노사발전재단 교육프로그램 개발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2. 11. 21(수) 16:00, 노사발전재단 대회의실
- 참석 : 전문가(박태주,이문호,노광표,백승렬), 금속노조(엄교수), 금속노련(전종덕,곽상욱), 현대차(박병훈), 현대차노조(이익재)

□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 제2차 회의

- 일시/장소 : 2012. 11. 23. 14:00, 대구경북지역본부 소회의실
- 내용 : 의장단 선출 등 운영 및 활동방안 결정, 12월 활동 계획 협의

□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대책위 의장단 회의

- 일시/장소 : 2012. 12. 4. 10:30, 금속노련 회의실
- 내용 : 12월 활동 계획 심의

□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대책위 의장단) 기자회견 실시

- 일시/장소 : 2012. 12. 4. 16:00, 금속노련 회의실

□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노조 실태조사 실시

- 2012년 10월부터 12월14일까지 실태조사 실시
- 서면조사 53개 노조 응답, 면접조사 25개 노조 실시

□ 제1권역(경기/안산시흥/인천) 교대제 개선 사례 설명회

- 일시/장소 : 2012. 12. 18(화) 14:00, 한국노총 경기본부 국제회의실
- 참석 : 경기, 안산시흥 지역 노조 대표자 및 간부 30여명 참석
- 내용 : 교대제 개선 사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제3권역(대구경북/경남) 교대제 개선 사례 설명회

- 일시/장소 : 2013. 1. 9(수) 14:00, 대구본부 중회의실
- 참석 : 대구경북, 경남지역 노조 대표자 및 간부 40여명 참석
- 내용 : 교대제 개선 사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대책회의’ 간담회

- 일시/장소 : 2013. 1. 10(목) 15:00, 충남본부 회의실
- 참석 : 정일진, 전종덕, 곽상욱 / 代박상준, 송보석, 김성상
- 내용 :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사업(안) 및 향후 일정 협의
 - ※ 사회여론 조성 및 제도 개선 요구,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대책 사업, 정부 지원 확대 요구, 완성차 고통 분담 및 지원 확대 요구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CR 유예/ 중지 등)
 - ※ 대정부 공동 요구안 마련 → 사회여론화 → 인수위 대응 (면담등 추진) → 입법 및 지원 대책 촉구

□ 금속노련 정책 자문회의

- 일시/장소 : 2013. 1. 15(화) 11:00, 금속노련 회의실
- 참석 : 김홍룡, 전종덕, 곽상욱 / 박태주, 이문호, 정문주, 노진귀
- 내용 : 금속노련 대책위 활동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 향후 정책 방안 자문

□ 제2권역(충남/충북/대전/강원) 교대제 개선 사례 설명회

- 일시/장소 : 2013. 1. 17(목) 14:00, 충남본부 회의실
- 참석 : 충남, 충북, 대전, 강원 지역 노조 대표자 및 간부
- 내용 : 교대제 개선 사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금속노련-금속노조 간담회

- 일시/장소 : 2013. 2. 6(목) 16:00, 금속노조 사무실
- 참석 : 정일진, 전종덕, 박상욱 / 허재욱, 송보석
- 내용 : 장시간근로 및 교대제 개선 촉구 위한 지원 확대 등 요구안 발표

□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대책 실무회의’

- 일시/장소 : 2013. 1. 24(목) 15:00, 한국노총 회의실
- 참석 : 전종덕, 박상욱 / 송보석, 김성상
- 내용 : 인수위 기자회견 및 대정부 요구안 초안 검토

□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대책 실무회의’

- 일시/장소 : 2013. 2. 4(월) 17:00, 한국노총 회의실
- 참석 : 전종덕 / 송보석, 김성상
- 내용 : 인수위 면담 추진 점검, 기자회견 초안 및 제출 방식 검토 등

□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대책회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3. 2. 6(목) 14:00, 대통령직 인수위앞
- 참석 : 금속노련 김만재 6명, 금속노조 허재욱 수석부위원장등 7명
- 내용 : 장시간근로 및 교대제 개선 촉구 위한 지원 확대 등 요구안 발표

□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대책회의

- 일시/장소 : 2013. 2. 6(목) 16:00, 금속노조 사무실
- 참석 : 금속노련 정일진, 전종덕, 박상욱 금속노조 허재욱, 송보석
- 내용 : 장시간근로 및 교대제 개선 촉구 위한 지원 확대 등 요구안 발표

□ 자동차 대책위 감담회

- 일시/장소 : 2013. 2. 20(수) 14:30, 금속노련 회의실
- 참석 : 김만재, 정일진, 전종덕, 장재성(새론오토모티브), 류재현(GMB코리아), 김학송(대유신소재), 김영원(한국번디 광주지부), 표선호(MEMC), 김홍관(캠스), 김명진(서진캠)
- 내용 :
 - ㉠ 대책위 구성을 자동차 업종에서 전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 교대제 개선 사례집을 만든다. 우선 자동차 업종부터 시작하고 3월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지역본부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책위원 교체도 고려한다. ㉣ 지역본부 사무국장을 당연직 대책위원으로 한다.

□ 금속노련-매일노동뉴스 공동 주최 좌담회

- 일시/장소 : 2013. 2. 20(수) 15:30, 금속노련 회의실
- 참석 : 김만재, 정일진, 전종덕, 장재성(새론오토모티브), 류재현(GMB코리아), 김학송(대유신소재), 김영원(한국번디 광주지부), 표선호(MEMC), 김홍관(캠스), 김명진(서진캠)
- 내용 : 교대제 개선 사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금속노련 제171차 중앙위원회

- 일시/장소 : 2013. 3. 7(목) 14:00, 금속노련 회의실
- 참석 : 금속노련 중앙위원
- 내용 : 자동차업종 대책위 활동 보고안건
- 결과 :

- ㉠ 대책위 구성을 자동차 업종에서 전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 ㉡ 교대제 개선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집을 제작, 배포한다. 우선 자동차 업종부터 시작하고 전체 조직으로 확대한다.
- ㉢ 지역본부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책위원 교체도 고려한다.
- ㉣ 지역본부 사무국장을 당연직 대책위원으로 할 수 있다.

5. 자동차 대책위 소식지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대책위원회

단결과 연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빌리 208호 금속노련 / Tel 02-2028-1269, Fax 02-2028-1273 / kjd68@nate.com

제1호 2012. 11. 7.(수)

조합원 건강권 강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밤샘노동 철폐!

단결과 연대의 깃발을 들어라

11월23일(금) 오후2시 제2차 대책위원 회의 개최

대책위 소식지 발행키로

- '금속노련 자동차 업종 노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활동의 실천력을 담보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단결과연대'라는 제호의 소식지를 발행키로 했습니다.
- '단결과연대'는 정기적으로 2주에 1회 발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11월23일 오후2시 대구본부에서
제2차 대책위 회의 개최**

- 금속노련은 자동차 부품사 노조 조합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키 위해 당해 지역 본부의 추천을 받아 '자동차 업종 노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대책위는 오는 11월 23일(금) 대구·경북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제2차 대책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책위 운영방안을 확정할 것이며, 세부 활동 내용을 논의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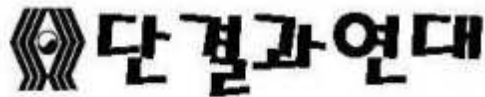
- 한편 대책위는 지난 10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①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을 추가로 선임"키로 하였고, "② 대책위원회 의장 선임에 대해서는 금속노련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하였습니다.

대책위 실태조사 적극 협조 당부

- 대책위는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부품사 노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책위는 실태조사에 대해 자동차 부품사 노조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노총 근로시간 정책간담회 개최

-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7일(수) 오전 10시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본 간담회는 노동시간 실태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 및 업종별 장시간노동 사례 발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끝.



조합원 건강권 강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발생노동 절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빌라 208호 금속노련 / Tel 02-2008-1269, Fax 02-2008-1273 / kjd65@nate.com

동지여! 우리함께 어깨걸고 나아가자

대책위 2차 회의, 11월23일(금) 14시 대구본부

운영방안 및 활동 계획 등 심의

자동차 업종 노조 대책위원 현황

지역본부(지)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경기	한정기	숙원	위원장	02-5484-0399
	공병호	강남파출소4차	위원장	02-2005-2130
	윤재경	지식채	위원장	02-9025-0540
인천·서울	윤석진	동원중계	위원장	02-9802-0606
	조인영	금정동출	위원장	02-5219-0226
강원	홍성훈	대동하이테크	위원장	02-6227-2127
	이성철	간성	위원장	02-420-4000
충남	김재하	새충남도청외근	위원장	02-9821-0909
	이성훈	한국보그랜드7호	위원장	02-4626-2021
충북	이종필	속리사종리4차	위원장	02-7534-1100
	박영희	태원양조	위원장	02-8984-0800
경남	장철학	천진	위원장	02-2986-0700
	유우현	2885공회차	위원장	02-9497-0500
울산·경북	정부근	한국실업	위원장	02-5569-8001
	조영철	대우건설	위원장	02-4029-0727
대구·경북	황성훈	대우건설	위원장	02-9555-0600
	최요정	영화중소	위원장	02-2215-3400
전라	박성호	대우건설	위원장	02-9025-0800
	정영준	영주도로공사	위원장	02-4042-0700
광주·전남	김종준	영진자동차	위원장	02-9641-2227
전북	김학수	대우건설	위원장	02-4626-2000
전남	이정국	고흥제철도	위원장	02-4627-2000

참석 자원위원 현황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비고
최태준	고용노동연구원 교수	02-5205-1100	-
배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02-9405-4400	-
정승주	한국노동 정책연구소장	02-7225-0200	한국노동 정책실 0200
노진우	한국노동 중앙연구원장	02-5205-0200	한국노동 기획연구실 0200

- 금속노련 자동차 업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금요일(23일) 오후 2시, 금속노련 대구-경북본부 소회의실에서 제2차 대책위원 회의를 개최기로 하고 대책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에 따라 대책위 의장단을 확정하고 대책위 운영 및 활동 방안을 심의 의결한 후,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사정위 자동차 부품업종 제2차 노시간담회 열려

- 금속노련은 지난 11월 13일(화) 16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업종 제2차 노시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본 노시간담회에서는 향후 부품업종 노사정위의 형식과 참여 주체,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노조 대표자 및 간부 교육 개최

- 금속노련은 아래와 같이 신임 노조 대표자 및 노조 간부 교육을 개최합니다. 많은 조직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목적 : 실무역량 및 조직력 강화
- 대상 : 노조 대표자 및 간부(대외원 포함)
- 일시 : 2012년 11월28일~30일(2박3일)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경기 여주)

대책위 시동 걸고 힘차게 나아갈터

12월중 권역별 교대제 개선 사례 등 설명회 개최

자동차 대책위 의장단 구성

-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월 23일, 14시 대구본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의장 및 권역별 부의장 각 1명씩, 총 6명으로 의장단을 구성했다.

<자동차 대책위 의장단 구성 현황>

- 의 장 : 정일진(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
- 부의장 : 문철호(경기·인천·안산시흥)
장재성(충남·충북·대전·강원)
류재현(대구경북·경남)
박창혁(부산·포항·울산·경주)
김학송(광주전남·전북)
- 간 사 : 전종덕(금속노련 정책국장)

대책위 회의 정리화 및 12월 계획 확정

- 대책위는 홀수월에는 전체회의(매월 세 번째 목요일)를, 짝수월에는 의장단 회의를 정리화하기로 했다.
- 특히, 2012년 12월중에, 자동차 업종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교대제 개선 사례 발표를 위한 5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다만, 지역여건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권역은 지역본부별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12월4일 의장단 회의 지역별 순회 설명회 일정 확정 및 기자회견 실시

- 대책위는 오는 12월 4일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권역별 또는 지역본부별 순회 설명회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또한, 당일 금속노련 주도로 자동차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부품사 및 협력사 노조 및 조합원의 장시간 근로 실태와 근무형태에서 비롯된 고충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정치권 및 정부의 각성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12월4일 금속노련 중앙위원회 개최

- 금속노련은 12월4일 13시30분 노련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 금속노련은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그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중앙위원회>

- 일시 : 2012년 12월 4일(화) 13:30
- 장소 : 금속노련 회의실
- 안건 : 보고안건 / 토의안건 / 기타안건

정부는 자동차 업종 재정지원 확대해야 공존, 공생 위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하라

자동차 대책위 기자회견 개최



■ 금속노련은 12월 4일, 15시30분 연명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건강권 강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공정거래 확립, 범정치권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는 "자동차 부품사는 최대 설비 능력으로 가동되고 편성효율도 극대화되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전환"과 "현재의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비증설과 신규채용"이 필요한데, 현재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방법을 다각화하고 지원금 및 지원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부품사와의 공생없이 완성차의 지속적인 성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완성차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하고, "단가후려치기(CR)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된다면 부품사의 노동시간 단축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대책위 의장단 회의 열어

■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는 제2차 전체회의(2012.11.23) 결과에 따라 12월 4일, 10시 30분 연명 회의실에서 제1차 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의장단 회의에서는 자동차 업종 실태조사 결과 및 사례 발표 등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일정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문 초안을 검토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 결의

<금속노련 중앙위원회 결과 알림>

금속노련은 2012년 12월 4일 연명회의실에서 제170차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기존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에 근거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키로 결정했다.

자동차 교대제 전환 사업장 사례 발표

12월18일(화) 14:00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서 개최

권역별 대표 선출 및 설명회 개최 결정

<권역별 구분 및 대표자>

구분	지역본부	부위원장
1권역	경기/안산시흥/인천	문형호
2권역	충남/충북/대전/강원	장재성
3권역	경남/대구경북	유재현
4권역	부산/울산경주/포항	박창혁
5권역	전북/광주전남	김학송

-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2012.11.23. 대구본부)는 서울 및 구미지역본부를 제외한 14개 지역본부를 총 5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권역별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단결과연대 제3호, 2012.11.28. 참조)

- 대책위는 12월17일부터 12월28일까지 권역별 하루 교육(설명회)를 통해 "자동차 업종 노조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실태조사 결과"와 "자동차 교대제 전환 사업장 사례"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권역 12월18일 설명회 개최기로

- 제1권역(경기,안산,시흥,인천)은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대책위 제1차 의장단 회의(2012.12.04. 연명회의실)에서 오는 12월 18일(화) 14시,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하루 교육(교대제 전환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권역에서 제5권역까지는 협의후 일정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속노련에서 자동차 업종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서면)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또한, 이문호 소장(워크인 연구소)은 자동차 업종 노조(일부는 금속노조 소속)중에서 교대제 근무제(주야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또는 3조3교대)를 전환한 사업장 사례를 발표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2년 12월 18일 (화) 14:00
- 장소 : 금속노련 경기지역본부 회의실
- 대상 : 경기,안산,시흥,인천 자동차 업종 노조 대표 및 간부
- 내용 : 자동차 실태조사 결과 및 교대제 전환 사업장 사례 발표

부품사 현실 고려 실질 대책 마련 촉구 실태조사 결과 정책 방향 기초자료 활용할 터

제1권역 교대제 전환 사례등 설명회 가져



■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원회는 12월18일 오후 2시, 경기노총 국제회의실에서 제1권역(경기/안산시흥/인천지역본부) 자동차 업종 노조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하루 교육)를 실시했다.

■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문호 소장(워크인연구조)은 현대차 합의 내용과 의미, 부품사 실태를 발표하고 D노조와 S노조 등 자동차 사업장중 주간연속 2교대 및 3조3교대로 전환한 사업장 사례를 소개했다.

■ 안산시흥지역본부 소속 대책위원은 "부품사는 현대차와 같이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설비투자가 불가하다"며 부품사의 현실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연구자들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금속노련은 자동차 업종 교대제 전환을 위한 2013년도 정책방향을 재략적으로 제시하고, "대책과 대안이 부재해 자동차 업종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자동차 업종 노조 실태조사 끝내

■ 금속노련은 지난 9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자동차 업종 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교대제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면접조사(인터뷰)를 병행했으며, 서면조사에 53개 노조가 참여했고, 25개 노조를 방문 인터뷰 형식의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 금속노련은 본 조사 결과를 2013년도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결과 보고서는 각 단위노조에 수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알립니다>

※ 자동차 대책위 소식지내에 '단위노조 단신 코너'를 마련코저 합니다. 각 단위노조의 소식과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단결과연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癸巳年(계사년)’ 새해 단결과연대의 정신으로 진군하자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2012년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부족하지만 힘차게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조직적 내홍도 있었지만, 노동의 현장, 투쟁의 현장에서 더욱 단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해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지여러분! 2013년에도 부족한 것은 질타해주시고, 잘한 것은 널리 알려주십시오. 명실상부 금속노련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 주십시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굳건한 바위처럼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금속노련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동지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 드림>

새해에도 교대제 전환 사례 등 권역별 설명회 계속 된다

-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원회의 권역별 하루 설명회 개최 결정에 따라,

제3권역(대구경북/경남지역본부)은 오는 1월9일(수) 13시30분 대구지역본부에서,

제2권역(충남/충북/대전지역본부)은 1월17일(목) 14시 충남지역본부에서,

- 실태조사 결과 및 교대제 전환 사업장 사례 발표 등 하루 설명회를 갖습니다. 노조 대표자 및 간부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한편 제1권역(경기/안산시흥/인천본부)은 지난 12월 18일 14시, 한국노총 경기본부 국제회의실에서 하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본부 및 자동차 단위노조 단신

⇒ 포항지역본부(본부장 정성준)는 12월27일(목) 10시30분, 노동복지회관 3층 강당에서 21년차 정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남양공업 노조(위원장 문성림, 경기 안산)는 12월24일(월) 13시, 사내강당에서 제18년차 정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서진오토모티브 노조(위원장 김전연, 경기 안산)는 12월28일(금) 13시 사내강당에서 22년차 정기대회를 개최합니다.

⇒ 우지맥코리아 노조(위원장 이종필, 충북 음성)는 12월 31일(월) 15시, 사내식당에서 제8년차 정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단결과연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충남 · 충북 · 대전 · 강원 교대제 개선 사례 설명회 1월 17일(목) 14시 충남본부에서



제2권역 실태조사 결과 및 교대제 개선 사례 발표

-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제2권역 소속 충남/충북/대전/강원지역본부내 자동차 업종 노조 및 교대제 개선에 관심 있는 노조를 대상으로 오는 1월17일(목) 오후 2시부터 충남 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하루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설명회에는 2012년 금속노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및 교대제 전환 사업장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는 지난 1월 9일 제3권역 소속 대구경북/경남지역본부내 자동차 업종 노조를 대상으로 하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 회의

-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원회는 같은날(1월 17일) 16시30분부터 충남본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사업계획(안)을 협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속노련 2013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 설문조사 실시

- 금속노련은 한국노총과 함께 2013년 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2013년도 임단투 지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조속한 제출을 요청합니다. 끝.

두박두박 독심 있게 가자! 1월17일 충남본부서 대책위 회의 개최



〈충남본부에서 교대제 전환 사례 설명회를 갖고 있다〉

대책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금속노련 자동차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16시30분, 충남지역본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 이날 참석한 대책위원들은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자동차 업종 노조도 ‘주간연속 2교대제’를 남의 일로 인식하고 대책위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별다른 기대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조직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 대책위원들은 “조직 구성이 자동차 업종에 한정되어 지역 차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으로 저조”하다며 지역본부 대표자들의 관심과 의지를 고양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지역본부 사무국장을 당연직 대책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미치는 영향 등 현장 조직의 관심과 기대를 높이는 내용의 교육이 절실하다며, 변화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대책을 촉구했다.
- 이에 따라 연맹은 지역본부 외장단 회의에서 대책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권역별 또는 지역별 대책위원 간담회를 통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충남본부에서 교대제 전환 하루 설명회 가져

-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금속노련 충남지역본부에서 제2권역(충남/충북/대전/강원지역본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교대제 전환 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끝.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 기자회견!

대통령직 인수위에 공동 요구사항 전달



<김민재 위원장이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지원기간 및 금액과 지원 방안의 다각화를 요구했다. 또한 일반적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정책 추진을 약속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감소 없는 교대제 개선 등 공동대책 활동 전개

■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밤샘노동 해소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공동대책회의'(이하 '양대노총 금속공동회의')는 지난 2월6일(수) 14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요구사항을 전달했다.(요구안 연맹 홈페이지 참조)

■ '양대노총 금속공동회의'는 금속노동자의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현행 근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양대노총 금속공동회의 공동행동으로

■ '양대노총 금속공동회의'는 또한 고용노동부가 법령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시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노사합의를 통한 고정급 중심의 월급제 전환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 '양대노총 금속공동회의'는 향후에 '양대노총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을 목표로 임단협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제조업 전체 노동자가 단결하고 총력투쟁 할 발판을 만들기로 했다. <끝>

대책위 체제 확대 개편한다

연맹,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좌담회 개최



<이문호 소장의 진행으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 현실 직시해야

■ 금속노련은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2월 20일(수), 15시30분에 연맹 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사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시간근로 해소 및 바람직한 교대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최대의 노동강도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교대제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불공정 거터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좌담회 내용, 2월25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

■ 진행을 맡은 워크인연구소 이문호 소장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도 맞춰야 하고 교대제도 개편해야 하는 부품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위원회 의결 거쳐 대책위 체제 전조직으로 확대한다

■ 금속노련은 같은날 좌담회에 앞서 자동차 대책위 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의 문제는 자동차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오는 3월7일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전조직을 대상으로 대책위 체제를 전환하고, 우선 교대제 전환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 일정 안내>

- 03.04~03.06 : 경영분석 교육
- 03.13~03.15 : 교섭위원 교육(1차)
- 03.20~03.22 : 노동문화 교육
- 03.27~03.29 : 교섭위원 교육(2차)
- 04.08~04.10 : 노동법률 교육
- 04.17~04.19 : 쟁의/선전선동 교육

단결과연대

조합원 건강권 강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발생노동 철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빌리 208호 금속노련 / Tel 02-2028-1269 (010-3547-4568), Fax 02-2028-1273 / njk68@nate.com

자동차 부품사 좌담회

- 2월25일자 '매일노동뉴스 기획기사 갈무리' -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전근대적인 발생노동과 주야 맞교대가 반세기 만에 사라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자동차업종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이제 종식되는 것일까.

완성차에 가려진 부품사를 보자. 부품사 노동자들은 이중고에 처해 있다. 완성차보다 오래 일하면서 노동강도는 높고, 임금은 낮다. 완성차처럼 컨베이어벨트의 속도를 높여 생산물량을 종전처럼 유지하고,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된다. 무엇보다 ‘슈퍼 갑’인 완성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매일노동뉴스와 금속노련이 공동으로 자동차 부품사노조 긴급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에서는 생산물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간연속 2교대보다는 3조2교대로의 전환에

우계가 실렸다. 교대제 개편에 따라 인원이 늘면 임금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품사 노조들이 물량과 임금을 맞교환하는 방식의 현대·기아차 주간연속 2교대제 모델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한편 ‘슈퍼 갑’에 찍힐까 봐 이름을 밝히지 못한 부품사노조 위원장은 가명으로 처리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좌담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구로동 금속노련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보고 김홍관 햄스노조 위원장·장재성 새론오로모티브노조 위원장·김학송 대유신소재노조 위원장·김원영 한국번디노조 광주지부장·표선호 엠이엘씨코리아노조 위원장·고우석(가명) 자동차변속기부품사노조 위원장, 이진호(가명) 햄사프트제조기업노조 위원장·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정일진 금속노련 부위원장·전종덕 금속노련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사회 : 자동차업계는 주야 맞교대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줄이려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에서도 다음달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한다.

그런데 부품사의 사정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부품사 몇 군대를 직접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완성차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삶의 질 혹은 건강권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반면에 부품사는 노동시간단축이 임금삭감의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다. 이 자리에서 부품사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 이번 논의가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한다. 각자 소개부터 하자.

김원영(한국번디) : 세아그룹 계열사다. 냉장고의 냉매가스배관같이 백색가전에 쓰이는 튜브 제품과 자동차 연료배관을 주로 생산한다. 가전 3사와 완성차 모든 공장에 납품한다. 평택에 본사가 있고 200명 정도 근무한다. 광주공장에는 120명이 일한다. 전체 조합원은 160명이다. 광주공장만 지난해 1월1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우식(변속기부품사) : 자동차 4사에 납품하는 오토턴전과 오토클러치 같은 자동변속기 부품을 만든다. 현재 '10시간+10시간' 형태의 주야 맞교대로 일한다.

김홍권(엠스) : 기아차 계열사였다가 분리됐다. 광주공장에서 주로 자동차용 범퍼와 계기판을 생산한다. 완성차의 근무형태가 바뀌면 우리도 동시에 바뀌어야 하는 직서열 업체다. 직원은 160명이고 조합원은 88명이다. 현재 '10시간+10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한다. 최근 주간연속 2교대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장제성(세운오토모티브) : 관인 병찬에 공장이 있다. 브레이크패드 라이닝을 제조한다. 직원은 320명, 조합원은 180명이다. 2차 협력업체다. 근무형태는 주야 맞교대다. 1조 10시간, 2조가 11.5시간 주야로 근무한다.

김학송(대유신소재) :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만든다. 전북 전주공장에서는 자동차 바퀴(휠)를, 경기 화성공장에서는 스틸 핸들을 생산한다. 조합원은 전주공장만 있다. 직원 500명 중 300명이 조합원이다. 근무형태는 주야 맞교대다. '12시간+12시간'

형태로 보면 된다. 점심시간하고 교대시간 30분을 뺀 나머지 시간은 풀로 가동된다.

이진호(캠사프트제조기업) : 자동차 엔진부품인 캠사프트를 생산한다. '10.5시간+10.5시간' 형태로 일한다. 주간조는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7시30분에 퇴근한다. 교대시간이 30분이다. 야간조는 저녁 8시에 출근하고 다음날 아침 7시30분에 퇴근한다.

표선호(엠이엠치코리아) : 전자업종(반도체) 부품사다. 미국의 MEMC가 80%의 지분을, 삼성이 20% 지분을 갖고 있다. 천안에 사업장이 있다. 570명 중 320명이 조합원이다. 4조2교대 근무한다. 지난해 8월부터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뀌었다.

“주간연속 2교대로 생산물량 못 맞춰”

사회 : 자 그럼, 최근 교대제가 변경된 사업장 애기부터 들어보자. 지난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한 한국번디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김원영(한국번디) : 2011년까지 2조2교대였다. 주간조가 10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야간조가 10시간 근무했다. 지금은 '9시간+9시간' 형태로 운영한다.

사회 : 근무형태를 바꾼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김원영(한국번디) :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로) 일단 완성차가 시골시골했다. 우리 사업장 상황을 보면 물량이 예전처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보면, 군대를 계대한 이후 25년간 주야 맞교대를 했다. 이제는 몸이 힘들다. 평택 본사에는 근속연수가 많은 조합원들이 주로 근무한다. 정년을 앞둔 사람들이 많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평택공장은 빼고 광주공장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2년 가까이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오버타임이나 평균임금·연장근로수당을 검토했다. 머리가 아프더라. 그래서 방법은 천천히 찾기로 하고 일단 시도부터 한 것이다.

표선호(염이염치코리아) : 평균 근속연수가 16년 정도다. 나이도 평균 40세가 넘는다. 전자업계에서는 높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야근을 줄이자는 요구가 높았다. 그런 이유에서 4조2교대로 변경했다. 그런데 3교대를 2교대로 변경하면 일하는 날은 줄지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 3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 그러자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부담스러워했다. 결국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안 받는 조건으로 임금저하 없이 2교대로 전환한 것이다. 4개조 중에 2개조가 맞교대로 근무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4일 근무하고 4일 쉬는 시스템이다. 한 달에 근무일수보다 휴무일수가 더 많다. 포스코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 교대제 변경으로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서 그런지 요즘 조합원들이 힘들어한다.

사회 : 교대제 변경을 논의 중인 사업장이 있나.

장제성(새론오토모티브) : 지난해 10월 노사가 TP를 구성해 교섭 중이다. 부흥사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완성차보다 노동강도가 세다.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다 보니 병든 사람이 많다. 근골격계환자도 많고. 완성차가 (주간연속 2교대로) 정리했으니까 2차 벤더인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무식한 2조2교대 방식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회 : 주간연속 2교대로 반드시 갈 필요는 없는 데 완성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가.

장제성(새론오토모티브) : 교대제를 바꾸긴 해야 하는데 물량조달이 힘들어서 고민이다. 임가공 작업이 많아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많다. 제품이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주간연속 2교대로는 도저히 물량을 맞출 수가 없는 조건이다. 3조2교대를 고민하고 있다.

사회 : 3조2교대로 하면 물량은 맞춰지겠다. 그럼 임금은 어떻게 하나.

장제성(새론오토모티브) : 임금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단체협상에서 논의해야 한다. 단협에서 직격탄을 날리면 노사 모두 힘들다. 현재 실무팀에서 사전조율을 하고 있다.

사회 : 교대조가 늘면 인원도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장제성(새론오토모티브) : 당연히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 : 임금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장제성(새론오토모티브) : 완성차가 아니기 때문에 100% 보전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회사에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해 놓은 상태다.

사회 :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은 공개 불가?

장제성(새론오토모티브) : ... (웃음)
"인원 늘면 임금 양보할 수 있다"

사회 :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주간연속 2교대를 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니까 임금도 감소한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부흥사도 많다. 지금도 임금이 적은데 더 줄이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새론오토모티브의 방법은 새롭다.

장제성(새론오토모티브) : 문제는 완성차의 단가 인하다. 하청업체 이익을 조정을 완성차가 한다. 인원이 늘면 비용도 당연히 증가한다. 회사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 : 다른 사업장은 어떤가.

김학송(대유신소재) : 우리 공장 바로 맞은편에 현대차 상용차 공장이 있다. 현대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심리적 부담이 커

지더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나 할까, 수익이나 모 든 면에서 현대차와 다르지만 바로 앞 공장은 성과급도 많이 받고 심야노동까지 안 한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 다.

사실 철강이나 전자업종은 원청이 바뀌면 하정도 다 바뀌는데, 자동차업종은 그렇지 않다. 직서열 방식 빼고 나머지 사업장은 교대제가 다를 수 있 다. 그리고 직서열업체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래서 꼭 주간연속 2교대로 가야 하나 고민을 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권의 문제, 생 산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회사는 투자할 여력 이 없다. 물량을 맞추려고 지금도 토요일·일요일 맞교대로 돌가동한다. 임금이 줄더라도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장시간 근로를 단속할 때 지적받아 시정계획서를 낸 것도 파장이 컸다. 교대제 개편과 관련해 노사가 각각 검토 중이다. 조율은 안 했다. 아직 패를 꺼낼 상 황은 아니다.

사회 : 노조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를 했나.

김학송(대유신소재) : 간부들에게는 3조3교대 얘 기를 꺼내 봤다. 임금이 총액 대비 40%가 마이너 스되더라. 난관에 봉착한 거다. 그래서 완충단계로 3조2교대를 거쳐 3조3교대로 가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3조2교대는) 인원채용 부담이 덜하니까 임 금저하도 완화할 수 있다. 빠르면 내년부터 3조3 교대로 가고 올해는 3조2교대로 하는 방안은 어떨 까 생각 중이다. 임금은 3조2교대 기준으로 지금 의 90%까지 보장한다면 조합원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 : 완성차가 주간연속 2교대를 해도 2조2교대 다. 3조2교대에 임금 90% 보장이면 완성차보다 나은 조건 같은데.

김학송(대유신소재) : 문제는 특근수당이다. 3조2 교대로 하면 주간에 4일 일하고 이틀 쉬 다음 아 간에 4일 일하고 이틀 쉬. 이렇게 되면 특근 이 사라진다. 특근을 안 하면 임금총액 대비 7%

밖에 못 받는다. 임금삭감 효과가 크다. 90%는 보 권을 받아야 조합원들이 납득할 것이다.

사회 : 현재 특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김학송(대유신소재) : 토요일은 100% 일하고 일 요일은 30% 정도다.

"능력자 경영해도 완성차 때문에 ... 양재동 가서 교섭할 수도 없고"

김만재(금속노련 위원장) : 출신 사업장인 하이 넥스도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다시 4조3교대 로 전환했다. 정부의 압박이 컸다. 앞으로 근로기 준법이 바뀌면 변화 필요성은 더 커진다. 교대제 개편은 고용창출에 대한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 업무강도에 변화가 있고 고용인원이 20% 정도 늘 어난다고 보면 된다.

다른 복잡한 문제도 있다. 교대제를 바꾸면 통상 근무자와의 격차가 생긴다. 노동시간은 같은데 임 금보전 방식이 교대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다.

김학송(대유신소재) : 민감한 문제는 따로 있다. 부품사에서 교대제 개편이 힘들다고 하는데, 원청 에서 단기인하만 안 하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임 금보전도 100% 된다고 한다. 그런데 나서는 사람 이 없다. 상급단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노조 위원 장들이 다 모여서 양재동(현대차 본사) 간다고 풀 리는 것도 아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회사와 협상 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 대표이사가 불황하 다는 생각이 든다.

수익창출을 위해 능력자를 데리고 왔는데도 능력 과 무관하게 완성차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교섭 결 과도 뻔하다. 회사가 아니라 양재동 가서 교섭해 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다. 납품단가 부분이라도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가 문제다. 참말로

사회 : 납품단가 문제는 따로 얘기하자. 캠스는 주 간연속 2교대로 가는 것인가.

김홍권(웹스) :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아 공개하기는 힘들다. 우리 회사는 직서열 업체다. 필연적으로 교대제를 개편해야 한다. 일단 직서열라인 먼저 주간연속 2교대로 가고, 사출이나 서브라인은 정비해서 이후에 하기로 노사가 방향을 잡은 상태다. 부품사는 완성차를 따라가기가 벅차다. 부품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가 너무 무관심하다.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다. 모든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진다. 안타까울 뿐이다.

사회 : 임금보전은 어떻게 하나.

김홍권(웹스) : 완성차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사회 : 그게 문제다. 물량보전은 무조건 완성차에 맞춰야 하는데, 임금보전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홍권(웹스) : 물량보전을 한다면 당연히 임금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우석(변속기부품사) : 완성차의 편성효율은 75% 수준이지만 부품사는 이미 90%가 넘는다. 주간연속 2교대로 가면 물량을 맞추기 힘들다. 회사가 설비투자를 하거나, 3교대로 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한다. 임금과 설비투자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임금보전을 100% 해 준다면 당장 주간연속 2교대로 갈 수 있다. 그게 안 되니까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고민하는 것이다. 아무리 삶의 질을 말해도 임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반발할 것이다.

생계비 부족분을 잔업·특근으로 채우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 개선정책) 그것마저 알아 갈 수 있다. 현대차·기아차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시정하려고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 아닌가.

“3조2교대로 늘어난 인력, 불경기에 누가 책임지나”

사회 : 교대제 개편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고우석(변속기부품사) : 노사 간 1차 교섭은 했다. 주간연속 2교대로 갔을 때 물량 부족분이나 설비증설·인원 문제를 논의했다. 물론 형식적인 논의일 뿐이다. 어차피 물량은 100% 완성차업체에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3교대를 생각하고 있다.

사회 : 3조3교대로 갈 경우 어느 정도의 임금저하를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긴가.

고우석(변속기부품사) : 임금이 80~90%만 되면 3교대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받는 임금을 다 받고 3교대로 가지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노조로서는 부담스럽다. 인원을 30% 정도 더 채용해야 하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김학송(대유신소재) : 3조2교대로 가게 되면 지금은 물량이 많아 괜찮다. 그러나 자동차 경기가 하향곡선을 타는 순간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고우석(변속기부품사) : 맞는 말이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서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누가 책임지나. 개별기업에서 30% 가까운 신규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완성차업체가 잘나가면 상관없지만 IMF 외환위기 때처럼 힘들어지면 과연 그 인원들을 어떻게 하나.

김학송(대유신소재) : 일요일에는 대부분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쉬는데 3교대로 전환하면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가동률이 지금보다 엄청 늘어날 것이다. 물량이 떨어질 경우 답이 없다.

김원영(한국빈디) : 주간연속 2교대를 실제로 해 보니 100% 물량보전이 안 되더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욱이 법이 바뀌어서 특근까지 제한되면 물량이 어딘가 모르게 떨어지지 않겠나. 납품업체는 이런 점까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인력충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사회 : 이론적으로는 현대차가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해도 물량이 맞춰지도록 설계돼 있다. 다음달부터 주간연속 2교대에 들어기면 어떻게 될지 시행 이후에 살펴보기로 하자.

김홍권(캠스) : 완성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잘 도입했다고 생각한다. 부품사한테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같은 직서열 업체는 죽으나 사나 완성차를 따라가야 한다. 미래가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닌데, 완성차가 부품사와 노동시간단축 문제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물량도 맞춰 주고 임금도 보전받아야 하니까 고민이 많다.

사회 : 부품사는 편성효율이 높다. 생산설비 가동도 이미 최대치에 근접해 있다. 완성차는 인원충원 없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부품사는 현재보다 노동강도를 높이려면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김홍권(캠스) : 부품업체 중에 사정이 심한 곳은 물량을 외주화하거나 새로 라인을 썰어야 하는 곳도 있다. 여유가 있는 사업장은 편찮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한테는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을 정부가 쳐다만 보고 있다. 안타까운 따름이다.

“노동시간 줄이려다 비정규직 양산할까 걱정”

사회 : 자동차산업이 호황기여서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원을 새로 뽑고 불경기를 맞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노조의 고민은 무엇인가.

김학송(대유신소재) : 노조 위원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몇몇 간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임금보전은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회사 재정상태는 그럴 수준이 안 된다. 꺾어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기존 임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상황이 될까 봐 우려스럽다.

김홍권(캠스) : 완성차가 부품사를 꺾어치는 것이나 같은 거다.

사회 : 부품사에서 물량과 임금을 보전하려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인가.

김학송(대유신소재) : 좋은 취지로 한 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대차에 위장도급으로 사내하청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부품사도 그렇게 된다.

이진호(캠사프트제조기업) : 우리 사업장은 생산하는 엔진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르다. 요즘 잘나가는 감마엔진을 만드는 라인은 24시간 풀가동된다. 쉬는 날 하루 없이 주야로 돌아간다. 반면 고급차량에 들어가는 타워엔진 라인은 평일에도 작업 자체가 없다. 상시주간조도 30여명 있다. 그렇다 보니 교대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가 난감하다.

게다가 기본급이 아주 낮고 평균 근속연수가 35년밖에 안 돼 수당도 별로 없다. 복지가 열악하다 보니 간접과 특근이 없으면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렵다.

사회 : 임금격차가 얼마나 되나

이진호(캠사프트제조기업) : 간접과 특근수당이 임금의 55% 정도를 차지한다. 특근을 많이 하는 라인은 한 달 18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한다. 못하는 사람도 70시간을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그래야 임금수준이 되기 때문에.

정일진(금속노련 부위원장) : 어떻게 180시간을 일하나.

이진호(캠사프트제조기업) : 철야에 특근을 하면 된다. 거의 회사에 살다시피 한다.

사회 : 개선할 방안이 있나.

이진호(캠사프트제조기업) : 3조2교대를 생각하고 있다. 일요일과 주야간 다 가동될 수 있는 조

권이 되기 때문에 임금보전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원·하청 불공정거래 없으면 100%
임금보전 가능***

사회 : 어느 부품사에 갔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 주간연속 2교대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성차는 1차 벤더로, 1차 벤더는 다시 2차 벤더로 전가하면서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현실은 어떤가.

김홍권(캠스) : 우리 회사에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가 있다. 주간연속 2교대로 가면 그들은 어떻게 임금을 보전받을지 걱정스럽다.

사회 : 납품단가 문제를 얘기해 보자.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납품단가가 인상되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갔다는 회사도 있더라. 손익분기점이 이미 제로 상태라고 하던데.

김학송(대유신소재) : 10년 전에는 기술력이 쏠라지 못했었다. 편성효율도 90%까지는 안 갔다. 비정규직 문제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해가 갈수록 비정규직이 늘었는가. 납품단가 인하로 하청업체가 이익창출을 못하니깐 그런 것이다. 아웃소싱이 높고 자연감소 인원이 있는 라인만 자연스런데 조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익이 남아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다.

김홍권(캠스) : 원청에서 인원까지 정한다. 사출기 하나 있으면 우린 두 사람이 일해야 하는데도 원청에서 15명으로 하라고 지정한다. 임금구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원청이 시킨다. 따를 수밖에 없다. 노사합의로 비정규직 채용금지 하면 뭐 하나, 정규직을 뽑을 수가 없는데, 더 심한 문제가 많은데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어 답답하다.

김만재(금속노련 위원장) : 양대 노총 금속 산별

에서 정부에 요구안을 제출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기업이 휘청인다. 이에 대한 정부 감독이나 지원이 절실하다. 산업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회 : 합리적 투자가 단가에 반영돼야 하는데 납품단가 인하로 인력충원이나 설비투자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장재성(새론오토모티브) : 노사의 임금인상 합의가 무용지물이다. 완성차가 정한 대로 한다. 항의하면 원가분석 내용을 공개하라고 한다. 영업기밀인데 말이다. 대화가 안 된다. 우리가 하소연할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도다. 물론 공정위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김만재(금속노련 위원장) : 몇 년 전 바이백(부품역수입) 문제로 양대 노총이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집회를 했다. 공정위도 찾아갔다. 그로 인해 과침직에 걸린 몇몇 사업장에 완성차가 발주를 끊어 버리겠다고 했다.

사회 :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을까.

장재성(새론오토모티브) : 공정위에 가면 증거자료를 갖고 오라고 한다. 그 자료를 내놓는 순간 그 기업은 없어진다.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한다. 그럴 사업장이 어디에 있나. 그렇다면 역으로 공정위가 대기업을 쳐서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

김원영(한국번디) :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듯 정기적으로 대기업 납품단가 문제를 조사했으면 좋겠다.

장재성(새론오토모티브) : 봄이 되면 원청이 계주도에 자동차 부품사들을 불러모아 '상생'을 주제로 회의를 한다. 그 자리에서 원청은 "원가절감을 한다"며 하청업체에 "일어서 결정하라"고 서류를 돌린다. 그러면 원청 계열사에서 먼저 열마를 인하하겠다고 쓴다. 그러면 나머지 하청업체들이 울

며 겨자 먹기로 뒤따라 쫓다. 그래 놓고 원청은 하청에서 자발적으로 결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1차 벤더는 자연스럽게 2차 벤더로 부담을 전가한다. 2차 벤더는 3차 벤더로 떠넘긴다. 너무 열악하니까 10% 인하하라고 요구하면 그냥 문 닫겠다고 한다.

김홍권(웹스) : 임금을 보면 안다. 80년대 자동차 업계 호황 시절에 대기업과 하청업체 임금격차가 많으면 20% 정도였다. 지금은 어떤가. 반도 못 받는다. 성과급을 포함하면 비교조차 힘들다.

“단가인하, 자동차업계 망하는 지름길”

사회 :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

고우석(변속기부품사) : 이런 식으로 가면 자동차 부품사에서 기능공들이 사라지게 된다. 일본의 도요타는 하청업체 경상이익의 3%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불량이 나서 리콜을 하지 않았나. 적절한 원감절감을 넘어선 단가 후려치기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사회 :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인데, 정부와 대기업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야 한다. 부품사노조 입장에서 대기업노조에 협상한 게 많을 것 같다. 완성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할 때 부품사 문제를 파악해서 함께 해결해 보자는 정도의 선언적인 문구도 없었다.

김홍권(웹스) : 몇 년 전 양대 노총 자동차업종 노조들이 모여 완성차노조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 어땠을 것 같나. 간담회에서 비법만 한 그릇 먹고 나왔다. 대책이 없더라. 이렇 거면 왜 모였냐고 화를 냈다.

김학송(대유신소재) : 내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라든가 지금처럼 했을 것 같다. 회사에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회사가 “그러면 노조가 임금을 양보해라”고 할 텐데 별 수 있나. 그렇게 뇌두는 정부가 욕을 먹어야 한다.

김홍권(웹스) : 진보정당도 대기업노조 눈치를 보는데.

사회 : 양대 노총 금속 산별이 공동기구를 구성했는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기대해도 되나.

권종덕(금속노련 정책국장) : 선언적이거나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납품단가의 물가 연동제나 집단소송제 도입도 제안했다. 공동요구안으로 만들어 대정부 요구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 시정명령, 노동시간단축 효과 크다”

사회 :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로 넘어가자. 교대제를 바꾼 곳은 고민이 덜하겠지만 현재 주야 맞교대인 사업장은 주 52시간 한도를 다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책이 있나.

김원영(한국번디) :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노조에 도움이 된다. 시정명령 떨어지면 생산물량은 뒷전에 두고서라도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학송(대유신소재) : 효과는 좋은데 역시 임금보전이 문제다.

김원영(한국번디) :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협상국면이 열린다. 그 전에는 현실과 거리가 있으니 잠잠무소식이다.

김홍권(웹스) : 한국번디는 주간연속 2교대로 가면서 임금을 얼마나 보전했나.

김원영(한국번디) : 기존에 받던 연장근로수당에서 40%가 줄었다. 그래도 시행 석 달 후 설문조사 해 보니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김학송(대유신소재) : 인근 사업장에서 휴일특근이 없어 2조2교대를 3조2교대로 전환했다. 임금이 10~20% 삭감됐다. 그런데 당장은 생활에 어려움

을 겪지만 한두 달 지나니 다들 줄어든 임금에 생활을 맞추더라. 정부 지원이 높아야 한다. 교대제를 바꾸면 지원금이 연간 1천80만원 정도 나온다. 한 달 90만원인데, 그것으로는 어렵도 없다. 연봉이 3천만~4천만원이라면 절반은 보조를 해 줘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을 바란다면 지원금부터 올려야 한다.

김원영(한국번디) : 일단 교대제를 개편하고 나중에 협의하면서 보완하면 된다. 우리 사업장도 처음 시행했을 때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없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일하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 먹고 하라고 회사에서 다 지원하게 되더라.

이진호(캠사프트제조기업) : 우리 사업장은 굉장히 갑갑할 거 같다. 회사에 얘기만 던졌을 뿐인데 고개를 꼭 숙이더라. 워낙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어 노조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합원들에게는 간업으로 먹고산다는 생각부터 바꾸도록 설득할 생각이다.

사회 : 교대제 개편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다.

장재성(세운오토모티브) : 급여변경도 같이 한다. 3조3교대는 월급제로 전환하기가 수월한데 3조2교대는 고민이 좀 된다.

사회 : 주간연속 2교대인 한국번디는 어떤가.

김원영(한국번디) : 시급제는 그대로다. 대신 고정OT 수당으로 26시간 어치를 지급하고 휴일특근으로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했다.

사회 : 교대제가 바뀌면 출퇴근 문제나 식당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울산에서는 주간연속 2교대 시범실시 기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리가 났다. 예전에는 밤에 근무하느라 차를 주차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밤에 퇴근하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김원영(한국번디) : 통근버스가 두 대 있었는데

주간연속 2교대로 가면서 협력업체용으로 돌려 버렸다. 인원이 적으니까 자가용 출퇴근으로 충분했다. 오히려 오전조는 기름값이 절약된다고 좋아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하니까 길이 땀 댈려서 교통체증 겪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 : 상권도 변하고 있다. 현대차 주변의 술집은 손님이 끊겨서 문 닫고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다.

김원영(한국번디) : 아직은 여러 가지가 생소하다. 친구들과 저녁약속을 못 잡는다. 퇴근할 때 다른 회사는 한창 일하는 시간이라 약속 잡기가 어렵다. 대신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아빠 손잡고 가는 집이 늘었다.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조합원들이 많다.

사회 : 울산에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부인들이 피곤해졌다고 아우성이다더라. (웃음) 교대제 변경은 공장 안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하청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니까 부품사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귀담아듣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대 노총 금속·산별에서도 적극 나선 만큼 오늘 진행된 부품사노조 좌담이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끝>

<금속노련 교육 일정 안내>

※노총 주관

- 03.04~03.06 : 경영분석 교육

※연맹 주관

- 03.13~03.15 : 교섭위원 교육(1차)
- 03.20~03.22 : 노동문화 교육
- 03.27~03.29 : 교섭위원 교육(2차)
- 04.08~04.10 : 노동법률 교육
- 04.17~04.19 : 평의/선전선동 교육

3장. 업종별 노사정위 활동

1. 배경

- 노사정위원회 업종별 공동현안 및 관심사에 대한 노사(정)간 이해관계조율, 업종 단위의 경쟁력 강화,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도모키 위해, 업종별 노사정위 활동 추진
- 노사정위원회, 노동단체(한국노총 금속노련)와 사용자단체(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 간담회 수준의 모임 제안, 노사단체 수용으로 간담회 개최
- 2013년 새정부 조직체계 안정화 후 우선적으로 자동차 업종 노사정위원회 가동,
- 노사정위 자동차 부품업종에서 전기, 전자 등 타 업종으로 확산 의사 개진

2. 목적

- 자동차 부품업종 노동단체(한국노총 금속노련)와 사용자단체(자동차공업협동조합)와의 업종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사 공감대 형성
- 자동차 부품업종 노동단체와 사용자 단체간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 가능성 모색

3. 경과

□ 노사정위 자동차 부품업체 제1차 노사 간담회

- 일시/장소 : 2012. 9. 13(화) 11:00, 연맹 회의실
- 참석 : 노사정위(조승민, 박수명)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고문수, 노현승, 김산)금속노련 (정일진, 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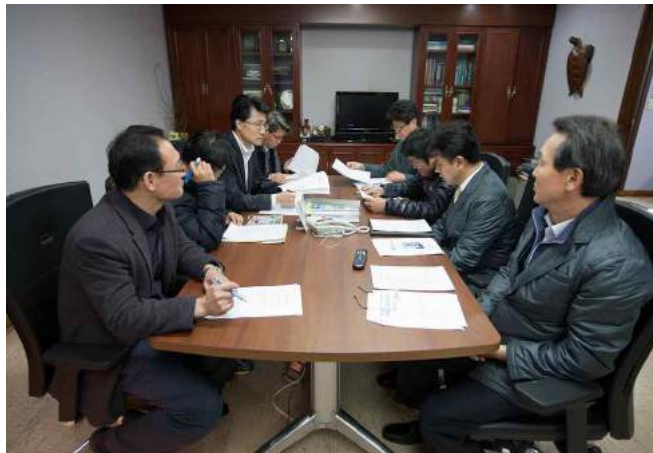


수, 전종덕, 곽상욱)

- 내용 : 노사단체 소개 및 상견례, 노사양측 관심사항 논의

□ 노사정위 자동차 부품업
체 제2차 노사 간담회

- 일시/장소 : 2012. 11.
13(화) 16:00, 한국자동
차공업협동조합 전무이
사실
- 참석 : 노사정위(조승민,
박수명) 한국자동차공
업협동조합(고문수, 노
현승, 김산), 금속노련
(김성수, 전종덕, 곽상
욱),
- 내용 : 노사정위 자동차
부품업종 노사정위 의
제·형식·참여주체 협의



□ 노사정위 자동차 부품업
체 제3차 노사 간담회

- 일시/장소 : 2013. 03.
26(화) 10:00, 노사정위
원회 중회의실
- 참석 : 노사정위(조승민,
박수명), 한국자동차공
업협동조합(고문수, 노
현승, 김산), 금속노련
(김성수, 전종덕, 곽상



- 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조성재), 산업연구원 팀장(조철)
- 내용 : 노사정위 자동차부품업종 노사정위 의제·형식·참여주체 협의

4. 관심 의제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경제분야

- 저장장시기에 있어서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 노사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
 - 대·중소기업 불합리한 관행 구조 개선(하도급 포함)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
- 일자리 창출 방안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협력, 노사 문화 개선 방안

☐ 노동시장 문제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대제 개선 방안
 -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 방안
- 중소기업 고용촉진 방안
 - 노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에 대한 해결방안
 - 자동차 부품업종을 비롯한 지방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공급 방안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인력 안정화 방안
 -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확대 방안

☐ 노사관계 문제

○ 지속적인 대화채널 구축 방안

- 업종별 노사 대화채널의 항시적 운영 방안

2) 자동차공업협동조합

□ 경제문제

○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지속성장을 위한 노사 상생협력 방안

-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
- 대·중소기업 동방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생산직 인력의 안정적 공급방안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문화 개선 방안

□ 노사문제

○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방안

- 주간연속2교대제의 개선 방안
- 휴일 연장근로를 제한할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방안
- 연장 근로수당 감소에 따른 실질임금 보존 방안
- 노동 유연성 확대와 생산성 연동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방안

5. 노사정위원회 간담회 자료

노사정위원회 간담회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와 노동 중심의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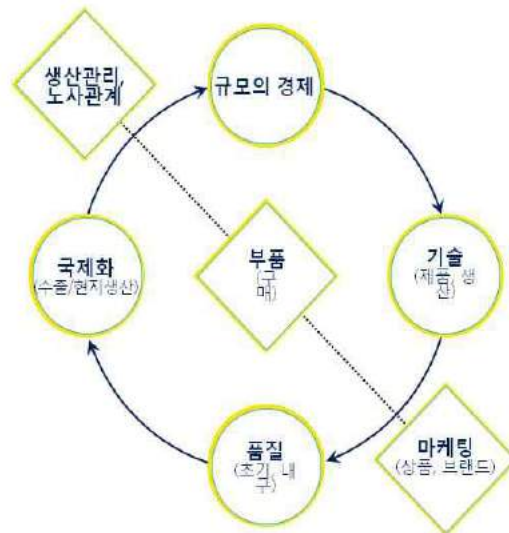
2013. 3

조 성 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제기

- 2000년대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루어 낸 급속한 성장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 부품조달체계와 부품산업의 성장은 현대자동차의 성장을 어떻게 뒷받침하였는가?
- 부품업체들의 품질수준은 어떻게 확보되었는가?
- 비용절감을 위하여 부품업체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것이 노동문제와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 현대자동차의 국제화가 부품업체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한국 자동차산업(부품 포함)의 향후 전망은?

현대차의 경쟁력 요소간 관계



3

현대차그룹 해외 생산공장 전개

1989년	1996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7년
•현대차 부두봉 공장 (연간 30만대)	•현대차 인도 공장 (연간 30만대)	•기아차 영성 공장 (연간 30만대)	•현대차 북경 공장 (연간 30만대) •현대차 타키 공장 (연간 30만대)	•현대차 알라배마 공장 (연간 30만대)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연간 30만대)
•현대차 브라질 공장 (연간 30만대) •현대차 북경3공장 (연간 40만대)	•현대차 러시아 공장 (연간 30만대)	•기아차 조지아 공장 (연간 30만대)	•현대차 체코공장 (연간 30만대)	•현대차 북경 2공장 (연간 30만대)	•현대차 인도 2공장 (연간 30만대) •기아차 영성 2공장 (연간 30만대)

※ 총 생산능력 368만대

4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 세계 1위(2009년 이후)의 의미

산업 / 경쟁 패러다임의 전환

Old Paradigm	New Paradigm
전전국 영속시장 중심 (미국: 서유럽, 일본: 시장 중심)	중국 특 성장시장 급부상 (중국 등 BRIC+ 시장+ 영속시장)
대중차 시장 + 고급차 시장	세분화 된 시장(Segmented Market) 다종의 중요성 증대
야속 가능한 안정된 시장	경제 불안정성과 시장 변동성 증대 (정책 영향도 큼)
규모의 경쟁 + 범위의 경쟁 (기술: 생산, 마케팅 중심 경쟁력)	규모, 범위, 속도 유연성 (총괄경쟁력으로서의 System의 중요성)

중국에서 태동,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에서는 **생산과 고용의 유연성이 대단히 중요**, 인건비 절감을 실현하면서 어떻게 유연성과 고숙련(high skill), 고생산성과 고품질, 고몰입(high commitment)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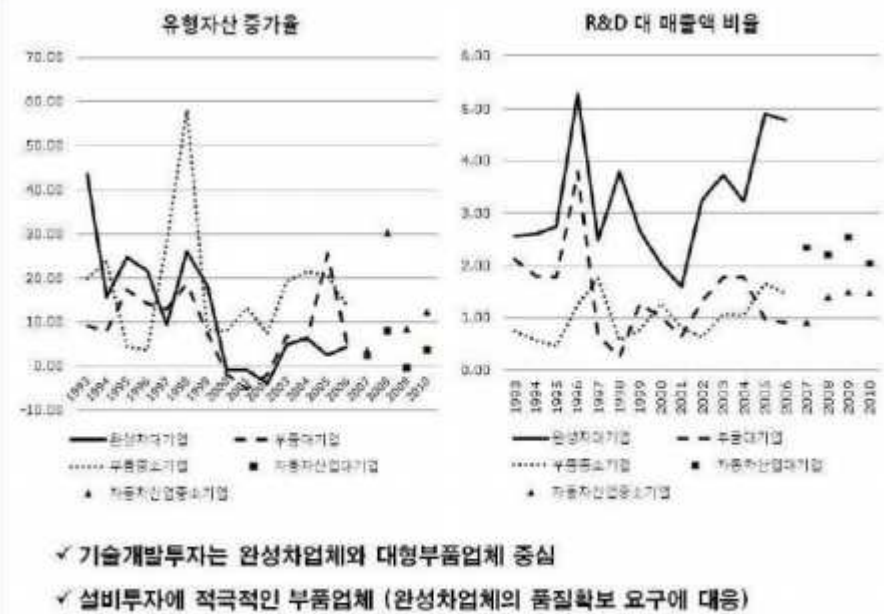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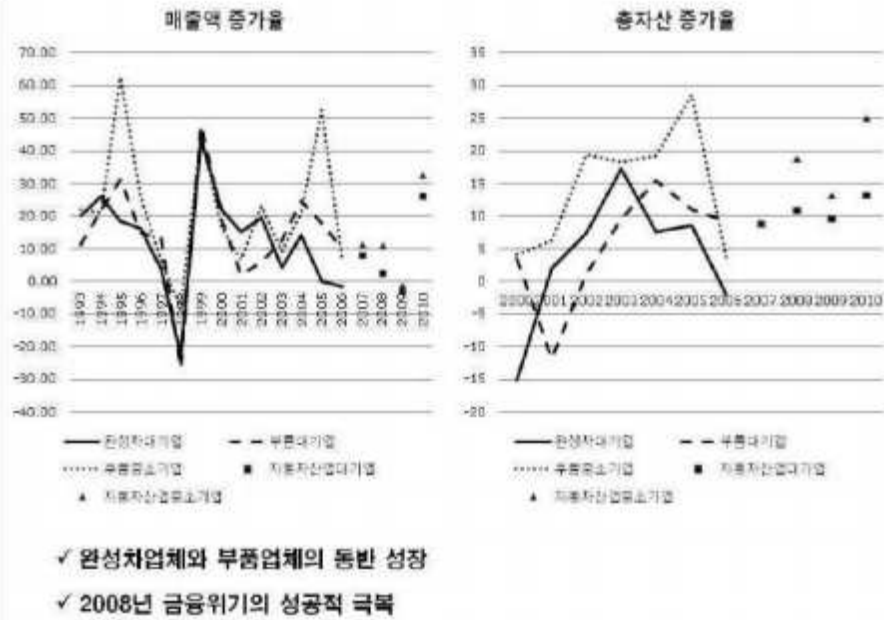
현대차그룹 해외 동반진출 부품업체수 (공장개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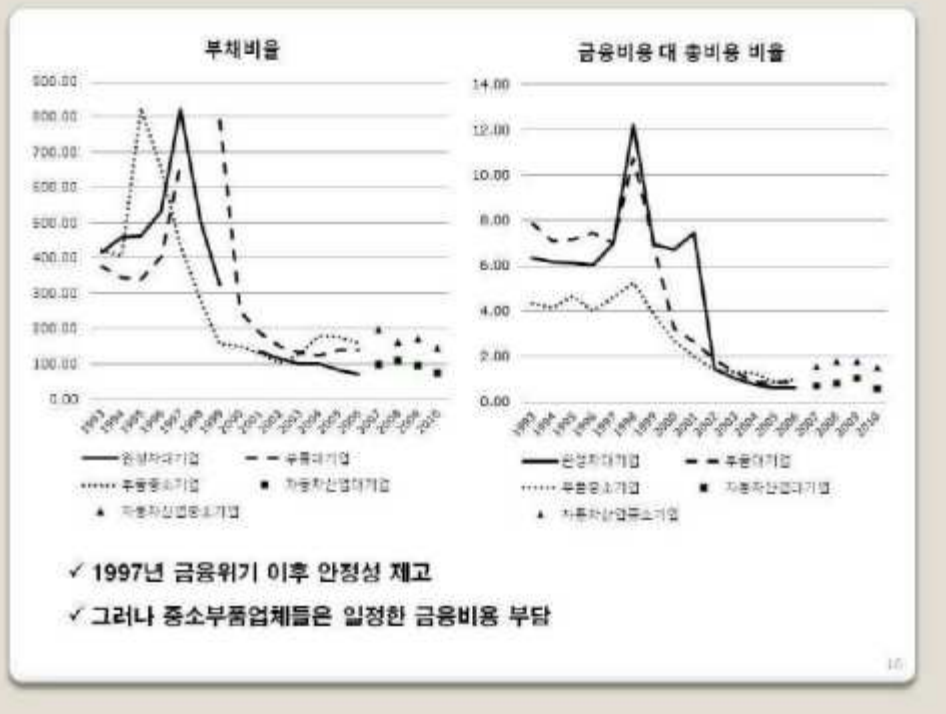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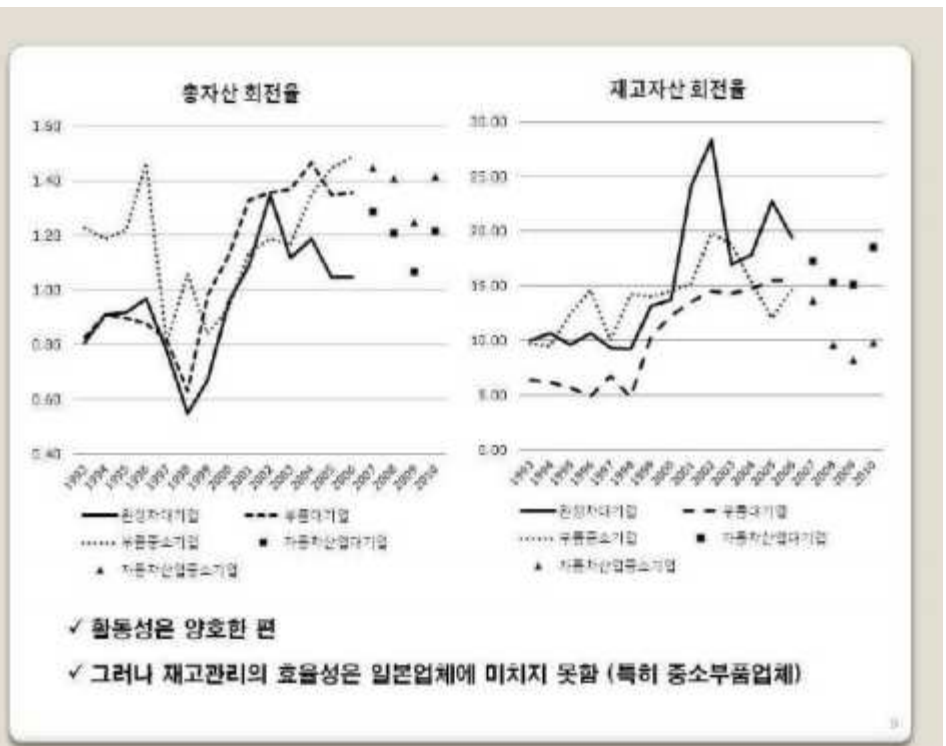
현대차그룹 해외 동반진출 공장개수별 부품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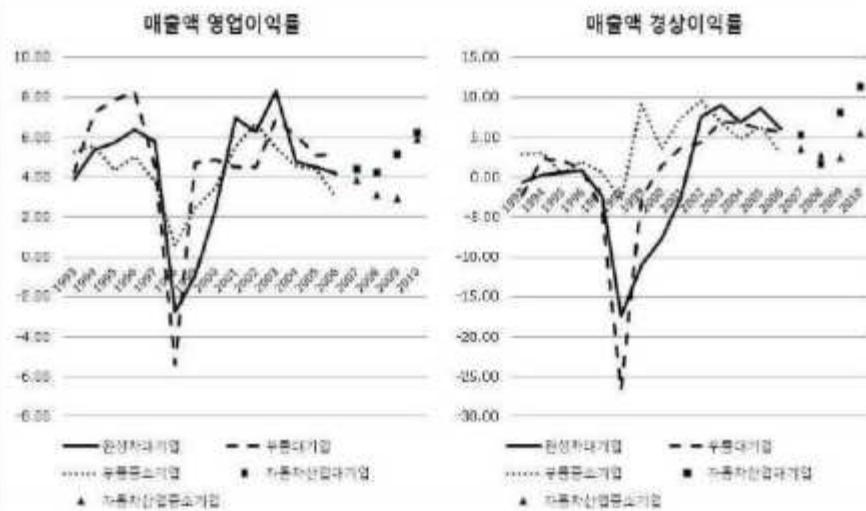
공장 수	부품업체 수	공장 수	부품업체 수
22 Plants	1 (모비스)	5 Plants	6
11 Plants	1 (단도)	4 Plants	10
9 Plants	3	3 Plants	12
8 Plants	1	2 Plants	24
7 Plants	7	1 Plant	45
6 Plants	1	전체	111

✓ 세계 부품사 순위 100위권 밖에 몰려있는 핵심부품사 30~40 개는 조만간 100위권 내로 진입 예상

✓ 이들은 현대차그룹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아 중국, 미국 등 사업전망이 불확실할 때도 투자 결정







- ✓ 완성차, 외환위기 이전 경상이익 제로 수준, 이후 수익성 획기적 개선
- ✓ 부품업체들도 이익을 회복, 그러나 불규칙적, 업체별 차별화

11

규모별 연도별 영업이익률

구분	2003	2004	2005	2006
부품산업계	6.2	5.9	5.3	4.6
대기업	7.9	7.1	6.5	5.5
중소기업	4.7	4.6	3.9	3.5
전체 제조업	6.9	7.6	6.1	5.3

(단위 : %)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이익률(2006년)

(단위: 개사,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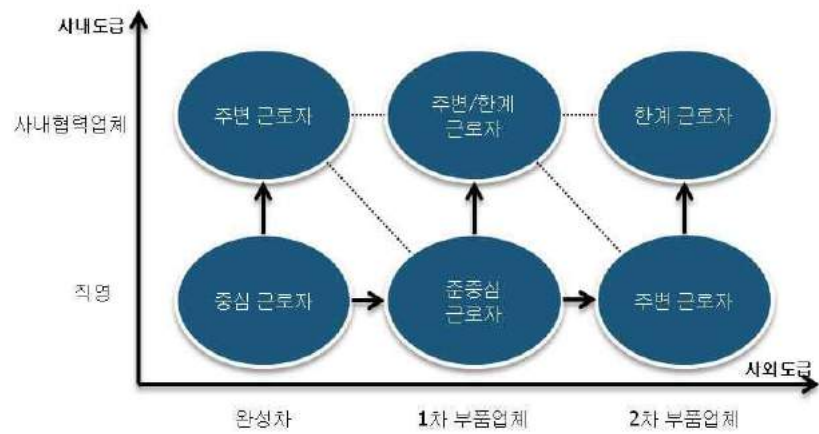
투자비율별	100%	99.9~50.1%	50%	49.9%이하	합계
업체수	30	35	22	51	138
매출총액	32,961	73,535	41,256	72,293	220,045
영업이익	2,231	3,303	2,081	2,346	9,961
영업이익률	6.8	4.5	5.0	3.2	4.5



- ✓ 대·중소기업 모두 1인당 인건비 빠르게 상승
- ✓ 정규직의 임금인상 압력을 외주가공 등을 통하여 해결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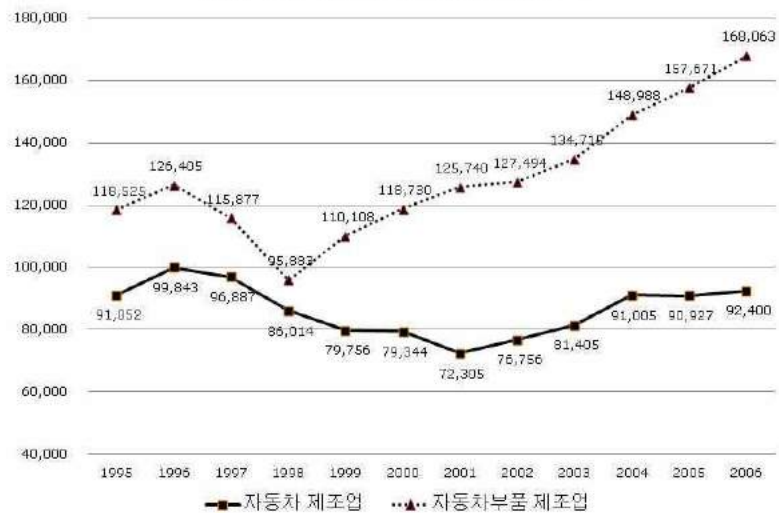
14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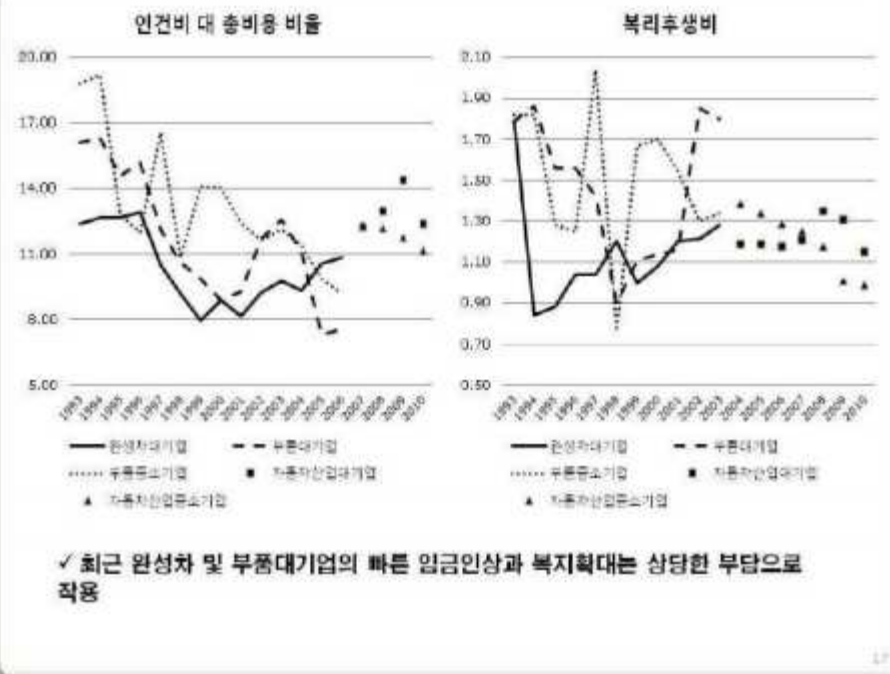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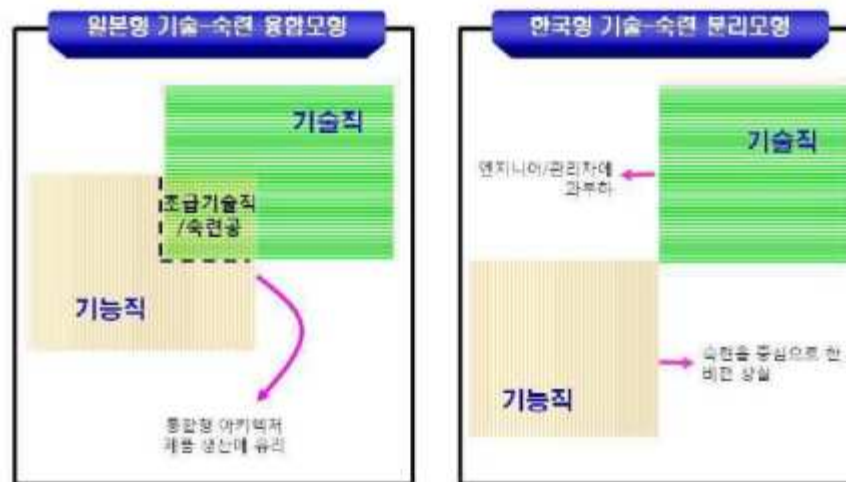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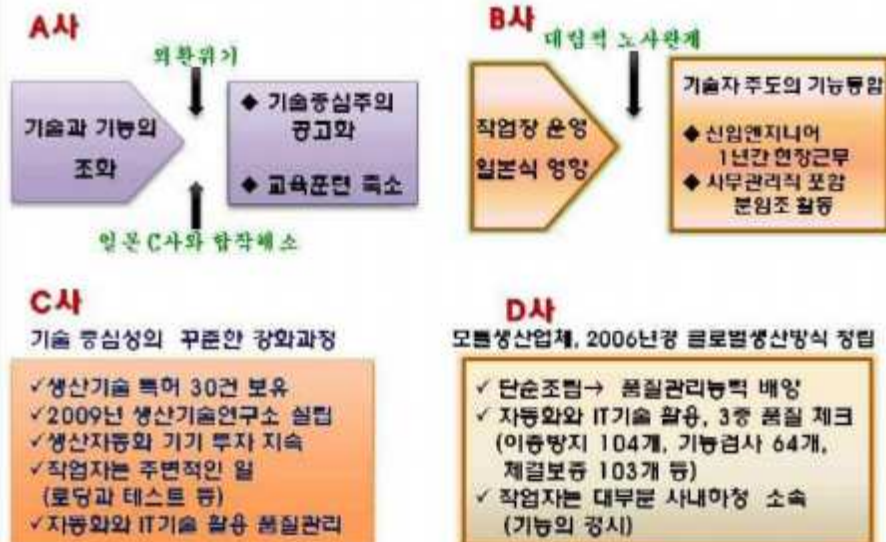
16



한국 노동시장의 직종분리 특성



4개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기능 관계



19

현단계 한국 자동차산업의 평가(1)

- 현대자동차는 2000년대 이후 경쟁력 요소간 선순환 관계 구축 (특히 규모의 경제와 품질확보 중심)
- 부품업체도 현대차와 동일한 경쟁력 요소간 선순환 구조 추구
- 성장극대화 측면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동일한 목표로 작용
- 그러나 이익극대화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산업간, 부품산업 내부 업체간 차별화 진행
- 부품업체들은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대 들어 대단위 설비투자를 단행하였으며 완성차업체와 동일한 자동화와 IT 중심 생산방식 전략을 채택
-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화 노력은 재하청과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
- 한국 자동차산업 성장의 그늘은 노동문제, 양극화, 대립적 노사관계, 탈속련화 등

20

현단계 한국 자동차산업의 평가(2)

- 현대자동차의 국제화는 부품업체들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
 - 현대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면서 동반진출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개방적 거래의 가능성이 열렸으나 실제 개방적 거래의 일반화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한국 자동차산업(부품 포함)은 당분간 고성장 지속 예상되며 특히 중국시장에서 선전할 전망(기존의 경쟁패러다임과 다른 신속성과 유연성 요구, 이에 적합한 한국식 경영)
 - 국내 사업장들의 빠른 인건비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
 - 부품업체들은 현대차만큼 국제화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bottleneck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성과공유는 인력부문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임금격차를 줄이고, 부품업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부품업체들이 우수 인력 확보 가능

31

매출액 규모별 기술개발 전략

매출액 기준 기 입규모	중단기술의 자체개발		핵심기술 라이선스 등 의존		기존기술의 활용 자체개발		거래처/ 모기업에서의 기술이전에 의존		기술 이외의 가격 경쟁력 등에 의존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00억 미만					14	25.5	3	27.3	2	33.3
200억 미만			1	11.1	10	18.2	3	27.3		
200~ 499억	1	12.5	4	44.4	6	16.4	1	9.1	3	80
500~ 999억	3	37.5	1	11.1	10	18.2	2	18.2	1	16.7
1000~ 4999억	4	50	3	33.3	10	18.2	1	9.1		
5000억 이상					2	3.6	1	9.1		
전체	8	100	6	100	66	100	11	100	6	100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별 인력 근무현황

	매우 부족 함(1점)		다소 부족 함(2점)		적정함 (3점)		다소 과잉 (4점)		매우 과잉 (5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구개발 기술직	6	5.8	64	62.1	32	31.1	1	1			103	100
기능직	6	6.2	29	29.9	52	53.0	10	10.3			97	100
사무관리 영업직	1	1	33	33.7	56	57.1	7	7.1	1	1	98	100

✓ 조성재 외(2005),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신규인력 충원시 지원금 규모

	매단히 부 족 (1점)		다소 부족 (2점)		비슷한 편 (3점)		다소 많음 (4점)		매단히 많음 (5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구개발 기술직	9	8.8	39	38.2	39	38.2	11	10.8	4	3.9	102	100
기능직	7	7.2	22	22.7	51	52.6	13	13.4	4	4.1	97	100
사무관리 영업직	1	1	15	15.3	56	57.1	20	20.4	5	5.1	98	100

신규인력 충원시 지원자 규모

	대단히 부족 (1점)		다소 부족 (2점)		비슷한 편 (3점)		다소 많음 (4점)		대단히 많음 (5점)		전체		5점 평균 (백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구개발, 기술직	9	8.8	39	38.2	39	38.2	11	10.8	4	3.9	102	100	2.63
기능직	7	7.2	22	22.7	51	52.6	13	13.4	4	4.1	97	100	2.85
사무관리, 영업직	1	1	15	15.3	56	57.1	20	20.4	5	5.1	98	100	3.12

교육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기능직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행하는 업무가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음	7	7.5	7	10.3
기업간 스카웃이 빈번하기 때문			2	2.9
자금의 부족	7	7.5	8	11.8
이미 충분한 자질을 갖춘	2	2.2	2	2.9
인력난과 생산차질 때문	53	57.0	12	17.6
마땅한 교육훈련 기관, 과정이 없어서	14	15.1	22	32.4
해당사항 없음	9	9.7	12	17.6
기타	1	1.1	3	4.4
전체	93	100.0	68	100.0

사내교육훈련시 애로사항

	기능직			
	1순위		2순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사내교육검답자 확보 곤란	22	23.4	8	10.8
상호관계로 인한 원장출면(OUT), 기술이전 부족	2	2.1	2	2.7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 곤란	4	4.3	7	9.5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교육이 불가능	4	4.3	6	8.1
외부장사비들 교육훈련비 부족	3	3.2	3	4.1
업무과다로 교육 곤란	37	39.4	14	18.9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참가자 관심 부족	13	13.9	29	39.2
애로사항 없음	8	8.5	4	5.4
기타	1	1.1	1	1.4
전체	94	100.0	74	100.0

자율직산업의 안련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1순위		2순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단순인력지원정책(외국인간접연수생 등)	10	10.2	9	9.4
기능인력지원정책(산업기능요원 등)	14	14.3	10	10.4
기능인력양성정책(실업고 교육 강화, 직업훈련 지원 등)	15	15.3	11	11.5
전문인력지원정책(전문외국인력 골드카드제, 병역특례 지원 연구)	5	5.1	8	8.3
전문인력양성정책(이공계 대학교육 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	25	25.5	16	16.7
산학연계지원정책(대학생인턴십 지원, 산학공동연구 지원 등)	11	11.2	14	14.6
일괄부담완화정책(일괄파크제, 피직골동간경산 등)	16	16.3	28	29.2
전체	98	100.0	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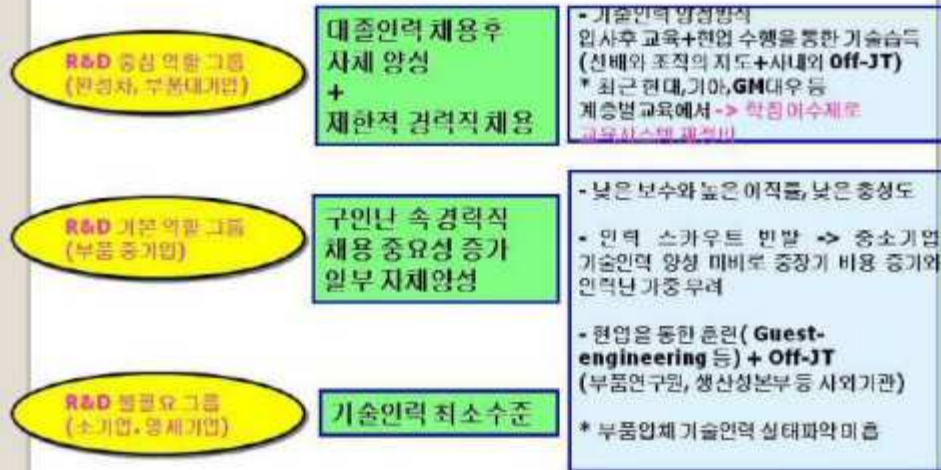
부품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개발 기술직		기능직		사무관리 영업직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프기업(완성차업체)형식의 훈련을 강화	29	29.9	22	24.4	22	24.2
지역별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훈련 컨소시엄 활성화	25	25.8	13	14.4	26	28.6
지역내 자동차부품과 유사한 기계, 금속, 전기업을 등과 훈련 컨소시엄 구성	18	18.6	29	32.2	24	26.4
지역과 무관하게 자동차부품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훈련기관이 설립되거나 확충	25	25.8	26	28.9	19	20.9
전체	97	100.0	90	100.0	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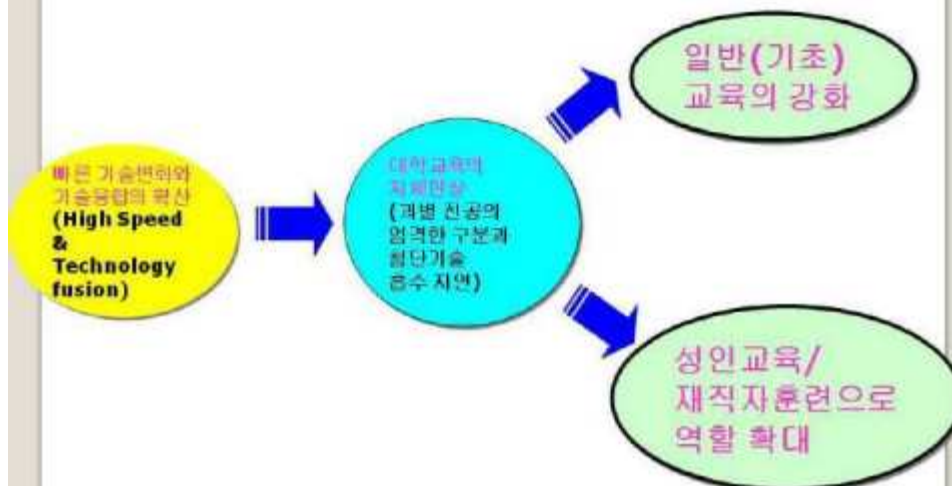
국가 훈련정책의 변화



기술인력 노동시장의 기업규모별 분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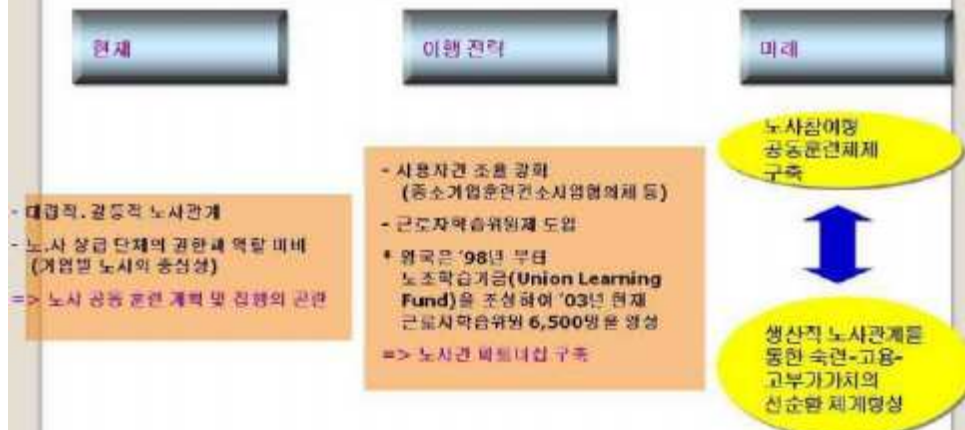
이공계 대학교육의 전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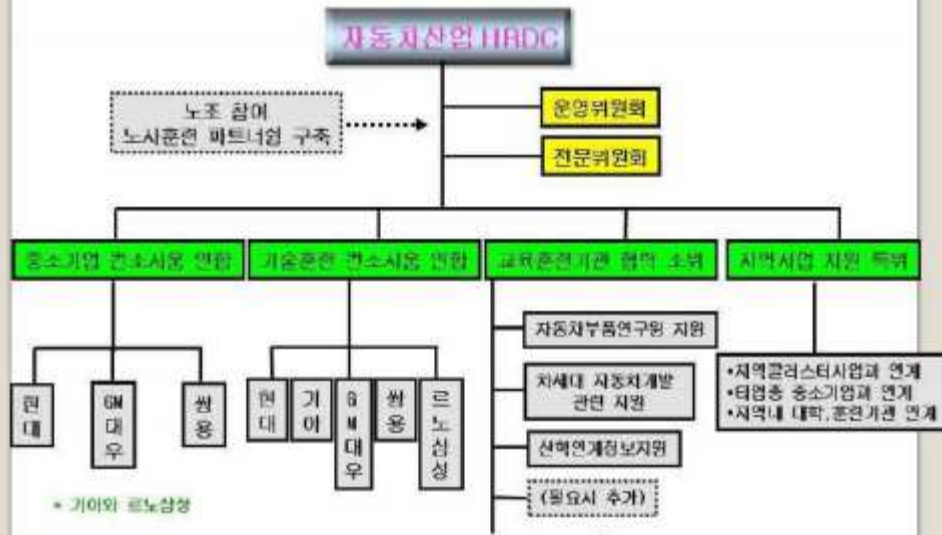
한국 자동차산업의 시장구조가 공동훈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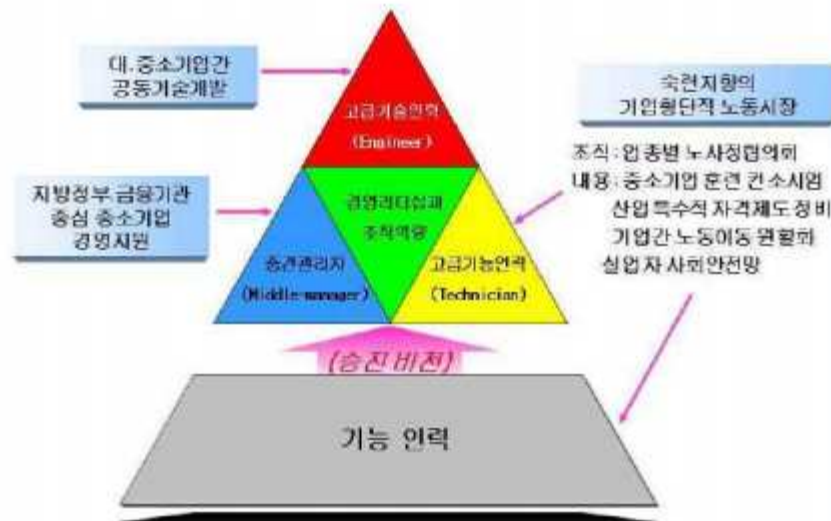
산업별 인력개발 위원회에 대한 노조의 참가 문제



자동차산업의 인적자원개발 추진 방향과 체계



목표 인력 그룹별 전략 방향



4장. 2013년 임투 표준 요구서

2013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차 례

1. 전문
2. 2013년 임금인상 요구안
3. 요구안 배경 및 근거
4. 결의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전 문>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활성화의 부진에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론, 대외적으로 경제불안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2008년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양보하며 국가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반면, 물가는 급등해 실질임금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노동생산성의 뚜렷한 증가에 비하여 임금의 상승률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노동이 정당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2013년에도 회사의 경영목표가 원만히 달성되고, 산업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회사 측의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금융위기중에도 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회사의 경영성과는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땀흘려 일한 노력의 결과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이 조합원들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임금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생활임금의 확보,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가만하여 실질임금의 인상을 요구한다.

2013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회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급을 ○.○%(○○○,○○○원) 인상한다.
(기준일로부터 소급적용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기본급 산정 방법을 시(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되, 기존의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 총액 등 조합원의 임금을 저하할 수 없다.
3. 회사와 조합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분쟁과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임1과 같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합의 시행한다.
4. 회사와 조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조합원의 장시간근로를 해소하고 교대제 근로형태를 변경하며,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축소되는 초과근로 임금을 보전한다. 다만, 원활한 합의를 위해 불임과 같이 노사동수로 위원회를 구성기로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붙임1.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① 회사와 조합은 통상임금에 관한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따라 통상임금을 판단한다.

1. 1임금지급기(1월)를 초과하는 급여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키로 한 고정적 급여
2. 전체 조합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조합원에게 지급키로 한 급여
3.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복리후생 명목의 급여
4.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지급액 및 지급
율에 따라 지급키로 한 상여금

② 회사와 조합은 노사합의 또는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전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판단한다.

붙임2. 【장시간근로 개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회사는 조합원의 일과 삶의 양립과 건강권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의 교대제(주야맞교대 근무형태)를 개편한다.

② 회사는 교대제를 개편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장시간근로개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사와 조합은 노사동수로 장시간근로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 1회 이상 교섭을 실시하며 조합측 추진위원의 교섭 참여 및 준비 시간 등을 유급처리하고 조합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 회사와 조합은 밤샘노동 완화 및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하여 공동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요구 등 공동 노력한다.

임금인상 요구안의 배경과 근거

1. 임금인상 요구안

임금인상율 _____%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필수적이며 정당한 요구이다.

2. 임금인상 요구 기준

생계비 충족률 (_____)%, 기본급 대비 (_____)% (_____)원

공공요금 및 생활물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임금상승 기대심리의 증대,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13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_____)%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표준생계비의 (_____)%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대비 (_____)% (_____)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3. 2013년 임금인상 요구안 산출 개요

- 임금인상 요구안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노동자 가구원수, 근로소득이 충족하여야 하는 생계비 비중,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함. 다만, 단번에 생계비와 현재 임금의 차액을 일시에 요구하고 관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매년 생계비 충족률을 올려나가는 방향을 설정함
- 2013년 임금인상 요구율과 요구액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함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근거한 ○○○○ 노동조합 조합원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생계비 (_____) % 충족 목표로 요구수준을 결정함
- 물가수준은 한국은행의 201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2.5%를 반영함
- 조합원의 가족규모와 물가인상을 고려한 표준생계비에, 도시 근로자 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을 감안하여 금속노련 조합원의 표준생계비를 산출

합.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근로소득 비중 88.17%를 사용함 (201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1) 임금인상 요구의 산출 근거 요약

2013년 ○○○ 임금요구율		내 용
① ○○○○ 노동조합 조합원 평균가구원수 ()인 생계비		()원
② 2013년 물가상승률 (2.5%)을 반영한 생계비		()원
③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88.17%)		()원
④ 2012년 금속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원
⑤ 충족 생계비와의 금속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고정임금대비)	()원
	충족 요구율	()원
⑥ 2013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
	요구액(기본급기준)	()원
	생계비 충족율	()%

〈표 1〉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421,426	370,988	396,239	861,403	1,052,230	1,390,590	1,479,678	1,526,432
주거비	396,133	396,133	396,133	488,622	644,882	798,811	798,811	798,811
광열수도비	94,951	94,951	94,951	111,651	129,945	160,241	160,241	160,241
가구가사용품비	74,379	76,777	75,578	124,098	135,792	154,337	154,883	155,429
피복신발비	71,415	101,951	86,683	172,474	200,150	237,660	252,194	264,254
보건위생비	95,268	126,720	110,994	196,840	248,750	303,027	306,311	306,311
교육비	54,269	54,269	54,269	54,269	355,410	514,951	529,855	781,981
교통통신비	168,056	168,056	168,056	549,408	590,705	681,510	721,810	762,110
교양오락잡비	349,629	314,754	332,192	369,754	418,161	425,315	425,315	425,315
조세공과금	167,530	174,117	175,346	342,721	473,755	604,417	634,200	700,527
합계	1,893,056	1,878,716	1,890,441	3,271,240	4,249,780	5,270,859	5,463,298	5,881,411

2) 임금인상의 산출 근거

① 조합원 평균가구원수 ()인 생계비 : ()원

- ○○○○ 조합원 실태조사시 평균 가구원수 ()인
- 노총 생계비 모형의 표준근로자 가구는 ()인, ()인 가구이므로 실제 평균근로자 가구규모 ()인 맞추어 생계비 조정

▶ ① 계산식 : 금속노동자 평균가족규모 ()인에 대한 생계비

$$= ()인 가구 생계비 + \{(()인가구 생계비 - ()인가구 생계비) \times (0.)\}$$

$$= ()원 + \{(()원 - ()원) \times (0.)\}$$

$$\approx ()원 + ()원$$

$$\approx ()원$$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합계	1,893,056	1,878,716	1,890,441	3,271,240	4,249,780	5,270,859	5,463,298	5,881,411

② 201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생계비 : ()원

- 생계비 조사시점은 2012년 10월이므로 2013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함.
-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 2.5%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② 계산식 : 금속노동자 ()인 생계비에 물가인상율 2.5% 반영

$$= ()인 생계비 + 물가인상율 2.5\%$$

$$= ()인 생계비 + (()인 생계비 \times 0.025)$$

$$= ()원 + (()원 \times 0.025)$$

$$\approx ()원 + ()원$$

$$\approx ()원$$

③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88.17% : ()원

- 2012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중 근로소득 비율 88.17%
- 2013년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조합원 가구원수 ()인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 88.17%에 맞추어 조정

▶ ③ 계산식 : 물가인상률 ()인 생계비에 근로소득 비중 88.17% 반영
 = 물가인상률 반영 생계비 + 근로소득 비중 88.17%
 = ()원 × 88.17%
 ≒ () 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중 근로소득 비중>¹⁾

구 분	총소득(A)	근로소득(B)	비율(B/A×100%)
2012년 3/4분기	4,583,800원	4,041,700원	88.17%

④ 생계비 충족을 위한 금속 조합원 임금

- 2012년 조합원 고정급여(기본급+고정/기타수당+상여금월액) : ()원
- 2012년 초과급여(변동급)를 포함한 조합원 임금총액 : ()원

<금속노련 2012년 조합원 임금 실태>

구 분	기본급(A)	고정수당(B)	기타수당(C)	상여금(D)	고정급여 (A+B+C+D)	변동급	임금총액

※ 각 임금 평균치에 인원별로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결과. 단순합치와 다름

※ 기본급 : ()원 /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수당) : ()원

⑤ 생계비와 조합원 임금 차액

- 충족 생계비와 조합원 임금(기본급+고정/기타수당+상여금월액) 차액 : ()원
- 생계비 충족 요구율 : ()%

1) 통계청 2012년 3/4분기 가계동향

▶ ⑤-1 계산식 : 총족 생계비와 조합원 임금 차액 : ()원
 = 총족 생계비 - 2012년 조합원 고정급여
 = ()원 - ()원 = ()원

▶ ⑤-2 계산식 : 총족 요구율
 = 총족 생계비와 조합원 임금 차액 ÷ 2012년 조합원 고정급여
 = ()원 ÷ ()원 × 100% = ()%

<2013 생계비에 따른 임금인상요구율(액) 조건표>

총족률	획득생계비	목표임금	기본요구액	통상요구액	율산정
100.0%					
99.5%					
99.0%					
98.5%					
98.0%					
97.5%					
97.0%					
⋮					
88.0%					
87.5%					
87.0%					
86.5%					
86.0%					
85.5%					
⋮					
80.5%					
80.0%					

* 2013 생계비에 따른 임금인상요구율(액) 조건표 붙임 자료 참조

임단투승리를 위한 결의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안과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선을 통한 경영성과의 분배와 실질적 생활임금의 확보를 위한 2013년 임금 ()% 인상을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13년 임단협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받고 노사대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임단협 체결은 노-사간 신뢰의 바탕이 될 것이며 함께 협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2012년 회사의 경영성과는 우리 조합원들의 많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과에 있어서의 정당한 분배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우리의 조합원들이 먼저 노-사 상생의 길에 나섰던 만큼 회사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1. 회사는 2013년 임단협 요구를 선택의 문제가 아닌 노사상생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라!
1. ○○○○노동조합 모든 조합원은 2013년 노동조합활동과 조합원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보장 단협의 체결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노동조합은 2013년 정당한 노동소득의 분배와 생활임금의 확보를 위하여 ()%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1. ○○○○노동조합은 우리 회사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환경 구축에 적극 노력한다!

<조합원 서명란>

성명	사번	부서	서명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조사통계활동

⇒ 기간 활동 평가 및 개선방향

1장. 2012년 임금교섭 결과

2장. 2013년 임단투 지침 마련 실태 조사

3장. 2013년 임단투 지침 발간

4장. 2012년 자동차 업종 노조 실태 조사

기간활동 평가 및 과제

조사통계 활동은 현장 조합원과 단위노조 및 금속노동자의 상황과 실태를 이해하고,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 등 주,객관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연맹 활동의 과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각 부서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치루면서 여야 모두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현대차등 완성차를 중심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합의는 금속노련 소속 자동차 부품사 노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차 부품사 노조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교대제 근무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금속노련은 매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하여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2012년 임단투 결과와 2013년 단위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기초로 2013년 임단투 지침을 수립하였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매년도 전조직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금속노련은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

조사통계 활동을 하면서, 산하 단위노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사항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금속노련은 단위노조에 대한 기초자료 전산화 업무를 수정 보완해, 단위노조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의 대표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조사활동시 소수 조직만이 응답을 할 경우, 조사 결과를 전체 금속노동자의 실태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임단투 지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경우 다행히, 2007년도 응답 수준을 회복하였다. 우리 금속노련의 조사통계 활동은 산하 단위노조와 함께 하는 것이다.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위노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며, 조사통계 활동의 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장. 2012년 임금협상 결과 보고

1. 2012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생계비 충족율 68.5%	기본급대비 9.2% 124,978원
2011년 생활물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금상승 기대심리의 증대,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12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9.5%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표준생계비의 68.5%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대비 9.2%(124,978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2. 임금인상 타결율

- 임금인상타결율 기본급 대비 5.30%(76,107원)로 집계
- 2012년 12월 현재 금속노련 산하 204개 사업장 임금교섭결과가 취합되었음.
- 204개 사업장중 165개 노조의 인상률을 바탕으로 평균 기본급대비 5.3% 임금인상과, 125개 노동조합의 인상액을 바탕으로 평균 76,107원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음.
-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11월 13일(10월 말 기준) 발표한 협약인금인상률 4.9% 보다는 0.4%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금속노련의 임금인상요구안 9.2%(124,978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조정신청 및 파업 돌입 사업장

1) 조정신청 사업장

구분	지역	조직명	신청일	종료일
1	경기	니콘코리아	8월 10일	8월 20일
2	안산/시	대덕전자	4월 20일	6월 19일

3	충남	존슨컨트롤즈	10월 09일	10월 19일
4	충북	넥상스코리아	9월 01일	9월 10일
5	충북	삼동	2월 08일	2월 18일
6	부산	대선조선	9월 07일	9월 17일
7	부산	한국주철관		
8	울산	명화공업		
9	광주/전남	로케트전기	8월 14일	9월 2일
10	광주/전남	성암산업	10월 15일	10월 25일
11	광주/전남	아룽기공	10월 08일	10월 18일

2) 파업돌입 사업장

구분	지역	조직명	파업기간	최종합의
1	서울	볼보건설기계코리아	8월 27일	9월 13일
2	포항	세아제강	8월 30일	9월 11일
3	전북	세아베스틸	8월 24일	9월 11일

2장. 2012년 임단투 지침 마련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

- 금속노련은 2013년 임금 정책 수립을 위해 전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조사를 통해 금속노련 가맹 조직의 임금 및 고용 등 노동조건 현황과 2012년 임금교섭 결과, 2013년 임단투 전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맹 조직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정세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금속노련은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년 임금인상 요구율(요구액)을 결정할 것이며, 임단투 지침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2. 조사 일시 :

- 금속노련은 2012년 12월 24일 전 조직에 유선(팩스)으로 설문조사서를 전송하였으며, 2013년 2월 1일까지 수거하였다.

3. 조사 방법 :

- 금속노련은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432개 노조에 45개 지부가 가맹하고 있다. 본 조사는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으로 하였다.

4. 수 거 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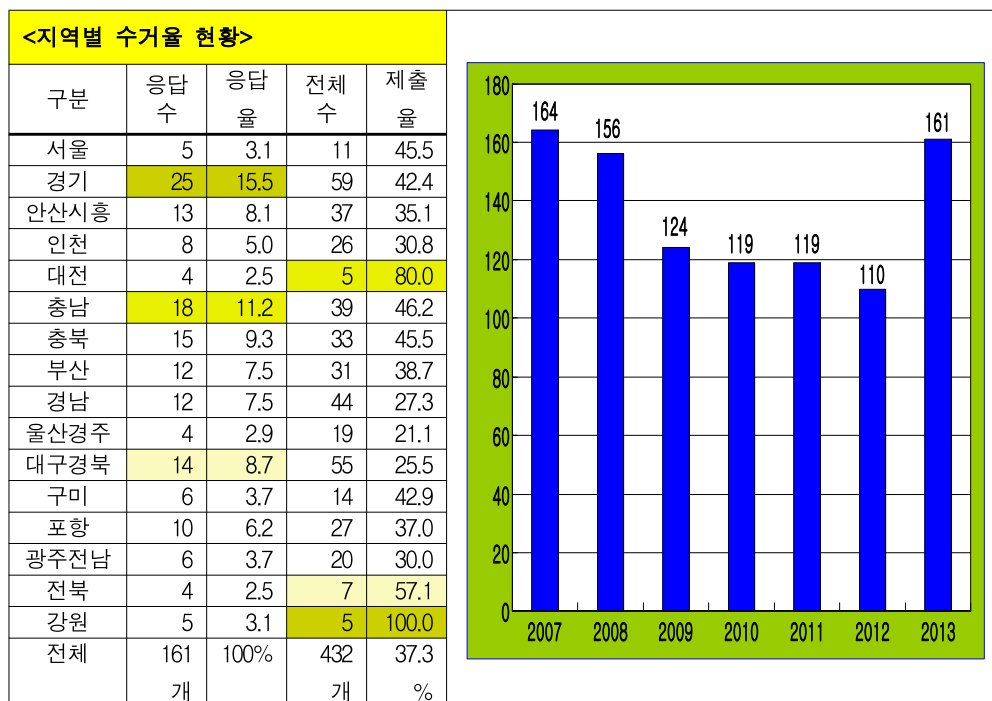
- 본 조사에 162개 노조(조합원수 53,179명)에서 조사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였다.
- 조직수 대비 37.5%(162÷432×100%)의 수거율을 보였으며
- 조합원수 대비 49.1%(53,179÷108,304×100%)의 수거율을 보였다. 다만 1개 노조는 설문지 분석중에 조사서를 제출해 일부 분석결과에서는 제외하였다. 유효설문지를 분류하면, 조사결과와 같다.

5. 조사결과 :

1) 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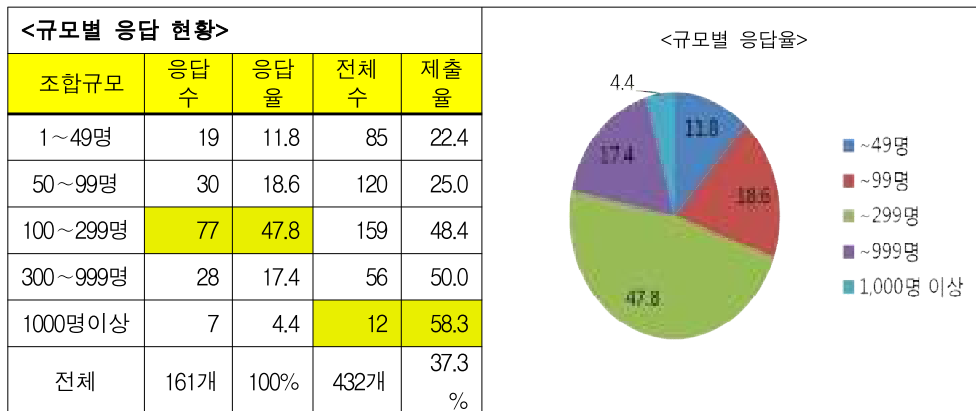
(1) 지역별 응답 현황

연맹의 ‘지역본부운영규정’에 근거한 지역본부편제에 따르면 노조수 대비 37.3%의 수거율을 보였다. 강원, 대전, 전북지역본부가 50% 이상의 수거율을 보였고, 충남, 충북, 서울, 구미, 경기, 부산지역본부가 평균율을 넘었다. 경기지역본부가 최고(25개 노조)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서울, 경기, 충남·북의 수거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광주전남, 경남, 대구경북, 울산경주지역본부의 수거율이 낮았다. 2007년부터 설문지 수거율 추이를 보면 대체로 낮아지고 있었으나 이번 년도에는 2007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설문지 수거율이 낮을 경우 ‘임단투 지침’의 대표성을 상실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매년도 설문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규모별 응답 현황

전체 가맹노조 432개 노조중 조합원 규모에 따른 수거율을 보면, 조합원 규모가 100~299명인노조의 응답률(47.8%)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99명이 18.6%, 300~999명이 17.4%의 순이었다. 반면, 전체 조직수로 보면, 1,000명 이상의 조직에서 제출률(59.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0~999명(50%), 100~299명(49.4%)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1~49명 규모의 설문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설문 응답률이 노조 대비 37.3%로지만, 100인 이상 조합원 규모의 응답률이 대략 절반(49.3%)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번 설문 분석 자료는 1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다.



2) 임금 및 고용 등 노동조건 분석

(1) 지역별 임금 현황

금속노련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보면, 임금총액은 3,523,806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은 1,528,759원으로, 고정급여(기본급+고정수당+기타수당+상여금)는 3,028,000원으로 조사됐다. 변동급(초과급여)은 705,474원이었다.

구 분		기본급(A)	고정수당(B)	기타수당(C)	상여금(D)	고정급여 (E=A+B+C+D)	변동급	임금총액 ¹
전체	가중평균(원)	1,528,759	206,662	274,350	1,137,513	3,028,000	705,474	3,523,806
	응답수(개)	148	151	98	140	147	86	137

* 가중평균 : 평균치에 조합원수를 곱하여 산정함. 지역 및 규모별 임금 실태 부록 참조

금속노련의 지역본부 편제에 따라 지역별 임금수준을 보면,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지역이었고, 그 다음으로 포항, 전북, 구미본부의 순이었다. 기본급도 가장 높은 곳이 경남이었고 전북, 울산경주, 서울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정급여(기본급+고정수당+기타수당+상여금)의 경우에도 경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경주, 전북, 서울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경남, 포항, 전북, 구미, 서울의 임금수준이 높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변동급여(초과급여)를 보면, 안산시흥, 경남, 포항, 충남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대전본부의 변동급여가 가장 높았으나 응답수가 1개 노조에 불과했다.

구 분		기본급(A)	고정수당(B)	기타수당(C)	상여금(D)	고정급여 (E=A+B+C+D)	변동급	임금총액
강원	가중평균	1,397,654	109,590	348,157	1,185,868	3,041,269	368,482	2,935,488
	응답수	4	4	4	4	4	1	4
경기	가중평균	1,355,062	385,880	526,049	1,131,274	2,662,706	541,281	3,151,137
	응답수	21	23	12	22	21	14	19
경남	가중평균	1,961,032	639,875	413,332	1,304,223	3,754,064	1,132,490	4,956,523
	응답수	11	11	8	11	11	6	11
광주 전남	가중평균	1,509,711	169,255	471,718	947,315	2,910,410	724,565	3,478,256
	응답수	6	6	5	6	6	3	6
구미	가중평균	1,484,421	844,761	171,062	1,094,534	3,289,642	740,639	3,591,290
	응답수	6	6	2	5	6	2	3
대구 경북	가중평균	1,409,516	828,256	419,215	1,077,105	2,847,362	853,545	3,516,132
	응답수	13	14	10	11	13	10	12
대전	가중평균	1,409,559	127,915	105,000	915,314	2,507,341	1,483,207	3,798,008
	응답수	3	1	1	3	3	1	2
부산	가중평균	1,555,994	198,074	431,690	1,076,455	2,731,306	463,273	3,051,709
	응답수	13	13	10	11	13	6	11
서울	가중평균	1,696,018	133,049	667,970	1,138,257	3,463,287	934,785	3,594,767

	응답수	5	5	2	4	5	1	3
안산 시흥	가중평균	1,366,845	185,043	421,184	987,003	2,788,937	1,156,706	3,559,357
	응답수	10	13	11	12	10	9	12
울산 경주	가중평균	1,778,560	556,260	28,212	1,315,813	3,672,709	348,514	2,816,276
	응답수	4	4	3	4	4	2	3
인천	가중평균	1,340,641	161,180	71,289	822,666	2,305,121	531,999	2,565,356
	응답수	8	8	5	8	8	5	8
전북	가중평균	1,849,934	132,634	92,226	1,443,027	3,511,494	707,302	4,218,795
	응답수	4	4	3	4	4	4	4
충남	가중평균	1,561,812	530,941	784,862	996,632	2,687,150	1,027,965	3,385,213
	응답수	17	17	9	14	14	8	16
충북	가중평균	1,466,510	278,511	244,049	1,163,238	2,820,388	581,871	3,821,303
	응답수	15	13	6	13	15	10	14
포항	가중평균	1,560,696	358,544	500,589	1,246,734	3,076,275	1,025,875	4,284,684
	응답수	8	9	7	7	7	4	9

(2) 규모별 임금 현황

금속노련 조합원의 규모별 임금수준을 보면,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고정급여와 임금총액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본급 (A)	고정수당 (B)	기타수당 (C)	상여금 (D)	고정급여 (E=A+B+C+ D)	변동급	임금총액
1-49 명	가중평균	1,466,784	345,000	124,462	853,125	2,499,297	504,149	3,221,664
	응답수	12	16	8	17	17	11	16
50-99 명	가중평균	1,460,097	158,468	278,015	952,868	2,605,866	706,813	3,256,684
	응답수	24	32	22	25	26	21	30
100-299 명	가중평균	1,450,169	248,257	285,398	1,036,168	2,812,778	901,156	3,446,228
	응답수	65	71	45	66	72	36	64
300-999 명	가중평균	1,597,428	296,926	167,718	1,187,173	3,145,384	762,525	3,659,525
	응답수	22	26	17	25	26	13	19
1000 명 이상	가중평균	1,030,916	138,250	311,247	1,180,510	3,121,382	609,610	3,604,482
	응답수	4	7	6	7	7	6	7

(3) 주당 평균노동시간 및 평균 근속년수/ 평균 연령 / 평균 가구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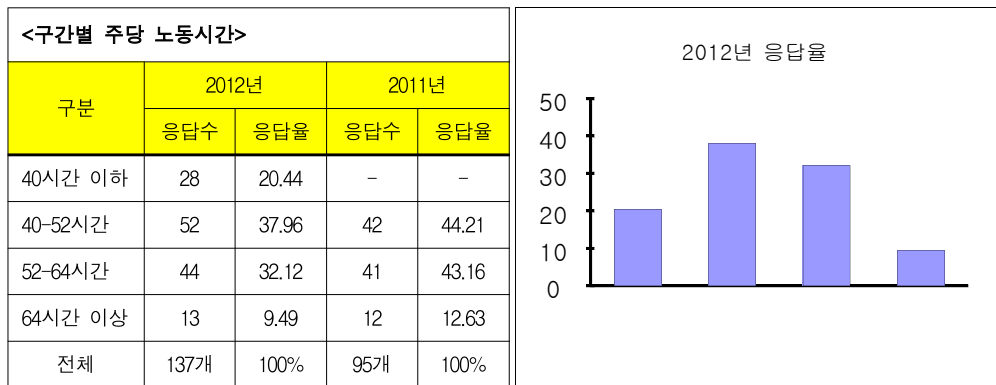
2012년 노조별 조합원의 주당 평균 실노동시간은 51시간 18분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시간 18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며 여야 모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합의 등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 체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고,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실태 점검 및 시정명령으로 노동시간이 다소나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주당평균노동시간 / 평균 근속년수·연령·가구수>								
구분	주당 평균 실노동시간	평균 근속년수 (년)			평균 연령 (세)			평균가구 수 (인)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2012년	51.3	12.7	11.5	12.8	40.6	42.0	40.3	2.94
	137	143	92	148	144	91	152	144
2011년	53.6	12.5	11.4	-	40.1	42.6	-	3.02
2010년	54.7	12.4	10.7	-	39.8	38.8	-	3.05
2009년	51.8	10.4	11.8	-	40.9	39.4	-	3.10
2008년	48.1	11.9	9.9	-	39.5	39.3	-	3.37
2007년	49.3	11.5	9.2	-	38.6	38.3	-	3.08
2006년	53.4	10.8	9.0	-	38.7	38.8	-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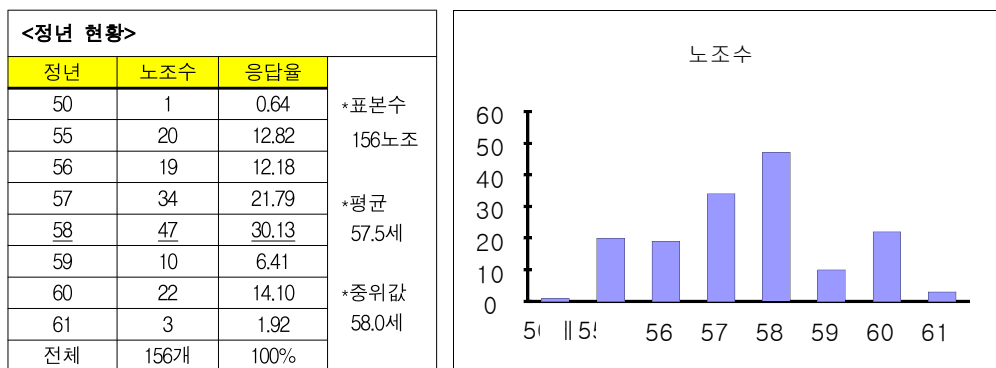
2012년 조합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남성이 12년8개월, 여성이 11년6개월, 전체 12년 10개월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40.6세, 여성이 42.0세, 전체 40.3세였다. 예년과 비교할 때, 근속년수 및 연령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조합원의 평균 가구수다. 2012년 조합원 평균 가구수는 2.94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평균 가구수가 줄곧 3명을 넘었으나 2012년에 들어 3명 이하로 줄었다. 내년도 조합원 가구당 평균 가구수의 변화를 살펴봐야겠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사업장이 41.61%나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제50조에서 주당 40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같은법 제53조에서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

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주당 최대 68시간(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까지도 가능하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노동을 방조 내지는 부추겨 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기업들도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인력의 채용을 통한 노동의 분배보다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 물량을 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주화 또는 사내하청, 도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다만, 2011년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사업장은 55.79%로 과반을 넘었었다.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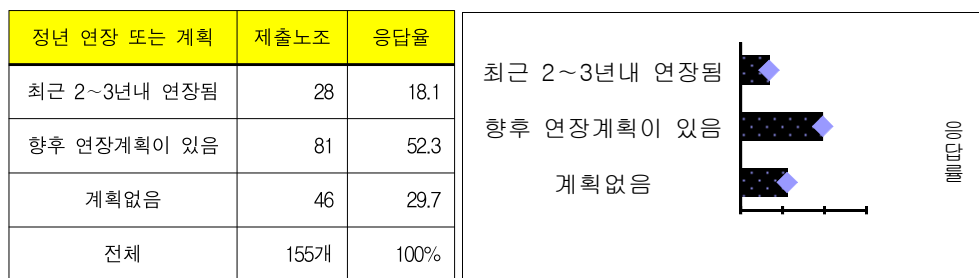
(4) 정년 현황



2012년 156개 노조의 평균 정년은 57.51세로 나타났고 중위값은 57세였다. 응답비율을 보면, 58세가 31.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7세가 21.79%를 보였다. 57세와 58세가 전체 응답률의 반을 넘는 51.9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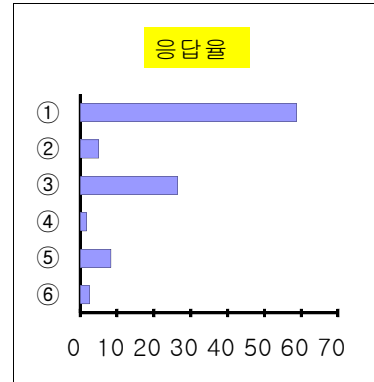
2007년 당시 조합원의 평균 정년이 55세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조합원들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정년 연장은 노동조합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근속년수가 많은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고 자녀 교육과 주거비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노조의 정년연장은 매우 중심적인 단체협약 개정사항이다.

조합원의 고령화 및 장기근속화, 정년 연장 요구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정년 연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노조가 50%를 넘어 52.3%에 달했다. 있다. 최근 2~3년내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답한 비율도 18.1%였다. 정년 연장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였거나 연장 계획을 갖고 있는 노조는 전체중 70.1%로 10개중 7개의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정년 조항을 변경하였거나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년 연장의 형태를 보면, 거의 대다수 노조(89.1%)가 임금삭감 없이 현행 정년을 연장하거나 부득이 임금삭감을 할 경우라면 기존 정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적 등 재입사 형식의 고용(정년)연장 방식은 10% 미만으로 노조측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시 대체로 사측이 보이는 태도는 우선은 수용불가의 입장을 보이다, 임금 또는 노조측 요구사항의 일부를 양보하고 정년 시점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안을 들고 나오는데, 정년연장의 경우 바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과 상대적으로 추후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 사이에 요구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년연장의 형태	응답수	응답율
①임금삭감(임금피크제) 없이 현행 정년 연령	71	58.7
②임금삭감(임금피크제) 도입후 현행 정년 보장	6	5.0
③정년연장형 (기존정년시점부터 임금삭감)	32	26.4
④정년연장형 (기존정년시점 이전부터 임금삭감)	2	1.7
⑤고용연장형(정년후 계약,촉탁등의 형태로 고용 형태를 변경하여 임금 및 직무 등을 재설정)	10	8.3
⑥기타	3	2.5
전체	121개	100%



3) 2012년 임금교섭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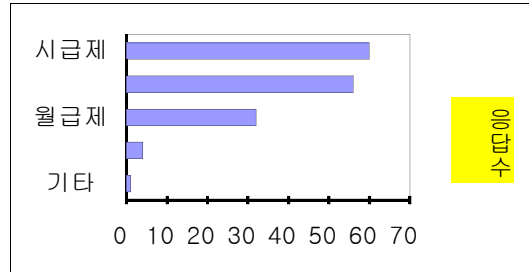
(1) 2012년 임금 형태

조합원의 임금형태를 묻는 질문에 월급제라고 답한 노조는 전체 153개 노조중 32개 노조에 불과했다.(20.92%) 시급제가 가장 많은 39.22%(60개)였고, 다음으로 일급제가 36.60%(56개)였다. 연봉제 및 기타라고 응답한 노조는 5개 노조(3.26%)에 그쳤다. 시급제 및 일급제가 75.82%(116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급제 및 일급제라도 월단위로 정기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경우 월급제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또는 일당제 계약직 근로자들이 주로 시·일급제 임금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는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생산직 이라는 이유로 시·일급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시적 업무에 종사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로 임금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일급제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급여손실폭(무노동 무임금)이 큰 반면, 월급제의 경우 급여 안정성이 높다. 또한 임금교섭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선 시·일급제에서 기본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시급×소정근로시간) 또는 (일급×근로일수), 주휴수당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 금액] 에 2013년

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곱한 금액을 월급제 기본급으로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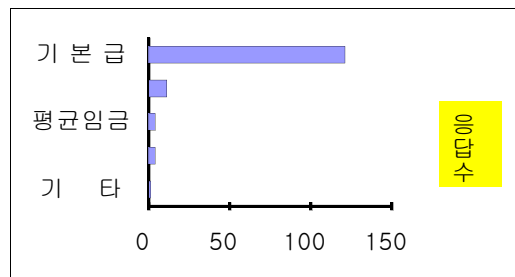
임금형태	응답수	응답율
시급제	60	39.22
일급제	56	36.60
월급제	32	20.92
연봉제	4	2.61
기타	1	0.65
총계	153개	100%



(2) 2012년 임금 요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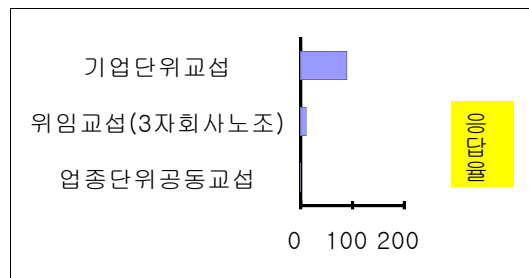
2012년도 임금인상 요구 기준은 임금형태와 무관하게 기본급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본급을 임금요구 기준으로 삼는 노조가 85.82%로 압도적이었다.

요구기준	응답수	응답율
기 본 급	121	85.82
통상임금	11	7.80
평균임금	4	2.84
총 액	4	2.84
기 타	1	0.71
전 체	141개	100%



(3) 2012년 단체교섭 방식

교섭방식	응답수	응답율
기업단위교섭	119	88.81
위임교섭(3자,회사,노조)	14	10.45
지역단위공동교섭	0	0
그룹사공동교섭	0	0
업종단위공동교섭	1	0.75
전체	134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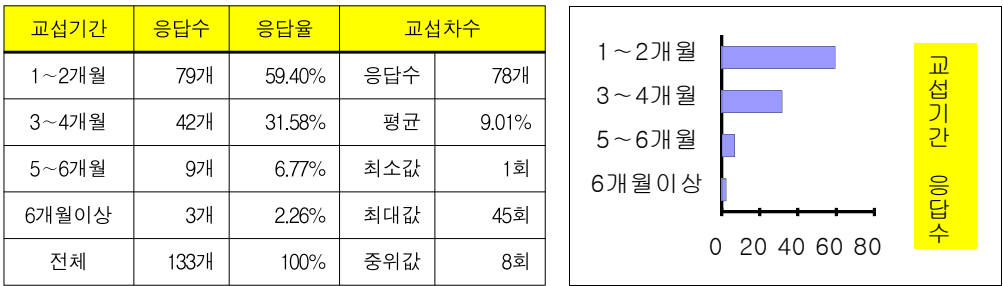


2012년도 단체교섭 방법은 기업단위 교섭이 88.81%로 가장 많았다. 거의 대부분 기업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기업별 노조 형태이고 회사별로 지불능력 등이 차이가 날지라도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이슈 및 여론 조성이 가능한 지역별 또는 전국적

공동교섭 등 다양한 교섭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직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섭 차수와 기간

응답노조의 교섭차수는 평균 9.01회였다. 1차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한 노조가 있는 반면, 45회차나 교섭을 했던 조직도 있었다. 교섭기간은 1~2개월이 59.50%(79노조)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개월이 31.58%(42개 노조)였다.



(5) 2012년 요구 수준 및 타결 결과

2012년 가맹조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기본급 대비 9.1%였다. 임금인상 요구액을 기준으로하면 122,515원으로 나타났다. 타결률을 보면 기본급 대비 5.7%였고, 타결률로 보면 77,132원 이다. 관철율은 요구율 대비 62.64%, 관철액은 요구액 대비 62.96%를 보였다.

<2012년 임금 요구수준 및 타결 결과>				
년 도	요구율	요구액	타결율	타결액
평 균	9.1%	122,515원	5.7%	77,132원
중위값	9.0%	113,000원	5.5%	73,200원
최소값	3.5%	17,900원	2.5%	29,670원
최대값	35.0%	389,708원	18.0%	200,421원
응답수	106개	117개	105개	98개

(6) 최저임금의 영향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가맹노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응답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노조가 36.08% 였다. 지난해 33.03% 보다는 높아졌다. 적지 않은 노동조합이 최저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는 아니지만 조만간 영향을 미

칠것 이라고 본 노조(16.46%)까지 합치면 설문응답 전체노조의 53.53%(78개 노조)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답했다. 참고로, 2013.1.1~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4,860원이다.

4) 2013년 임단투 전망 분석

(1) 한국노총/금속노련 역점사항

2013년도에 금속노련(한국노총)이 가장 역점에 두고 활동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소속 가맹노조에서는 노조법 재개정을 압도적으로 주문하였다. 또한, 누적집계에서 보면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재심의를 주문하였다.

2013년도 연맹 역점사항	중요1	응답율	중요2	응답율	중요3	응답율	복수답	응답율
노조법 재개정	122	75.8	18	11.3	5	3.1	145	30.1
복수노조 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1	0.6	2	1.3	7	4.4	10	2.1
복수노조 관련 조직대응책 마련	2	1.2	8	5.0	13	8.1	23	4.8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심의	12	7.5	63	39.4	18	11.3	93	19.3
양대노총 관계개선 및 신사협약 체결	1	0.6	8	5.0	12	7.5	21	4.4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18	11.2	40	25.0	37	23.1	95	19.7
산업 및 업종 문제에 대한 대응	-	-	3	1.9	9	5.6	12	2.5
노조참여 훈련·숙련개발체제 개발	-	-	5	3.1	14	8.8	19	3.9
취약계층 고용지원	1	0.6	4	2.5	14	8.8	19	3.9
사회안전망 강화	3	1.9	5	3.1	22	13.8	30	6.2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1	0.6	3	1.9	1	0.6	5	1.0
기업사회적책임과 이슈 관심 및 참여	-	-	1	0.6	9	5.6	10	2.1
전체	161개	100%	160개	100%	161개	100%	482개	100%

(2) 단위노조 역점사항

금속노련 소속 단위노조는 2013년 임투에서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그리고 고용안정, 노조전임자 관련 대응책 마련의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누적집계를 보면, 임금인상과 임금체계 개편,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제도, 고용안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단위노조 역점사항	중요1	응답율	중요2	응답율	중요3	응답율	복수응답	응답율
노조전임자 관련 대응 마련	16	10.0	8	5.0	12	7.7	36	7.6
복수노조 관련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6	3.8	5	3.1	2	1.3	12	2.7
임금 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	90	56.3	41	25.8	8	5.1	139	29.3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	20	12.5	21	13.2	24	15.4	65	13.7
경영성과에 따른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7	4.4	30	18.9	29	18.6	66	13.9
경영참가	1	0.6	1	0.6	3	1.9	5	1.1
산업안전보건	1	0.6	2	1.3	3	1.9	6	1.3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6	3.8	33	20.8	49	31.4	88	18.5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1	0.6	-	-	3	1.9	4	0.8
비정규직 근로조건개선	1	0.6	6	3.8	5	3.2	12	2.5
노동시간단축 또는 교대형태 변경	10	6.3	11	6.9	17	10.9	38	8.0
기타	1	0.6	1	0.6	1	0.6	3	0.6
전체	160개	100%	159개	100%	156개	100%	475개	100%

(3) 임금인상 요구율 결정시 근거 지표

금속노련 소속 가맹노조에서 임단투 교섭을 준비함에 있어서 임금인상요구율 책정시 가장 중요한 근거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노총(금속노련)의 표준생계비 및 임단투 지침”과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 현황”, “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이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합원들의 여론수렴이 누적집계에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근거지표	중요도1	응답율	중요도2	응답율	중요도3	응답율	복수응답	응답율
①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임단투지침	66	41.0	29	18.2	33	20.9	128	26.6
②경제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17	10.6	40	25.2	31	19.6	88	18.3
③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	46	28.6	29	18.2	37	23.4	112	23.2
④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	28	17.4	52	32.7	42	26.6	122	25.3
④최저임금인상률	3	1.9	9	5.7	19	9.5	31	6.4
④기타	1	0.6	-	0	-	-	1	0.2
전체	161개	100%	159개	100%	158개	100%	482개	100%

(4) 임금요구안 작성 및 교섭 요구 시기

월	요구안 작성시기		교섭요구시기		월	요구안 작성시기		교섭요구시기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1월	11	7.4	3	2.0	7월	2	1.3	5	3.4
2월	27	18.1	10	6.8	8월	-	-	2	1.4
3월	35	23.5	19	12.9	9월	-	-	-	-
4월	45	30.2	42	28.6	10월	1	0.7	-	-
5월	19	12.8	47	32.0	11월	4	2.7	1	0.7
6월	2	1.3	14	9.5	12월	3	2.0	4	2.7
전체	149개	100%	147개	100%	전체	149개	100%	147개	100%

금속노련은 대체로 매년도 3월에 단위노조 교섭위원 교육을 실시한다. 소속 단위노조가 대체로 3월~4월에 교섭요구안을 작성하고 3월~5월 집중적으로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5) 단위노조 임금인상 요구율

2013년도 단위노조의 임금인상요구율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평균 8.4%이고, 금액으로 보면 120,164원으로 조사되었다. 최소요구율은 3%였고, 최대 요구율은 20%였다. 요구액으로 보면 최소 30,000원, 최대 410,104원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과 비교해 보면, 요구율은 8.7%에서 0.3%로 정도 낮아졌고 금액으로 보면 2012년 요구액 119,910보다 254원 많았다.

예상 요구 율(%)	년 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응답수	106	71	75	80	108	118
	평 균	8.40	8.71	8.73	7.67	5.87	8.69
	중위값	8.00	8.00	9.00	7.75	6.00	8.87
	최소값	3.00	4.50	2.00	0	0	3.00
	최대값	20.00	17.34	15.00	16.70	15.00	20.00
예상 요구 액(원)	응답수	97	63	66	64	53	103
	평 균	120,164	119,910	117,906	103,575	70,590	112,272
	중위값	111,000	117,330	110,917	96,433	74,500	100,000
	최소값	30,000	68,000	50,000	0	0	17,903
	최대값	410,104	300,926	300,000	280,000	235,015	1,144,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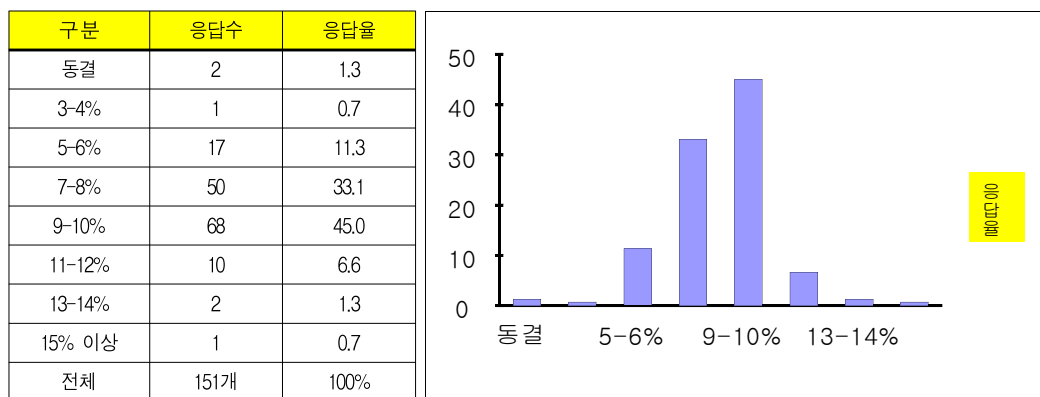
규모별 임금인상 요구율을 보면 1-49명 규모에서 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0-999명 규모의 조직에서 9.2%였다. 50-99명 규모의 조직의 요구율 평균이 전체 평균과 같았고 1,000명 이상 규모의 조직 평균률 8.4% 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다. 요구액을 기준으로 보면, 300-999명 조직의 요구액이 최대로 144,698원이었고, 다음으로 1-49명 규모의 조직이 135,454원 이었다. 타규모 조직의 요구액은 평균 요구액 120,164원 보다 낮았다.

구분	요구율				요구액			
	평균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1~49명	9.5	15	5.0	20.0	135,454	15	30,000	373,245
50~99명	8.4	19	5.0	14.0	110,321	19	51,860	189,000
100~299명	7.8	51	3.0	15.0	111,761	45	49,243	194,215
300~999명	9.2	18	3.0	15.7	144,698	16	73,000	410,104
1,000명이상	8.5	3	7.0	10.0	91,810	2	80,000	103,610

(6) 금속노련/한국노총 요구율

2012년 가맹노조에서 바라는 금속노련(한국노총)이 제시할 임금인상을 지침의 수준은 9-10%가 가장 많은 45%였고, 다음으로 7-8%가 33.1%, 5-6%가 11.3%로 나타났다. 이를 요구율로 환산해 보니, 8.4%가 나왔다.

* $[8.4\% = (3.5\% \times 1 + 5.5\% \times 17 + 7.5\% \times 50 + 9.5\% \times 68 + 11.5\% \times 2 + 15\% \times 1) / 151]$



5) 고용 현황 분석

(1) 2013년 사업장내 고용 변화 (예상)

2012년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159개 노조중 44.7%에 해당하는 71개 노조가 응답했다. 그리고 변동이 없거나(27.7%), 자연감소 했다(26.4%)는 답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만 충원했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2011년 사업장내 고용변화	복수응답	응답율
증가-정규직을 새로 채용함	71개	44.7%
증가-비정규직(용역,하청,도급,계약)만 충원	26개	16.4%
변동없음	44개	27.7%
감소-자연감소	42개	26.4%
감소-희망퇴직자 모집	4개	2.5%
감소-정리해고 단행	1개	0.6%
감소-분사,아웃소싱,소사장 등	6개	3.8%
기타	2개	1.3%
표본수	159개 노조	

(2) 2013년 회사 경영 상태 (예상)

2013 회사 경영 상태(예상)	응답수	응답율1	응답율2
작년보다 매우 악화	17	10.9	57.1
작년보다 약간 악화	72	46.2	
변화없음	27	17.3	17.3
작년보다 약간 호전	39	25.0	25.6
작년보다 매우 호전	1	0.6	
전체	156개	100%	100%

2013년 회사의 경영상태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57.1%가 2012년보다 악화될것이라 답변한 반면, 25.6%만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7.3%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3) 2013년 회사 구조조정 유무 및 유형 (예상)

2013년 구조조정 예상	응답수	2013년 구조조정 예상	응답수
정리해고	3	휴업	3
명예·희망퇴직	3	기간제 계약해지 또는 간접고용 전환	6
유·무급휴진	9	파견·하청·용역중단	3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6	노동시간 및 조업시간 단축	15
신규채용중단	14	임금동결	14
계약사 전직	1	상여금, 수당 등 반납	2
배치전환	7	복리후생비 지급 중단	3

전체 162개 노조중 45개 노조(27.8%)가 2013년도에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구조조정 유형으로는 노동 및 조업시간 단축, 임금동결 및 신규채용 중단을 예상했다. 하이디스 노조 등 3개 노조는 정리해고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이디스 노조의 경우,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초래한 쌍용차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장. 2012년 임단투 지침 발간

- 목 차 -

제1장 : 2013 정세전망

1. 정세전망	1
1) 경제분야	1
2) 정치분야	3
3) 사회분야	4
4) 노동분야	8
2. 금속산업전망	10
1) 2013년 산업전망 기상도	10
2) 2013년 금속산업 전망	11
3. 2013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16
1) 활동기조	16
2) 중심 과제 및 사업	17

제2장 : 2013 임단투 지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조사목적	23
2. 조사일시	23
3. 조사방법	23
4. 수 거 율	23
5. 조사결과	24

제3장 : 2013 금속노련 임금지침

1. 2013 임투 목표와 방향	38
2. 2013 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율 산정 지침	40
3.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임금인상 지침	47
4. 2013 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 지침	58

제4장 : 2013 단체교섭권 확보 지침

I.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권 확보 지침

1. 개요	73
2. 복수노조에 대비한 교섭권 확보 및 단결권 강화 지침	78

II. 타임오프제 관련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응지침

1. 개요 및 방향	92
2. 전임자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및 노동부 고시	92
3.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교섭쟁점 및 법률쟁점	100
4.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106

제5장 : 2013 단체협약 및 제도개선 지침

I. 통상임금 관련 판례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1. 개요	120
2. 통상임금 관련 지침요지	120
3. 지침 해설 및 관련 판례	121
4. 노동조합의 교섭 및 법률대응 방침	127
5. 사측의 임금체계 변화 기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128

II. 실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 지침

1. 개요	130
2. 실태	131

3. 원인과 문제점	140
4.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사례	148
5. 개선 과제	159
6. 단협 지침	166

Ⅲ. 고용위기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1.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177
2.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177
3.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181

Ⅳ.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지침

1. 비정규직 실태현황	195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8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207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222

Ⅴ.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고령자 퇴직지원 지침

1. 정년연장의 필요성	238
2. 정년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247
3. 한국노총 지침	254

Ⅵ.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지침

1. 경과 및 현황	258
2. 퇴직급여제도 설명	259
3.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262
4. 퇴직연금 도입시 지침	265

Ⅶ.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섭 전략

1. 개요	286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287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292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 의무이행 확보	309
5. 안전보건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317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321

VIII.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328
2.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강화	339
3. 일과 생활균형의 실현	348
4.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359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365

IX. 노동자 경영참여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1. 노동자 경영참여의 의의 및 근거	367
2.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	369
3. 노사협의회 활성화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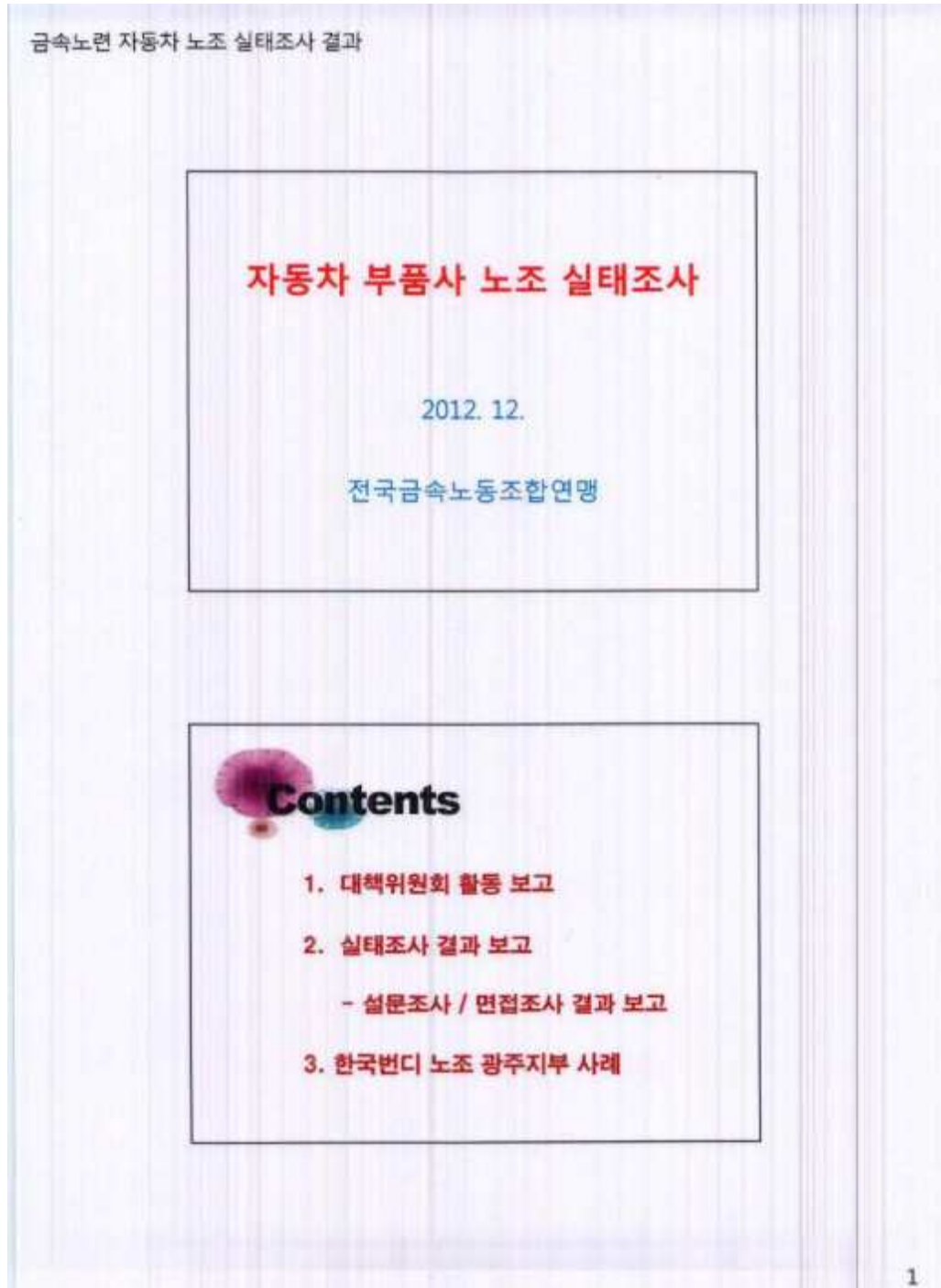
X. 노동조합의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연대방안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동조합의 역할	391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국제기준	391
3. 노동조합의 CSR 활용 및 사회적 연대방안	404
4.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연대방안	408

<부록>

1. 2013 생계비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건표	410
2. 2013 임단투 지침 수립 기초통계	411
3. 구조조정 매뉴얼	433
4. 2012년 주요 판례	459

4장. 2012년 자동차 업종 노조 실태 조사 결과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1. 자동차 대책위 활동 보고

배경	- 각 정당 총선(4.15)과 대선(12.19)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공약 - 근로시간 단축(근거법 준수) 및 발생노동 근절 사회 여론 조성 - 교통노후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하향 압제 시행 영향 - 현대차: 거래차 13.03.04, 한국지엠 14.01.01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철회
목적	- 자동차 업종 노조 조합원의 실노동시간 및 교대제 문제의 문제점 진단 - 완성차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및 휴일근로 정당근로 조합원 파치는 직·간접적 영향 조사 및 대응책 마련 - 장시간근로 및 발생노동 축소 및 안전, 질병에 조합원의 건강권 강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구성	- 지역본부 주한을 통해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노조 대책위원회' 구성 - 의왕(정일진 부위원장)과 부의장 1명(권역별 1명)으로 의왕단 구성 - 울산(1.3.5.7.9.11)월에 전체회의, 학수(2.4.6.8.10.12)월에 의왕단 회의 개최 - 금속노련 자동차 업종 대책위 및 의왕단 구성

지역본부별 대책위원 현황

지역본부	대책위원	지역본부	대책위원
경기	민한기(리전)	경남	유지현(GMR코리아)
	문형호(엔알파코리아)		장원혁(NEQ)
안산시흥	윤여경(아이아)	대구경북	황성용(대탈)
	윤석진(광명전기)		최도영(문화참공)
전남	오인성(삼성공업)	부산	양성훈(대리정밀)
	류성훈(대동하이텍스)		이재현(대동공업)
충남	장재성(새론오토모티브)	대전	최우승(한국우괴)
대전	이남철(전합)	전북	최성환(대동공업)
	이상용(한국보그위너TS)		정지영(한국우괴코리아)
충북	이종필(우지맥코리아)	전북	김학술(대동공업)
	이병국(오토리브)		김학술(대동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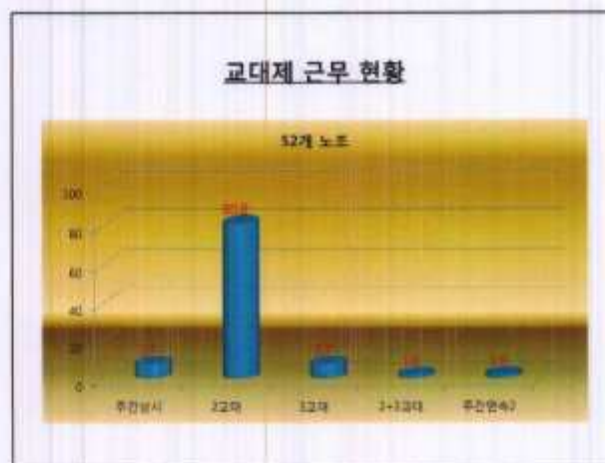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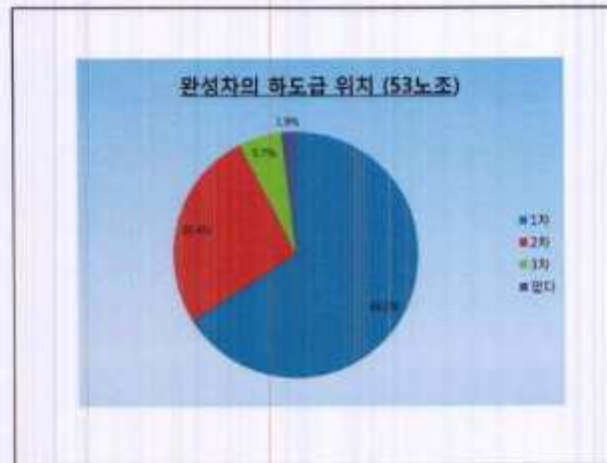
자동차 대책위원회 권역별 위원 현황

권역	지명분부	대책위원
1권역	경기/인천시종/인천	문형호, 문현기, 윤여경, 윤석진, 오연성, 류성룡
2권역	충남/충북/대전/광원	장재성, 이상윤, 이종필, 이남철, 이병국
3권역	경남/대구경북	유재현, 장광혁, 황성원, 허도영, 방삼훈
4권역	부산/대구경북/전남	최정태, 손계진, 김기철, 김현우
5권역	전북/대구경북	김학송, 김홍균

2. 자동차 부품사 노조 서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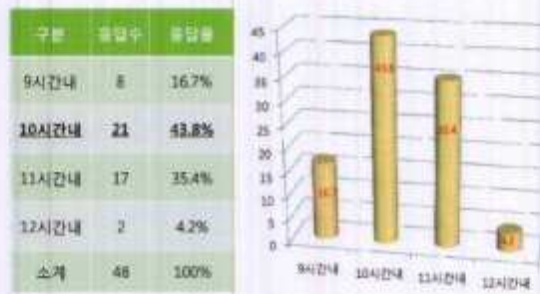
- 2012년 9월 25일 (정책 제143호) 설문조사서 금속노련 자동차 소속 노조 및 지부에 유선으로 전송
- 2012년 12월 14일 160개 자동차 업종 노조 및 지부중 53개 노조 및 지부 설문조사서 제출
- 수거율 33.1%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주간 상시 근무자 근로시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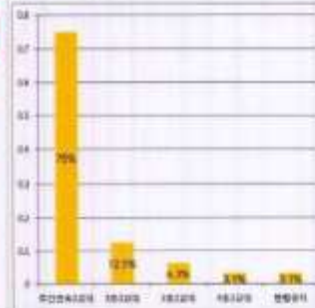
주야 2교대 근무자 근로시간 현황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교대제 변경 요구시 근무형태 (32노조)

구분	응답수	응답률
주간연속2교대	24	75.0%
3조1교대	4	12.5%
3조2교대	2	6.3%
4조1교대	1	3.1%
현행유지	1	3.1%
소계	32	100%



1일 평균 근로시간 현황

구분	응답수	평균 근로시간
주간 상시근무자	48	10시간 02분
주야2교대 근무자	주간조	10시간 09분
	야간조	10시간 11분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교대 근무자 평균 인원

구분	응답수	평균
주간 상시 근무자	전 체(A)	46
	조합원(B)	46
	비율(B/A*100%)	-
주야 맞교대 근무자	전 체(C)	47
	조합원(D)	44
	비율(D/C*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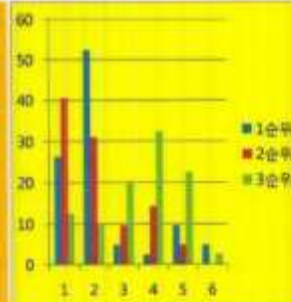
교대근무 형태 변경 요구 또는 의향 유무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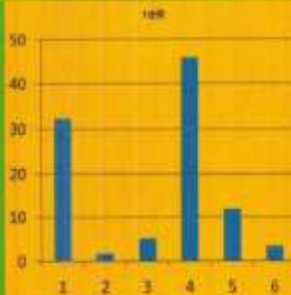
교대제 개선 중요 세가지 요인

- ① 불규칙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조립원들의 가족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커서
- ② 많은 야간노동으로 조립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 ③ 조립원들의 업무량이 많아 노동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안배를 총원하기 위해서
- ④ 현재적인 업무량을 줄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 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노동을 하기 때문에
-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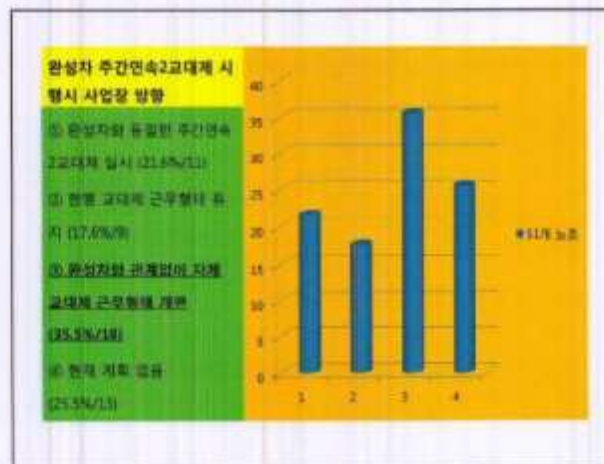


교대제 개선의 가장 큰 어려움

- ① 사업장의 재구조화로 교대제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52.2%/3명)
- ② 생산량의 수직적·극대화하기 위해서 (1.7%/1)
- ③ 노동강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5.1%/3)
- ④ 일급급소용, 무제한 조립원들의 배치와 일률, 수, 일기, 체력 등 (13.8%/7명)
- ⑤ 업무량 변동에 따른 인력의 대치의 어려움 때문 (11.9%/7)
- ⑥ 기타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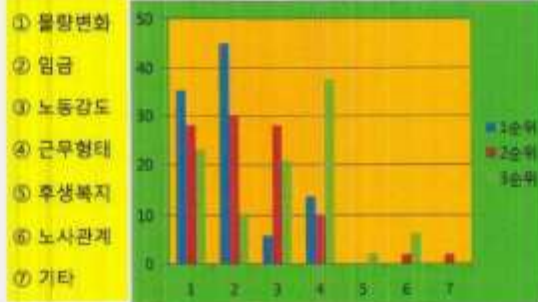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주간연속 2교대 시행시 현장에 미치는 영향



완성차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시 생산 및 납품 등
대응체계 마련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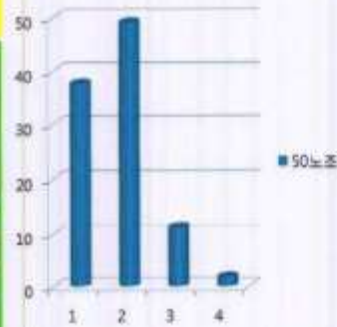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주간연속 2교대 시행시 생산 및 납품 체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 요건

구 분	응답수	응답률
생산설비 개선 투자	19	35.8%
신규 생산설비 투자	18	34.0%
납품 물류 시설 확충 투자	15	28.3%
신규 인력 충원	21	39.6%

교대제 변경으로 총액
임금 저하시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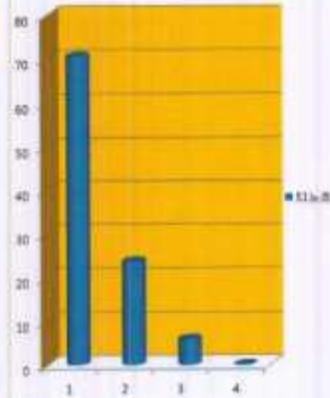
- ① 시간당 노동효율을 높여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임금보전율 확보 (57.7%/20)
- ② 노동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개선, 고정자산 투자 등으로 저감하는 방안 검토 (49.2%/20)
- ③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 축소분 수급 및 인건비 급격하게 유지하고 교대제 개편(51.2%/4)
- ④ 기타 (1.9%/1)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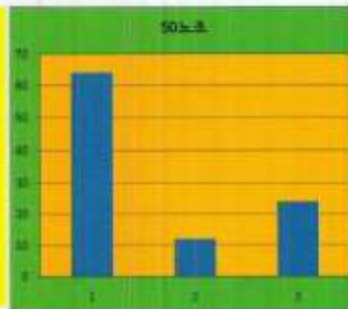
노사간 교대제 변경 논의 진행 여부

- ①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75.0%/36)
- ② 노사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3.3%/11)
- ③ 노사간 논의를 하고 있지만 별반 진척이 없다 (3.3%/2)
- ④ 노사간 논의체계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고, 일장부분 진척이 있다 (7.7%)



근로시간 및 교대제 개선 적정 교섭 방식

- 1. 기업별 단위 교섭, 필요시 공동교섭 가능 (64.0%/32)
- 2. 기업별 단위 교섭 한계, 공동교섭이 필요 (12.0%/6)
- 3. 공동교섭 한계, 산업별 중앙교섭 (24.0%/12)



대책위 공동교섭 방침 확정시 교섭권 위임

1. 현재의 기업별 단위

교섭 (65.3%/32)

2. 기업별 단위 교섭도

가능하나, 대책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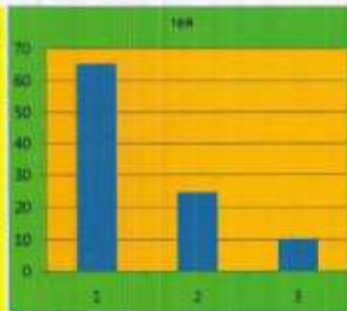
방침 수용

(24.5%/12)

3. 기업별 교섭 한계있

어 적극 위임

(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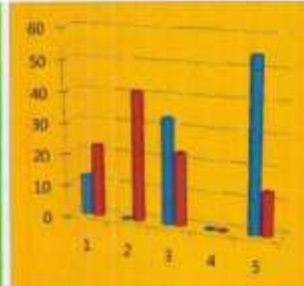
3. 자동차 부품사 노조 면접 조사

- 2012년 10월 25일 부터 12월 14일 까지 설문조사서 제출 노조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 실시
- 사업장 방문후 인터뷰 및 서면조사 병행 실시
- 면접조사서 수령한 서면조사서 정리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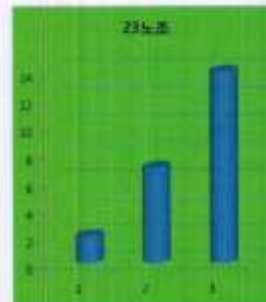
부품사 교대제 변경시 완성차 및 정부의 최우선 지원 사항

- ① 생산설비 보완투자 지원
- ② 신규 생산설비 투자 지원
- ③ KTX 급차
- ④ 부품 불문 시설 투자 지원
- ⑤ 교대제 지원금 책수와 기
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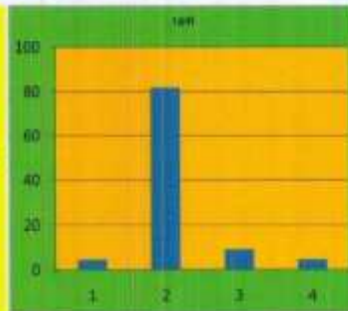
완성차 주간연속 2교대 시행시 회사의 애로점

- ① 완성차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어려움 (5.7%/2)
- ② 완성차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노조와 조합원의 발생근무 근절 요구 확대 (30.4%/7)
- ③ 완성차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회사 수익성 저하 예상 (50.9%/14)



노조 교대제 변경 요구시 가장 큰 어려움

- ① 회사의 부정적 태도와 노조 요구 무시(4.5%)
- ②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 노동강도등 노조의 일정한 양보(11.8%)
- ③ 노조 내부의 이해 조율과 결속력 확보의 문제(9.1%)
- ④ 기타(4.5%)



노조에서 교대제 변경 요구시 단위노조 준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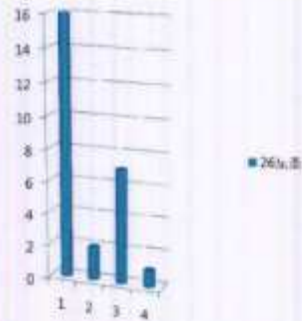


- ① 주간연속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노조 간부들의 이해 확대(8.3%/2)
- ① 주간연속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교육과 홍보(33.3%/8)
- ② 정부, 자원의 지원받은 확대 요구(41.7%/10)
- ④ 원성자가 사행 후 변화가 있을 경우 논의 중 시작해도 늦지 않다(12.5%/3)
- ⑤ 기타(4.2%/1)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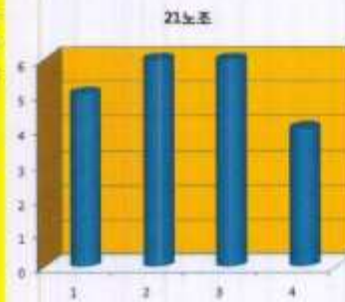
교대제 변경등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금속노련 준비, 실천사항

- ① 임금감소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위한 공동교섭 공통분점(61.5%/76)
- ② 주간연속 2교대제등 장시간, 발생노동 근황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여론 조성 (7.7%/7)
- ③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확대 요구(25.9%/7)
- ④ 교대제 변경에 대한 단위 노조 교섭 지령(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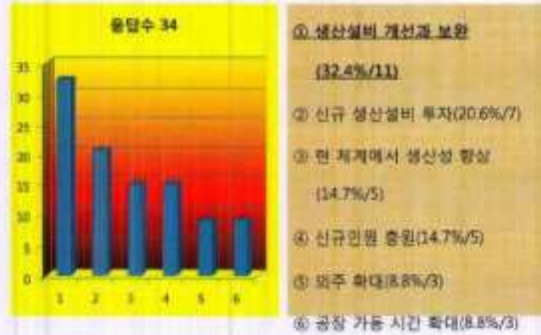
단체교섭 회사측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강도 강화요구시 대응방향

- ① 매우 어렵지만 일정한 노동강도 강화는 수용(13.8%/4)
- ② 노동강도 강화가 아닌 신기술 도입 요구(25.6%/9)
- ③ 더 이상 노동강도 강화가 불가함으로써 회사측 요구 거절 및 대안 요구 (28.8%/10)
- ④ 생산성비 확장 요구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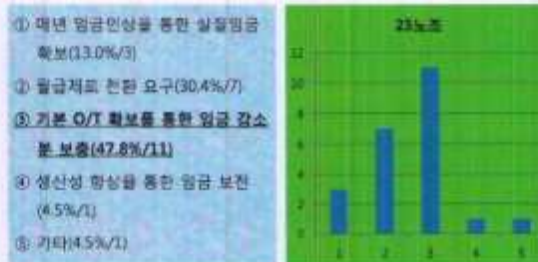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완성차 주간연속 2교대 시행으로 물량변동시
회사의 예상 대응 방향



완성차 주간연속 2교대 시행으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시 노조 대응방향



한국번디 노조 광주지부 사례

2012. 1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 생산제품

○ 가 전 :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냉매가스관

- 전체 생산량의 60%, 삼성, LG, 대우 등 가전사에 납품.
- 가전사의 1차 협력 업체
- 매일 1회 이상 납품

○ 자동차 : 브레이크 및 연료관 등에 사용하는 강관

- 전체 생산량의 40%, 1차 협력사(한국류브, 부국산업 등)에 납품.
- 완성차의 2차 협력사
- 오더(주문)에 따라 주 2회~3회 납품

금속노련 자동차 노조 실태조사 결과

2. 조직

구 분		월북공장/본사	광주공장
노 조		본조	지부
근로자	근로자수	160명	105명
	사무직/연구직	80명	25명
	생산직	80명	80명
조합원	조합원수	78명	77명
	평균근속	16년	14년
	평균연령	44세	38세
	근무형태	주야 2교대	주간연속 2교대
단체교섭		공통단협, 단 2011년 교대제 교섭만 별도 실시	

3. 공장별 근로시간 비교

구 분		근로시간	현황	특고
월북 공장	주간조	08:30-17:30 (1hr)	2시간/4시간 (주 3-4일)	주 1일 (현황치)
	야간조	21:30-06:30 (1hr)	상시 2시간	(월북부속)
광주 공장	도전조	06:00-15:00 (1hr)	합동	주 1일 (현황치)
	오후조	15:00-24:00 (1hr)	2시간 (월 3-4일, 동요)	(월북부속)

4. 광주공장 근로시간

오전조		오후조	
08:00-11:30	노동(5시간30분)	15:00-18:30	노동(3시간30분)
11:30-12:30	식사/노동(1시간)	18:30-19:30	식사/노동(1시간)
12:30-15:00	노동(2시간30분)	19:30-24:00	노동(4시간30분)
-	-	24:00-02:00	노동(2시간)

* 별도 휴게시간 없이 가동. 라면 근무지별 형태로 휴식 / 주간 2교대 시행전후 동일
 * 식사시간도 가동하고 교대로 식사. 노동시간으로 인정 100% 지급
 *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전에도 동일해 같은 경우 식사 가동. 노동시간 인정

5. 주야2교대 개선 배경

- 의지 : 노조 대표자(지부장)의 교대제 전환 의지
 - 장시간 근로 사회문제,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요구와 추세
 - "우선 시행하고 문제 발생시 대책 마련"하자는 입장
- 요구 : 상대적으로 젊은 조합원들의 요구
 - 상대적으로 젊은 조합원들 장시간근로, 야간근로 기피 현상
- 반대 : 잔업/복근 많이 하는 조합원들의 반대
 -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40-50대 조합원 반대(20%)
- 회사 : 3조3교대 요구, 라면 외주화 계획
 - 노조 4조3교대 요구, 외주화 반대, 임금 축소 불만

6. 임금보전

가 기존 조업 시간(주당)

A형 : 주간 4일 4시간 조업 / 야간 3일 4시간 조업

→ 11월 4시간(26주) + 11월 2시간(26주) / 2월 : 월 평균 36시간

B형 : (2)주간 3일 4시간 조업 / 야간 3일 2시간 조업

→ 11월 4시간(26주) + 11월 2시간(26주) / 2월 : 월 평균 44시간

나 전업 시간 임금보전

(1) 노조 조합원 평균 32시간 보전 요구, 월 28시간 보전 합의

(2) 1월 1시간 전업 인정 (보상비율 200% 지급)

7. 결과

○ 노사 합의 : 12년1월1일, 주간2교대제 시행 합의

○ 만족 조사 : 12년 4월초, 조합원 90% 이상 만족

○ 향후 과제 : 여가 시간 활용 방안 모색

금속노련 소속 단위노조 기초 통계 자료

2012년 12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 지역별 임금 실태

구분		기본급	고정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고정급여	변동급	성과급	임금총액
전체	가중평균	1,528,759	206,662	274,350	1,137,513	3,028,000	705,474	515,746	3,847,992
	응답수	148	151	98	140	147	86	68	137
	노조평균	1,488,434	242,168	239,956	1,027,474	2,797,024	766,748	448,119	3,516,375
	중위값	1,440,000	129,411	95,000	957,400	2,687,500	680,296	341,586	1,839,370
	최소값	875,117	15,000	3800	50,000	1,164,180	125,000	77,200	1,740,017
	최대값	2,969,417	2,390,000	1,596,002	2,420,336	5,411,784	2,634,842	1,617,986	6,908,930
강원	가중평균	1,397,654	109,590	348,157	1,185,868	3,041,269	368,482	166,667	3,077,202
	응답수	4	4	4	4	4	1	1	3
	노조평균	1,379,563	117,549	362,140	1,387,127	3,246,378	368,482	166,667	2,993,997
	중위값	1,507,500	135,456	542,375	1,300,782	3,410,874	368,482	166,667	2,771,329
	최소값	1,130,257	31,541	45,260	848,797	2,771,329	368,482	166,667	2,760,483
	최대값	1,531,879	177,998	801,837	2,210,321	388,281	368,482	166,667	3,450,178
경기	가중평균	1,355,062	385,880	526,049	1,131,274	2,662,706	541,281	1,010,178	3,819,436
	응답수	21	23	12	22	21	14	9	20
	노조평균	1,541,021	238,951	184,756	996,060	2,799,788	558,893	395,561	3,295,173
	중위값	1,392,381	126,005	58,164	976,455	2,586,594	520,780	275,766	3,194,315
	최소값	1,001,257	37,000	5038	50,000	1,739,726	235,757	107,370	2,032,106
	최대값	2,969,417	2,390,000	1,250,000	2,420,336	5,021,135	1,056,211	1,140,124	5,384,776
경남	가중평균	1,961,032	639,875	413,332	1,304,223	3,754,064	1,132,490	521,456	4,994,102
	응답수	11	11	8	11	11	6	6	11
	노조평균	1,638,227	309,745	255,433	1,101,732	3,148,733	932,987	624,087	4,014,544
	중위값	1,488,534	200,000	45,441	919,430	2,949,138	1,147,286	508,333	3,405,778
	최소값	1,333,400	86,473	22,015	676,270	1,828,160	202,506	341,586	2,416,680
	최대값	2,245,346	1,507,471	1,507,296	1,976,308	5,146,239	1,330,416	1,225,967	6,908,930
광주 전남	가중평균	1,509,711	169,255	471,718	947,315	2,910,410	724,565	618,732	3,502,147
	응답수	6	6	5	6	6	3	3	6
	노조평균	1,469,271	137,990	419,828	894,845	2,851,963	716,601	628,994	3,447,165
	중위값	1,524,647	127,000	231,084	849,094	2,709,332	712,884	427,991	3,368,006
	최소값	1,226,238	81,666	15,040	635,000	2,393,280	682,096	188,992	2,409,647
	최대값	1,833,882	220,474	1,470,700	1,356,553	3,502,700	754,823	1,270,000	4,654,223

1) 지역별 임금 실태

구분		기본급	고정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고정급여	변동급	성과급	임금총액
구미	가중평균	1,484,421	844,761	171,062	1,094,534	3,289,642	740,639	749,872	4,065,557
	응답수	6	6	2	5	6	2	3	3
	노조평균	1,598,133	785,950	172,758	999,986	3,274,991	813,423	762,153	4,395,928
	중위값	1,770,000	386,467		957,500	3,073,467	-	725,000	4,039,120
	최소값	1,068,004	135,573	164,816	518,850	1,965,925	468,900	582,998	2,434,825
	최대값	1,910,760	1,930,000	180,700	1,286,704	4,862,894	1,159,946	978,460	6,605,838
대구 경북	가중평균	1,409,516	828,256	419,215	1,077,105	2,847,362	853,545	365,808	3,822,540
	응답수	13	14	10	11	13	10	7	12
	노조평균	1,333,509	293,198	292,629	1,013,459	2,728,056	858,362	325,093	3,644,184
	중위값	1,325,028	204,882	96,766	917,105	2,833,450	921,458	325,780	3,750,688
	최소값	875,117	50,000	24,000	636,514	1,594,000	350,000	108,333	2,000,000
	최대값	1,630,962	1,552,855	1,557,973	1,700,000	3,983,635	1,365,623	583,333	5,296,740
대전	가중평균	1,409,559	127,915	105,000	915,314	2,507,341	1,483,207	163,638	3,845,868
	응답수	3	1	1	3	3	1	1	2
	노조평균	1,523,538	127,915	105,000	1,207,255	2,808,432	1,483,207	163,638	3,778,570
	중위값	1,570,000	127,915	105,000	833,116	2,475,000	1,483,207	163,638	-
	최소값	1,350,614	127,915	105,000	825,000	2,416,645	1,483,207	163,638	3,697,288
	최대값	1,650,000	127,915	105,000	1,963,650	3,533,650	1,483,207	163,638	3,859,852
부산	가중평균	1,555,994	198,074	431,690	1,076,455	2,731,306	463,273	821,724	1,435,625
	응답수	13	13	10	11	13	6	4	11
	노조평균	1,462,091	119,288	201,243	1,020,681	2,599,834	492,303	715,803	3,019,751
	중위값	1,420,000	109,270	119,400	1,094,547	2,658,211	519,810	-	3,145,429
	최소값	1,066,720	38,860	14,709	710,000	1,448,000	251,987	127,463	1,849,370
	최대값	1,814,710	307,980	628,540	1,360,100	3,758,170	767,653	1,418,797	4,119,370
서울	가중평균	1,696,018	133,049	667,970	1,138,257	3,463,287	934,785	239,134	3,811,842
	응답수	5	5	2	4	5	1	3	3
	노조평균	1,808,194	276,063	598,524	1,145,184	3,239,814	934,785	347,704	3,739,312
	중위값	1,824,036	131,999	-	1,166,933	3,093,607	934,785	243,111	3,835,456
	최소값	1,568,502	64,604	522,035	902,574	2,653,788	934,785	91,667	3,541,906
	최대값	2,034,180	747,536	675,013	1,490,546	3,790,575	934,785	708,333	3,840,575

1) 지역별 임금 실태

구분		기본급	고정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고정급여	변동급	성과급	임금총액
안산 시흥	가중평균	1,366,845	185,043	421,184	987,003	2,788,937	1,156,706	172,676	3,856,824
	응답수	10	13	11	12	10	9	6	12
	노조평균	1,372,645	130,486	200,945	897,597	2,610,001	1,129,005	189,161	3,523,999
	중위값	1,354,374	150,000	78,179	857,000	2,376,014	900,000	166,666	3,287,551
	최소값	1,018,309	55,619	12,688	546,530	1,806,098	550,000	125,000	2,314,688
	최대값	1,589,400	204,085	655,373	1,300,000	3,557,953	2,634,842	353,832	6,358,586
울산 경주	가중평균	1,778,560	556,260	28,212	1,315,813	3,672,709	348,514	478,004	3,817,591
	응답수	4	4	3	4	4	2	4	3
	노조평균	1,721,323	634,086	22,600	1,322,026	3,694,385	651,732	429,982	3,840,378
	중위값	1,850,000	206,470	30,000	1,387,219	3,347,258	-	-	3,871,413
	최소값	1,457,243	109,500	3,800	1,123,154	2,790,667	125,000	133,333	3,480,591
	최대값	1,944,736	2080,829	34,000	1,544,400	5,412,784	1,178,463	867,012	4,169,130
인천	가중평균	1,340,641	161,180	71,289	822,666	2,305,121	531,999	604,904	2,636,845
	응답수	8	8	5	8	8	5	2	8
	노조평균	1,450,232	118,879	72,706	872,381	2,441,933	511,908	603,945	2,872,650
	중위값	1,446,481	145,950	56,000	875,776	2,629,911	549,513	-	3,236,820
	최소값	956,918	25,000	5,225	55,000	1,705,000	311,850	553,760	1,740,017
	최대값	1,839,859	192,700	171,701	1,205,000	3,291,411	690,830	654,130	3,974,871
전북	가중평균	1,849,934	132,634	92,226	1,443,027	3,511,494	707,302	77,362	4,265,975
	응답수	4	4	3	4	4	4	2	4
	노조평균	1,656,867	111,427	62,102	1,192,622	3,007,492	812,380	80,267	3,860,005
	중위값	1,771,641	108,280	35,450	1,235,179	3,130,696	674,176	-	3,766,650
	최소값	1,251,828	86,681	15,596	836,564	2,175,073	581,390	77,200	3,498,483
	최대값	1,967,197	152,049	135,259	1,635,935	3,890,440	1,357,999	83,333	4,641,816
충남	가중평균	1,561,812	530,941	784,862	996,632	2,687,150	1,027,965	421,049	3,515,444
	응답수	17	17	9	14	14	8	8	16
	노조평균	1,449,157	251,785	321,258	1,032,107	2,759,445	804,142	436,277	3,340,143
	중위값	1,395,151	135,123	97,411	942,856	2,456,493	1,090,580	307,355	3,750,000
	최소값	1,173,210	15,000	11,534	600,240	2,029,703	200,000	118,239	1,965,609
	최대값	2,000,000	1843,762	1,596,002	1,557,815	4,629,913	1,220,590	1,500,000	4,376,085

1. 지역별 임금 실태

구분		기본급	고정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고정급여	변동급	성과급	임금총액
충북	가중평균	1,466,510	278,511	244,049	1,163,238	2,820,388	581,871	397,622	3,855,243
	응답수	15	13	6	13	15	10	7	14
	노조평균	1,414,096	179,084	137,014	972,708	2,468,121	764,498	558,637	3,678,057
	중위값	1,350,000	154,174	150,000	1,113,942	2,480,000	539,600	425,000	3,746,867
	최소값	1,150,000	27,714	30,000	139,980	1,455,000	198,312	199,542	2,347,518
	최대값	1,862,000	345,000	265,400	1,349,812	3,405,000	1,789,000	1,617,986	5,219,000
포항	가중평균	1,560,696	358,544	500,589	1,246,734	3,076,275	1,025,875	502,629	4,284,684
	응답수	8	9	7	7	7	4	2	9
	노조평균	1,462,638	249,870	368,537	1,117,486	2,981,598	765,905	428,917	4,004,019
	중위값	1,528,604	133,155	394,292	1,025,722	3,059,091	-	-	3,991,885
	최소값	1,164,180	106,975	77,750	695,061	1,164,180	180,000	246,000	2,200,824
	최대값	1,948,620	881,633	996,592	1,580,547	3,663,470	1,276,155	611,833	5,588,025

2) 규모별 임금실태

구분		기본급	고정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고정급여	변동급	성과급	임금총액
전체	가중평균	1,528,759	206,662	274,350	1,137,513	3,028,000	705,474	515,746	3,847,992
	응답수	148	151	98	140	147	86	68	137
	노조평균	1,488,434	242,168	239,956	1,027,474	2,797,024	766,748	448,119	3,516,375
	중위값	1,440,000	129,411	95,000	957,400	2,687,500	680,296	341,586	1,839,370
	최소값	875,117	15,000	3,800	50,000	1,164,180	125,000	77,200	1,740,017
	최대값	2,969,417	2,390,000	1,596,002	2,420,336	5,411,784	2,634,842	1,617,986	6,908,930
1-49명	가중평균	1,466,784	345,000	124,462	853,125	2,499,297	504,149	329,292	3,109,896
	응답수	12	16	8	17	17	11	6	15
	노조평균	1,463,164	397,647	123,029	839,086	2,597,583	490,237	265,954	3,067,644
	중위값	1,570,000	154,000	85,000	721,610	2,300,000	430,150	163,638	
	최소값	1,150,000	40,625	27,860	50,000	1,647,518	292,380	83,333	2,032,106
	최대값	1,800,000	2,390,000	380,000	1,963,650	5,021,135	100,000	800,000	5,332,479

2) 규모별 임금 실태

구분		기본급	고정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고정급여	변동급	성과급	임금총액
50-99명	가중평균	1,460,097	158,468	278,015	952,868	2,605,866	706,813	443,382	3,291,366
	응답수	24	32	22	25	26	21	10	30
	노조평균	1,448,027	155,716	264,597	944,093	1,444,895	693,414	424,236	3,273,950
	중위값	1,449,474	114,374	100,000	894,302	2,594,082	650,000	341,586	3,368,006
	최소값	875,117	50,000	12,688	636,514	875,117	180,000	127,643	1,948,000
	최대값	2,000,000	881,633	1,557,973	2,210,321	2,000,000	2,013,388	1,418,797	5,039,000
100-299명	가중평균	1,450,169	248,257	285,398	1,036,168	2,812,778	901,156	506,940	3,546,375
	응답수	65	71	45	66	72	36	33	64
	노조평균	1,442,632	227,697	263,617	1,027,132	2,756,134	887,407	506,424	3,515,266
	중위값	1,420,000	157,900	82,135	987,902	2,666,607	754,823	425,000	3,500,000
	최소값	956,918	15,000	3,800	518,850	1,164,180	198,312	107,370	1,740,017
	최대값	1,961,338	1,930,000	1,596,002	1,700,000	5,146,239	2,634,842	1,617,986	6,605,838
300-999명	가중평균	1,597,428	296,926	167,718	1,187,173	3,145,384	762,525	394,801	3,968,212
	응답수	22	26	17	25	26	13	14	21
	노조평균	1,570,271	315,311	203,353	1,182,472	3,140,748	827,221	418,280	4,017,465
	중위값	1,590,000	139,546	85,613	1,161,087	3,029,344	797,730	316,667	3,766,650
	최소값	1,100,000	25,000	15,596	550,000	1,705,000	125,000	91,667	1,800,000
	최대값	2,034,180	2,080,829	1,250,000	2,420,336	5,412,784	1,330,416	1,225,967	6,908,930
1000 이상	가중평균	1,030,916	138,250	311,247	1,180,510	3,121,382	609,610	566,101	4,007,105
	응답수	4	7	6	7	7	6	5	7
	노조평균	1,824,792	171,786	231,761	1,232,438	3,191,476	610,078	413,222	4,023,773
	중위값	1,967,197	146,310	251,683	1,166,933	3,108,773	601,786	243,111	3,835,456
	최소값	1,433,710	97,484	5,038	976,455	2,458,615	331,203	77,200	2,921,761
	최대값	2,245,346	389,892	675,013	1,635,935	4,148,986	1,147,286	1,140,124	5,702,406

총 무 활 동

제1장 회의활동

1. 2012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3. 기타 회의 개최
4. 회계감사수검

제2장 노총장학재단 및 금속노련 장학금 배정지급

제1장 회 의 활 동

1.2012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

1. 대회개최일시 : 2012년 5월 10일 13:30

2. 대회개최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3번지)

3. 참 석 자 : 재적대의원 701명중 657명 참석

4. 결 의 사 항

안 건	결 의 사 항
가. 2011년도 사업보고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나. 회계감사보고및 2011년도 결산보고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다. 임원선출(위원장) 건	- 총 투표 652명 중 기호1번 김준영 240표(36.8%) 기호2번 김만재 412표(63.2%) (김만재 후보 당선)
라. 임원선출,	- 총 투표 378명 중 찬성 364표 반대 14표: 선출됨
중앙위원선출,	- 총 투표 391명 중 찬성 381표 반대 10표: 선출됨
노총과건대의원 선출 건	- 총 투표 393명 중 찬성 385표 반대 8표: 선출됨
마.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바. 2012년도 예산 수립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사. 기타토의	

--	--

2012 선출 임원 명단

No	직 책	소 속	성 명	성 별
1	위원장	SK하이닉스	김만재	
2	수석부위원장	LGDisplay	석호진	
3	부위원장	LG전자	정일진	
4	부위원장겸사무처장	OTIS엘리베이터	김성수	
5	부위원장	한국특수공구	서갑순	
6	부위원장	에이엔피	김길섭	
7	부위원장	머큐리	김영국	
8	부위원장	하이드로젠파워	강영석	
9	부위원장	동양강철	오기순	
10	부위원장	두원공조	정덕순	
11	부위원장	한국야금	왕용호	
12	부위원장	대선조선	황대선	
13	부위원장	포스코특수강	이상철	
14	부위원장	국일인도트	이동철	
15	부위원장	한국파워트레인	김수환	
16	부위원장	LG전자	서성목	
17	부위원장	TCC한진	정상준	
18	부위원장	대우일렉트로닉스민주	최정열	
19	부위원장	세아베스틸	설승욱	
20	부위원장	한일전기	석승희	
21	부위원장	LG전자	배상호	
22	부위원장	OTIS엘리베이터	김기태	
23	부위원장	SK하이닉스이천	박태석	
24	부위원장	스태츠칩팩코리아	윤동현	
25	부위원장	LG이노텍	이기동	
26	부위원장	세진전자	문광주	여
27	부위원장	SK하이닉스이천	윤자심	여
28	부위원장	팬택	박은미	여
29	부위원장	용성코리아	이영자	여
30	부위원장	동국제강	박상규	
31	부위원장	대덕GDS	김광호	
32	부위원장	대동모벨시스템	한명선	여
33	부위원장	인팩	정금순	여
34	부위원장	SK하이닉스청주	김준수	
35	부위원장	매그나칩반도체	조경주	
36	부위원장	YK Steel	전광언	
37	부위원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정상욱	
38	부위원장	세플러코리아	장준영	

39	부위원장	고려아연	김봉영	
40	부위원장	평화발레오	김동준	
41	부위원장	평화산업파브코	신석곤	
42	부위원장	LG실트론	한창욱	
43	회계감사	대우일렉서비스	신영래	
44	회계감사	대신기계	강호석	
45	회계감사	희성금속	이재성	
46	회계감사	대철	황성원	
47	회계감사	LGDisplay	한규숙	여

2012 중앙위원 선출 명단

No	소 속	성 명	성별
1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장세종	
2	LG전자	윤혜진	여
3	팬택	박덕규	
4	신한일전기	박종현	
5	스태츠칩팩코리아	이현희	여
6	동부제철	이기봉	
7	린나이코리아	김제곤	
8	광명전기	윤석진	
9	PN풍년	장영기	
10	오스텀	고석희	
11	존슨컨트롤즈	이창수	
12	새론오토모티브	장재성	
13	삼화전기	전병준	
14	LS산전	이해관	
15	현대모비스	모경림	여
16	유니온스틸	박성균	
17	대한제강	윤각열	
18	부산주공	안병철	
19	LG전자	하영규	
20	대성사	이권언	
21	GMB코리아	김은겸	
22	삼성공조	박한봉	
23	영신정공	장복이	

24	대한제당	김원출	
25	이수페타시스	이해식	
26	타이코AMP	윤정일	
27	에스엘	박칠규	
28	삼성제침	권오탁	
29	노벨리스코리아	김성용	
30	델코	김영철	
31	LGDisplay	권동섭	
32	LGDisplay	김미희	여
33	조선선재	김이두	
34	홍화	손제형	
35	대유신소재	김학송	
36	로케트전기	남규현	

2012 노총파견 대의원 선출 명단

번호	지역	조 직 명	직 위	성 명	성별
1	서울	LG전자	위원장	배상호	
2	서울	LG전자	부위원장	김영	
3	서울	LG전자	부위원장	윤영식	
4	서울	LG전자	부위원장	서성목	
5	서울	LG전자	부위원장	임채현	
6	서울	LG전자	부위원장	하영규	
7	서울	LG전자	여성부장	윤혜진	여
8	서울	OTIS엘리베이터	금속연맹사무처장	김성수	
9	서울	한국특수공구	위원장	서갑순	
10	서울	롯데알미늄	여성부장	김선옥	여
11	경기	SK하이닉스이천	위원장	박태석	
12	경기	SK하이닉스이천	사무국장	이인용	
13	경기	SK하이닉스이천	조합원	정상영	
14	경기	SK하이닉스이천	조합원	김만재	
15	경기	SK하이닉스이천	조합원	김영철	
16	경기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최근만	
17	경기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윤자심	여

18	경기	SK하이닉스이천	문화실장	이영숙	여
19	경기	LG 이노텍	위원장	이기동	
20	경기	LG 이노텍	부지부장	오선숙	여
21	경기	스태츠칩팩코리아	위원장	윤동현	
22	경기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김정숙	여
23	경기	에이엔피	경기본부의장	김길섭	
24	경기	팬택	위원장	박덕규	
25	경기	일진제강	위원장	이웅재	
26	경기	용성코리아	위원장	이영자	여
27	경기	세진전자	위원장	문광주	여
28	경기	신한일전기	위원장	박종현	
29	경기	이화다이하몬드	위원장	최진용	
30	인천	머큐리	위원장	김영국	
31	인천	동국제강	위원장	박상규	
32	인천	동부제철	위원장	이기봉	
33	인천	한국샤프	사무국장	우옥란	여
34	안/시	대덕GDS	위원장	김광호	
35	안/시	하이드로젠파워	위원장	강영석	
36	안/시	동서기공	위원장	안성욱	
37	안/시	광명전기	위원장	윤석진	
38	안/시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한명선	여
39	충남	두원공조	위원장	정덕순	
40	충남	오스템	위원장	고석희	
41	충남	존슨콘트롤즈	위원장	이창수	
42	충남	SL 서봉	위원장	박종윤	
43	충남	새론오토모티브	위원장	장재성	
44	충남	인팩	지부장	정금순	여
45	충북	SK하이닉스청주	위원장	김준수	
46	충북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최종영	
47	충북	SK하이닉스청주	사무국장	문채호	
48	충북	SK하이닉스청주	여성부장	한주연	여
49	충북	SK하이닉스청주	여성부장	백서은	여
50	충북	매그나칩반도체	위원장	조경주	
51	충북	매그나칩반도체	지부장	배준호	

52	충북	현대모비스	위원장	이승현	
53	충북	한국야금	위원장	왕용호	
54	충북	삼화전기	위원장	전병준	
55	충북	넥스코리아	위원장	최경천	
56	충북	LS 산전	조직국장	육미숙	여
57	부산	부산지역본부	의장	황대선	
58	부산	유니온스틸	위원장	박성균	
59	부산	YK 스틸	위원장	전광언	
60	부산	대한제강	위원장	윤각열	
61	부산	부산지역본부	총무부장	김민경	여
62	경남	한국항공우주산업	위원장	정상욱	
63	경남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무국장	이종택	
64	경남	포스코특수강	위원장	이상철	
65	경남	한국철강	위원장	배동한	
66	경남	두원중공업	위원장	정진용	
67	경남	스타리온성철	위원장	진용범	
68	경남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여
69	경남	유니크	위원장	허영복	
70	경남	텐소풍성전자	위원장	신윤자	여
71	울/경	풍산	위원장	정명수	
72	울/경	국일인토트	위원장	이동철	
73	울/경	동국실업	위원장	문부근	
74	울/경	대한제당	지부장	김원출	
75	대/경	한국파워트레인	위원장	김수환	
76	대/경	에스엘	위원장	박칠규	
77	대/경	이수페타시스	위원장	이해식	
78	대/경	평화산업	위원장	신석곤	
79	대/경	타이코AMP	위원장	윤정일	
80	대/경	평화발레오	위원장	김동준	
81	대/경	평화오일셀	위원장	이상윤	
82	대/경	에스엘	여성부장	조경자	여
83	대/경	이수페타시스	여성부장	오은주	여
84	대/경	평화오일셀	여성부장	김영옥	여
85	구미	LG Display	위원장	석호진	

86	구미	LG Display	부위원장	권동섭	
87	구미	LG Display	사무국장	채근욱	
88	구미	LG Display	사무장	박기철	
89	구미	LG Display	대의원	윤중서	
90	구미	LG Display	대의원	전문배	
91	구미	LG Display	대의원	정영호	
92	구미	LG Display	대의원	박경선	
93	구미	LG Display	기획부장	정진영	
94	구미	LG Display	기획부장	손동락	
95	구미	LG Display	대의원	김연진	여
96	구미	LG Display	대의원	정빛나	여
97	구미	LG Display	대의원	서효진	여
98	구미	LG Display	대의원	김일상	여
99	구미	LG Display	대의원	이은진	여
100	구미	LG Display	여성부장	한규숙	여
101	구미	LG Display	여성부장	김미희	여
102	구미	LG 실트론	위원장	한창욱	
103	구미	LG 실트론	부위원장	옥윤수	
104	구미	LIG 넥스원	위원장	원종도	
105	구미	일성기계	위원장	손진명	
106	구미	태평양금속	위원장	김수문	
107	포항	그린산업	위원장	강학중	
108	포항	TCC 한진	위원장	정상준	
109	포항	세아특수강	위원장	임성수	
110	포항	홍화	위원장	손제형	
111	광/전	대우일렉트로닉스민주	광/전 의장	최정열	
112	전북	세아베스틸	위원장	설승욱	
113	전북	대유신소재	위원장	김학송	
114	강원	한일전기	위원장	석승희	

후보대의원명단

번호	지역	조 직 명	직 위	성 명	성별
1	서울	LG전자	부위원장	이상걸	
2	서울	LG전자	부위원장	김태훈	
3	서울	LG전자	조직국장	김해광	
4	안/시	SL 라이텍	위원장	김삼두	

5	경기	리한	위원장	민한기	
---	----	----	-----	-----	--

2.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회의

1) 제169차 중앙위원 회의

개최일시: 2012년 5월 3일(목) (14:00)

개최장소: 우리노련 회의실

참석인원: 재적인원 106명중 참석:33명 위임:44 총 77명

● ——— 안전

▶ 보고사항

1. 파견전임자 관련 특위 결과

- 특위 회의 결과를 김홍용 본부장이 설명하다.

▶ 토의사항

1. 정기대의원대회 안전

- 회순심의

- 표창자 확정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심의에 관한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2012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명단 확정 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규약개정 안전 심의 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기타토의

2) 제170차 중앙위원 회의

개최일시 : 2012년 12월 4일(화) 13:30

개최장소 : 우리노련 회의실

참석인원 : 재적인원 78명중 참석 42명

● — 안 건

▶ 보고사항

1. 자동차대책위 활동보고건
 - 전종덕 국장이 설명하다.
2. 위원장 지역본부 간담회 보고건
 - 기타토의 시간에 하다.
3. 2012년도 임담협 결과 보고건
 - 박상욱 부장이 설명하다.

▶ 토의사항

1. 예산추경 및 전용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2. 재정사업 진행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기타토의

- 위원장 지역순회 내용 설명하다.

3) 제171차 중앙위원 회의

개최일시 : 2013년 3월 7일(목) 14:00

개최장소 : 연맹 회의실

참석인원 : 재적인원 72명중 참석 42명

● — 안 건

▶ 보고사항

1. 상급단체파견자 활동비 반납건
 - 김성수 사무처장 설명하다.
2. 자동차업종 대책위 활동건
 - 전종덕 정책국장 설명하다.
3. 교육일정 홍보건
 - 전종덕 정책국장 설명하다.
4. 연맹 재정사업 현황건
 - 김성수 사무처장 설명하다.

▶ 토의사항

1. 가예산승인(2013년 4월 - 5월)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2. 201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진행에 관한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3. 2013년도 임단투지침(안) 확정건
 - 안건으로 제시된 2안 기본급대비 8.8% 정액 134,929원으로 확정됨.
4. 규약소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기타토의

4) 중앙집행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일시 : 2012년 12월 4일(화) 13:00

개최장소 : 우리노련 회의실

금속노련 중앙집행위원

소 속	이 름	직 책	지 역
LG전자	김해광	정책기획2국장	서울
LG디스플레이과주	박기철	조사통계국장	경기
SK하이닉스이천	이인용	홍보선전국장	“
대림통상	이영득	대외협력국장	인천
대덕전자	허일욱	조직2국장	안산.시흥
삼 동	안교신	정치국장	충북
태광SCT	하두호	통일사업국장	부산
세원셀론텍	김성수	노사대책2국장	경남
노벨리스울산	남재환	문화국장	울산.경주
AST	윤재욱	법규국장	대구.경북
매그나칩반도체구미	배준호	쟁의국장	구미
선화이엔지	진선일	산업안전국장	포항
화천기공	이종옥	노사대책1국장	광주.전남

3.기타 회의개최

1) 지역본부의장 회의

◆개최일시 : 2012년 5월 24 - 25

◆개최장소 : 대명리조트 단양

- 안건 : 1. 신입집행부 상견례
- 2. 현안문제 토의

2)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회의

◆일시 : 2012년 8월 8일(수) 11시

◆장소 : 금속노련 회의실

◆재적인원: 42명 참석 19명

- 안건 : 1. 한국노총 선거인 대회건
- 2. 우리노련 재정사업에 관한건
- 3. 기타 노동현안 토의

3) 파견전임자 관련 특위 회의

◆일시 : 2012년 3월 22일(목) 14:00~ 23일(금)

◆2) 장 소 : 금속노련 회의실

지역	특위 위원 추천자	비 고
서울	김기태 사무국장 직대	
경기	민한기 사무국장	
인천	이영득 대림통상 위원장	
안산시흥	강영석 의장	
대전	윤익병 사무국장	
충남	장재성 사무국장	

충북	전병준 사무국장	
부산	윤각열 대한제강 위원장	
경남	김은겸 사무국장	
울,경	추천자 없음	
대,경	황성원 사무국장	
구미	손진명 사무국장	
포항	임성수 세아특수강 위원장	
광,전	김홍관 캠프 위원장	
전북	김학송 사무국장	
강원	이병국 오토리브 위원장	
연맹 간사	김홍용 조직강화본부장	

4) 금속노련 창립 51주년 기념식

- 개최일시 : 2012년 8월 24일(금) 11:00
- 개최장소 : 안양 병목안(원두막)

4. 회계감사 수검

1) 2011 회계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수검

- 1) 일 시 : 2012년 4월 26일 11시
 - 2)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 3) 내 용 : 2011회계년도 하반기(2011.10.1-2012.3.31)회계처리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다.
- 회계감사위원 : 김영국(머큐리), 하헌문(동일알루미늄)
강호석(대신기계), 황성원(대철)

2) 2012 회계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 1) 일 시 : 2012년 11월 6일 11시
 - 2)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 3) 내 용 : 2012회계년도 상반기(2012.4.1-2012.9.31)회계처리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다.
- 회계감사위원 : 김영국(머큐리), 강호석(대신기계), 이재성(희성금속)
황성원(대철), 한규숙(LGDisplay)

제 2 장 노총장학재단 및 금속노련 장학금 배정지급

1. 취지

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우리노련에 배정된 2012학년도 장학금 55,400,000원을 수령하여 가맹노조의 맹비납부 실적에 따라 배정하였다.

또한 금속노련 장학금을 2009년도부터 신설하여 장학금 20,000,000원을 산하 단위노조의 조합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신입생 포함)중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당해 조직기구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선정하여 배정 하였다.

2.년도별 장학금 수혜 내역

년도별	중	고	대학(2년)	대학(4년)	수혜자계	지급총액
1998	97	107	3	1	208	169,340,000
1999	56	118	5	1	180	160,480,000
2000	66	82	2		150	101,400,000
2001	51	86	5	2	144	105,300,000
2002	30	72	4	2	107	80,200,000
2003	35	45	1	1	82	66,300,000
2004		64	1	1	66	67,800,000
2005		61	2	1	64	66,200,000
2006		70		2		72,440,000
2007		76	2/방통대1	2	81	83,990,000
2008		76	방통대1	1	83	85,340,000
2009		63	2/방통대1	2	68	71,000,000
2010		59	방통대1	2	62	67,060,000
2011		50	2	2	54	62,000,000
2012		43	3/방통대1	2	49	55,400,000
금속노련 장학금 수혜 내역						
년도별	중	고	대학(2년)	대학(4년)	수혜자계	지급총액
2009		40				20,000,000
2010		40				20,000,000
2011		40				20,000,000
2012		40				20,000,000

조 직 활 동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 지역본부 임원명단
 - 단위노동조합 현황
2. 지부현황
3. 신규조직현황
4. 대표자변경 조직 현황
5. 해산 및 이탈노동조합 현황
6. 쟁의사업장 현황
7. 조정사업장 현황
8. 연도별 조합원 증감 현황
9.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10. 노총 임시선거인대회
11. 2012노동절마라톤대회
12. KAI 민영화 매각저지투쟁
13. 고용노동부의 개별노사관계개입 실태조사
및 대응
14. 전국노동자 대회
15. 대덕전자 노조말살 저지투쟁
16.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 서울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9. 12. 28.
- ②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 가 57 노동복지회관 405
- ③ 전화 번호 : 02)2676 - 4823 FAX : 02)2676 - 4824
-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서 갑 순	한국특수공구	2010.12.21
지도위원	강 창 영	동부제강	2010.12.21
수석부의장	장 세 중	불보건설기계코리아	2010.12.21
부 의 장	배 상 호	LG전자	2010.12.21
부의장겸 사무국장	장 세 중	불보건설기계	2013. 2. 6
회계감사	강 신 철	대한전선	2010.12.21

⑤ 서울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KC코트렐	전상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1 옥도빌딩
LG전자	배상호	서울시 영등포구문래동6가 36 LG강서빌딩
OTIS엘리베이터	김기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46 제일빌딩 별관2층
경보전기	송제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동 284-5
대우일렉서비스	신영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7층
롯데알미늄	이병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장세중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173 불보B/D 6층
세일엠텍	엄숙화	서울 구로구 오류동 77-17
이피네트시스템즈	이병균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5차 705호
한국특수공구	서갑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

2) 경기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2. 9. 27.
 ②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3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7층)
 ③ 전화 번호 : (031) 233-3580/1 FAX : (031) 233-3586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 장	김길섭	A&P	2012 11. 21
부 의 장	정상영	SK하이닉스	
부 의 장	박덕규	팬택	
부 의 장	박명규	한국키스톤발부	
부 의 장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부 의 장	박태석	SK하이닉스	
부 의 장	이웅재	일진제강	
부 의 장	강호석	대신기계	
부 의 장	김영	LG전자 평택1지부	
부 의 장	권동섭	LG디스플레이 파주지부	
회계감사	원철식	A&P	
회계감사	이호목	LG이노텍 오산지부	
회계감사	박종현	신한일전기	
사무국장	민한기	리한	

⑤ 경기지역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DENSO풍성	유성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918-1
JMI	송해광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부대로 830-70
LG이노텍	이기동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25-1
SK하이닉스이천	박태석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K하이이엔지	김남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TX엔진	성형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18
TDK한국	지효선	경기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460
가온전선	신구선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66
경동산업	전병윤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509
니콘코리아	한상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7-24
대광다이캐스트	김수룡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25

대신기계	강호석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쾌랑리 480-1
대웅기계	김만근	경기 화성시 안녕동 20-1 근로자복지관내
도루코	나병수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931
동화프라임	박운병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26 - 10
동희정공	박노용	경기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1030-2
리한	민한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64 마도산업단지 2B1L
리한도어	안영철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9-6
베올리아위터코리아	노용성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부천지역	김준영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93-1 근로자복지회관3층
삼기오토모티브	박진호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1217
삼아알미늄	박찬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 - 2
삼양엔텍	김정협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4
삼영전자	지수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1
삼화전자공업	김진옥	경기도 용인시 표인구 남사면 북리 124-2
서울동광	박광득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상대원동)
서진캠	김명진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884 어연한산지방공단내2b-5L
성문전자	채경석	경기 평택시 세교동 539-4 평택공단
성안기계	심규성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7 마도지방산업단지 10B1L
세진전자	문광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57-1
스태츠칩팩코리아	윤동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신한일전기	박종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
썬터온	조성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90-2
에이엔피	원철식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4-5
영진아이엔디	김진일	경기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324
용성코리아	이영자	경기 하남시 천현동 296-10
이젠텍	박정근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577-6
이큐베스텍	남종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이화다이하아몬드	최진용	경기도 오산시 원동 520 - 2
인알파코리아	문형호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64-4
일진전기	안명호	경기 화성시 안녕동 112-83
일진제강	이웅재	경기 화성시 정남면 쾌랑리 446-1
전공	이덕훈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케이티씨	김형식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160
코모스	문장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먹우리 122-11
테크팩솔루션	정수환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1리 8-1
파주전기조차	오유진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883-5
팬텍	박덕규	경기 김포시 통진읍 웅정리 110-1번지
포레시아배기콘트 롤시스템코리아	유원기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1467

필코전자	정덕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81
하나모들	변주현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이화리 487-9
하이디스	고우정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하이로지텍	박이순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한국번디	이상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206 - 1
한국체인	김호인	경기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177
한국키스톤발부	박명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곡리 270-4
현대엘리베이터	권순평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3) 인천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1. 2.

②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089 - 3

③ 전화 번호 : (032) 437 - 8505 FAX : (032) 437 - 8504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 장	김 영 국	머큐리	2013.2. 4.
상임지도위원	황 창 배	대우일렉트로닉스	"
"	손 종 홍	대한제당	"
" 며	김 재 업	동국제강	"
"	김 만 용	대우일렉트로닉스	"
"	백 승 탁	동부제철	"
수석부의장	오 인 상	삼성공업	"
부 의 장	안 경 봉	서울엔지니어링	"
"	이 명 선	청우하이드로	"
"	박 재 혁	한국샤프	"
"	박 상 규	동국제강	"
"	김 영 철	후지테크코리아	"
"	이 기 봉	동부제철	"
"	이 재 성	희성금속	"
사무국장	김 봉 수	경 신	"
회계감사	이 광 열	대한제당	"
"	이 영 득	대림통상	"
"	한 의 환	로얄&컴퍼니	"

⑤ 인천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경신공업인천공장	김봉수	인천시 서구 가좌3동 538-3
대동시스템	김정운	인천 남동구 남촌동 607-2 남동공단 3B3L
대동하이렉스	류성룡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2-5 151B-5L
대림통상	이영득	인천시 서구 금곡동 158-6
대우일렉트로닉스	김광섭	인천 부평구 청천2동 412-2
대한제당	이광열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6-14
동국제강	박상규	인천시 동구 송현3동 1
동보	홍은성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06-1 2B-2L
동부제철	이기봉	인천시 서구 가좌동 590 - 1
로알&컴퍼니	한의환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414-3
루보	문봉인	인천시남동구고잔동640-12 남동공단71B 13L
린나이코리아	김제곤	인천 부평구 십정1동 560-2
머큐리	김영국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6
삼성공업	오인상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8 4BL 1LT
삼양감속기	최인석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6-2 남동공단 25BL 3LT
서울엔지니어링	안경봉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1-1
신한테크노일반	조명선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0-9 36B 10L
심팩	문재식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4
우일정밀	양승조	인천시 남구 도화3동 694 - 1
인켈	하재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8번지
청우하이드로	이명선	인천시 서구 경서동 682-14
탐금속	박득률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63-6 96B-7L
한국샤프	박재혁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18
한일튜브	안종설	인천시 서구 경서동 689 - 3
후지테크코리아	김영철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62-2 98B 3L
희성금속	이재성	인천시 서구 가좌3동 548 - 1

4) 안산.시흥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7. 12. 16.

② 소 재 지 : 안산시 선부3동 1076-9 근로자복지관 3층

③ 전화 번호 : (031) 410 - 8601 FAX : (031) 401 - 8602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윤석진	광명전기	2012.11.20
상임고문	김광호	대덕GDS	"
	강영석	삼보오토	"
	김삼두	sl라이텍	"
수석부의장	박용국	삼목강업	"
부 의 장	김영운	아메리칸스탠다드	"
	장영기	pn풍년	"
	유원기	포레시아 배기	"
	정교태	포스코ast	"
	송병천	태양금속	"
	지해갑	진영공업	"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
	방운제	일진전기	"
	허일욱	대덕전자	"
	윤여경	아이아	"
	김영철	우진공업	"
	김진연	서진오토모티브	"
사무국장			
회계감사			

⑤ 안산.시흥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PN풍년	장영기	안산시 초지동 651번지 9B-61호
TRW	윤황운	안산시 원시동 780-3 10-14블럭
경용기계	송두영	안산시 성곡동646-5 반월공단602-7
광명전기	윤석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89번지 2-15
교세라엘코코리아	김진태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0 4-1B
남양공업	문상림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0
내소날몰텍	하신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34
대덕GDS	김광호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9-3
대덕전자	허일옥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0-1
대동모벨시스템	한명선	시흥시 정왕동1294-4 시화공단 4나 - 305
대풍공업	장정식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9-3
동서기공	안성욱	시흥시 정왕동1292-5나 507
비츠로테크	강상욱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5-2
삼목강업	박용국	안산시 초지동 654-3 반월공단 9-71-2
삼보오토	강영석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4 - 2
서진산업	김진업	시흥시 정왕동 1281번지(3다301호)
서진오토모티브	김진연	시흥시 정왕동 1280-9
선도전기	정상호	안산시 원시동 734 5B 6호
쉐폴러안산유한회사	강일환	안산시 신길동 1054-2 603-2B
신화실업	최형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661-4 시화공단 4다 706호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	김영운	안산시 목내동 398 - 14
아이아	윤여경	안산시 성곡동 636-2
아페리오	곽원민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4-6
에스엘라이텍	김삼두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61
에스엘미러텍	김재경	시흥시 정왕동 1260-1 2나 202호
우진공업	김영철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48
위스코	한덕동	시흥시 정왕동1277-5시화공단3나706B
유엔씨	송대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9-5
유택솔루션	박권구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다 506호
일진전기(반월)	방운제	안산시 목내동 472 - 1(B14-14)

진영공업	지해갑	시흥시 정왕동 1276-14 시화공단 3다 201호
태양금속	송병천	안산시 성곡동 595
포스코AST	정교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3-820
한샘	김기정	안산시 성곡동 665 시화공단 5라 201
한영알코비스	김윤식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1-1 4라 402호
홍진정공	이정환	안산시 원시동 780 - 1, 10 - 8 B

5) 대전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30.
 ②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4 번지
 ③ 전화 번호 : (042) 488 - 9057 FAX : (042) 488 - 9058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 장	오 기 순	동양강철	2010.07.06
부 의 장	이 남 철	진합	2010.07.06
회계감사	정 제 중	세아이엔티	2010.07.06
사무국장	윤 익 병	남선기공	2010.07.06

⑤ 대전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남선기공	윤익병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50 - 10
동양강철	오기순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75-2 3공장
세아이엔티	정제중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8-1
진합	이남철	대전 대덕구 문평동 48-12

6) 충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4. 5. 10.

②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원성동 627-3 근로자복지회관 3 층

③ 전화 번호 : (041) 565 - 8001 FAX : (041) 565 - 9001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정덕순	두원공조	2010.05.27
수석부의장	양시준	동양철관	2010.05.27
회계감사	전성복	신원	2010.05.27
회계감사	김상규	한국하니웰	2010.05.27
사무국장	장재성	새론오토모티브	2010.05.27

⑤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DENSO풍성홍성	박종화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254
LS메탈	김병식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78
SL서봉	박종윤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50-8
경신전선	채준병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193-1
귀뚜라미범양냉방	김성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번지
대양금속	안성길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222
대원전선	백승준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134-7
대한전선	강진연	충남당진군고대면대호만로 870번지
동양철관	양시준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7
동원금속아산공장	강춘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12-3
동일알루미늄	문상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78-1
동희로파	이홍재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08번지
동희오토협력업체	백광현	충남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703-11
두원공조	정덕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산16 - 1
디젠스	전재용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12-3

삼신	김학희	충남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131번지
새론오토모티브	장재성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6-1
새화신	김영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903-7
성일산업	이종택	충남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97
신원	전성복	충남 아산시 신창면 공화리 542-4
쌍신전자통신	정명식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 - 1
아산성우하이텍	임갑병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615
엠이엠씨코리아	표선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27
오스텍	두병비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462-1
오텍	정종명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930
우영산업	연기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2-2
인지AMT	나명구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563-10
인팩	최중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625-2
전진CSM	윤정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산3-1
제이에스전선	이철용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3길 39
존슨컨트롤즈	이창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 58-3
캐논코리아	최용호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27번지 센트럴프라자3층
코리아휠	황호경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7
태성전장	박현명	충남 천안시 성거읍 모전리 306-2
풍산FNS	최용웅	충남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57-2
한국에프엠	김길중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리 666-8
한국하니웰	김상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56번지
헤인	노재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55 제2공단 2-1
환영철강	이방섭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7
휴스틸	강경호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569-1

7) 충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8. 12. 31.

②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0 - 15 번지

③ 전화 번호 : (043) 267 - 1418 FAX : (043) 266 - 5088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광 희	갑 을 메 탈	2013. 1. 29.
부 의 장	김 준 수	SK하이닉스	"
부 의 장	김 선 중	국제종합기계	"
부 의 장	윤 영 훈	두산전자	"
부 의 장	정 승 주	성우오토모티브	"
사 무 국 장	강 현 민	한라스택폴	"
회 계 감 사	이 승 현	현대모비스	"
회 계 감 사	조 경 주	매그나칩반도체	"
조직쟁의부장	이 상 용	한국보그워너TS	"
노사대책부장	이 재 현	대 성 썬 텍	"
교육홍보부장	이 해 관	L S 산 전	"

⑤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AND전자저울	양재연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162-4
LS산전	이해관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번지 LS산전청주공장
SK하이닉스청주	김준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번지
갑을메탈	김광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408
국제종합기계	김선중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 - 1
극동전선	박재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넥상스코리아	최경천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165
대성썬텍	이재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313 - 69

대진.대창산업	남상무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148-2
동성금속	김태규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
두산전자	윤영훈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산 661
로알테크	전태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1
매그나칩반도체	조경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1번지
백조썬크	손관수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571-1
삼동	안교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산 39
삼화전기	박종훈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2
서울전선	조병선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산 27-1
선일다이파스	조경탁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67-3
성우오토모티브충주	정승주	충북 충주시 용탄동 626-1
에넥스	정운석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55
에스엠알풍정	조홍준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2-14오창과학단지4-9블럭
에스피텍	김정훈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3-5
엔텍	성용제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우지막코리아	이종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380
인지컨트롤스	정찬이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442-7번지
전진중공업	이석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33번지
지씨아이	장대원	충북 충주시 목행동 128-14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이상용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65-4
한국야금	왕용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53 - 16
한국캠브리지필터	유호민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54-6 17/1블럭
한라스텍폴	강현민	충북 청원군 오창읍각리 653-4
현대모비스	이승현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723

8) 부산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8. 6. 26.

② 소 재 지 :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844-14번지 근로자종합복지관(6층)

③ 전화 번호 : (051) 868 - 7601 FAX : (051) 853 - 8770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	선출일자
의장	황대선	대선조선	2010. 2. 2
지도위원	강진호	유니온스틸	2002. 12. 13
	박병용	대창단조	1993. 4. 7
부의장	박성균	유니온스틸	2012. 1. 1
	전광언	YK스틸	2004. 8. 25
	김희근	고려용접봉	1990. 6. 24
	안병철	부산주공	2003. 11. 1
	김재술	동화엔텍	1991. 10. 12
	양재권	태광	2002. 11. 9
	김근수	성우하이텍	1997. 7. 12
	추진호	동희정공	1996. 9. 2
	문창수	대선조선	2008. 3. 1
회계감사	조용석	성광벤드	1999. 11. 27
	황태연	강남	2006. 1. 1
	박창혁	대창단조	2011. 5. 10
사무국장	이재섭	부산주공	2008.1.23

⑥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PSMC	이원익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52번지
SKF코리아	함지원	부산시강서구지사동부산지사과학단지 1171
YK Steel	전광언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90
강남	황태연	부산 사하구 구평동 399
고려용접봉	김희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1 - 3
대동스프링	김호철	부산 강서구 지사동 1179-8
대선조선	임금택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4 가 12
대창단조	박창혁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072-1
대창메탈	이규대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08-5
대한제강	정안식	부산 사하구 신평1동 370-16
동아금속	김호곤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9 - 7
동양제강	이정희	부산 사하구 장림동 333-1
동화엔텍	김재술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75-7
동희정공	추진호	경남 양산시 주남동 541-2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신쌍식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78-1
부산선박목의장	엄민수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 141-7 22통 5반
부산주공	안병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54
삼공사	류국부	부산 강서구 송정동 1464-2
성광벤드	조용석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20번지
성우하이텍	김근수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48-12
오리엔탈정공	정영수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14-1
유니온스틸	박성균	부산시 남구 감만1동 588 - 1
제일전기	서종태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370 - 31
태광	양재권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99-1
태광SCT	하두호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79-1
태양금속	하만옥	부산 사하구 장림1동 1089-5
태원니들	문명수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660 - 1
티와이밸브	지재훈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48 - 1
풍산홀딩스동래	신재도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52
프라이그 파이프스트	허성택	부산 강서구 송정동 1480-7
한국선재	강대후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370-34

한국주철관	김명복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370 - 19
한일스틸	정석금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8 - 6

9) 경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년 1월 9일
- ②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61번지 노동복지회관 3층
- ③ 전화 번호 : (055) 284 - 4021 FAX : (055) 287 - 5052
-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 장	이 상 철	포스코특수강	2011.1.27.
부 의 장	정 진 용	두원중공업	2011.1.27.
부 의 장	하 영 규	LG전자 2지부	2011.1.27.
부 의 장	심 문 보	한국정상화성	2013.2.26.
부 의 장	윤 삼 원	삼 한	2011.1.27.
부 의 장	정 상 옥	한국항공우주산업	2011.1.27.
사무국장	김 은 겹	GMB코리아	2011.1.27.
회계감사	김 거 배	삼우금속	2011.1.27.
회계감사	조 경 옥	세일공업	2011.1.27.
회계감사	이 권 언	대 성 사	2011.1.27.

⑤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 소
DENSO풍성전자	김종국	경남 창원시 외동 853 - 11
DENSO풍성창원	이희기	경남 창원시 성산동 47
GMB코리아	유재현	경남 창원시 성산동 48
KAYA AMA	김남수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010-1
NEK	장원혁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방 산업단지 4-5
S&T모터스	이현우	경남 창원시 성산동 77

STX중공업	장세명	경남 창원시 내동 452-7번지
고려특수선재	김정훈	경남양산시유산동 131-1
대동기어	전종환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42
대동정비	백운효	경남 진주시 상대동 33 - 121
대명공업	김희식	경남 창원시 팔용동 24 - 1
대성사	이권언	경남 양산시 어곡동 869-2
대신금속	이덕세	경남 창원시 팔용동 24 - 11
대흥산업	탁동완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185
두원중공업	정진용	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650
삼성공조	박성춘	경남 창원시 내동 456 - 4
삼우KJS텍	전상갑	경남 창원시 웅남동 45-2
삼우금속	김거배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17
삼한	윤삼원	경남 창원시 웅남동 40 - 2
세방전지	손승일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2
세원셀론텍	김성수	경남 창원시 신촌동 72
세일공업	조경옥	경남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139
센트랄	조유환	경남 창원시 성산동 54
세플러코리아	장준영	경남 창원시 내동 452-9
스타리온성철	진용범	경남 창원시 성산동 66
알코아코리아	지상천	경남 창원시 성주동 54
에스텍	김성중	경남 양산시 유산동 85-12
영흥철강	전덕봉	경남 창원시 신촌동 71-1
유니크	허영복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0-1
캠아이티	한손근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748
케이피이아이	유만봉	경남 창원시 동읍 봉산리 288
태주	설재형	경남 창원시 성주동 48 - 5
포스코특수강	이상철	경남 창원시 신촌동 65
풍산홀딩스	감규상	경남 창원시 성주동 57번지
한국동양유전	유성호	경남 통영시 도남1동 486

한국일선	유철상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74-17
한국정상화성	심문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54-4
한국중천	최해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75-17
한국철강	배동한	경남 창원시 신촌동 70
한국코오베용접	주종일	경남 창원시 팔용동 21-14
한국항공우주산업	정상옥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802
한일제관	김윤근	경남 양산시 유산동 211
현대위스코	김용석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4

10) 울산.경주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9. 9. 1.

②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 - 7

③ 전화 번호 : (052) 276 - 5880 FAX : (052) 274 - 9631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이동철	국일인토티	2013.3.12
부 의 장	문부근	동국실업	“
사무국장	김원출	대한제당	“
조직국장	한정옥	대경기계	“

⑤ 울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DIC	허문근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685번지
LS-Nikko동제련	박성걸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70
고려아연	김봉영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505
국일인토티	이동철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437
금강공업	김종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40-25
노벨리스코리아울산공장	남재환	울산 남구 여천동 1번지

대경기계기술	한정옥	울산시 남구 부곡동 125-2
대동산업	조영철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7-14번지
동국실업	문부근	울산시 북구 연암동 728
동희산업	박영석	울산시 남구 황성동 218
마이테크	장길용	울산 남구 여천동 231-9
명화공업	이상우	울산시 남구 부곡동 273
솔라이트	남현진	경북경주시건천읍용명1리 산 1075-1
엠티로지스틱스	이은규	울산 남구 여천동 231-9
영신정공	장복이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408
우수정기	김성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2차산업단지 4B 8L
조선선재온산공장	김영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21번지
지코	박관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20-4
풍산	정명수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611

11) 대구·경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10.
 ②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7-3번지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③ 전화 번호 : (053) 570 - 7071 FAX : (053) 570 - 7079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수 환	한국파워트레인	2012.12
상임지도위원	신 석 곤	평화산업파브코	
상임지도위원	정 한 근	THN	2011.12
상임지도위원	최 화 순	남선알미늄	
상임지도위원	김 동 준	평화발레오	2012.04
부 의 장	윤 정 일	타이코AMP	
부 의 장	권 태 훈	영 진	

부 의 장	김 기 표	경창정공	2012.07
부 의 장	김 세 홍	삼익정공	2010.08
부 의 장	김 재 철	대성정기	
사 무 국 장	황 성 원	대 철	2010.11
회 계 감 사	전 희 곤	KDS	

⑤ 대구.경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AST	윤재욱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649-3
HSL일렉트로닉스	박원락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1033
KCW	이선희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86
건화트렐러보그	채종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9-4
경창산업	김성호	대구 달서구 월암동 1-201
경창정공	김기표	대구시 달서구 장동 306-56
구영테크	배광수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150-7
금융기계	이상만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666 - 1
남선	김순진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17-9
남선알미늄	최화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13
남양금속	이상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대동금속	김홍무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18
대리정밀	방상훈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21
대성정기	김재철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 - 32
대철	황성원	대구시달서구월성동 1788-6
대한소결금속	김효선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10
대호에이엘	도명석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44
동원파이프	김정식	대구 서구 이현동 42-6
모토닉	김상권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95 - 11
미주오토텍	이상칠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39
산도브레이크	최덕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97
산도테크	박종윤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444
삼보모토스	함경식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080 - 3

삼성제침	권오탁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7-2
삼익THK	박기호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005
삼익정공	김세홍	대구 달서구 월암동 925-2 42B-3L
세명기업	조인수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10
세왕금속	이동율	경북 영천시 망정동 390
세원물산	손광희	경북 영천시 도남동 196
세원이엔아이	예병진	경북 영천시 도남동 196 (세원물산노동조합)
세원정공	이정수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95-9
신영	박남규	경북 영천시 본촌동 440
아세아텍	박노필	대구 달성군 유가면 금리 168
에스엘	박철규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8-6
에스엘라이팅	김채민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 - 4
영진	권태훈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14-11
이수페타시스	이해식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54
일지테크	나영섭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10-3번지
체시스	백두승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411-3
케이디에스	전희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515
타이코AMP	윤정일	경북경산시진량읍 신상리 1191
티에이치엔	정한근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 - 3
평화CMB	박영돈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1
평화ENG	황명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08
평화기공	김경완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26
평화발레오	김동준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236
평화산업(주)파브코	신석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17
평화오일셀	이상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 - 88
평화정공	허도영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1032
한국신동공업	조영혁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103-21
한국파워트레인	김수환	대구 달서구 호산동 357-97
화신	김해용	경북 영천시 언하동412
화신정공	이광우	경북 영천시 도남동 193번지
화신테크	이희찬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4 B - 2 L
효림산업	장병관	경산시 남산면 전지리 718

12) 구미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3. 11. 15.
- ② 소 재 지 : 구미시 공단동 262 - 2 번지
- ③ 전화 번호 : (054) 465 - 3643 FAX : (054) 464 - 3643
-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 장	서 성 목	LG전자 구미지부	2011.12.23
부 의 장	김 동 의	LG 이노텍 구미지부	2011.12.23
부 의 장	원 중 도	LIG 넥스원	2011.12.23
사무국장	손 진 명	일성기계	2011.12.23
회계감사	김 상 일	새로닉스	2011.12.23

⑤ 구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KEC	공국희	구미시 공단동 149번지
LG.Philips Displays	김인배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4
LGDisplay	석호진	구미시 진평동 642 LGDisplay 복지동 2F
LG실트론	한창욱	구미시 시미동 164-2
LIG넥스원	원종도	구미시 공단동 133
노벨리스코리아	장만덕	경북 영주시 적서공단로 23
노틸러스효성	장성룡	경북 구미시 구포동 640번지
텔코	김영철	구미시 황상동 495
새로닉스	김상일	구미시 공단동 169
영풍석포제련소	김정식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55
일성기계공업	손진명	구미시 공단동 194
클레스트라하우저만	이찬길	구미시 옥계2공단로 20
태평양금속	김수문	구미시 공단동 298
현대아이비티	이순갑	경북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106

13) 포항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1. 11. 23.
- ② 소재지 :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 - 11 노동복지회관2층
- ③ 전화 번호 : (054) 283 - 3728 FAX : (054) 283 - 3729
-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정 상 준	TCC 한진	2012.02.10
부 의 장	임 성 수	세아특수강	2012.02.10
사무국장	손 제 형	흥 화	2012.02.10
회계감사	오 정 희	한 금	2012.02.10
	천 정 근	동화기업	2012.02.10

⑤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TCC한진	정상준	포항시 남구 청림동 934-1 한진빌딩
그린산업	장호용	포항시 남구 해도동 64-18
넥스틸	전광중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767-1
대호P&C포항공장	서민호	포항시 남구 호동 597
동부특수강	한규호	포항시 남구 괴동 792-1
동일기업	장문식	포항시 남구 해도 1동 432-1
동일산업 봉강사업부	도창환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3번지
동일산업 합금철사업부	김종하	포항시 남구 장흥동 800번지
동주산업	김삼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77-2
동화기업	천정근	포항시 북구 죽도2동 703-13 반도빌딩 201호
디케이동신	황영수	포항시 남구 괴동 710-1
삼정제강	이남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1리 산 146번지
선화이엔지	진선일	포항시 남구 문예로 65
성우오토모티브	정천균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8
세아제강	박기준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1
세아특수강	임성수	포항시 남구 장흥동 747

에어릭스	김종태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750
유일	최영태	포항시 남구 해도2동 82-14번지 혜성독서실 2층
장원	김영곤	포항시 남구 해도동 87-15
제일테크노스	김성운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
조선선재	김 산	포항시 남구 장흥동 865
코스틸	정삼복	포항시 남구 호동 286
포스코캡텍정비	신인섭	포항시 남구 호동 611
피씨엠	서영신	포항시 남구 대도동 95-14번지 2층
한금	오정희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4
현대종합금속	조준영	포항시 남구 장흥동 90-5
흥화	손제형	포항시 남구 괴동동 117번지

14) 광주·전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30.
 ②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06-2 인애건설 3층
 ③ 전화 번호 : (062) 381 - 8581 FAX : (062) 381 - 8672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조합	선출일자
의 장	최정열	대우일렉트로닉스 민주	2011.1.18
부의장	전춘식	한국차량	
부의장	이주행	한국신광전자	
사무국장	정 관	대유에이텍	
회계감사	안종현	세방전지 광주지부	
회계감사	정홍원	아룻기공	

⑤ 광주·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D.S.R.제강	이재천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291
건우	김성희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890번지
대경기계기술여수	문성희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1로 276-52
대우일렉트로닉스민주	신홍주	광주 광산구 장덕동 981-1
대유에이텍	정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825
로케트전기	남규현	광주시 북구 일곡동 758
부국산업	문월식	전남 광양시 금호동 859
서암기계	김수복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738-5
성암산업	최성우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7번지
세방산업	최광식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505-1
세아M&S	박상복	전남 여수시 화치동 1368
아룽기공	정홍원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681 - 1
여수해양	문상열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48번지
캠스	김홍관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735-5
포스코엠텍	이정승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5-1
포스코플랜텍	정정섭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6-4
한국신광전자	이주행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35
한국알프스	나선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0 - 1
한국차량	전춘식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273-8
화천기공	이종옥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6 - 1

15) 전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6. 4. 10.
- ② 소 재 지 : 전북 군산시 산북동 3601-3
- ③ 전화 번호 : (063) 465-4875 FAX : (063) 465-4876
-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설 승 욱	세아베스틸	2010. 09.
부 의 장	왕 윤 상	LS엠트론	2010. 09.
부 의 장	김 기 춘	캐스코	2010. 09.
사무국장	김 학 송	대유신소재	2010. 09.
회계감사	양 희 완	세폴러코리아전주지부	2010. 09.

⑤ 전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대우전자부품	이중찬	전북 정읍시 망제동 19번지
대유신소재	김학송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6
동양정공	남석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70-5
세아베스틸	설승욱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
아이에스테크	정왕기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45-1번지
엘에스엠트론	왕윤상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8
캐스코	김기춘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8-2

16) 강원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2003. 2. 20

②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11-6 공업단지 한일전기 내

③ 전화 번호 : (033) 744-6658 FAX : (033) 746-4120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노동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석 승 희	한일전기	2010. 9.
부 의 장	표 정 대	토다이수	2011. 7..
사무국장	이 병 국	오토리브	2011. 10..
회계감사	성 화 만	신일정밀	2012. 11

⑤ 강원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주소
속초지역	전용원	속초시 교동 668-32번지
신일정밀	성화만	강원 강릉시 입암동 21-10
오토리브	이병국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30
토다이수	표정대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2
한일전기	석승희	원주시 우산동 411 - 6 공업단지 10블럭

2. 지부현황

조직명	대표자	주 소
현대모비스 용인지부	이제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9번지
LGDisplay 파주지부	권동섭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007번지
LG전자 평택1지부	김 영	경기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19-1
LG이노텍 오산지부	이호목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79
지코 평택지부	황인홍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읍포리 28 - 5
LG전자 평택2지부	윤영식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19-1
서진산업 화성지부	안광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138
한금 양산지부	이상섭	경남 양산시 유산동 331번지
LG전자 창원1지부	임채현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391 - 2
LG전자 창원2지부	하영규	경남 창원시 성산동 76
풍산 안강지부	이준덕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3리 2222-2
LG전자 구미지부	서성목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9
두산전자 김천지부	정갑성	경북 김천시 대광동 1349번지
삼동 문경지부	황수호	경북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884
동국제강 포항지부	하상수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67
한국주철관 포항지부	강중수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 - 138
한국번디 광주지부	김원영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738 - 3
서진산업 광주지부	김현철	광주시 광산구 옥동 881-12
LG이노텍 광주지부	감동현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8 - 1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지부	김영도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1-2
세방전지 광주지부	차종표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500 - 4
LG이노텍 구미지부	김동의	구미시 구포동 624

매그나칩반도체 구미지부	배준호	구미시 임수동 171
한일제관 대전지부	최진석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2-2
풍산 동래지부	박동원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52
동국제강 부산지부	윤성원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97
명화공업 안산지부	백선진	안산시 원시동720-2 1-56B
대한제당 울산지부	김원출	울산시 남구 용잠동 480
서진산업 울산지부	김진동	울산시 북구 효문동 815-2번지
풍산 울산지부	변성호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611
풍산 부평지부	박용노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324-6
포스코켄텍정비 광양지부	한익성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7-2
두산전자 익산지부	김주일	전북 익산시 팔봉동 889번지
세플러코리아 전주시부	신동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2
가온전선 전주시부	김호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8
대한전선 전선지부	강진연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호만로 870
대한전선 기기&시공지부	강신철	충남 당진군 고대면 보덕포로 542번지
동부제철 당진지부	김우하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33
동국제강 당진지부	김성곤	충남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400
LS산전 천안지부	이신선	충남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78
한일제관 음성지부	안재근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962번지
LG이노텍 청주지부	안병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0
LG전자 청주지부	김태훈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73
삼화전기 충주지부	김옥중	충북 충주시 목행동 240-4
동양철관 충주지부	이성희	충북 충주시 용탄동 168

3. 신규조직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설립일자	주소	주사업내용
동양제강	이정희	1987.8.14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333-1	로프제조
전공	이덕훈	2012.3.16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산 136-1	반도체설비
신한테크노일반	조명선	2012.7.3	남동구 남촌동 610-9 63B10L	다이아몬드공구

PSMC	이원익	2011.8.19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52	반도체부품
롤스로이스	신쌍식	2013.3.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78-1	조선업원터
대경기계기술여수	문성희	2012.8.31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1로 276-52	
서울동광	박광득	2012.5.29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전자부품
대양금속	안성길	2011.10.5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222	스텐레스
세일애크	엄숙화	2011.10.5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77-17	자동차시트

4. 대표자변경 조직 현황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대표자 변경일자	대회 구분
	신	구		
경기지역				
서진캠	김명진	장수훈	2012. 05	정기 대회
이젠텍	박정근	이성진	2012. 09	정기대회
덴소풍성	유성준	김영일	2013. 03	임원선거
하나모듈	변주현	류연수	2013. 04	임원선거
인천지역				
심팩	문재식	김영수	2013. 02	정기대회
탑금속	박득률	김종명	2012. 07	정기대회
안산지역				
한샘	김기정	탁재송	2013. 01	정기 대회
충남지역				
MEMC KOREA	표선호	김평호	2012. 09	정기대회
전진 CSM	윤정관	지홍중	2012. 10	정기대회
캐논코리아	최용호	오유근	2012. 11	정기대회
충북지역				
삼화전기	박중훈	전병준	2013. 02	정기대회
선일다이파스	조경탁	이원섭	2012. 06	정기총회
캠브리지필터	유호민	최성돈	2012. 08	정기총회
경남지역				
S&T모터스	이현우	박성조	2013. 01	정기총회

STX중공업 대동기어 세아제강 삼성공조 한국일선	장세명 전종환 김택광 박성춘 유칠상	이영철 정동호 윤종삼 박한봉 조덕용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부산지역 대한제강 대동스프링 부산선박목의장 풍산홀딩스 SKF코리아	정안식 장형규 엄민수 신재도 함지원	윤각열 김호철 박용욱 이영산 임언택	2013. 03 2012. 12 2012. 09 2012. 10 2013. 02	임기대회 임기대회 임기대회 임기대회 임기대회
울산,경주지역 LS니코동 제련	박성걸	이호우	2013. 02	정기대회
대구.경북지역 남선 대한소결금속 이수페타시스 체시스	손성호 김효선 이기남 윤성진	김순진 김현수 이해식 백두승	2013. 03 2013. 01 2013. 04 2012. 10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구미지역 LG실트론 노벨리스코리아영주	한창욱 장만덕	이상덕 김성용	2012. 04 2013. 01	대표자선거 정기대회
포항지역 동주산업 세아제강 현대종합금속 조선선재 제일테크노스	김삼규 박기준 조준영 김 산 김성운	황도연 정연철 김동일 김이두 김영득		임원선거 임원선거 임원선거 임원선거 임원선거
광주,전남지역 한국알프스 부국산업	나선일 김영수	황운선 문월식	2012. 07 2012. 10	정기 총회 정기 총회
강원지역 신일정밀 속초지역	성화만 전용원	황승필 신종찬	2012. 11 2013. 03	정기총회 정기총회

5. 해산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해산일자	조합원수	해산사유
경기지역 제일기공 SBC리니어 보아기계	김주일 윤상구 이광세	2012. 01 2012. 10 2013. 01	21 100 20	해산 해산 해산
충북지역 성화알미늄	임성재	2012. 09.	17	조합해산
부산지역 유니콘미싱	민유복	2012. 10.	07	자체해산

6. 쟁의사업장 현황

노동조합명	쟁의 시작일	쟁의 종료일	쟁점사항
포항지역 세아제강	2012. 7	2012. 8	임단협
전북지역 세아베스틸	2012. 7	2012. 8	임단협

7. 조정사업장 현황

노동조합명	조정 신청일	조정 종료일	쟁점사항
경기지역 니콘코리아	2012. 08. 06	2012. 08 20	임금(성과급)
충남지역 존슨컨트롤즈	2012. 10	2012. 10	임금

8. 연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2012. 12월 말 현재)

년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직체수		502	478	475	481	477	473	480	466	438	430
조합원수	남	77,195	77,310	83,034	85,338	81,543	79,134	79,804	80,405	85,758	90,824
	여	23,655	23,632	22,411	29,581	26,663	24,295	27,093	26,399	22,420	17,556
	계	100,850	100,942	105,445	114,919	108,206	103,429	106,897	106,804	108,178	108,380
조합원증감		-2643	+92	+4,978	+8,999	-6,713	-4,777	+3,468	-93	1,374	202
조직체증감		+4	-24	-3	+6	-4	-6	+7	-14	-28	-8

9.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1) 분과위원회

① 대회진행분과위원회

- 일시: 2012년 7월 25일(수) 14시
- 장소: 한국노총 7층 회의실
- 분과위원회 결과
 - 대의원 자격심사 결과 자동차노련에서 선출하지 않은 여성할당 대의원 2명을 제외한 674명으로 재적 대의원 인원 확정함.
 - 차기 대회진행 및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부터는 각 회원조합에서 제출한 회의록, 전차회의 결과, 의무금 납부 현황, 권리제한 내역을 첨부하여 보고하기로 함.
 - 대의원 자격에 대한 법적시비를 없애기 위해 규약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던 대의원 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회원조합에서 사전에 확정해서 보내온 대의원만 인정하기로 함.
 - 대회진행과 관련하여 대회 회순을 심의할 결과 소집공고한 원안대로 대회를 진행하기로 함.

(2) 본대회

① 대회 개요

- 일시: 2012년 7월 27일 (금) 13시
- 장소: 한국교총 컨벤션 홀(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 참석인원: 재적 674명 중 참석 440명
- 안건: 2011년 사업보고/회계감사보고/2011년도 결산보고/2012년도 사업계획(안) 심의/2012년도 예산(안) 심의/회원조합별 정책의안 심의/규약개정/임원보궐선거/중앙위원 선출

② 대회 결과

- 상정안건 원안 통과
- 정치 방침 재결의 : 민주통합당과의 통합 방침 확인하고 재결의 함.
- 규약개정
 - 투표참가 대의원 406명중 찬성 382명, 반대 22명, 무효 2명으로 과반수 참석과 2/3 찬성으로 규약개정이 가결됨.
- 임원보궐선거 : 규약 제46조에 의거 결원된 부위원장 선출
 - 부위원장 : 한광호, 오영봉, 김동명, 김만재, 서재수, 이인상, 류희봉, 진병준, 이명희(9명)
- 중앙위원: 산별로부터 배정기준에 의거 추천받은 96명(대의원대회 자료 참조)
- 기타토의 : 이용득 위원장 사퇴와 민주통합당 지명직 최고위원 추인함.

(3) 대회사

한국노총 대의원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매우 엄중합니다.

동지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지들께서는 마음 편히 오늘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개악한 노조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비지니스 프렌들리, 노사선진화 정책이란 이름하에 노동조합 운동의

숨통을 죄여왔고, 노조법을 통해 현장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노동조합만 힘든것이 아닙니다. 노조가 지켜주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은 커녕 고용의 불안에 더 떨고 있습니다.

나쁜 정부가 들어설때,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 지는지 우리는 지난 4년 반 동안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노총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하반기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건곤일척의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노조법 재개정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비록 야권이 과반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근의 상황은 노조법 개악 이후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19대 국회의 환노위는 여소야대로 구성됐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면, 법 개정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가열차게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갑시다.

노조법 재개정이 현재의 문제라면, 대선 투쟁은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노조법을 재개정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반노동자 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는 또 다시 고난의 5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명박 정권과 같은 반노동자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이 앞장 서서 대선 투쟁에 나섭시다.

한국노총, 민주통합당과 함께, 모든 민주세력이 하나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런 한국노총 동지여러분,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한국노총이라는 큰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단결된 모습을 보일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직적 단결만이 노동운동과 1600만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저는 한국노총의 단결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이든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노동운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위원장,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의원대회의 자리가 우리의 단결을 확인하는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힘차게 결의합시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조직 한국노총의 기풍입니다. 동지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결의문

- 노조법 전면재개정과 하반기 투쟁승리를 위한 특별 결의문

벼랑 끝에 선 노동자·민중의 통곡이 온 나라를 가득 매우고 있다.

파탄 난 서민경제와 무너진 민주주의,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 4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적대적 노동정책과 재벌 우선정책을 앞세워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끊임없이 노동운동의 말살을 획책하고 있다. 베스킨라빈스·서희산업노조로 대표되는 불법파견·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이 땅 80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정권말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에 대한 민영화·매각정책은 전국민적 반대여론은 물론, 집권세력내에서도 차기정부에 넘길 것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이명박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자멸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는 식민지 시절과 독재정권의 총칼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자랑스런 단결의 역사와 투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반노동자정권의 탄압과 분열공작에 맞서 자본가·정권의 노동 탄압수단으로 변질된 노조법을 전면재개정하고, 빼앗긴 1천6백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기필코 되찾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2012년 정치적 대격변기를 맞아 백만 조합원의 총의와 전조직적 단결을 바탕으로, 노조법전면재개정과 하반기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자본가·정권의 온갖 방해책동과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발전의 거대한 물결이다.

오늘, 우리는 2012년 노동자 주권시대의 시작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하반기 노조법 전면재개투쟁의 완전승리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비정규·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우리금융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매각 정책을 반대하며 이에 맞선 전조직적 투쟁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집결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완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0. 임시선거인대회

(1) 대회 개요

① 선거인자격심사위원회

- 일시: 2012년 8월 28일(화) 14시
- 장소: 노총 7층 회의실
- 자격심사위원회 결과
 - 각 회원조합에서 정기대의원대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선거인을 적법하게 선출하였음을 확인 함.
 -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대비 선거인 배정인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공기업연맹에 배정된 65명의 선거인 자격을 인정함.
 - 각 회원조합에서 제출하지 않은 선거인 명단은 부족한 수만큼 선거인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IT사무서비스노련 1명, 자동차노련 15명, 관광서비스노련 3명, 우정노련 6명 등 총 25명을 선거인수에서 제외하여 전체선거인수 2,773명에서 2,748명으로 확정함.

② 임시선거인대회

- 일시: 2012년 9월 20일 (목) 14시
- 장소: 잠실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재적 2,748명 중 참석 1,676명
- 안건: 노총 규약 제46조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의거한 임원선거

2) 대회 결과

- 문진국 위원장 후보, 한광호 사무총장 후보 단독 출마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임원을 선출함.
- 투표 결과 : 참석선거인 1,676명중 투표 선거인 1,651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224표, 반대 410표, 무효 13표, 기권 4표로 제24대 한국노총 위원장, 사무총장에 당선 됨.

4) 평가 및 과제

- 2012년 조직관리강화 사업은 노조법 재개정 투쟁, 조직관리강화를 주요 목표로 현장순회, 조직경쟁력 강화, 현장소통을 통한 조직의 신뢰와 한국노총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했으나 정치방침 결정에 대한 찬반양론과 조직갈등으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66년만에 무산되는 등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극심해짐.
- 이용득 위원장의 사퇴와 조직의 화합과 단결, 현장성과 민주성을 강조한 문진국 위원장의 당선으로 조직통합의 기대치가 높아진 가운데, 대선국면을 맞이하고, 11월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조법 재개정 쟁취에 대한 현장의 강력한 요구를 재차 확인함.
- 타임오프시행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상식을 벗어난 근로시간면제 제도 지도점검으로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고, 노동부의 지도점검 행태는 사측에 노동조합 간부 및 전반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기록과 감시로 이어지며 노동조합과 사측의 신뢰마저도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불거짐.
- 복수노조의 경우 3~4월 임단투를 정점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안정세로 들어서는 결과를 나타냄. 구체적으로 2011년 6월~12월 총 640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과 비교하면 2012년 1월~6월까지 202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임단협 시기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 18대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2013년도는 산하조직 현안문제해결 등을 통해 조직화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장 소통과 조직 강화 등 단위노조 전 조직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노동운동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상황실 설치와 단계적 투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지역별 지도부 순회를 통해 현장의 신뢰와 한국노총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11.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안전한 일터·산재예방을 위한 2012 노동절 마라톤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1일(화) 오전 9시 /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 노동자문화한마당 : 공공연맹 마필관리사 노조 밴드(악벽마)
- 캐리커처 그리기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2.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KAI) 민영화 · 매각저지투쟁

1) 노조현황

- 조직명 :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조합원 2,400명)
- 위원장 : 정 상 욱

2) 주요 내용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IMF 당시 재벌 대기업들의 무리한 항공산업 진출과 과당경쟁을 정부가 조절하기 위한 국가경제 위기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삼성항공(주), 현대우주항공(주) 대우중공업(주)의 항공사업부를 통합하여 만든 회사임.
- 당시, KAI는 1,000여명의 강제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등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희생과 자구노력이 있었으며, 약 8조 6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되었음.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105억의 누적적자 기업을 2011년 2748억의 누적흑자 기업으로 전환시켜, 지난 2011년 6월 코스피에 상장되는 성과를 달성함.
- 이명박정부 초기,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KAI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방위산업체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 및 사회적 합의 미성숙, 노동조합과 지역여론의 악화 등으로 이미 한차례 포기한 적이 있음.
- 하지만, 강만수 산업은행장, 진영욱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김홍경 KAI 사장이 모두 MB낙하산으로 채워진 후 2012년 4월19일 정책금융공사의 매각선언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추진되었음.

3) 주요 투쟁경과

- 이에 맞서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 매각 반대 △부실 투기자본 배제 △방위산업 공공성 확보 △기업발전 제시 △부도덕한 노사 기업 배제 △종업원의 생존권 보장 △노동조합의 매각과정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2년 일년동안 장기간의 투쟁을 전개함.
- 노조는, △5/9, 비상투쟁위원회 출범 △5/16, 여의도 산업은행 앞 조합원 상경투쟁 △5/23,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전조합원 상경투쟁(2,000명) △7/19, 한국노총 경남도본부, KAI 민영화반대 및 경남은행 독자생존요구 결의대회 △7/24, 여의도 산업은행 앞 조합원 상경투쟁 △7/25, 사천시민과 함께하는 KAI매각 반대 문화한마당 △7/24, 여의도 산업은행 앞 조합원 상경투쟁 △8/2, 민주통합당 고위당정회의 결과 'KAI 지분매각 철회' 당론 채택 △8/16, 산업은행 앞 전조합원 상경투쟁(2,000명) △9/26 정의행위 찬반투표(94.5% 가결) △10/30, 11/5, 11/13 산업은행 앞 조합원 상경투쟁(각 500명씩) △11/20, 대한항공의 사천공장 현장실사 저지투쟁 등의 치열한 매각저지투쟁을 전개함.
- 일년여에 걸친 총력투쟁의 결과 2012년 12월17일 본입찰에서 대한항공이 입찰을 포기하고 현대중공업만 단독 입찰함으로써 유찰되었으며, 제18대 대선 후보 TV토론회 시에 문재인 후보가 민영화 매각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박근혜 후보가 신중한 매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매각여부 및 절차는 새정부 출범이후로 넘어감.
- 노총은 KAI의 민영화·매각 작업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실매각 정책으로 규정하고 금속노련과 함께 투쟁 초기부터 전면적으로 결합하여 적극 지도해 나갔으며, 대국회 투쟁, 전국민적 매각반대여론 형성 등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을 전개해 나갔음.
- KAI의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내에서 실패로 종료되었으며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음.

13. 고용노동부의 개별노사관계 개입 실태 조사 및 대응

1) 배경

- 노조법 개악이후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이행실태 점검(정기점검)을 한다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과 월권적 매뉴얼을 통해 개별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2년 6월말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악된 노조법을 합리화하고 노동계의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5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실태조사가 예정된 조직에 대응지침을 배포함.

2) 고용노동부의 점검 방법 및 내용

1) 점검방법

- 사전 방문 일정 통보 및 준비자료 목록 팩스 전송
- 본청 직접 방문 또는 지청 자체로 1일~3일간 점검 실시

2) 점검 유형 : 노동부 요구 자료

- 기본형 : 노동부 중앙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통된 유형
- 실적추구형 : 기본형보다 세부내용이 추가되어 지청이 실적을 쌓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 유형

3) 주요 점검 내용

- 일반현황 : 사업장 명, 업종, 노동조합명, 조합원 수 등
- 노동조합관련 내용 : 노동조합 전임자, 조직도, 면제자 수, 면제자 활동 현황, 임금대장, 간부현황, 근태기록, 임금대장, 편의제공 등
- 기타 회계장부 원장 등 결산자료, 노사공동협의체 관련 자료 일체 등

3) 주요 시정 지시 내용

1)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및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에 제재

-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타임오프 한도내로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시정지시를 남발함.
-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 참여한 교섭위원의 교섭 참여,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및 간부의 활동시간에 대한 무급 처리
- 상급단체 활동, 교육, 노동조합 간부 활동 시간 등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투쟁으로 확보한 권리에 대한 제재

2) 편의제공 및 복지시설 환수 등

- 노동조합에 지원된 집기 및 비품, 교통, 통신 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지시
- 자판기 및 매점운영권 환수 조치 등

4) 고용노동부 점검 및 시정 지시의 문제점

1) 사찰수준의 자료 제출 요구 :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넘어선 자주성 침해행위

- 사측에 노동조합의 조직도, 규약, 대의원이상 간부 명단 등 사측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함.
-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내역, 인사발령 등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2)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법적 근거 없는 시정지시 남발

- 노동조합 활동, 편의제공 등은 단체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부당한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라며 시정지시를 남발함.

3) 단체교섭권과 노사합의의 무력화

-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확보된 노동조합 활동시간 및 편의제공 등은 타임오프와는 무관함.
-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함임.
- 단체교섭을 통해 확보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력화 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권 자체를 무력화하고 노사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4) 노사관계 갈등 및 부당노동행위 조장

- 단체협약 및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개별 노사관계에 법적 근거도 없는 기준으로 사측을 압박함에 따라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함.
- 일부 사측의 경우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빌미로 타임오프 사용계획 강요, 상급단체 파견자 문제제기, 편의제공의 일방적 중단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할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함.

5) 개별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한 노조활동 위축 및 주요탄압사례와 대응지침 배포

- (1) 노사 합의 또는 단체협약으로 타임오프 전임자 아닌 노조간부 또는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총회, 대의원회, 교육 참여, 교섭위원 및 노사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여에 대한 문제제기 및 무급 처리 요구에 대한 대응

- 노조법 제24조 자체는 노조 전임자에 관한 규정이며, 법 제24조 제4항에서 “제2항(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전임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음. 법 제24조 제2항에서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 제4항에서 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제4항의 타임오프는 전임자에게 유급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노동부 매뉴얼에서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총회, 대의원회, 임원선거 등의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노사가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함.
- 따라서 통상적으로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노조활동 보장 조항들, 예를 들면 조합원의 분기별 교육시간 보장, 조합원 총회시간 보장, 전임자가 아닌 조합간부의 회의참석, 교섭·협약의 참여 등 간부 활동을 하는 경우, 노조간부나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단체협약 상 노사 간의 각종 공동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것과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임오프 시간과 별개로 허용됨(대전지법 2011구합 183호, 인천지법 2010구합4968)
- 또한 근로시간면제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비전임간부(대의원, 비상임간부 등)나 조합원 등이 근무시간 중 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다른 법률(근로자참여및협력법, 사내복지기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근무시간 중 유급활동도 타임오프 한도와 별개로 허용됨.

(2) 타임오프 시행을 이유로 한 차량지원, 사무실 운영 등의 편의제공 중단 및 복지사업 회수에 대한 대응

- 고용노동부가 최소한의 노조사무실과 사무집기만 허용되고, 과도한 편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로 행정해석하자, 사측은 타임오프 시행과 관계없는 컴퓨터 등 사무용품, 차량·유류비, 통신비 지원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사례 다수 발생함.
- 현행 노조법상 타임오프 제도와 사측의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측의 노동조합에 어떠한 편의제공이 부당노동행위도 아님.
- 노동부는 타임오프와 편의제공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은 노조사무실 및 최소한의 집기류 제공에 한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현장의 노사갈등을 야기함.
- 특히 차량지원이나 사무보조원 지원 등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판결에서와 같이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조합의 자주성

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함.

- 따라서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 없고,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성이 없는 편의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6392,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두 11349, 서울고법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3)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를 통한 통제 대응

- 타임오프 대상자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용계획서 제출요구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임. 현행 노조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지 의무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님.
- 사측은 “타임오프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임오프에 해당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단협 체결을 요구하여 향후 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조합 활동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높음.
-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근무시간 중 전임자의 자주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가 정한 타임오프 시간의 활용은 노동조합의 재량권이며, 사용자가 노조통제 수단으로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함.
- 따라서 단협을 통해 근로면제시간에 대해 노동조합의 전임자(또는 노동조합이 정한 근로시간면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활용할 권한을 확보해야함.
- 풀타임 타임오프 대상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면제받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의 전임자와 같이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하면 되고, 파트타임 타임오프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타임오프 사용방식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사용 시기 등을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면 되는 것임.

3) 국정감사를 활용한 문제제기 및 중단 촉구

-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 차원의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실태조사 내용 및 문제점 등을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의 시정을 촉구함.

14. 전국노동자대회

1) 대회 개요

- 대회명 : 노조법개정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12년 11월17일(토). 13:30.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 인원 : 5만명

2)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 간	순 서	진 행 내 용
사전대회	12:00-12:50	• 외기노련 사전집회	-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총과업 출정식
	12:50-13:05	• 대오정리 • 여는 마당 (문화공연) • 현장투쟁사	- 산하조직 연합노래패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공공연맹 마필관리사노조) (의료산업노련 연세의료원노조) - 무주덕유산리조트노동조합 김호영 위원장
본 대회	13:05-13:15	• 개회선언 • 깃발입장 • 노동의례	- 깃발가 - 묵념곡/임을 위한 행진곡
	13:15-13:20	• 참가조직 소개	- 조직별 일괄소개 (대표자 단상위)
	13:20-13:30	• 대회사	- 문진국 위원장
	13:30-13:35	• 상징의식	- 노총 요구사항(5대 과제) (노조법 재개정/최저임금 현실화/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 차별철폐/60세 정년법제화)
	13:35-14:00	• 대선후보 발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 노조법 재개정 입장 표명 - 후보별 각 7분 이내
	14:00-14:10	• 문화공연	- 산하조직 연합율동패 (금속노련 현대모비스노동조합) (금속노련 보그워너TS노동조합)
	14:10-14:15	• 투쟁사	공공노련 김주영 공동위원장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14:15-14:25	• 투쟁결의문 낭독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최응식 사무국장 화학노련 서희산업노동조합 김진선 사무국장
	14:25-	• 폐회선언	

3) 대회구호

- 100만 조합원 총단결로 / 노동악법 분쇄하자!
 - 노동운동 말살하는 / 타임오프 박살내자!
 - 100만 조합원 총력투쟁 / 노동운동 사수하자!
 - 노동조합 다죽이는 / 타임오프 박살내자!
 - 비정규직 차별철폐 / 투쟁으로 쟁취하자!
 - 100만 조합원 총력투쟁 / 비정규직 철폐하자!
- 후렴구) 분쇄하자! 분쇄하자! 노동악법 분쇄하자! 노/동/악/법/ 분쇄/ 투쟁!

4) 위원장 대회사

- 한국노총의 자랑스러운 100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노동자대회를 조직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수고하신 산별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현장 대표자 및 간부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하여 이 곳 여의도 광장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타깝지만 현재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농민들은 FTA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고액 등록금에 신음하고, 청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반복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과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악된 노조법으로 인하여 현장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노동조합운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임오프라는 별종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임자를 없애고, 강제적 창구단일화는 우리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비정규직 양산, 공기업선진화대책 등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여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조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는 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왔습니다.

오늘 노동자대회는 100만 조합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노조법 개정의 불을 지피는 장입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100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고 한국노총의 위상을 높여 이 땅 17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의 현장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노동현장은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많은 조직들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대회에 앞서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동조합이 지난 2년간 임금을 동결해온 주한미군 당국에 맞서 95.4%의 찬성으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동지들이 연대해서 투쟁하고 있으며, 화학연맹 무림페이퍼 노동조합과 관광서비스노련 무주리조트노동조합이 전면파업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연대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민주화와 일방적인 매각 저지투쟁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투쟁하고 계신 동지들을 위하여 큰 함성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확대 및 개선 △실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 의무화 및 고용안정성 강화 등 우리의 요구를 담은 5대 노동입법을 반드시 대선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 입법발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촉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야당을 중심으로 우리의 요구를 담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우리가 제기한 5대 입법과제 중 일부만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100만 조합원의 숙원을 담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해 ‘대선 정책요구 및 후보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동지들께 배부해드린 대회 유인물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에 임하고,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11월 국회는 대통령 선거 전에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파행되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노조법 등 우리의 요구를 담은 핵심 노동관련 법안의 개정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100만 조합원의 수장이자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야는 조속히 법안 심사에 착수하십시오.

환노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의 논의를 위해 심사일정을 연장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11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키십시오.

여야 정치권과 유력 대선후보들은 100만 조합원의 눈과 귀가 11월 국회에 쏠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우리는 전 조합원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서 조직적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노조법을 개정하고, 조합원의 손으로 대선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열리는 11월 노조법 개정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12월 19일 대선에서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을 위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며, 진정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그리고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100만 조합원 동지여러분,

대국회투쟁과 대선투쟁까지 불과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바로 한국노총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현장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밀어붙입니다.

한국노총은 100만 조합원과 이 땅의 노동운동을 이끌어왔던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투쟁! 투쟁!! 투쟁!!! 고맙습니다.

5. 결의문

- 우리는 오늘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피 끓는 분노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

아집과 독선으로 반노동, 반민중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권의 종식을 선언하고 공허한 복지논쟁과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경고하고 18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제정당에 노동자 서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올바른 대선 공약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5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개악된 노동법을 악용하여 현장에 대한 탄압과 노동운동 말살기도가 자행되었고 자본의 탐욕과 결탁된 노동조합 파괴 집단이 공공연하게 날뛰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고착화와 자본의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상시적이고 공격적인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정권의 끝자락에서 자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국가기간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각종 꼼수 속에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인 의료정책마저 영리병원 도입으로 포기했음을 선언했다.

이에 우리는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변혁 운동의 중심축으로서 현장의 요구와 열망을 받아 안고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하여 대선 국면은 물론 지속적으로 전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운동 말살 책동의 즉각적인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 최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해 총력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결과 고립을 넘어 강고한 연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서민에게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선거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자본의 탐욕과 차별의 대상이 아닌 노동이 존중받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히 투쟁한다.

2012년 11월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16. 대덕전자 노조말살 저지투쟁

1) 사업장 현황

① 회사

- 주요생산품 : 1공장 PCB, 야페리오 PKG, 신공장 PKG
- 총매출액 : 2010년 5,300억원 , 2011년 6,500억원
- 총인원 : 약 1,600명 /야페리오 복수노조
(생산직 80명,사무관리직 220명) / 신공장은 전원 비정규직.
- 신공장이 수익성이 제일 좋음.

② 노조

- 대표자 : 허일욱 (최초 3선)
- 조합원수 : 348명
- 조합원 평균나이 : 36.6세
- 조합원 평균근속 : 12.1년
- 평균 연봉 : 4천만원
- 고정상여금 700%, 성과급 300%(작년도)
- 3조 3교대 근무제

③그 간의 노사관계

- 노동쟁의 조정신청 전무
- 파업,잔업거부 전무
- 노사 협력상 수상(2007년 노사문화우수대상, 2012.4.26 근로대상등 다수)

2) 사건의 발단및 전개

1) 2012.4.1 기획조정실 신설및 외부인사 영입(3명)

- 박영수 부사장 (2004년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직 투쟁 파괴
한국선진노사연구원 이사장,기아차 노동사외이사, 국민대 겸임
교수,박사,노무사,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불법사찰 관여자들/매농
- 박노현 전무 (2004년 충북 경충 사무국장,하이닉스,매그나칩 비
정규직 투쟁파괴(교섭권 수입)
- 김재익 부장

※비전및 신조직문화 구축 컨설팅 계약의 건

- 목적 : 제2창업을 위한 비전 및 신조직문화 구축
 - 계약기간 : 2012.4.1~2014.3.31(조기종료가능)
 - 계약자 : (갑) 대덕전자 (을) (주)굿 에이치알 컨설팅
 - 계약금액: 10억원(VAT별도) '12.4.6 50%지급,'13.1.31. 25%
- 2) 2012.4.20 대덕제 2012-25호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이행 통보
- 2012년 4월분 급여부터 전임자 5명 임금지급 중단
 - 차량 57수8466 제네시스 4월30일 까지 반납
 - 유류비, 경비지원 즉시중단
 - 근로시간 면제시간, 인원, 사용방법등 임단협 교섭에서 논의하여 합의후 시행.
 - 조합활동시간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합의후 사용, 일방적 사용 시 무급처리
- 3) 2012.4.23 안희만 부위원장, 서근희 부위원장, 윤혜선 직원 근무(복귀)명령, 4.24일자
- 4) 2012.4.24 대덕노조제 2012-04-01 문서로 단체협약 준수요청
- 5) 2012.4.24 대덕노조제 2012-04-02 문서로 2012년도 임금인상 단체교섭 요청(1차)
- 교섭일시 : 2012.4.30. 14시
- 6) 2012.4.24 법무법인 다산과 법률고문 계약 체결
- 7) 2012.4.25 2차 근무(복귀) 명령서
- 8) 2012.4.25 대덕제 2012-29호 12년도 단체교섭 연기 및 교섭위원 명단통보.
- 교섭일시 : 2012.5.29 14시로 연기 통보
 - 교섭위원 : 박노현 전무외 4명
- 9) 2012.4.25 대덕노조제 2012-04-03 문서로 휴일근로 조합사전 동의 요구.
- 10) 2012.4.26 3차 근무(복귀) 명령서
- 11) 2012.4.27 4차 근무(복귀) 명령서
- 12) 2012.4.27 대덕제 12-39호 교섭일정 연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준수
- 교섭일시 : 2012.5.29일로 연기요청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준수 요구
- 13) 2012.4.30 대덕노조제 12-04-06 단체협약 및 노사간에 협약사항 이행촉구
- 14) 2012.4.30 대덕제 2012-40호 단체교섭 관련 의 건
- 15) 2012.5. 2 대덕노조 2012년 단체교섭 재요청
- 교섭일시 : 2012. 5.4. 14시
- 16) 2012.5. 2 기획조정실에서 5.3일 대화 요청

- 17)2012.5. 3 기획조정실과 노조임원 첫 대면,잘해보자 락 함.
- 15시30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김영익 감독관, 이재용 부장
노조 방문하여 노조에게 타임오프 위반시 임금환수 조치 언
급하며 사용자 편향발언
- 18)2012.5. 7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시정지시서 접수
- 전임자 5명에게 587,589,094원 회수 요구
- 2012.6.4일 까지
- 안산시청 산업정책과 노사협력계장 한봉우 단협시정명령
- 19)2012.5.10 단체교섭 3차 재요청건
-교섭일시 :2012.5.11. 14시
- 20)2012.5.10 임금환수 내용증명 접수 (5명)
- 21)2012.5.11 대덕 제2012-46호 창구 단일화 준수 요구
- 22)2012.5.11 노조사무실 인터넷, 전화선 차단,정수기 회수
- 23)2012.5.14 노동부 안산지청 김유훈 감독관 노조방문
-지청장,사측대표,노조대표 3자회동 제안및 원만한 협의요청
- 24)2012.5.18 회사측 단체협약 개악안 통보
-삭제 69개 항목
-개약 46개 항목
- 25)2012.5.20 전조합원 임시총회 개최(안산지부 강당)
-쟁의기금 사용승인 및 기금거출결의
- 26)2012.5.23 노동쟁의 조정신청(경기지노위)
- 27)2012.5.27 1차 조정회의 및 조정기간 연장요청 및 동의로 6.11로 최종조
정회의가 연장됨.
- 28)2012.6.11 노동위원회 최종결정 결과 조정중지 결정.
- 29)2012.6.11 밤-12일 까지 파업 찬반투표 실시(98%찬성)
- 30)2012.6.21 전면파업 돌입 예고선언.
- 31)2012.6.19 김영재 사장과의 교섭에서 전격타결!
-기획조정실 해체 및 관련자 퇴사조치, 가압류 해제 및 미지
급 임금지급, 향후 전임자 문제는 법대로 처리.
-2012년 임금교섭은 사측교섭위원 구성과 동시 실시.

3. 사측의 의도예측

- 1) 1차 노조 무력화
- 단협 전면 개악 요구 예상

- 2) 삼성 시스템화
- 3) 인력감축및 구조조정

4. 논의 사항및 대책강구

1) 타임오프 문제

- 내용증명 겹봉투 주민번호 유출 고발문제
- 임금문제 공고행위, 허위기재 문제
- 4.20일 최초 문서 기재사항, 전임자 단협에 2명규정, 현장소속 2명
- 근무(복귀)명령 거부 문제
- 노동부 시정지시서 날자 2011.3.31 과 적용법규 노조법을 근로기준법으
로 표기후 수정에 대한 문제
- 부당노동행위 자수? / 노동부 유착 가능성에 대한 문제
- 단협제25조 휴일근로 노조 사전동의권 무시 위반
- 심야교대수당(15만원),주택수당,가족수당 통상임금 미산정 소송및 체불

고발

2) 단협 시정명령

3)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 작년 7월 15일경 형식적 창구단일화, 공고후 사진촬영
- 절차가 결여된 창구단일화라고 무효주장
- 노조명칭, 대표자,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요구,
- 2007년 사무직 3명으로 결성된 “대덕전자 민주노조” 존재시 2012.7.1
까지는 창구단일화 불필요에 대한 문제

4) 교섭지연및 해태건

- 부당노동행위 고발및 조정신청시 예측되는 결과
-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시 예측되는 결과

5. 기본대책 방향

- 1) 정당한 파업권 확보를 위한 교섭 요구 계속
- 2) 교섭거부,해태 부노 구제 신청
- 3) 노동쟁의 조정신청
- 4) 내부 조직동력 강화
 - 사내 집회, 노동부 안산지청 집회, 교육
- 5) 홍보활동 강화
 - 매일노동뉴스, 지방 신문등 언론매체

6. 각 주체들의 역할

1) 해당 노조

- 교섭요구 계속
- 집회 추진(사내, 노동부 앞)
- 총회및 교육
- 고소고발및 법률투쟁

2) 금속 안산본부및 노총 안산지부

- 안산지청, 안산시청 항의방문
- 전조직 집회 동원
- 노조 투쟁지지 방문
- 프랑카트등 연대

3) 금속노련및 한국노총,법률원

- 법률검토및 대응
- 노동부 본부 압박
- 집회및 투쟁지도
- 부노, 조정신청시 경기 지노위 압박
- 언론접촉및 홍보

16. 한국노총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

(1) 분과위원회

① 대회진행분과위원회

○ 일시: 2013년 2월 25일 14시

○ 장소: 한국노총 7층 회의실

○ 분과위원회 결과

- 자격심사 결과 배정대의원 642명을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으로 확정함.
- 대회진행과 관련하여 대회 회순을 심의할 결과 소직공고한 원안대로 대회를 진행하기로 함.
- 기타토의 안건으로 중앙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 추천을 최소한 회원조합의 과반수가 될 수 있게 규약개정시 반영하도록 주문함.

② 재정·복지분과위원회

○ 일시: 2013년 2월 25일 14시

○ 장소: 한국노총 7층 회의실

○ 분과위원회 결과

- 2012년도 회계감사보고서 검토결과 외부 공인회계사 2명, 내부 회계감사 4명에 의해 철저히 감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통과함.
- 2012 결산보고는 실무자로부터 부연설명과 함께 한국노총의 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자세히 보고 받고 원안대로 통과함.
-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시 예산 절감을 위해 각 부서별 사업비를 통합하여 편성하였는데 사업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사업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됨. 중복되는 사업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특별히 신경써줄 것을 주문함.
- 일반회계 맹비수입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재정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미 회계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회원조합이 맹비를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③ 정책·홍보·교육, 조직·쟁의 분과위원회

○ 일시: 2013년 2월 25일 14시

○ 장소: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

○ 분과위원회 결과

- 2012년 사업보고 및 2013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함.

(2) 본대회

① 대회 개요

○ 일시: 2013년 2월 27일 13시

○ 장소: 한국교총 컨벤션 홀(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 참석인원: 재직 642명 중 참석 445명
- 안건: 2012년 사업보고/회계감사보고/2012년도 결산보고/201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2013년도 예산(안) 심의/회원조합별 정책의안 심의/중앙위원 선출

② 대회 결과

- 상정안건 원안 통과
- 중앙위원: 산별로부터 배정기준에 의거 추천받은 98명(대의원대회 자료 참조) 선출

(3) 대회사

존경하는 한국노총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국노총의 2013년 시작을 알리는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동지들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지난 5년간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쌓여가는 가계부채는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외면한 채 당리당락에만 몰두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은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한해는 한국노총에게도 격동과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유례없는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현장은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무너졌고 노동운동은 크나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조직이 분열되는 위기와 아픔까지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한국노총은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단결의 기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등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단결, 또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현장 조직을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제연대활동

⇒ 기간 활동 평가 및 과제

1장. 국제회의 및 해외초청

1. IMF-JC 니시하라 의장 한국 방문
2. 일본전기연합(JEIU) 현장견학 및 노조 간담회
3. 5차 아시아금속노조연락회의
4. 51차 IMF-JC 전국대회 참석
5. 41차 일본자동차노련 대회 참석

2장. 기타

평가 및 개선방향

2011년 한일정기교류회의가 정례화·체계화 되었으나, 2012년은 양국 모두의 사정에 의해 개최하지 못하였다.

5차 아시아 금속노조 연락회의가 대만 카오슝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 의제는 새로운 국제노동조합연맹의 창설에 관한-새로운 국제노동조합연맹 가맹 조직간 화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9-2013 IMF 액션프로그램의 후속에 관하여, 그리고 아시아 금속노조연락회의의 미래,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제노동조합연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집행위원회 구성 합의안 도출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일본 금속노동조합연맹 니시하라 위원장이 한국을 직접 내방하여, 새로운 국제산별조직(제조통합)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앙집행위원 구성 문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산별의 역할, 새로운 국제산별 건설에 따른 한-일 간의 교류 및 차기 한·일 금속교류회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2년은 일본 및 아시아 국가 간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3년에는 한일정기교류회의가 일본에서 있을 예정이므로 고위회담 및 업종별 회의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 해외노동 동향 최신화, 외국어 홈페이지 제공을 통한 국외 기관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2013년은 위와 같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국제연맹 연대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1장. 국제회의 및 해외초청

1. IMF-JC 니시하라 의장 한국방문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① 일시 : 2012년 4월 6일 ~ 7일
- ② 장소 : 대한민국 서울
- ③ 참석자 : 정일진 부위원장, 노윤철 조직국장

2) 회의 내용

- ① 새로운 국제산별조직(제조통합)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앙집행위원 구성문제
- ②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산별의 역할
- ③ 새로운 국제산별 건설에 따른 한-일간의 교류 및 차기 한·일 금속교류회의에 관하여

2. 일본전기연합(JEIU) 현장견학 및 노조간담회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① 일시 : 2012년 5월 11일
- ② 장소 : 동국제강, LG전자 구미공장 및 노동조합
- ③ 참석자 : 곽상욱 홍보차장

3. 5차 아시아금속노조연락회의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① 일시 : 2012년 5월 29일 ~ 30일
- ② 장소 : 대만 까오슝
- ③ 참석자 : 김만재 위원장, 곽상욱 홍보차장

2) 회의 내용

- ① 새로운 국제노동조합연맹의 창설에 관한 가맹 조직간 화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 ② 2009-2013 IMF 액션프로그램의 후속예 관하여
- ③ 아시아 금속노조연락회의의 미래
- ④ 기타 이슈 (새로운 국제노동조합연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집행위원회 구성 합의안 만들기)

4. 제51차 IMF-JC 전국대회 참석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① 일시 : 2012년 9월 3일 ~ 5일
- ② 장소 : 일본 동경
- ③ 참석자 : 정일진 부위원장, 김성수 사무처장

2) 대회 일정

2012년 9월 3일

9:00 김포공항 출국

11:05 나라따 공항 도착

14:00 - 17:00 오리엔테이션 및 브리핑

장소 : 연회홀 “모니카(Monica)”

Land mark Square Tokyo 의 29층

저녁에는 환영석식

2012년 9월 4일

10:00 - 12:00 51차 IMF-JC 전국대회

장소:연회장 “웨스트(West)”

시나가와 TPK 가든시티 1층

IMF-JC 지도부와 석식

2012년 9월 5일

07:30 전세버스로 Chichibu로 이동

09:45 Caterpillar Chichibu 시범센터 방문

<http://japan.cat.com/cda/layout?m=249161&x=7>

Caterpillar Japan 노조간부들, 관리들과 미팅

12:00 중식

오후 Kawagoe

석식

5. 제 41차 일본자동차노련(JAW) 대회 참석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①. 일시 : 2012년 9월 6일 ~ 7일

②. 장소 : 일본 동경

③. 참석자 : 정일진·부위원장, 김성수·사무처장

2) 대회 일정

2012년 9월 6일 (목)

18:10 “Keikyu EX Inn” 숙소 호텔 출발
18:50 도쿄 프린스 호텔 도착
19:00 - 2층 “Providence hall” 40주년 파티
20:30 3층 “Golden cup” 으로 이동
20:45 - 자동차 노련의 환영 만찬 (공식)
22:00 “Keikyu EX Inn” 복귀

2012년 9월 7일 (금)

08:45 “Keikyu EX Inn” 숙소 호텔 출발
09:15 the hall “Mielparque tokyo” 도착
- 리시버와 게스트 리본 을 받음
10:00 외국손님 단상에 착석

10:00- 10:09 개회와 의제보고

10:09- 10:14 외국손님 소개

10:14- 10:30 외국손님 축사 (GUF)

- 축사 1 인더스트리올 사무총장 유리끼라이나의 영상편지
 Southeast Asia office Director Angelita Adviento

- Guest2 UNI (Tentative)

10:30 해외 손님 단상을 떠남

 *자동차 노련 간부들에게 리시버와 게스트 리본 반납

12:00-1400 중식

15:35 하네다공항 출국

2장. 기타

1. 그 외의 한국노총 국제담당자회의 등.

법 규 활 동

⇒ 기간 활동 평가 및 개선방향

1장. 금속노련 조직분쟁 조정위원회 운영규칙(안)

1. 이유
2. 제정근거
3. 주요내용
4. 운영규칙(안)

2장. 단위노조 질의에 대한 회시

1. 단체행동과 업무방해죄 자료 요청
2. 임원에 대한 불신임 기관
3. 임원 선거에 관한 질의
4. 쟁의행위(파업)시 임금 손실 분석
5. 포괄임금에 관한 회시
6.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질의 · 회시

3장. 통상임금 대응지침 참고자료

기관활동 평가 및 과제

법규 활동은 노동관계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입법 정책 활동을 주업무로 한다. 더불어 가맹노조의 각종 법률관계에 관한 질의와 규약 및 제규정, 단체협약의 해석 등의 활동을 한다.

법률 제개정 활동은 정책기획 활동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한국노총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본 법규활동 사업보고는 주로 규약 및 제규정 개정활동과 소속 단위노조의 요청에 따른 질의회시 위주로 정리하고 있다.

우리 금속노련은 현재 조직내 복수노조의 난립으로 인한 분열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분명하고도 명확한 명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노조의 분열에 의한 복수노조 설립시의 경우에는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직 화합을 도모해 왔다.

2012년 7월 1일을 기하여 전체 사업장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조내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교섭권 확보를 위한 조직경쟁 과정에서 조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산하조직 내 조직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할 '조직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그 수준이 심각하지 않음에 따라 규정으로 제정치는 않았고 운영방안으로 확정하였다.

우리 금속노련은 소속 단위노조의 법률관계 및 규약규정 질의에 대한 회시 활동을 전개하였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회시하되, 조직내부 갈등 또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시하고 있다.

“금속노련 조직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계획(안)

이 유

- 복수노조의 전면적 시행에 따라 결사 및 단결선택의 자유는 일정 정도 보장되었으나, 노동운동 진영 내 분열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분할 지배로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될 수도 있음
- 연맹은 복수노조의 난립으로 인한 조직 분열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분명하고도 명확한 명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노조의 분열에 의한 복수노조 설립시의 경우에는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직 화합을 도모해 왔음
- 복수노조 설립과 2012년 7월 1일 부터 모든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적용받게 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조직적 갈등과 고민이 나타나고 있음. 노조간 교섭권 확보를 위한 조직경쟁 과정에서 조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연맹은 산하조직 내 조직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할 '조직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직의 단결과 화합, 연대를 강화하고자 함

제정 근거

- 노련 규약 제7조제2호 (노동운동의 강화와 조직발전에 관한 사항)
- 한국노총 규약 제39조의2호 및 조직분쟁처리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 가. 1기업1노조, 1산업1산별 정신을 구현하고 단결권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조직 운영 준칙을 마련함. (안 제3조제1항).
- 나. 조직분쟁 발생시 자주적 해결 노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자주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분쟁조정으로 갈등을 해소하되, 조정안 거부로 분쟁이 지속될 경우, 한국노총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강제 사항은 아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마련함. (안 제9조 내지 안10조)
- 다. 노련 위원장은 13명의 조정위원단을 위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정회의는 조정위원단 중에서 대표위원이 지명한 5명으로 진행하며 분쟁당사자 배제 원칙을 마련함. (안 제6조, 안 제8조)
- 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합의 등에 따라 한국노총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라. 분쟁당사자가 모두가 수락한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조직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제정근거) ‘조직분쟁 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은 노련 규약 제7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운영규칙은 조직운영 준칙과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회원조직 간에 발생하는 복수노조 또는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직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운영 준칙) ① 금속노련과 각 회원조직은 조직의 단결로 노동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기업1노조, 1산업1산별의 노동운동 정신을 구현해 나간다.

② 각 회원조직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조직된 사업장에서 새로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그 동기, 구성원, 자주성과 민주성, 조합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노동운동의 기본정신에 부합한지 검토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③ 각 회원조직은 다른 회원조직 소속이거나 탈퇴한 노동자의 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조직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화에 적극 매진한다.

⑤ 각 회원조직은 조직사업 과정에서 기관지, 인터넷, 휴대폰, 인쇄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조직을 공개적으로 비방해서는 않된다.

⑥ 금속노련 가입과 탈퇴, 지역본부 설치, 구성 및 가입에 관한 사항은 규약 제10조 및 제12조, 제13조,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다.

제4조(설치) 금속노련에 조직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기능) 조직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분쟁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
2. 조직분쟁조정 신고서접수
3. 조직분쟁 조정을 위한 조직방문 및 조사활동
4. 조정안 작성
5. 기타 조직분쟁 예방 및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활동
6. 각 회원조직의 조직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 및 지도·감독

제6조(조정위원단 위촉)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13명의 조정위원단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이 노련 및 지역본부, 회원 조직의 직이 소멸되면 조정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14일내에 새로운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의 임기는 집행부의 임기와 같다.

제7조(대표위원 및 간사) ① 조정위원회에 대표위원 및 간사를 두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금속노련 간부중에서 대표위원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제반 조직분쟁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만,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위원이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대표위원의 지시사항, 신고서 접수, 사실 확인, 조사, 조정안 마련 등 조직분쟁조정에 필요한 제반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조정위원회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단 중에서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위원은 각 사건에 대하여 순번제로 조정위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 당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자주적 해결) 조직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노련의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정 신청) ① 당사자간 자주적인 노력으로 조직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일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직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조직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조정 개시) ① 조직분쟁 당사자 어느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조직분쟁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표위원은 즉시 회의를 열어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서 조직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조직에 통보 하여야 하며, 조직분쟁 조정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조정에 착수, 관계 당사자를 불러 심문을 하고 특정조직이 규약과 규정 및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③ 조정기간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안)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안이 분쟁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정안이 분쟁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부) ① 대표위원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으로서는 분쟁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정을 중단하고 한국노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노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회부를 결정하면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한국노총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대표위원은 조정 또는 회부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대표위원이 회의개최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소집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에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직분쟁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배정하지 않는다.

제15조(업무지원) ① 금속노련은 조직분쟁조정위원회의 제반 비용과 사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조직분쟁조정 신청서는 조직국에서 접수한다.

제16조(제재조치) ① 조직분쟁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조정안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 자행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피해 조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직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쌍방이 수락한 조정안 위반에 대한 피해조직의 신고가 있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보고하고 제재 방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권리회복) ① 쌍방이 수락한 조정안에 승복하지 않은 조직이 조정안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내용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행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보고하고 권리회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하며, 미비 사항 노련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장. 단위노조 질의에 대한 회시

1) 단체행동과 업무방해죄 자료 요청 (전송문 / 2012.07.27)

- 내용 요약 : 단체행동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자료 요청
- 송부 자료

① 단체행동과 업무방해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력을 높이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교섭중이라도 다양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여러 종류의 단체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형법 제314조 제1항)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의행위를 제외한 단체행동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인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의행위를 제외한 단체행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및 단체행동의 필요성·조합원수·단체행동의 성질·단체행동의 시간대 및 사용

시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㉞이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㉟사업장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
 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㊱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춘천지법 1999.10.7.
 선고 98노1147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적법한 단체행동의 종류

- ◆ 마스크 쓰고 침묵시위 : 마스크를 쓰고 요구안을 적은 피켓을 들고 현장을 순회.
- ◆ 휴지 투쟁 : 100원짜리 혹은 200원짜리 휴지에 요구안 스티커를 붙이거나 구호를 적은 종이를 넣어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게 준다.
- ◆ 껌투쟁 : 껌을 요구안 종이(매번 할 때마다 번호를 매겨둔다)로 싸서 홍보할 때 나눠준 다음 요구안 종이를 ①~⑤까지 모아오면 소량의 선물로 준다.
- ◆ 계란투쟁 : 계란을 삶아 계란 껍질에 구호나 요구내용을 적어 조합원들에게 나눠준다.
- ◆ 부채 나눠주기 : 부채에다 요구안이나 구호 등을 적어 조합원에게 나눠준다.
- ◆ 요구안 컵 : 자판기 종이컵에 요구안 종이를 붙이고 100개당 1개씩 ‘공투 승리’ 스티커를 붙여 당첨이 되면 소량의 선물을 준다
- ◆ 피켓시위 : 구호나 만화, 요구내용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순회하거나 행진한다.
- ◆ 깃(리본)달기 : 구호나 요구내용 등을 적은 깃을 앞가슴에 단다.
- ◆ 뺏지달기 : 도안이 된 뺏지를 단다.
- ◆ 요구안 명찰달기 : 요구나 구호를 적은 명찰을 만들어 단다. (조합원들이 일일이 참여하여 창조적으로 만든 뒤 코팅처리)
- ◆ 점심집회 :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래부르기, 율동배우기, 구호외치기, 교섭보고, 요구안 설명, 결의대회 등을 진행.
- ◆ 반짝집회 (5분 집회) :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등을 활용하여 잠깐 교섭상황보고 등을 진행.
- ◆ 조출홍보 : 아침 일찍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인사와 함께 홍보물 배포.

- ◆ 현장순회 : 일일이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이나 비조합원들을 만난다.
- ◆ 편지쓰기 :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쓰거나, 대상(동료 조합원, 다른 부서 조합원, 사장, 자기자신, 가족, 해고노동자 등)을 정해 정성껏 편지를 써서 일제히 전해준다.
- ◆ 스티커로 글자만들기 : ‘단결·투쟁’ ‘임금투쟁 승리’ 등 노조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구호나 요구를 선택하여 스티커를 붙여 글자를 만든다.
- ◆ 빨간 양말신기 : 일제히 빨간 양말을 신는다.
- ◆ 요구안답 쌓기 : 박스를 탁처럼 층층이 쌓아놓고 요구안을 적은 종이를 갖다 붙이거나 기둥을 세워놓고 요구안을 적은 종이벽돌을 만들어 쌓아올린다.
- ◆ 단체복 입기 : 근무복 대신 단체복을 입는다.
- ◆ 교섭대기투쟁 : 교섭위원들이 교섭하고, 조합원들은 교섭대기농성을 벌이면서 교섭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교섭위원들은 교섭 중간 중간 보고를 하고 조합원들의 투쟁분위기를 최대한 실어 교섭을 진전시킨다. (근무시간외)
- ◆ 부서별 단체행동 : 부서별 특성을 살려 부서별 단체행동을 벌인다. 부서별로 어떤 단체행동을 벌일 것인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예를 들면, 운송카와 작업장에 요구안 붙이기, 모자벗기, 요구안 팔찌, 요구안 풍선 달기, 책상탁자에 요구안 붙이기, 모든 거울에 요구안 붙이기, 어깨띠 만들기, 색깔있는 양말이나 스타킹 신기, 주차장에 홍보물 붙이기, 식당안 소자보 붙이기, 모자에 ‘공투승리’ 구호붙이기, 화장실에 소자보 붙이기, 휴게실 주변에 소자보 붙이기, 요구안 아대하기 등등 무궁무진하다)
- ◆ 서명운동 :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서명이나, 총회투쟁 참가 서명, 투쟁 지지서명 등을 벌인다.
- ◆ 로비농성 : 회사 본관, 현관 로비에 스티로폴 등을 깔고 농성장을 마련한 뒤 농성.
- ◆ 천막농성 : 회사 현관앞이나 적당한 장소에 천막 또는 텐트를 치고 농성.
- ◆ 노조사무실 로비 설치 : 노조 사무실을 로비에 옮겨놓고(전화기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로비로 이동) 전임자들이 전부 로비에서 업무를 본다.
- ◆ 회사, 작업장 비리 고발창구 개설 : 조합원·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사, 작업장 비리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상담함으로써 회사를 압박한다.
- ◆ ‘꽃달기’ : 요구안이나 구호 등을 큰 글씨로 만들어놓고 조합원들이 일일이 꽃으로 채우게 한다.

- ◆ 사장실 꺼안기투쟁 : 인간띠잇기로 사장실이나 본관을 둘러싸고 구호·노래·합성
- ◆ 안내소에 홍보물 전시 :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안내소에 홍보물을 배포.
- ◆ 깃발달기 : 요구안이나 구호 등을 적은 깃발을 각종 장소 등에 매단다.
- ◆ 요구안 아대(손목) : 요구안을 붙이거나 새긴 아대, 팔찌, 완장 등을 손목이나 팔목에 찬다.
- ◆ 손목에 빨간 손수건 두르기 : 손목에 빨간 손수건을 두르고 일한다.
- ◆ 작업장 기기에 스티커 붙이기 : 기기에다 요구나 구호를 담은 스티커 붙이기.
- ◆ 작업장 문에 홍보물 붙이기 : 작업장 문에다 노조의 각종 홍보물을 붙인다.
- ◆ 노래가사 바꿔부르기(노가바) : 요구내용이나 회사의 교섭태도 등을 기존 곡에 맞춰 가사만 바꿔부르게 한다(집회때 소개하거나, 부서별 경연대회를 벌여도 좋다)
- ◆ 4행시 짓기 : 4행시 짓기에 조합원들이 다 참여하게 하고 잘된 작품을 뽑아 시상하고 집회 때 발표하게 한다.
- ◆ 철야농성 : 간부·대의원·조합원 철야농성과 부서별 철야농성, 부서별 지지방문 등 다양하게 진행.
- ◆ 플랭카드 걸기 : 회사건물이나 담장 밖, 회사 근처 육교, 시내 중심가 등에 플랭카드를 단다.(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시내 중심가 활용도 가능하다)
- ◆ 소자보투쟁 : 구호, 그림, 만화, 사진 등 다양한 내용으로 소자보를 만든다.(1인 1소자보 만들기를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 좋다)
- ◆ 요구안 메뉴 : 밥을 먹으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요구안을 메뉴판으로 만들어 식탁에 비치해놓는다.
- ◆ 부서별 빈 대자보 설치 : 부서별로 빈 대자보를 설치해두고 ‘조합원 한마디’ ‘나의 투쟁 결의’ 등을 주제로 주고 조합원들이 대자보를 채우게 한다.
- ◆ 인형세우기 : ‘원직복직’이나 ‘적정인력 확보’ 등의 구호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인형(곰이나 오뎅이)을 만들어 회사 현관이나 계단에 세우거나 의자위에 앉혀둔다.
- ◆ 몸벽보투쟁 : 구호, 요구안 등을 적은 형겅이나 종이, 조끼 등을 몸에 착용
- ◆ 근무복 입고 노동부 항의방문 : 근무복입고 항의방문가면 효과가 아주 좋다.
- ◆ 항의엽서 보내기 : 엽서나 혹은 작은 종이에 불성실교섭·노조탄압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적게 한 뒤 사장에게 직접 전달한다.
- ◆ 조합원 릴레이보고 : 보고대회를 부서별로 나눠서 3일 혹은 5일에 걸쳐 전 조합원

이 한 번씩은 참여하도록 배치.

- ◆ 옥상보고대회 : 현관로비-계단-옥상 등으로 교섭보고대회 장소를 이동.(점심시간)
- ◆ 보물찾기 : 요구안을 적은 쪽지를 회사 곳곳에 숨겨놓고 찾아오는 조합원에게 상품을 준다.
- ◆ 요구안 퀴즈 : 요구안 등에 대한 OX퀴즈를 내어 많이 맞힌 사람에게 상품을 준다.
- ◆ 손도장찍기 : 결의내용을 담은 구호나 요구안을 적어놓고 결의의 손도장을 찍는다. 손도장을 찍고 서명날인 하거나 구호나 결의를 밝히는 내용을 적는 것도 좋다.(도장밥, 직인용 잉크, 물감 등 사용)
- ◆ 1인 1구호 만들기 : 전체 조합원이 요구내용, 결의내용을 담은 구호를 만들게 한다.
- ◆ 소망의 바람개비 달기 : 스티로폼판에 ‘단결투쟁’이나 요구를 쓰고 색종이로 접은 바람개비를 꽃아서 단다.(바람개비 접기나 바람개비 달기를 조합원 전체가 함께 할 수 있게 조직한다.)
- ◆ 동시 출퇴근투쟁 : 시간을 정해서 정문입구나 어디 지정된 장소에 모여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도 같이 모여서 함께 한다.
- ◆ 광고대자보 : 예쁘고 다양한 광고를 오려 노조의 요구나 하고 싶은 말을 광고에 맞게 말을 만든다.(예를 들면 해변가에 누운 비키니옷 입은 여자사진을 활용해 “2012년 투쟁 승리해서 나도 멋있는 수용복 사서 입고 해변으로...”)
- ◆ 홍보물 집으로 부치기 : 긴급하거나 또는 가족들까지 함께 하기 위해 홍보물을 조합원 집으로 부친다.
- ◆ 화장실 홍보 : 화장실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홍보물을 놔둔다.
- ◆ 퇴근 후 선전전 : 노조에서 마련한 홍보물을 퇴근하는 조합원마다 10장, 20장씩 갖고 나가 퇴근하면서 지역노동자,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 ◆ ‘교차로’에 광고 : 교차로, 가로수 등에 ‘적정인력 확보’투쟁의 일환으로 ‘인력모집’ 광고를 내고 광고가 실리면 이 광고를 확대복사하여 배포한다.
- ◆ 단식투쟁 :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단식투쟁을 벌인다.
- ◆ 삭발·단발투쟁 :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삭발식이나 단발식(스포츠머리 정도로 짧게 깎는다)을 벌인다.
- ◆ 교섭참관투쟁 : 교섭자리에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면 그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근무시간외)

2) 임원에 대한 불신임 기관 (금속노련 정책 제120호 / 2012.08.22)

○ 질의 내용 요약 :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은?

○ 회시 내용

□ 질의1) 총회 및 대의원 대회의 법적 기능?

○ 회시 :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두기로 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2)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이 가능한지?

○ 회시 : 우리 금속노련은 귀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구 규약(일부 조항 발췌)을 검토하고 구두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 바, 첫째, “당해 노조는 총회를 대신하여 대의원대회를 운영해온 점”, 둘째,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해온 점”, 셋째, “구 규약 제 24조 제3호에서 임원 인준 및 운영위원 선출과 징계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규약개정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했다면, 선출기관인 총회에서 위원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고, 만일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을 불신임할 경우에는 적법성이 부인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 참조 사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제17조(대의원회)

○ 노동조합과-1502, 2004. 6. 5.

노조규약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을 총회에서 선출해온 관행이 있다면 그 선출기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 노동조합과-1133, 2005. 4. 19.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불신임도 원칙적으로 선출기관에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 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임을 고려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제16조 및 제17조>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 분할 ·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 · 변경과 임원의 선거 ·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55.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 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을 총회에서, 부조합장과 회계감

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음.

- 현 임원의 임기는 2004. 11. 9이고, 대의원의 임기는 2004. 12. 20인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대의원이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귀 부의 견해는

A 회시

1. 노조법 제17조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관행에 따라 의결기관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노조 규약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인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 임원선거에 대한 규약의 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위임없이 임의로 그 선출기관을 변경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1502, 2004. 6. 5)

77.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Q 질의

- 노조 규약에 조합장 선출 및 해임권한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다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장을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1. 노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으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라면, 당해 임원의 불신임은 원칙적으로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점, 질의의 경우 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한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봄.

(노동조합과-1133, 2005. 4. 19)

3) 임원 선거에 관한 질의 (금속노련 정책 제124호 / 2012.08.27)

○ 질의 내용 요약 : 정년을 앞둔 조합원이 3년 임기의 임원선거 출마에 가능한지?

○ 회시 내용

□ 질의) 정년을 2년6개월 앞둔 조합원이 3년 임기의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 회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하고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며 균등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규약 제9조에서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6회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임기중 정년도래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규약, 선거관리규정을 종합하면, 임원의 임기중 정년이 도래하는 조합원이라도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 참조 사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제23조(임원의 선거등)

- 노사관계법제팀-3322, 2006. 11. 8.

노조 임원에 출마하는 자에 대한 후보등록요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한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갱신 등으로 개별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재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

67. 근무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원 입후보 자격

Q 질의

-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연장기간 포함)는 입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 위원장은 차기위원장에 입후보하기에는 8개월이 부족하자 차기 위원장에 입후보 할 의도로 사업주와 1년간 일당제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는

A 회시

1. 노조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후보등록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임.
2. 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 연장기간도 포함)는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무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복무연장 된 근로자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통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배경과 취지 등을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등으로 개별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객관적·외형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통상의 관

례에서 벗어나 특정 근로자의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322, 2006. 11. 8)

4) 쟁의행위(파업)시 임금 손실 분석 (금속노련 정책 제127호 / 2012.08.28)

○ 질의 내용 요약 : 파업시 인건비 손실 예상 자료 분석 요청

○ 회시 내용

☐ 요청 사항) 회사측에서 제출한 “파업시 종업원 인건비 예상 손실” 자료 분석 요청

○ 답변 내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 조항은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면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요구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 스스로도 노사화합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제출한 “파업시 종업원 인건비 예상 손실분” 자료를 보면,

☐ “급여(기본일급, 야간, 교대 및 보전수당 일할 계산) / “상여” / “특휴”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의 적용범위에 대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특단의 규정을 명시한 경우(예를 들어 사용자의 은혜적 급부나 복리후생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부등)를 제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공제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협력 68140-351, 1997. 8. 29)

□ 주휴의 경우 반드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무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기로 하였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쟁의행위(파업)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이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전기간동안 쟁의행위(파업)를 하였다면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방법 및 일시에 따라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할 수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연차의 경우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근속년수 매2년마다 1일씩 기준일(15일)에 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의 소정근로일 산정과 같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을 산정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연차의 경우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월차의 경우

귀 노조의 단체협약 제37조를 보면, 기존의 연·월차휴가 제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월차제도를, 제2항 내지 3항은 연차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월차제도를 별도로 인정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월차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때문에 월차휴가를 단체협약에 존치할 경우 지금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에게 월차휴가를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치 아니하였고 개근(만근)하지 않았으므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월차제도가 포괄적으로 연차제도의 일부분일 경우

다만, 제2항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10일에서 8일)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본지급일수보다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은 80%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37조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1항의 월차일수를 포괄적으로 연차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연차수당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타결 일시금의 경우

타결일시금이란 노사가 단체협약 타결시 합의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타결일시금을 임금손실 내역에 포함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조 사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 노사협력 68140-351, 1997. 8. 29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의 적용범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노사협력 68101-200, 2001. 5. 2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등의 경우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8. 10. 25 (연차유급휴가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등의 부여를 위한 출근을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343.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Q 질의

-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감액 지급할 경우, 동 원칙을 적용할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노조법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중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 기간중 근로하지 않은 시기에 대응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로써,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의 적용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제항목을 검토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특단의 규정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협력 68140-351, 1997. 8. 29)

338.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Q 질의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나 1.23~25(설연휴), 3.1(삼일절) 등의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약정휴일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 회시

1.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관련, 노조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때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법 제2조제5호)에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2.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협력 68101-200, 2001. 5. 2)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제정 : 근기 68207-709, 1997.5.30

개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1. 배 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5) 포괄임금에 관한 회시 (금속노련 정책 제131호 / 2012.09.06)

○ 질의 내용 요약 : 포괄임금 변경시 적법 절차

○ 회시 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실제 근무한 시간외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판 1997.7.22. 96다38995 등 다수)

회사는 입사시 근로계약을 근거로 작업 형편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되, 월 정액(월 6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시행해 오다가, 회사내에 노조가 설립되자 입장을 돌연히 변경하고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였다면,

위의 행위는 노조 설립 또는 가입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한 것으로 정당성을 득하기 곤란하므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고, 만일 사용자가 포괄임금제에 따른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와 협의후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근무일마다 1시간을 더 근로하도록 하였다면 기존 월정액에서 1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6)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질의·회시 (금속노련 정책 제8호 / 2013.01.16)

○ 사실관계 :

- 금속노련 산하 단위 노동조합은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만 55세를 정년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는 6월말일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생일자는 12월말일을 정년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 이 같은 합의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는 6월말일까지 근로하고 7월1일자로, 7월부터 12월말일까지의 생일자는 12월31일까지 근로하고 1월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연차휴가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왔습니다.

○ 질의내용 : 금속노련 소속 단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는 6월말일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생일자는 12월말일을 정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합의의 실제 정년퇴직일은 7월1일과 1월1일이므로, 12월말일까지 근로하고 1월1일 정년퇴직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

되는 바, 귀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 회신 내용 : 근로자가 정년 퇴직일인 12월31일까지 실제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
가 발생요건을 갖춘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개
선정책과-1115, 2013. 2. 14)

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 귀하
(경유)
제목 질의 회신(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관련)

1.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관련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
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연
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구분하여 부여하는 사업장칙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만 55세를 정년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는 6월 말일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생일자는 12월 말일을
정년으로 한다」로 규정된 경우,

- 정년퇴직일인 12월말일은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해당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가 정년
퇴직일인 12월3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해 1월1일에 퇴직하였다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주무관	김영훈	행정사무관	노경민	★근로개선팀	전공 2013. 2. 12.
				책임자	이정환

발표자

시행 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 2. 14.] 접수

우 427-718 경기 과천시 중앙동 3-15 고용노동부 3층 근로기준과 / www.moel.go.kr

전화번호 02-2110-7393 팩스번호 02-503-6692 / shgc2000@moel.go.kr / 비공개(B)

Me First, 녹색은 생애이다.

3장. 통상임금 대응지침 참고자료

(금속노련 정책 제52호 / 2013.03.08)

1. 통상임금의 의미

○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에 따라 총임금 변동 초래

-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시급 통상임금 액수가 달라지고 전체 임금의 변동을 초래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

* 월급제 : 시간급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의 총액 ÷ 월소정근로시간

* 시급제 : 시간급 통상임금 = 기본시급 + (월통상임금의 총액 ÷ 월소정근로시간)

* 일급제 :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8시간) + (월통상임금의 총액 ÷ 월소정근로시간)

2. 통상임금에 대한 법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개정 2012.9.25 개정, 노동부예규 제47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의 정의 및 산정방법, 판단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해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제시
- 동 지침에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급 임금”으로 규정

○ 대법90다카12493, 선고 1990.12.26 판결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의 근거로 대법90다카12493 판결을 인용
- 대법90다카12493 판결을 쉽게 풀이하면 “전체근로자에게 매월을 지급하는 고정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복리후생비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부정기적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켜 옴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으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거나 일부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90다카12493. 선고 1990.12.26 판결)

3.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입장 변화

가. 전체근로자에서 일부근로자도 가능 : “일률성” 개념의 변화

-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 1993.5.27 선고 92다20316, 대법 1994.5.24. 선고 93다31979 판결)

나. 매월 지급(1임금지급기)에서 일정시기 지급으로

- 대법원은 ‘1 임금지급기 즉, 1개월을 넘어, 매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다. 복리후생 명목의 급여라도 통상임금에 해당

-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구별할 근거가 없으므로 복리후생비라도 지급형태상의 고정성과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대법 1996.2.27 선고 95다37414 판결,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대법원 1993.5.11. 선고 93다4816)

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다23064)
-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고, 퇴직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됨(대법 2012. 3. 39 선고, 2010다91046)

4 주요 쟁점이 되는 수당별 검토

가. 근속수당

- **행정해석** : 근속연수에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하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판례** : 행정해석과 달리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였으나, 최근에는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불인정 사례>

- ① 입사한지 1년이 되고 매월 7일 이상 승무한 경우 1년근무를 기준으로 근속연수 10년까지 매년 같은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근속수당은 실제근무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미포함(대판 91다 17955, '92.2.14).
- ② 만 1년이상 근속한 경우 1년당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고, 근속연수에 구애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미포함(대판 92다 7306, '92.5.22).
- ③ 3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 범위에 미포함(대법원 1994.10.28., 94다26615)

<인정 사례>

- ① 매월 일률적으로 근속연수 1년당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산정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경우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대판 91다 9335, '92.5.12).
- ②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은 은혜적인 배려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과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2000.12.22., 99다10806, 2002.7.23., 2000다29387)

나. 식대보조비

○ **행정해석** : 소정근로의 근로의 질과 양에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급여이므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도 포함되지 않는다.

※ 식대보조비가 매월 정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포함

○ **판례** : 식대보조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최근에는 실제근무일수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불인정 사례>

- ① 식사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에 미포함
(대법원 1996.5.14., 95다19256, 2003.4.22., 2003다10650, 2003.10.9., 2003다30777)

<인정 사례>

- ① 임금지급내용, 임금지급실태 등으로 보아 입갱수당, 광산근무수당, 식대보조비 등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또는 매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대법원 1992.12.8., 92다23636)
- ②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수령한 임금이나 실제 근무한 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임금을 말하는 바,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대판 93다 9620, '94.2.22)

- ③ 매월 일정액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1996.5.10., 95다 2227, 1996.6.14., 95다4573)

다. 가족수당

- **행정해석** : 가족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균임금에는 포함 → 가족수에 따른 차등 또는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기타 금품

- **판례** :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고 있으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한다.

<불인정 사례>

- 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대판 1991.6.28, 90다카 12493, 2003.4.22., 2003다 10650, 2003.10.9., 2003다30777).

<인정 사례>

- ① 가족수당이 기혼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 하여 이를 기혼인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은혜적인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대판 87다 478, '88.3.22).
- ②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대판 91다 5501, '92.7.14).

라. 상여금

- **행정해석** : 1개월 이상 단위로 설정(연 600% 등)된 상여금은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 고정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는 포함

- **판례**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다23064),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고, 퇴직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됨(대법 2012. 3. 39 선고, 2010다91046)

<불인정 사례>

- 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임금(상여금 등 1개월 이상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대법원 1990.11.9., 90다카6948)
- ②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될 임금에서 제외(대법원 1990.2.27., 89다카2292)
- ③ 상여수당은 연간 사업실적과 직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대법원 1990.11.27., 89다카 15939)
- ④ 일정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4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조합 소속 임·직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대법원 1996.2.9., 94다19501)

<인정 사례>

- ①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체력단련비를 연 5 회,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월 통상임금의 50% 내지 100 %를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1년 미만은 50%를,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를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 다2227 판결에서 판단된 정근수당은 이 사건의 정근수당과 그 지급기준, 내용 등이 다르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11.6.24, 2011다23064)
- ② 이 상여금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의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2. 3. 29. 2010다91046 판결).

※ 대법 2012. 3. 3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보기

【사건개요】

- 단체협약(제27조): ①상여금은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60%, 12년 이상 근무시 750% 지급, ②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 지급
- 임금협정 :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기본시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휴가수당 및 능률수당을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월임금으로 지급

【당사자 주장】

- 원 고 :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기본시급외에 상여금·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 재산정 지급
- 피 고 : 상여금·근속수당은 정기성·고정성이 없고,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미해당

○ 1심판결(대구지법 2009.8.12. 선고 2007가단131125 판결) : 원고 승소

○ 2심판결(대구고법 2010.10.7. 선고 2009나6692 판결) : 원고 패소 1심판결 취소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나 6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퇴직자에게는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만근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그 지급액이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를 고정적 임금

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 3심판결(대 법 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2심 파기환송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비추어 보면, 우선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끝이 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도 실제 피고의 상여금 지급실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하여 과연 원심 판시의 상여금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

※ 3심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종전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연간단위 지급율이 결정된 뒤 분기별로 분할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본 기존 판례 경향과 행정해석을 뒤집은 판결이다. 2심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주된 이유인 ‘지급당시 재직 중인 경우, 중도퇴직 시 월할 계산’에 대해서 반대로 통상임금의 한 근거로 판단하였다.

마. 승무수당

- **행정해석** : 근무일과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 근무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승무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

- **판례** : 근무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불인정 사례>

- ① 안내원이 승무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기사에 한하여 노선 구분별로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개폐수당” 및 승무직 종업원에게 노선별, 거리별로 일정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승무 직종별로 1km당 일정액을 지급기로 한 “키로수당”은 일정범위내의 근무일수, 근무성적 및 운행실적이 있어야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미포함(대판 91다 17955, '92.2.4, 대판 92다 7306, '92.5.22, 1996.6.28., 95다2407, 2002.7.23., 2000다29370)

<인정 사례>

- ① 근무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승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온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대판 92다 6570, '92.5.12, 전주지법 2012.1.3., 2010가합5105)

바. 기타 복리후생적 수당 등

- **행정해석**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 판례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한 복리후생적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사례가 있으나, 연 1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¹⁾, 효도제례비·연말특별소통장려금·출근보조여비²⁾ 등 출근일수에 차등을 두거나 실제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제외하는 사례도 있는 등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³⁾ 주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일수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⁴⁾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주휴일 수당이 포함⁵⁾하고 있다.

⑤ 기타 :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 기타 사항은 금속노련 2013년 금속노련 임단투 지침 제5장 “I. 통상임금 관련 판례 변화에 따른 대응 지침”을 참고할 것

※ 각 단위노조에서 통상임금에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할 경우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첨부해 연맹으로 문의요망. 연맹은 판례 등에 기초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확인해드릴 예정임

1) 대법원 1996.2.9., 94다19501

2) 대법원 2007.6.28., 2006다1388

3) 연료수당·출근장려수당(대법원 1990.11.9., 대법 90다카6948), 무사고수당(대법원 2003.6.13., 2002다74282) 등

4) 대법원 1998.4.24. 97다28421

5) 대법원 2007.1.11. 2006다64245

산업안전활동

⇒ 기간 활동 평가 및 과제

1장. 연구.조사및 정책.제도개선활동

2장. 산업안전보건교육

3장. 각종 산업안전보건 행사 및 세미나 참석

평가 및 개선방향

2012년에는 각종 유해물질 폭발 및 유출사고등이 많은 한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인해 죽고 다치고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한해였다. 그동안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안이한 대처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하고 사고가 많았던것이 이젠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한 해였다.

그로 인해 정부나 각 지방정부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야 다각적인 대처와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정부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올해부터 산업현장에 위험성 평가하는 부분을 의무화 하였다.

올한해도 유해물질과의 싸움이 계속 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금속노련의 산업안전국 사업은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사업과 법개정등 지속적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현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산업안전예방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느해보다 많은 간부들이 참석하여 교육의 열의를 보였으며 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고취시켜하는 숙제를 남겼다.

특히나 산업안전보건국 사업은 교육뿐만이 아닌 현장과 직접 연계하고 연대하여 현장의 조합원들의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개입하여 함에도 현장과 함께 하는 사업이 부족한 것에 대한 평가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과 연맹은 사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1장. 연구.조사및 정책.제도개선활동

1. 노동자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장 영양관리 개선사업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1) 목적

-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서부터 올바른 식단과 영양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그러나 하루 2~3끼의 식사를 사업장에서 제공받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한 노력은 매우 저조함.
- 2000년 영양사의 의무고용제도가 폐지되면서 중, 소기업의 경우 영양사 없이 조리사만을 고용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거나 급식관리의 편리를 위해 영리추구가 우선인 위탁급식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단급식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 급식을 하는 사업장의 영양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단관리 등 사업장 영양컨설팅 사업 전개 및 교육을 통하여 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2) 주요 연구 내용

- 문헌 및 자료조사
- 집단급식 사업장의 급식제공 및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노동조합 대표, 노동자 및 영양사 등 529명
- 사업장 영양관리 및 의식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컨설팅 실시
 -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급식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평가 및 영양개선사업 수행, 교육 등 지원

- 영양관리 개선사업의 효과 및 노동자 건강증진 효과 분석
 - 5개 사업장 2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영양개선 컨설팅 사업 실시 전후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 효과 분석
 - 25명의 혈액을 채혈하여, 혈당,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등 분석
-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 5개 사업장 노동자 대상
- 전문가 회의
- 토론회 개최
- 최종보고서 발간

3) 기간

- 2012년 2월~12월

4) 결과

- 5개 사업장 2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컨설팅 실시 결과 영양상담 전과 후의 섭취량 변화는 남자와 여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부족에서 필요추정량 범위로 적절하게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상담 후 모든 영양소 섭취량이 확연히 감소함을 보였다. 대상자들의 과식 횟수, 달콤한 간식 횟수, 라면 등 가공식품의 횟수, 기름진 음식섭취 횟수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는 증가하였다. 식품의 섭취를 보면 단백질 식품, 해조류 식품 섭취가 증가하였고 규칙적인 식사횟수와 물의 섭취도 증가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영양사가 있는 급식소의 경우는 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식단이 영양적으로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음식 맛이 덜 짜고, 덜 맵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서 느끼고 있었다.
- 혈액 채취 및 생화학적 분석 결과에서는 혈당, 총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은 감소 및 증가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로 보았을 때 여자의 경우 중성지방(TG)이 사전 168.3에서 사후 135.2로 변화를 보였다.

2.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

1) 목적

○ 반도체 ·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연대활동 전개

2) 참여단체

○ 한국노총,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자산업노동자건강연구회,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반올림,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정의 등

(3) 주요 활동 내용

- 반도체, 전자산업 피해 노동자 지원 및 향후 활동강화를 위한 연대주점

3.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활동

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논의 배경과 주요 경과

(1)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신설과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2008. 7)

- 산재보험의 진입장벽 강화와 산재보험에 대한 고통 심화
- 업무상질병 승인율 하락 (2007년 45.4% → 2012년 35.7%)
-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 협소한 인정범위와 모호함, 재해조사의 부족과 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이 주요원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판정제도의 개선과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 확대를 요구해왔음.

(2) 산재보험제도개선TF 운영

- 2010. 11월 설치
- 구성 :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2010. 11 ~ 2011. 12 : 업무상질병 판정절차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여 상병별 심의체계의 확립, 산업의학의 참여 확대, 현장 재해조사의 확대 등 16개항을 합의하여 제도개선 추진
- 2012년 논의 현황 : 21차례 회의, 전문가 소위원회(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운영,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

2) 뇌심혈관계질환의 인정기준 개정

(1) 만성적 과로의 기준으로 정량적인 시간기준을 최초로 도입함.

- “발병전 3개월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함”
- “발병전 3개월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음.”
- 60시간 미만이라도 야간근무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강조해 언급토록 함.

(2) 감시단속업무 및 운전직의 특성에 따라 판정지침 보완(과제)

- 단순감시직 업무는 통상적인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종류, 내용, 주기성과 지속성, 별도의 장소에서 취하는 수면시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토록 요구.
- 운전직 업무에 대한 판정지침 신설을 통해 운전직의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장토록 하는 방향으로 판정지침 개정 노력 필요

4. 근로조건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1) 목적

- 근로조건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산업재해와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노동시장 문화를 개선함.
- 산업재해의 발생현황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한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형을 제시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
- 근로조건 실태조사 : 1,116부 배포, 250부 수거
- 면접조사 : 10개 사업장
- 직무스트레스 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25개 사업장, 975명
- 산재승인 현황 조사 : 217곳 확보, 사업장의 3년간 재해발생현황 및 유형 등

3) 주요 분석결과

-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4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 122개 사업장으로 59.8%였으며, 교대근무 및 근무혼합형으로 가는 사업장이 155개로 75.9%였고, 야간근무를 하는 곳이 167개 사업장으로 83.5%를 차지함.
- 3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건수를 분석한 결과 실근무시간 48시간 이상에서 40시간 미만보다 산재가 많았으며, 특히 야간노동이 있는 곳에서 산재승인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평가 및 향후계획

- 25개 사업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조사와 사업장별 조사결과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근로조건에 따른 산업재해의 영향은 3년간의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현황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지만, 사업장내 공상처리 만연과 분석기간 3년만으로는 산재승인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영향 평가로 이어지지 못함.

2장. 산업안전보건 교육

1. 본노련 산업안전보건 교육

1) 취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명, 하루에 5,000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로 희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한해 약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약 2천백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여전히 안전보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통계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고 쟁취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상 활동이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1차.2차 두차례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함.

2) 일정

1차 - 2012년 6월 15일(수) ~ 17일(금)

2차 - 2012년 11월 28일(수) ~ 30일(금)

3)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

4) 일정표

(1) 1차 교육 일정표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6/15(수)	6/16(목)	6/17(금)
07:00 ~ 09:00		아침식사 및 교육준비	
09:00 ~ 10:00		산재예방과 산재보상	유해화학물질의 이해와 대응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교육등록 및 개강식	현장 응급처치	
14:00 ~ 15:00	노동정세와 산업안전보건실		
15:00 ~ 16:00		교대제와 노동자 건강	
16:00 ~ 17:00	산업안전보건법		
17:00 ~ 18:00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0:00	노동조합활동과 작업환경 개선사례	산업안전보건활동 강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20:00 ~ 21:00			
21:00 ~ 22:00	휴식 및 취침	단결의 밤	

(2) 2차 교육 일정표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11/28(수)	11/29(목)	11/30(금)
07:00 ~ 09:00		아침식사 및 교육준비	
09:00 ~ 10:00		산업안전보건법	발암물질과 직업성“암”
10:00 ~ 11:00			
11:00 ~ 12:00	교육등록, 접수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개강식	노동조합활동과 관계법령	
14:00 ~ 15:00	노동운동과 정치		
15:00 ~ 16:00			
16:00 ~ 17:00	스트레스해소와 웃음치료		
17:00 ~ 18:00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0:00	노동조합활동과 작업환경 개선사례	산업안전보건활동 강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20:00 ~ 21:00			
21:00 ~ 22:00	휴식 및 취침	단결의 밤	

5) 참가자

(1) 1차 교육 참가자

번호	사업장명	직 책	이름
1	명화공업 안산지부	사무장	박일문
2	"	산업안전부장	고정만
3	"	체육부장	이종훈
4	성우오토모티브	산업안전부장	류성수
5	"	조직부장	남상렬
6	"	대의원	김완석
7	세방전지	산업안전국장	김시균
8	풍산	조직국장	남태현
9	"	대외협력국장	박강호
10	"	조사통계국장	이춘규
11	풍산 안강지부	산업안전부장	김재봉
12	"	산업안전차장	권인석
13	"	산안위원	임웅철
14	"	"	권오탁
15	세방산업	부위원장	한준호
16	"	사무국장	구인서
17	한국코오베용접	후생복지부장	전갑수
18	"	산업안전부장	배국환
19	휴스틸	조직차장	강재구
20	"	산업안전부장	유경곤
21	"	대의원	성윤창
22	전진CSM	산안부장	박성복
23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강준형
24	아이아	산안부장	김광수

25	"	후생복지부장	이수형
26	삼동 문경지부	산업안전부장	장재훈
27	"	홍보부장	조창일
28	"	교육선전차장	이교한
29	"	조합원	고현정
30	넥스틸	대의원	김철호
31	"	대의원	배은상
32	"	조직부장	김기대
33	삼영전자	부위원장	김진우
34	"	부위원장	박수영
35	"	회계감사	신철원
36	"	조사부장	윤상용
37	엠이엠씨코리아	산업안전부장	최창필
38	"	대의원	김경만
39	"	대의원	이상우
40	한라스텍폴	산업안전부장	김두성
41	"	대의원	이상우
42	디젠스	정책기획부장	이순열
43	"	법규부장	김호일
44	신한일전기	안전부장	이성재
45	"	조직차장	김영천

(2) 2차 교육 참가자

번호	사업장명	직 책	이름
1	새론오토모티브	산업안전부장	윤장현
2	"	대의원	이효연
3	SK하이이엔지	홍보부장	정순태
4	"	대의원	이현선
5	"	"	조상현
6	"	"	공명환
7	인알파코리아	쟁의부장	이태영
8	"	산업안전부장	박원제
9	휴스틸	사무국장	이상래
10	"	조직차장	김중성
11	"	대의원	한재영
12	MEMC코리아	산업안전부장	장천종
13	"	대의원	김경만
14	세진전자	사무국장	윤복현
15	현대엘리베이터	산업안전부장	추해덕
16	경신전선	사무국장	신동준
17	"	산안부장	심언신
18	포스코켄텍	후생복지부장	함성환
19	"	법규안전부장	김도윤
20	"	안전담당	손준영
21	삼동문경지부	복지부장	이동호
22	"	조직부장	이상일
23	"	문화체육차장	전상복
24	"	조직차장	신현석
25	신한테크노일반	산업안전부장	최대형
26	아이아	산업안전부장	김광수
27	"	후생복지부장	이수형

6) 평가 및 과제

- 금속과 화학의 현장 산업안전담당 간부들은 같은 제조노동자라는 의식으로 연대와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음.
- 교육 이후 연맹과 현장 산업안전간부의 정보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초를 이어가야 함.
- 발암성 물질과 “암”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교육으로 배치하여 현장에서 발암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
- 산재보상에 대한 더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것을 요청하여 좀더 시간을 배치하여 교육을 진행함.

2.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과정

1) 목적

- 노동조합 산안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각 노동조합의 산재예방활동을 주도할 산업안전 전문가의 양성과 지역연대의 구축을 꾀함.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와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

2) 개요

- 일정 : 2012년 9월 12일 ~ 9월 14일
- 장소 : 리솜오션캐슬
- 참가인원 : 금속 44명

3) 교육내용

-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 심폐소생술 및 기도 응급조치
- 장시간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교대제와 노동자 건강
-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실무
-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 분임토의(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및 교대제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3장. 각종 산업안전보건 행사 및 세미나 참석

1. 제12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및 4월 노동건강권 쟁취 투쟁

1) 목적 및 기본방침

-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는 한편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함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산하조직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
-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 근절을 촉구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ITUC(국제노총) 가맹 조직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

2) 제12회 산재노동자의 날 정책목표

- 슬로건 : 산재없는 일터, 충분한 재할 그리고 원직복직을 위하여 !!
- 장시간노동과 야간교대노동 개편을 통한 건강권 쟁취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전면개편과 산재보험 사회보장성 강화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산재보험제도 전면 개편

3) 추모제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27일(금) 오전 11시, 서울 보라매 공원내 산재희생자위령탑

(2) 참석현황 : 한국노총 조합원 및 산재환자 등 400명

(3) 식전행사 : 산재희생자 추모 및 산재예방을 위한 사진 전시회

(4) 추모제

- 경과보고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총장)
- 추모사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 추념사 (고용노동부 이기권 차관,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진명환 상임대표)
- 모범 산재노동자 표창
- 노동부장관표창
전국금속노련 세아베스틸노동조합 조합원 남준희
- 추모곡(윤미진)
- 산재희생자를 위한 진혼행사(새시대예술연합 민족춤패 출)
- ‘산업재해의 근절과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
- 헌화 및 분양

5) 산재희생자 추모주간 운영

- 기간: 4월 23일 ~ 4월 28일
- 추모주간 산하조직 실천지침
- 산재희생자 추모 리본달기, 행사, 회의시 산재희생자 묵념, 추모 현수막 게시

6)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내용: 추모행사 및 투쟁지침 선전

7) 평가

- 산재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산재예방, 산재보험제도의 개선과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확대에 대한 조합원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일부 회원조합과 산재단체의 참여가 높은 반면, 기타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의 참여가 형식적인 결합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따른 참여제고방안이 필요함. 연맹이나 단체별 참가방안(전시회, 선전전 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추모제 슬로건 및 실천지침에 대하여 이후 산재보험제도 개선활동 및 산재예방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교육 활동

⇒ 기간 활동 평가 및 개선방향

1장. 금속노련 교육 활동

1. 2012 금속노련 법률 교육 (2012.04.18~20)
2. 2012 금속노련 경영분석 교육 (2012.06.13~15)
3. 2012 금속노련 장시간근로 및 주간연속 2교대제 교육 (2012.07.18.~19)
4. 2012 금속노련 노조 간부 워크숍 (2012.10.09.~10)
5. 2012 금속노련 신임노조 간부 교육 (2012.12.01.~03)
6.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제1권역 하루 교육 (2012.12.18)
7.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제3권역 하루 교육 (2013.01.09)
8.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제2권역 하루 교육 (2013.01.17)
9. 2013년 금속노련 제1차 교섭위원 교육 (2013.03.13~15)
10. 2013년 금속노련 제2차 교섭위원 교육 (2013.03.27~29)

2장. 단위노조 교육지원 활동

기간활동 평가 및 과제

우리 금속노련은 지난해(2012.04.01.~2013.03.31) 소속 단위노조의 임단투 지원을 위해 2회차에 걸쳐 단체교섭위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대의원들의 노동의식을 고양하고 기초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경영분석 교육과 법률교육, 노조 신임 대표자 및 간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쟁점이었던 장시간 근로와 주간연속 2교대제 교육을 2회차에 걸쳐 실시하고 권역별 하루 교육도 실시하였다.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 피교육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조건상 교육수준을 차별화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의 재정지원(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금)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시 교육비를 차별적으로 책정하고 있어서 소속 단위노조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우리 금속노련은 소속 단위노조에서 교육시 강사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주로 임단투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적절히 강사를 배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금속노련은 금년에는 소속 단위노조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위해 교육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협약에서 부여된 교육시간과 노조 간부 수련회, 상급단체 교육을 계획적, 의식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단위노조의 힘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섭위원 교육, 법률 교육, 선전선동 교육 등 기본교육 외에 피교육생을 차별화해 특수 목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교육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듣는 교육에서 직접 체험하는 교육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1장. 금속노련 교육 활동

1. 금속노련 법률 교육

1) 일시 : 2012년 4월 18일 ~ 20일

2) 장소 : 경주 콩코드호텔

3) 참석 : 노조 대표자 및 간부 80명

4) 교육일정표 :

일자 시간	4월 18일(수) (1일차)	4월 19일(목) (2일차)	4월 20일(금) (3일차)
08:00		조식	
09:00		비정규직법 실무 (현대차 사내 하청 판결의 의미등) -노무법인 참터 고경석 대표노무사 -	교육과정평가 및 종강식
10:00			
11:00			
12:00	접수 및 중식	중식	노동자의 반격, 현장을 조직하자!
13:00	개 강 식	통상임금과 임금교섭실무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노무사-	
14:00	‘금속노동자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련 임원-		
15:00	근로시간 법리해설 (연장근로제한 등)	노동안전보건실무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노무사-	
16:00			
17:00	-노무법인 참터 김철우 노무사-		
18:00	석식	석식	
19:00	교육생 상호인사		
20:00		단결의 밤	

5) 교육과정 :

일시		교육 내용	강사
4/18	3시-6시	제1강 근로시간 (3시간)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해설 -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 해설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 대응	김철우 노무사
4/19	9시-12시	제2강 비정규직법 실무 (3시간) -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의 의미 - 기간제법 해설 - 불법파견, 위장도급 실태와 대응	고경섭 대표 노무사
	1시-3시	제3강 통상임금과 임금교섭 실무 (2시간) - 근로기준법상 임금 법리 해설 - 노동부와 법원 기준의 상이성 - 최근 판례 동향 분석 - 통상임금 교섭 실무	유성규 노무사
	3시-5시	제4강 노동안전보건 실무 (2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노동안전 현장 체크리스트 - 노동안전보건 이슈의 단체교섭 활용	유성규 노무사

2. 금속노련 경영분석 교육

1) 일시 : 2012년 6월 13일 ~ 15일

2) 장소 : 단양 대명콘도

3) 참석 : 노조대표자 및 간부 41명

4) 교육일정표 :

일자 시간	6월 13일(수) (1일차)	6월 14일(목) (2일차)	6월 15일(금) (3일차)
08:00		조식	
09:00		1. 기업경영분석 개괄 2. 재무제표의 이해 3. 기업경영 지표의 이해 - 생산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등 4. 임금에 대한 이해 - 노조의 관점과 경영자의 관점 5. 생산성과 임금의 관계 - 생산성에 대한 이해 - 노조 관점에서의 생산성과 임금 6. 기업경영 역량 진단 - 조직 진단, 노사관계 진단, 생산현장 진단 7. 실습 및 발표 - 교육생이 직접 경영지표 및 생산성 등 계산 - 계산 결과 발표 - 개별 참가자 회사에 대한 진단 및 커멘트	계속
10:00			
11:00			교육 평가 및 귀가
12:00	접수 중식 및 숙소배정		
13:00			
14:00			
15:00			
16:00	개강식 ‘금속노동자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련 임원-		
17:00	교육생 상호 인사		
18:00	석식		
19:00			
20:00			

5) 교육과정 :

- 노동정세 및 경영에 관한 노동자의 관점 : 현 노동자를 둘러싼 정세 및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하여 바라보아야 할 관점 및 경영분석이 가지는 의의

- 기업경영분석 :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실습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성에 대해 진단하고, 해당 기업의 임금수준 및 증가율에 대한 진단 및 임금 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지표, 경영역량, 생산성을 노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배양

※ 필수준비물 : 최근 5개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최근 6개년 임직원수, 계산기 또는 노트북 컴퓨터(엑셀이용)

3. 금속노련 장시간근로 및 주간연속 2교대제 교육

1) 일시 : 2012년 7월 18일 ~ 19일

2) 장소 : 단양 대명콘도

3) 참석 : 노조대표자 및 간부 60명

4) 교육일정표 :

시간	교육과정		강사
1일차(18일)			
13:30~14:00	○ 접수 및 교육소개		-
14:00~17:00 (3H)	강 의1	○ 장시간근로개선 및 교대근무제도 해설 I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제 개편을 중심으로’ - 근로시간 및 교대근무제도 개편의 필요성 - 교대근무제도의 유형별 장단점 및 개편시 쟁점사항 - 현대자동차의 노동시간 및 생활실태 현황 -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 논의 경과 및 현황	박태주 박사 (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제개편 자문위원장,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17:00~18:00 (1H)	강 의2	○ 장시간근로개선 및 교대근무제도 해설 II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제 개편을 중심으로’ - 금속노조의 교대제 개편 논의사항 및 현안설명 - 완성차 및 협력, 부품업체의 교대제 개편 논의사항 토의	엄교수 (조선현대차노조 정책국장)
18:00~19:00	석식		-
19:00	자동차 부품 및 협력업체 노조 간담회		금속노련
2일차(19일)			
08:00~09:00	○ 조식		-
09:00~12:00 (3H)	강 의3	○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사관계실무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근로시간면제제도 - 장시간근로개선,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대응방안, 12년 노동법 개정사항	김영호 소장 (나눔노사관계 연구소)
12:00~12:30	○ 교육평가설문 및 수료		재단 담당자
12:30~13:30	○ 중식		-

4.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노조 간부 워크숍

1) 일시 : 2012년 10월 9일 ~ 10일

2) 장소 : 단양 대명콘도

3) 참석 : 노조대표자 및 간부 50명

4) 교육일정표 :

2012년 10월 9일 (화)		
시 간	내 용	강 사
12:00 ~ 13:00	중식	-
13:00 ~ 13:30	교육 소개 및 참석자 인사	-
13:30 ~ 15:30 (2H)	현대차 주간 연속 2교대제 합의 내용 및 향후 전망	박태주 (고용노동연구원 교수)
15:30 ~ 17:30 (2H)	교대근무제 실태 및 향후 개선 방향	김성희 (고려대학교 연구 교수)
17:30 ~ 18:30	석식	-
18:30 ~ 19:30	연맹 위원장과의 대화	-
2012년 10월 10일 (수)		
시 간	내 용	강 사
08:00 ~ 09:00	조식	-
09:00 ~ 11:00 (2H)	현 정세와 노동조합의 과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1:00 ~ 12:00	자동차 업종 노조 대책위원 회의	대책위원회

5. 금속노련 신입노조 간부 교육

1) 일시 : 2012년 12월 1일 ~ 3일

2)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3) 참석 : 노조대표자 및 간부 110명

4) 교육일정표 :

일 자 시 간	11월28일(수)	11월29일(목)	11월30일(금)
07:30~09:00	가자! 교육원으로!!	조식 / 교육준비	조식 / 교육준비
09:00~10:00		노동조합의 여가문화 (최용길 금속노련 지도위원)	노동조합 조직 운영2 (정상준 포항지역본부 의장)
10:00~10:30			
10:30~11:30	등 록	모듬별 토론	교육평가 및 종강식
11:30~12:00	등록 / 중식		
12:00~12:30		중 식	
12:30~13:00	개 강 식	가자! 현장으로!!	
13:00~14:00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쟁의행위 (김홍룡 금속노련 조직본부장)		노동조합 조직 운영1 (이상용 한국보그워너티에스 노조 위원장)
14:00~15:00			
15:00~16:00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정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입사에서 퇴사까지의 법률 문제 (김상규 공인노무사)
16:00~17:00			
17:00~18:00			
18:00~19:00	대화의 시간(위원장)		석 식
19:00~20:00	석식		토론 결과 발표
20:00~22:00	단결과 연대의 시간		

6. 금속노련 자동차입종 노조 권역별 하루 설명회

1) 제1권역(경기/안산시흥/인천)

- 일시/장소 : 2012. 12. 18(화) 14:00, 한국노총 경기본부 국제회의실
- 참석 : 경기, 안산시흥 지역 노조 대표자 및 간부 30여명 참석
- 내용 : 교대제 개선 사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제3권역(대구경북/경남)

- 일시/장소 : 2013. 1. 9(수) 14:00, 대구본부 중회의실
- 참석 : 대구경북, 경남지역 노조 대표자 및 간부 40여명 참석
- 내용 : 교대제 개선 사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3) 제2권역(충남/충북/대전/강원)

- 일시/장소 : 2013. 1. 17(목) 14:00, 충남본부 회의실
- 참석 : 충남, 충북, 대전, 강원 지역 노조 대표자 및 간부 30여명 참석
- 내용 : 교대제 개선 사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4) 교육일정

시간	교육과정	강사
13:30~14:00	○ 접수 및 교육소개	-
14:00~16:00 (2H)	○ 장시간근로개선 및 교대근무제도 해설과 중소기업의 대응	이문호 박사 (워크인연구소 소장)
16:00~17:00 (1H)	○ 금속노련 자동차 업종 노조 실태조사 결과 및 교대제 개선 사례	전종덕 (정책국장)

7. 금속노련 교섭위원 교육

1) 제1차 교섭위원 교육

- 일시 : 2013. 03. 13 ~ 15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참석 : 노조대표자 및 간부 120여명

2) 제2차 교섭위원 교육

- 일시 : 2013. 03. 27 ~ 29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참석 : 노조대표자 및 간부 140여명

3) 교육일정표 :

일자 시간	1일 차 : 3월 13일(수)	2일 차 : 3월 14일(목)	3일 차 : 3월 15일(금)
08:00	11시40분부터 접수 가능 (중 식)	조 식	
09:00		단체교섭 무엇을 할 것인가?(2)	모의 단체교섭 결과 발표
10:00		단체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11:00		-교섭에서 쟁의까지-	교육 평가 및 귀가
12:00		중 식	
13:00	개강식 및 사진촬영	계속 : 단체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14:00	금속노련의	모범 단체교섭 관람	
15:00	역사/상급단체의 역할과 조직형태		
16:00	2013년 노동정세	모의 단체교섭 실습	
17:00	2013년 노조의 역할, 과제		
18:00	석 식	석 식	
19:00	단체교섭 무엇을 할 것인가?(1)	모의 단체교섭 결과 작성	
20:00	참가조직 및 교육생 인사	단결의 밤	

4) 교육과정 :

- 금속노동자의 역사 / 상급단체의 역할과 조직형태 (최웅길 지도위원) : 금속노련의 역사와 상급단체(연맹과 지역본부)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이해한다
- 2013년 노동정세와 노조의 역할·과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 : 2013년 노동정세를 살펴보고, 2013년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를 생각해 본다.
- 단체교섭 무엇을 할 것인가?(전종덕 정책국장) : 2013년 금속노련 임단투 지침을 이해하고, 2013년 임금지침 작성 방법 등 단위노조에서 활용방법을 모색한다.
- 단체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김홍룡 조직본부장) : 교섭에서 쟁의행위의 과정을 살펴보고 2013년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모색한다.
- 모범 단체교섭 관람 및 실습(김홍룡 조직본부장) : 모범 단체교섭 관람과 교섭 실습을 통해 교섭력을 강화한다

2장. 금속노련 교육강사 지원 활동

번호	일자	발신처	지원강사	교육 주제
1	04/02	세폴러안산	정길채	임단협 지침과 정세
2	04/04	LS산전노조	정길채	임단협 지침과 정세
3	04/13	청주SK하이닉스	정영숙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4	05/31	OTIS엘리베이터	김성수 최웅길	노동정세와 노조의 방향
5	06/01	LG전자	정일진	상근자 실무능력 향상
6	06/27	경기지역본부	전종덕	노조 활동을 위한 간부 자질 향상
7	07/01	불보건설	김홍룡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8	07/13	니콘코리아	전종덕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9	08/14	남양공업	김홍룡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10	08/24	조선선재	정일진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11	08/27	강원랜드	김홍룡	임단협 전략 전술
13	08/28	니콘코리아	곽상욱	단체협약
14	08/30	대덕전자(3회차)	김홍룡	노동정세와 조합원의 자세
15	09/17	이천SK하이닉스	김만재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16	09/24	태양금속	김홍룡	퇴직연금 및 주간연속2교대
17	09/26	LG전자	정일진	상근자 실무 능력 함양
18	10/08	청주하이닉스	전종덕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19	10/08	하이디스	전종덕	구조조정 대응 전략
20	10/14	전공노조	김정균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21	09/27	대한제강	김홍룡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22	10/15	포항본부	김홍룡	노조 자세와 역할, 산안 활동
23	10/08	하이닉스(청주)	전종덕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24	10/16	대한전선	전종덕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25	10/15	LG Disply	정일진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26	10/22	동희오토협력	전종덕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27	11/01	새방전지	김홍룡	법정근로시간 및 조직강화 방안
28	12/18	태양금속	김홍룡	노동현안 및 간부의 자세
29	01/04	팬택	이정식	정세전망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30	2/25	대풍공업	김홍룡	노동정세와 조합원의 역할
31	3/6	철강협의회	김홍룡	2013년 임단투 지침
32	3/29	stx중공업	김홍룡	단조 간부 역량 강화

홍보선전 활동

⇒ 기간 활동 평가 및 과제

1장. 홍보사업

1. 속보
2. 기타선전활동

2장. 홈페이지 유지 관리 업무

3장. 교육동영상

4장. 부록

1. 속보
2. 성명서

평가 및 개선과제

2012년 월 1회 정례화된 소식지 발행으로 연맹의 사업과 투쟁의 내용들을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홍보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기획홍보 소재를 발굴하지 못하고, 발 빠르게 사회 현안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3 임단투 특보 사업은 상반기 금속연맹의 사업과 투쟁을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각적 효과와 핵심사업으로의 홍보기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단지 임단투 시기 뿐아니라 필요에 따라 특보의 발행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몇몇 현장의 임단투 시기에 발맞추지 못해 현장의 빠른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현장에서 교육동영상 홈페이지 내 제공 및 자료 공개 등의 요구가 있었다. 교육생들의 열의가 곧 현장의 요구라는 생각으로, 교육동영상 촬영 기자재를 최신화하고, 홈페이지 내 자료 탑재 기능을 향상시켜서 앞으로 경영평가, 교섭위원, 노동법률 교육 등을 물의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지역본부와 각 노동조합의 요구가 많아지고, 그 수준 또한 높아짐에도 연맹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는 예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본부 뿐만 아니라, 각 노동조합 또한 원한다면 연맹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SNS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각 노동조합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장. 홍보사업

1. 속보

2012년은 상반기 총선, 하반기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금속노련은 금속소식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등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 월정기적인 금속소식지 발행과 발 빠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노력했다(금속소식지 10회 작성, 배포). 그러나 노조법 재개정, 근로시간 문제 등의 심각한 당면 문제를 금속노련 산하 조직 근로자들에게 조차 그 심각성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 속보 상세내용은 부록별첨

2. 기타선전활동

1) 특보발행

2013 임단투 특보 사업은 상반기 금속연맹의 사업과 투쟁을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각적 효과와 핵심사업으로의 홍보기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단지 임단투 시기 뿐아니라 필요에 따라 특보의 발행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몇몇 현장의 임단투 시기에 발맞추지 못해 현장의 빠른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2) 성명서

성명서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 규탄,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규탄, 새누리당 환노위 파행 규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선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투적 자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연계하여 공동성명을 작성, 배포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대·투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 성명서 상세내용은 부록별첨

2013 노동자답게, 투쟁으로 돌파하라!

12만 금속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을 끝장내고
노동의 인간화 실현을 위한 투쟁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 살인적 장시간노동·심야노동 철폐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
- 노사공동 장시간근로 해소 및 교대제 개편 추진위원회 구성

임금제도 개선, 생활임금 쟁취

- 시·일금제를 월금제로 전환 요구
- 월금제 쟁취로 급여 안정성 확보
- 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율 8.8%(134,929원) 쟁취

교섭대표 노조 지위 확보와 교섭력 강화

- 교섭대표권을 선정하고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를 실현해 교섭력을 극대화
- 교섭력 극대화로 강력한 현장통제 실현
- 개정노조법으로 인한 제약요인 해소와 합리적 노조활동영역 확대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투쟁력 강화

- 위장도급 등 법외반 비정규직 고용 열격차단
- 사내하청 및 도급기업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2장. 홈페이지 유지 관리 업무

금속연맹 홈페이지는 그동안 지역본부 및 각 지역 조합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한계, 지역조합 홈페이지 또는 카페 등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였다. 2013년은 홈페이지리뉴얼을 통해 SNS 서비스 탑재, 영어 홈페이지 구축, 지역홈페이지 연계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금속연맹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콘텐츠의 문서와 동영상,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그 용량에 한계가 있고, 사용자의 자유도가 높지 못해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해야 겠다.

3장. 교육동영상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섭위원 교육 등을 촬영하여 게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각 지역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그 활용 가치, 소장 가치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3년 홍보국에서는 교육 기자재를 최신화하고, 홈페이지 동영상 탑재 용량을 늘림으로써 각 지역조합원들이 양질의 교육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장. 부 록

1. 소식지

[242호] 금속노련 제23대 김만재 위원장 당선!!	2012-05-16
[243호] 대덕전자 노조 전조합원의 총파업의지로 노조파괴 공작 분쇄	2012-06-22
[244호] 신한테크노 일반노동조합 건설	2012-07-09
[245호] 금속노련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단 간담회 개최	2012-08-09
[246호]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회의	2012-08-29
[247호] 20일, 한국노총 선거인대회 개최	2012-09-19
[248호]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개최!	2012-11-06
[249호] 금속노련 제170차 중앙위원회의 개최	2012-12-05
[250호] 2013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2013-01-25
[251호] 임금인상요구율 8.8%(134,929원)	2013-03-12

2. 성명서

[성명서] 새누리당 사내 하도급법 규탄	2012-07-16
[성명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규탄 성명	2012-10-08
[성명서] 새누리당 환노위 파행 규탄	2012-11-20
[성명서] 문재인의원 지지선언문	2012-12-05
[성명서] 당선자가 직접 나서 25일 전에 한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라!	2013-02-16

노조법 전면 개정!
복수노조 시대, 단교협연권 확보!
2012년 임단투 승리!

금속소식지

2012년 5월 16일 242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최만재, 편집인:최성수, 서울구로구구로동 197-5 삼성IT빌라 208호, ☎ 02)2028-1260 • Fax 02)2028-1272-4

금속노련, 제23대 김만재 위원장 당선!!

-총 투표자 652명, 김만재위원장 412표(63.2%) 득표-

금속노련은 지난 5월 10일 낮 1시 30분 여주소재의 한국노동 중앙교육원에서 2012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한국노동 이용복 위원장과 각 산별위원장들이 참석했고, 박인상 선배를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이 참석하였다.

개회대의원 701명중 657명의 참석으로 대회의 개회가 전연되었으려, 1부 행사는 우리노련의 상징인 금속노련기의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대회선언문 낭독, 노총위원장 표창과 연맹위원장 표창, 대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본행사에서는 먼저 201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진행되었고, 그 후 금속노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국)의 진행하에 금속노련 제23대 위원장 선거가 치러졌으며 기호1번 김준영후보(부경지역노조)와 기호2번 김만재후보(SK하이닉스이천노조)의 유세 후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결과로는 기호1번 김준영후보가 240표(36.8%)를 득표, 기호2번 김만재 후보가 412표(63.2%)를 득표하였다.

김만재 신임위원장은 당선소감을 통하여 "오늘 제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언제나 처음처럼 생각하고 다짐하며 우리 금속연대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련 제23대 위원장 선출이 끝나고 임원선출을 진행하였으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앙위원과

노총과전대의원을 뽑아서 선출하자는 한 대의원의 제안과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다.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각기 다른 3가지 투표용지에 부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임원은 총 투표 378명 중 찬성 364표, 반대 14표로 선출되었으며, 중앙위원은 총 투표 381명 중 찬성 331표, 반대10표로 선출됐다. 마지막으로 노총과전대의원은 총 투표 393명 중 찬성385표, 반대8표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2012년도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수립에 관한 건의 논의 되었으며, 폐회자료를 통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도외와 더불어 김만재 금속노련 신임위원장의 폐회선언으로 2012년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가 막을 내렸다.■

금속노련 '민주열사묘역' 참배

제23대 위원장으로써의 일가를 시작한 김만재 위원장은 첫 공식일정으로 5월 16일(화)에 묘단추모공원 '민주열사묘역'을 방문하였다. 금속노련의 삼근업원, 사무처직원과 함께 전태일 열사, 장진수 열사, 김배환 열사 묘역을 참배하였고, 김만재 위원장은 열사들의 영정 앞에 헌화하며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
복수노조 시대, 단결교섭권 확보!
2012년 임단투 승리!

| 금속소식지

2012년 6월 22일 243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영수, 서울구로구구로동 197-5 삼성IT센터 208호, ☎ 02)3028-1260 • Fax 02)3028-1273-4

대덕전자노조 전조합원의 총파업의지로 노조파괴공작 분쇄!

대덕전자 노동조합(위원장 허일숙)은 8월 19일 저녁 파업직전에 사측과 잠정합의를 이뤘다. 대덕전자는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회로기판(PCB)을 제작하는 업체로 안산에 소재하고 있다.

대덕전자 사측은 올해 3월말 (주)굿에이치알컨설팅과 노무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기획조정실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일부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하고 임금단절협약 100여개에 가까운 조합 개정안을 노조에 제출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대덕전자와 굿에이치알컨설팅은 '제2차업을 위한 비전 및 신조직문화 구축'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컨설팅업체의 대표가 전 한국선진노사연구원 박영수 이사장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입막음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박영수 대표는 2004년 하이닉스, 태그나일 비정규직 투쟁을 파괴하기 위한 공작에도 가담했음이 확인됨바 이에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있다는 판단하에 금속노련 김총통 조직강화본부장을 파견하여 대덕전자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합원들과 파업준비를 함께 해왔다.

대덕전자 노동조합은 조정결과를 마치고 8월 11일 21시부터 12월 20시 까지 조합원 정의행위 관

반부표를 진행하였으며, 총 조합원수 347명중 34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340명(97.98%)의 찬성으로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하였다. 이에 대덕전자 노동조합은 2012년 6월 18일 7시부터 정의행위에 들어가겠다는 정의행위신고서를 노동위원회로 발송하였으며, 8월 21일 16시 파업출정식을 거행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금속노련 또한 파업출정식에 수도권의 가맹노조를 조직하여 강고한 연대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하고 상급단체 금속노련의 강력한 부결의지에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요청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정의행위를 이틀 앞둔 19일 사측과 전격적인 잠정합의를 이뤘아냈다.

노사 합의서는 스노부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신설된 기획조정실을 해체하고 굿에이치알컨설팅을 통하여 기획조정실에 들어온 박영수 부사장 외 3인에 대한 회사차트 스사측의 단계협상 요구안 전면철회, 단계협상 1개월 연기 실시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대덕전자의 사태가 향후 다른 가맹조직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노동조합 반압사례로 보고 있으며, 그리하기에 이번 투쟁의 승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노조법 전면 개정!
목수노조 시대, 단체교섭권 확보!
2012년 임단투 승리!

| 금속소식지

2012년 7월 9일 24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성수, 서울구로구로동 197-5 삼성IT빌딩 206호, ☎ (02)2028-1200 • Fax (02)2028-1273-4

신한테크노일반노동조합 건설!!

-7월 4일, 하루만에 500명 이상 조합원 가입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지난 7월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하여 공업용(다이아몬드)필을 생산하는 (주)신한다이아몬드, (주)테크노플라스틱, (주)포몬파트, (주)다몬 4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한테크노일반노동조합(위원장 조병선)을 건설하였다.

특이하게도 이렇게 4개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하나였던 법인을 두 차례의 노조설립시도를 이유로 사측이 4개 법인으로 분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하다보니 같은 공간에서 동일 생산품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소속된 법인이 다르고 임금수준이 다른 기형적인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였으며, 더욱이 가관인 것은 노동자를 처음 채용할 때는 (주)다몬으로 채용하여 일장기간이 지나면 (주)포몬파트 (주)테크노플라스틱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신한다이아몬드로 재입사를 시키는 방어로써 인사노무관리를 해왔다는 것이다.

사측은 월70~80시간에 가까운残業복근을 시키면서도 상여금포함 월200만원이 되지 않는 저임금을 지급해왔으며, 그나마도 상여금(기본급기준)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기본급 중 절반을 수당으로 전환시켜 상여금을 반토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산재발생시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를 거절하고 사망, 산재 사고를 오히려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측의 비정당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는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열기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으며, 신한테크노일반노동조합은 7월 3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7월 4일 대대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벌여 단 하루만에 1000여명의 가입대상 노동자중 500명 이상을 조합에 가입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놀란 사측은 "코이 반침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여 노동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알아서 다 해결시켜줄 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시작하였지만 사측의 감언이설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조합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속노련은 노동조합의 설립과정부터 밀착지도를 하며 사측의 노조탄압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매일 같이 현황을 점검하고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정례회의 및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자동차업종 '정시간근로 개선 및 주간2교대제' 교육

교육일시	7월 18일 ~ 19일
교육장소	강주교육문화회관
교육담당자	전종덕 전국국장 ☎(02-2028-1269)

노조법 전면 개정!
목수노조 시대, 단교업권 확보!
2012년 임단투 승리!

| 금속소식지

2012년 8월 9일 245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성수, 서울구로구구로동 197-5 성성IT빌딩 208호, ☎ 02)2028-1200 • Fax 02)2028-1273-4

금속노련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단 간담회 개최.

- 한국노총 선거인대회 및 금속노련 현안 논의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지난 8월 8일 금속노련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단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 선거인대회전과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자동차업종 현안이 논의되었다.

지난 27일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윤득 위원장의 사퇴로 한국노총 김동만 상임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나 한국노총 규약상 사유발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있으며 오는 8월 16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위 구성과 선거인대회 관련한 일정의 확정이 예상되어짐에 따라 이번 금속노련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단 간담회를 통하여 금속노련 선거인단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행 금속노련의 선거인단은 2010년 5월 4일 경기대의원대회에서 435명을 선출하였고, 지난 2011년 노동 선거인 대회 때 374명의 선거인을 파견하였으며, 이번 보궐선거 또한 동일하게 374명의 선거인을 파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선출된 선거인단 435명 중 집행부의 변경과 조합원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권원이 발생하여 374명의 금속노련 선거인 파견이 어려운 조건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새롭게 금속노련 선거인단을 선출할 것인지 기존 2010년 선출된 435명의 선거인중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복려하여 한국노총 선거인 대회에 참가할 것인가가 심도있게 논의 되었다.

현실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하여 금속노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미 선출(2010년)된 435명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발생한 결원을 재의하고는 모두 선거인 자격을 부여하고 참석 가능한 선거인단이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명노조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업종 교대제 개선'과 관련하여 7월 진행된 교육활동, 8월 16일에 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동차업종 주간연속 2교대제 토론회, 8월 31일에 개최예정인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회의 등이 보고되었으며,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이번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대책위를 구성하고 향후 금속노련에 가맹된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들과 함께 완성차의 주간연속2교대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사업장 노동시간단축,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방안 토론회

주최	금속노련, 금속노조 공동
일시	2012년 8월 16일 14: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관 중회의실(여의도)
담당자	전종덕 정책국장 : 02-2028-1269

노포법 전면 개정!
복수노동 시대, 단개고임권 확보!
2012년 임단투 승리!

금속소식지

2012년 8월 29일 246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성수, 서울구로구로동 197-5 삼성17빌리 208호, ☎ 02)2028-1260 • Fax 02)2028-1273-4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 회의

— 장시간 근로, 주간연속 2교대제 대응 대책위 구성,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조하기로...

금속노련(위원장 김한재)은 현대자동차 등의 완성차 사업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의 2013년 실시가 구체화됨에 따라 부품협력업체에도 미칠 파급효과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1일 금속노련 회의실에서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자동차업종 노조대책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실시에 따라 부품협력업체의 교대제 변경의 문제와 그에 따른 임금보전의 문제, 중소부품협력업체의 설비투자 비용문제, 완성차 사측의 남품단가인하(CN)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원의 구성은 지역본부별로 1인 이상의 자동차업종 단위노조 대표자 3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속노련의 정책국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대책위를 통하여 자동차업종의 설비투자 및 근무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사업은 패치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와의 공동활동, 자동차업종 노사경리위원회 활동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장시간근로 해소 및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 및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 남품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양대 조직의 공동 대응 및 사회적 이슈와 등의 활동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금속노련과 금속노조의 실무자들이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한 차례 가졌

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공동행동 계획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분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경고파업 실시

분보건설기계코리아 노동조합(위원장 장세동)은 지난 8월 27일 경고파업을 실시하였다. 분보건설기계코리아 노동조합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증대에 따라 임금인상 10%, 매출액의 0.5%의 성과금 지급, 부가요구사항 8개항을 요구하였다. 8월 18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사측과 15차(8월 23일)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이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경고파업에는 금속노련 김한재 위원장을 비롯하여 금속노련 서울지역본부 등지들이 대거 함께 하였으며, 김한재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임금인상과 성과분배의 상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임시선거인대의 후보 등록 마감

오는 9월 20일 실시되는 한국노총 제24대 임원보궐선거에 분건국 위원장 후보와 한광호 사무총장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했다. 한국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였다.

오는 9월 3일 서울지역본부들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들 순회하며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실시하고, 9월 20일 오후2시 서울 광실 살대체육관에서 임시선거인대회를 갖고 위원장·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2014년 1월까지이다.▶

노조법 전면 개정!
복수노조 시대, 단결고임권 확보!
2012년 임단투 승리!

| 금속소식지

2012년 9월 19일 247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3동 197-5 삼성IT빌딩 208호 ☎ 02)3028-1260 • Fax 02)3028-1273

20일, 한국노총 선거인대회 개최!

— 김만재위원장 “산하 산별노련의 책임과 의무 다해야...”

한국노총(위원장 권한대행 김동만)은 오는 20일 (목) 오후 2시 제24대 임원보궐선거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선거인대회를 앞두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100만 조합원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단결·혁신하는 한국노총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담화문에서는 “각종 난관을 극복하고, 노동자 대표조직, 한국 사회 선도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한국노총의 전 조력이 하나되어 단결된 힘을 과시하고 혁신을 실행하는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지난 8월 30일 금속의장협의회에서 지역본부의장들과 한국노총 임원보궐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한국노총의 산하 산별노련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금속노련에 배정된 노총선거인단의 참가를 독려하기로 결정하고 단위노조로 공문 제126호 ‘임시선거인대회 참석공보’를 배포하였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분권국 위원장 후보와 한광호 사무총장후보자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으며, 9월 14일 인천지역본부 마지막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 순회연설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순회 연설회를 통하여 분권국 위원장 후보는 “전 조직을 결속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 것만이 노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라며, “노총을 정상화하고 단결된 강한 노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의 포부를 밝히고, 노총의 재건을 위해 △조직 통합 진원 △노조법 개정으로 현장 복원 및 활성화 △조직통합을 바탕으로 노총 정치력 역량 및 위상 강화 △현장성과 민주성 강화로 노총을 혁신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민주통합당과의 정치방향을 유지하되, 노조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리지 말고 언제든 대화 가능성을 열고 협상하겠다”면서 “정치권과의 연대는 반드시 조직의 결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4대 임원보궐선거에 참가하는 선거인단은 미리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2012 제1회 한국노총 평화캠프 개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본부장 박대진)에서는 10.4 선언 5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한국노총 평화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평화캠프는 10월 10일(수)부터 12일까지 2박 3일로 칠원(한탄강), 파주 일대에서 진행되어질 예정이며, 참가인원 80명으로 9월 28일까지 신청순으로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속노련에서 배포한 공문 제137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02-6277-0076)로 하면 된다.▶

노조법 전면 개정!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권 확보!
 2012년 입단투 승리!

| 금속소식지

2012년 11월 6일 248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진재, 편집인:김경수, 서울구로구구로동 197-5 삼성IT빌리 208호, ☎ 02)8228-1260 • Fax 02)8228-1273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개최!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대선 승리!'

한국노총(위원장 문진국)은 오는 11월 17일(토) 오후 1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대선 승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10만조 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노총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하여 대선훈 노동조합법 개정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총은 노조법 개정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결의서를 각 대선캠프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결의서의 답변을 평가하고 대선후보가 직접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총은 상임 부위원장단과 본부장단이 각 산별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10월 29일부터 사무총국 간부들이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을 직접 돌며 집회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련(위원장 김판재)은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10만 조직화 방침에 따라 금속노련 조직공문 제153호 '11월 17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및 참석인원 배정통보' 공문을 16개 지역본부에 하달하고,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 7,000명의 금속조합원 조직화를 목표로 결결과 조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속노련 위원장 지역순회 간담회

금속노련 김판재 위원장은 10월 초 경기지역본부 등 시작으로 16개 시도지역본부를 돌며 가맹노조의 위원장과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역순회간담회는 가맹 노동조합 위원장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는 것과 2012년 하반기 대선투쟁과 노조법 재개정 투쟁 등에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금주에는 부산과 안산시흥,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 본부의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2012년 하반기 교육

금속노련은 2012년 하반기 교육으로 노동조합 신임대표자 및 노조간부(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임일꾼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 문예일꾼들을 대상으로 노동문화교육(풍물, 율동)을 실시한다. 각 교육의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통하여 가맹노조에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신임대표자, 노조간부 교육	11월 30일~31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상임일꾼교육	11월 30일~30일	연진보안관다
노동문화교육(풍물, 율동)	12월 초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노조법 전면 개개정!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권 확보!
2012년 임단투 승리!

금속소식지

2012년 12월 5일 249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재재, 편집인:이성수, 서울구로구구로동 197-5 삼성IT빌딩 208호, ☎ 02)3028-1260 • Fax 02)3028-1873

금속노련 170차 중앙위원회의 개최!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지지결의

금속노련(위원장 김단재)은 어제(12월 4일) 금속노련 회의실에서 제170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가장먼저 보고안건으로 자동차업종대책과 활동보고와 2012년 임금협상 결과보고가 있었다.

자동차업종대책위 활동보고에서는 자동차업종 노조 조합원의 실노동시간 및 고대제 근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완성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시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조사하여 장시간근로와 발생노동의 축소 및 절제로 조합원의 건강권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 단기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더불어 그 동안 진행되었던 자동차업종 노조간부교육,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회,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 회의, 금속노련-금속노조 공동대책기구 실무회의 등 대책위 활동사항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2012년 금속노련 임금협상 결과보고에서는 취합된 금속노련 산하 204개 사업장의 임금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금속노련 임금인상 타결율이 기본급대비 5.3%(76,107원)로 집계되었으며 올해 임단협 교섭종 14개 노조가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중 3개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하여 정의발생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토의안건에서는 예산추경 및 권유권과 재정사업 집행건이 토의되었다.

먼저 IndustriALL(국제제조산업노련)의 미납 의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세안건용이 논의되어 통과

되었고 더불어 금속노련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기타토의에서는 금속노련 위원장 지역본부 순회간담회 보고와 그에 관련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단재 위원장은 순회간담회에서 정회원 정치, 교육, 행사, 제규정, 임명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끌고 금속노련 사업을 풍미하여 반영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금속노련의 대선입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중앙위원들은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과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정치방향을 재확인하고 한국노총의 정치방향에 대한 금속노련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이번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하기로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지지선언 및 홍보활동에 관련하여서는 노련에 그 역할을 위임하여 진행키로 하였다.▶

자동차업종 노조대책위 기자회견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노조대책위(의장 정인진)에서는 어제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건강권 강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확대와 공장거래학법, 벌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강화,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발생노동 절감은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
실노동시간 단축!
2013년 임단투 승리!

| 금속소식지

2013년 1월 25일 250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성수, 서울구로구구로동 197-5 삼성IT센터 208호, ☎ 02)2028-1260 • Fax 02)2028-1273

2013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

-가맹노조에 많은 관심과 설문참여를 요청-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2013년 금속노련 임단투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는 노동조합의 △기본현황 △2012년도 임금교섭현황 및 2013년도 임투 계획 △경영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 최저임금 및 정년연장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합되어진 설문조사는 단위노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침의 가장 기초적인 근거로 활용되어 진다. 지금까지 120여개의 가맹노조에서 설문조사서를 연맹으로 보내주었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거율(25~30%)을 보이고 있다.

정책국에서 2월 1일까지 설문조사 취합을 마무리하고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며 분석을 마치면 분석내용을 가지고 2013년 임단투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노조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아직까지 미 제출한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2월 1일까지)가 필요하다.■

자동차업종노조 대책위 교대제 개선 사례 설명회 개최

금속노련 자동차업종노조 대책위(의장 정일진)에서는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누어 교대제 개선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제1권역(경기/안산시흥/인천)을 시작으로 1월 9일에는 제3권역(경남/대구경북), 17일에는 제2권역(충남/충북/대전/강원)에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금속노련 소속 160개 자동차 업종 노조에 실시한 서면조사와 서면조사서를 제출한 노조 중 25개 노조를 방문하여 진행한 면접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대제 개선을 통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개선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설명회 자료는 연맹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조사와 면접조사의 결과는 2013년 임단투 지침에 담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금속노련-금속노조 자동차업종 문제 공동대응키로

지난 1월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우리노련 회의실에서 자동차업종 문제를 공동대응키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동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자동차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 주간연속2교대제 추진, 불공정거래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방안, 구조조정 등의 현안문제들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은 금속노련과 금속노조가 각 단위 임원 1인과 정책담당자 2인으로 공동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필요시 실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공동대책기구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고 자동차업종 문제를 사회여론화 시키기 위한 공동사업을 기획하기로 하였다.■

노조법 전면 개개정!
실노동시간 단축!
2013년 임단투 승리!

|금속소식지

2013년 3월 12일 251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권성수, 서울구로구구로동 197-5 삼성IT빌라 208호, ☎ 02)2028-1260 • Fax 02)2028-1273

임금인상요구를 8.8% (134,929원)

-금속노련, 제171차 중앙위원회에서 2013년 임단투지침 확정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지난 목요일(3월 7일) 금속노련 회의실에서 제171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중앙위원회의에서는 △상급단체파견자 활동비 반납권 △자동차업종 대책위 활동권 △교육일정 홍보권 △연맹 재정사업 현황권이 보고안건으로 △가예산 승인 △2013년도 경기대의원대회 진행의 건 △2013년도 임단투지침(안) 확정건이 토의안건으로 논의 되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한 자동차업종 대책위 활동에 관하여 향후 대책위의 구성을 자동차 업종에서 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대제 개선사례 조사일시 및 자료집 제작/배포, 대책위원 확대 재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13년 경기대의원대회 진행에 관한 건에서는 5월 14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대회 진행에 관련된 주요일정 과 예산 및 사업계획 소위원회 구성, 모범조합원 배정 등을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금속노련은 2013년 임단투 지침을 통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제도 개선, 생활임금 생취 △교섭대표 노조 지위 확보와 교섭력 강화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투쟁력 강화를 활동의 방향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13년 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에 근거하여 생계비 증폭률 87%인 기본급 대비 8.8%(134,929원) 인상안을 금속노련 임금인상안으로 확정하였다.

그 외에 임단투 지침에는 △임금제도 개선 △풍상임금 판단 기준 실현 △근무제도 변경과 임금보전 및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단체교섭권 확보 △단체협약 및 제도 개선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확정된 지침은 책자 인쇄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2013년 임단투 포스터와 함께 현장에서 받아 볼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중앙위원회는 마지막으로 규약소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부에 위임하여 진행키로 결정하고 폐회하였다.

금속노련,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평등상 수상

한국노총에서는 제105주년 3.8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본노련은 규약에 따라 여성할당제를 시행해 여성간부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매년 헌법발보다 높은 수준의 모범단체지침을 사업장에 배포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도록 지도해 왔으며 여성간부교육을 통해 간부들의 역량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온데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평등상을 수상하였다.

“희망이라는 위선의 겹질을 벗어라!”

— 새누리당의 기만적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희망사다리 12개 민생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들 속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도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권적으로는 중간관리직 대상이 되고 있는 간접고용을 확대시키고 불법파견의 대명사인 사내하청을 합법화 시키려는 의도임에 다를 아니다.

이미 오랜 시간동안 전행되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종적 판결을 통하여 ‘제조업 생산공정의 하도급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힘으로써 제조업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위장도급(불법파견)에 경종을 울렸다. 결국 사내하청 문제의 본질적 해결방법은 원정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해명하고 중간관리직의 파견으로 노동자들을 내몰았던 간접고용 위장도급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다.

결국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내용에서 사내하청에 대한 권징의 개입과 관리의 이지를 열어줌으로써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규정된 내용들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으며, 원청에게 사용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면허부를 부여하려 하고 있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새누리당의 작태를 우리 금속노련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비정규직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앞선세력들과 함께 새누리당의 기만적인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시키고 비정규직 실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년 7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문재

“당신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노동자가 아니다”

— 새누리당 최봉홍 노동위원장은 한국노총을 욕되게 하지 마라.

비밀노동뉴스 10월 4일자에 게재된 “노조법 개정은 박근혜 후보의 뜻, 대선 이후 더욱 수월할 것”이라는 제목의 한국노총 출신 최봉홍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의 인터뷰를 접한 우리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심각한 우려를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욕되게 하지 마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써 몇 해인가?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렇게 또 싸웠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최봉홍 노동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정말 이 문제가 단순한 노사문제만 남인가? 청문회가 야당의 대선전략에 돌아간 것인가? 국정조사가 정치적 쇼인가? 어떤 말을 더하겠는가. 최봉홍 노동위원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의 일관성을 깨닫길 바란다.

노조법 개개정의 절립물은 새누리당일 뿐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잊었는가? 우리 노동자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노조법을 개악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조르는데 할안이 되어있는 새누리당을 반노동자정당으로 다도의 대상으로 규정할지 이미 오래다. 노조법 개개정의 목소리는 노동계를 넘어 정치와 학계, 시민사회가 공히 인정하는 사회적 압력일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이미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에도 노조법 개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끝수를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대선과 노조법 개개정 논의를 분리하려는 기만적인 작세를 멈추기 바란다.

한국노총 백만조합원의 정치방향을 모독치 마라!

원래 한국노총의 정치방향에는 변화가 없다. 이것은 일개 한사람의 입으로 “한국노총이 대선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떠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노총의 정치방향은 백만 조합원이 결정하였고 대의원대의 결의사항이다. 이 정치방향에 반하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몇지를 달은 당신이 떠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조합원들을 모독하지 마라.

인터뷰를 끝내고 다시 끝맺어도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노동자가 아니다.

그 입 다물라!

2012년 10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문재

“ 한심스러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바라보며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들고 간지 이틀 만에 새누리당은 19일 예정되어있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여 열리지 못하게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조법 등 핵심 노동관계법,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시급한 노동관련 법안들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선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정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대선 노동공약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노위에는 한국노총 출신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명(김성태 의원, 최봉홍 의원)이나 배출되어 있다. 당리당략을 떠나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이란 이 시급한 노동현안의 문제들을 어찌 외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을 하고자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환노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들의 무기력한 모습에 또한 실망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대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노동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역사의 죄인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즉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복귀하고 국회 환노위를 정상화 하여 노동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민주통합당 또한 이번 국회를 통하여 노동의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노동자들의 눈과 귀가 국회를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법안처리를 무산시키는 정당은 어떠한 정당인가를 불문하고 12월 19일 거대한 노동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무쟁의 과정에 금속 12만 조합원이 선봉에 설 것이다.

2012년 11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은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금속노련은 2012년 12월 4일 연맹회의실에서 제 170차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기존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에 근거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키로 결정했다.

금속노련 전조합원은 조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재벌 위주의 부자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며, 사회양극화는 물론 철저히 노동자들을 기만해 왔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 반노동자적인 이명박 정권의 부농과 오만을 단호히 심판하고자 한다.

지난 5년간 피폐해진 노동현장,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받는 세상, 사회양극화로 갈수록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서민들의 절규와 신음을 모아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요구하며 외친다. 압박하고 참담한 고통만을 안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소망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목숨을 내걸고 절박에 오르며, 재벌 인간답게 살고답다는 항변과 절규를 외치지 않아도 노동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 중소기업장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는 전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세상을 위해 야권단일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이명박 정권 심판은 물론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갈리는 절목에서,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이라는 '다섯 개의 문'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을 믿는다. 그리고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루는 대역사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 앞에서 한 치의 머뭇거리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남은 정치 세력과 썩어빠진 부농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을 일태려야 할 2012년 12월 19일, '사팔이 먼저'인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12월 19일을 만들겠다.

파산적전의 시민경제 및 파거트 후퇴한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한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며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건인할 정치주체로서 모든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를 향한 새 시대의 열망 속에서 반드시 꽃보다 아름다운 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엄숙히 선언한다.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전면적인 정치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역사적 소명앞에서 금속노련은 꼭실있게 나아갈 것이다.

2012년 12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 일동

실노동시간 단축 캠페인무 해산 노동현안 해결

양대노총 금속노조-금속노련 공동대체회의(금속공동회의)

공동성명서

위원장: 민주총금노조 박성환, 양대총금노련 이기재 / 담당: 양대총금노조 정책국(100-994-204) 권영진, 양대총금노련 정책국(100-354-433)

당선자가 직접 나서 25일 전에 한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라!

한전중공업 최강시 조합원이 158억 손해배상을 취하려고 민주노조 탈산을 중단하라는 유지를 남기고 자결 한지 이연 두 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전 자본은 노사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또한 책임있는 대책을 의결하고 있다.

다가야 18일 유가족과 조합원이 함께 서울로 상경하여 대한문 앞에 빈소를 마련하고 정부와 정치권과 책임있는 역할을 호소하고 있고, 비상시국회의 또한 농성에 돌입하여 대책을 촉구 하고 있다.

지금 부산 한전중공업에는 뜻하지 않게 최강시열사의 손구가 보여져있다. 대일 드라미아리스트 고인의 친구를 채우던 유가족들이 지난 8일 '회사가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선다면 고인을 공양 할 분향소로 모시겠다'는 판단을 발표했지만 한전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열사 부인과 대책위가 서울로 올라와 마지막 심정으로 격렬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바, 한전과본과 당선자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1. 한전중공업 사측은 지금 즉시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라!
2. 여야 정치권은 고임성사중재 등 한전중공업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3. 여야 정치권은 한전중공업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영권을 저질하라!
4.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는 취임 전에 한전중공업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이상은 열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유가족과 대책위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금속노조와 금속노련(금속공동회의)은 지난 6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노동현상 등 당면 노동현안을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1순위로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당선자와 인수위가 성의있는 해결 노력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2월 25일 새정부 출범전에 당선자가 직접 나서서 한전중공업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 또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를 제차 요구한다.

향 조력은 노동현안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23일 비상시국회의 주체의 범국민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등 향 조직의 공동 대응 강도를 높이 나갈 것이며, 실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투쟁 할 것이다.

2013년 2월 16일(화)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여성문화활동

1장. 조직활동 및 교육활동

1. 여성할당제 시행
2. 금속노련 여성간부교육
3. 한국노총 회계감사 및 중앙위원명단
4.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2장. 3.8 세계여성의날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3장. 회의 및 연대활동

4장. 노동문화활동

1. 문화패 현황조사
2. 노동문화교육
3. 금속노련산하 울동패 연대활동

1장. 조직활동 및 교육활동

””

1. 금속노련 여성할당제 시행

1) 여성할당제 시행 의미

본노련은 2010년 여성할당제 실시에 관한 규약제정이 있었다. 이에 2012년 처음으로 여성할당제 시행이 있었다. 가장 큰 결의 기구인 대의원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권익보호와 정책결정등 연맹의 사업에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 비해 여성 대의원의 확대로 여성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것으로 기대 된다.

2) 여성의 참여 확대

노총파견 여성대의원	노총파견 여성중앙위원	금속노련 여성대의원	금속노련 여성중앙위원
32 명	2 명 (회계감사1명)	62 명	4 명 (회계감사1명)

3) 임원현황

이 름	소속사업장	직책	비 고
문광주	세진전자	위원장	부위원장
윤자심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
박은미	팬택	“	“
이영자	용성코리아	위원장	“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	“
정금순	인팩	지부장	“
한규숙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회계감사

”””

3) 중앙위원현황

이름	소속사업장	직책	비고
윤혜진	LG전자	여성부장	
이현희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모경림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김미희	LGDisplay	여성부장	

2. 금속노련 여성간부교육

1) 교육 목적

- ” ① 여성간부의 효율적인 조직활동과 사업강화를 위한 역할 모색
 ②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교육
 ③ 조직내 여성동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④ 여성동지들의 연대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함

2) 일정 및 장소

- ① 교육일정 : 2012. 10월 24일 - 26일(2 박 3 일)
 ② 교육장소 : 리솜스파캐슬(충남 예산)
 ③ 참석인원 : 서진캠 여성부장 외 35명

3) 교육내용

- ”””① 여성노동자 관점에서 정치바라보기
 ② 여성간부의 자세와 역할
 ③ 조직내 여성간부의 리더십진단 및 개발
 ④ 교대제와 여성노동자 건강

4) 기대효과

- ① 여성간부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여성노동운동 활성화
- ② 여성간부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
- ③ 여성간부로서 리더십 진단 및 활동토론
- ④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건강권 회복
- ⑤ 노동자 관점으로서 정치바라보기

5)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과 목 명	평가점수
노동조합과 정치 (한국노총 우태현 국장)	3.4
여성간부의 자세와 역할 (한국노총 정영숙 본부장)	4.5
교대제와 노동자 건강 (연세대 김인아 교수)	4.7
여성간부의 역량강화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주환부대표,유정임 지부장)	3.8

6) 기타의견

- 년 1회는 너무 적다. 최소한 2회로 늘려야 한다.
- 조합간부하면서 이런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정치와 노동조합이 무관하지 않고 중요한 거 같다.
- 역할인식을 통한 연극이 너무 좋았다.
- 늘 하는 교대제 근무에 대한 교육과 직접적인 건강문제인식 아주 좋았다.
- 활동적이고 모두가 다함께 할수 있는 교육을 하여 기억에 남고 참여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 연맹교육이 처음이었습니다. 2박 3일동안 함께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단사에서도 끊임없이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7) 성과

- 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생각하는 계기가 됨.
- 대선을 앞둔시점의 정치교육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정치바라보기
- 제조사업장 특성상 교대제 및 야간근로가 대다수 인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인식의 전환계기가 됨
- 역할극을 통한 간부의 자세와 역량강화에 힘씀.
- 토론을 쉽고 편안하게 해서 토론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다.
- 여성간부들의 발굴 및 양성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여성간부의 고충 토로 및 연맹의 역할 및 기대에 대한 욕구 충족

3. 한국노총 회계감사 및 여성중앙위원 명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비고
1	한국중천노동조합	위원장	최해경	회계감사
2	세진전자노동조합	위원장	문광주	중앙위원
3	대동모델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	한명선	중앙위원

4.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1) 목적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연1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도 여성위원회의 구성과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결의함.

2) 일정 및 장소

- 일정 : 2012. 11. 6. 13:00시
- 장소 : 한국노총 13층 컨벤션센터

3) 순서

- 개회
- 대회사
- 격려사
- 보고 및 논의
 - 2012년 여성사업 추진 현황
 - 2012년 각급 조직 여성위원회 및 할당제 현황
 - 한-일 양국의 성평등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일본 령고 공동연구 결과
- 특별강연
 - 대중문화와 성평등(강사 : 유지나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 강의
 - 한국노총 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

- 여성위원회 명단

번호	조 직 명	직 위	성 명	비 고
1	LG전자	여성부장	윤혜진	
2	롯데알미늄	여성부장	김선옥	
3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윤자심	
4	SK하이닉스이천	문화실장	이영숙	
5	LG이노텍	부지부장	오선숙	
6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김정숙	

7	용성코리아	위원장	이영자	
8	세진전자	위원장	문광주	
9	한국샤프	사무국장	우옥란	
10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한명선	
11	인팩	지부장	정금순	
12	SK하이닉스청주	여성부장	한주연	
13	SK하이닉스청주	여성부장	백서은	
14	LS산전	조직국장	육미숙	
15	부산지역본부	총무부장	김민경	
16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17	덴소풍성전자	부위원장	신윤자	
18	에스엘	여성부장	조경자	
19	이수페타시스	여성부장	오은주	
20	평화오일썸	여성부장	김영옥	
21	LGDisplay	대의원	김연진	
22	LGDisplay	대의원	정빛나	
23	LGDisplay	대의원	서효진	
24	LGDisplay	대의원	김일상	
25	LGDisplay	대의원	이은진	
26	LGDisplay	여성부장	한규숙	
27	LGDisplay	여성부장	김미희	
28	금속노련	여성국장	김영미	
29	팬택	부위원장	박은미	

2장.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제10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

1. 일시 및 장소

- ① - 일 시 : 2013년 3월 8일, 14:00
- 장 소 : 양천문화회관(구, 양천구민회관)

2. 4대 핵심 목표

- 여성노동자 고용안정확보와 탄탄한 여성일자리 창출
- 양성평등한 일.생활균형정책 강화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확보
-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3. 주요 구호

- 여성이 힘이다!
- 함께 일하고!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세상!
-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 남성에게 돌볼 권리를!
- 양쪽의 날개로 나는 평등사회!
-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 여성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4. 식순

사전입장(13:30 ~ 14:00)

[영상] 2012년 여성활동

[공연1] 여는북(SK하이닉스청주노동조합)

- 본 대 회(14:00 ~ 16:00)
 - 깃발입장
 - 노동의례
 - 경과보고
 - 대회사
 - 평등상 및 여성노동자상 수여
 - 공연 2
 - 축사
 - 내·외빈 소개
 - 공연 3
 - 결의문 낭독
 - [다함께] 딸들아 일어나라
 - 폐회

5. 평등상 및 여성노동자상 수상

1) 금속노련 평등상 수상배경

① 금속노련의 현황

여성조합원이 많은 전기전자사업장과 거의 남성조합원으로 되어있는 철강사업장등 다양하지만 현재 여성조합원의 비율은 15-20%정도를 찾아하고 있다. 여성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 산별답게 여성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여성업무 전담부서가 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②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은 법에 준한 제도와 법을 상회하는 단체협약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법보다 상회한 모범 단체협약안을 매년 사업장으로 보내므로써 사업장에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③ 교육홍보 활성화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 확산

단위노조가 아닌 산별로서 고용평등 및 성차별 제도 개선사업으로는 본노련 여성국과 한국노총의 여성사업중 제도개선을 위한 매개 역할과 사업장에서 고용평등 실현과 성차별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및 지도를 하고 있다.

매년 여성간부 교육을 통한 리더십 교육, 직장내 성희롱 교육, 모성보호법 알기, 성평등의식 교육 등을 통한 방법으로 간부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여성할당제 및 적극적 조치의 이행

여성조합원보다 남성조합원이 월등히 많은 현황임에도 금속노련은 노총 지침에 따라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임원에 이르기까지 여성할당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금속노련은 [노총 대의원 32명, 중앙위원 3명 회계감사 1명이며

본노련 대의원 62명, 중앙위원 4명, 임원 6명, 회계감사 1명]으로 규약에 명시대로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대의원의 여성할당제에 적극 참여로 여성대의원수를 현격히 증가시켰으며 금속노련 규약에 현재 여성할당제 시행 15%를 명시했으며 여성할당제를 시행하여 좀더 여성들에게 결정기구인 회의에 참여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여성조합원 및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나아가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데 어느 산별보다 앞장서 나갈 것이다.

⑤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사업장내의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해 간부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상급단체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성희롱예방교육에 적극참여로 건강한 일터 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사업활성화를 위해 여성간부현황을

매년 조사해 왔으며 여성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노련은 여성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총회 구성으로 여성위원회 부활을 할 것이며 여성조합원이 많은 사업장에서도 여성위원회 구성으로 여성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여성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또한 성평등 의식 활성화를 위해 매년 추석과 설명절에는 사업장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평등문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2) 여성노동자상 수상

- 팬택노동조합 박은미 부위원장

3장. 회의 및 연대활동

1. 회의 활동

” 1)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회의

””” ① 일 시 : 2012년 10월 9일

②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③ 안 건 : - 일.생활 균형 및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활동
- 2012년 회원조합 여성간부 실태조사 결과 보고
- ITUC-AP 성폭력 관련 여성위원회 참가 보고
-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추석 평등명절 캠페인 결과보고
- 한일 양국의 성평등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 한국노총 여성본부 2012년도 4/4분기 중점 사업계획 보고

2)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회의

””” ① 일 시 : 2012년 11월 27일

②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③ 안 건 : - 2012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개최 결과보고

- 한국노총 2012년도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여성조합원 홍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 공동대책위 보고
- 한국노총 여성노동관련 정책요구 및 후보평가 보고서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계획 보고
- 제13기 여성노동교실 개최보고

3) 노동부 적극적 고용조치제도 간담회

- """ ① 일 시 : 2012년 11월 27일
- ② 장 소 : 맨하튼 호텔
- ③ 주요내용 - 적극적 고용에 관한 의견수렴

4) 한국노총 제13기 여성노동교실

- """ ① 일 시 : 2012년 12월 11일(화)
- ② 장 소 : 서울여성프라자 4층
- ③ 내 용 : - 여성과 법
- 여성주의적 리더십
- 코칭커뮤니케이션
- 조별 소통의 시간

5)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워크샵

- """ ① 일 시 : 2013년 1월 15일 - 16일 (1박 2일)
- ② 장 소 : 대명솔비치리조트
- ③ 안 건 : - 2012년 한국노총 여성활동결과 평가
- 2013년도 여성사업계획(안) 논의
- 3.8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의 건

6) 한국노총 여성대회 기획단 1차 회의

- """ ① 일 시 : 2013년 1월 24일
- ②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 ③ 안 건 : - 3.8세계여성의 날 여성노동자대회 관련건

7) 한국노총 여성대회 기획단 1차 회의

- "" ① 일 시 : 2013년 1월 31일(목)
②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③ 안 건 : - 3.8세계여성의 날 여성노동자대회 관련건

8)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회의

- "" ① 일 시 : 2013년 2월 20일(수)
② 장 소 : 한국노총 6층회의실
③ 안 건 : - 3.8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의 건
- 기타의 건

4장. 노동문화활동

1. 문화패 현황조사

1) 목적

""사업장내의 문화패 구성과 현황을 조사하여 조직활동에 문화활동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조직강화의 일환으로 문화패를 구성하고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문화패 구성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 조사결과

지 역	노동조합명	문화패명	종 류	인원
경기	sk하이닉스이천	신화창조	울 동	10
			풍 물	10
경기	신한일전기	신천지	울 동	6
		대동굿	풍 물	8
경기	테크팩솔루션	소리	풍 물	4
인천	대동하이렉스	가락단지	풍 물	5
		투쟁의 전사	울 동	5
안산	영화공업 안산지부	선포	울 동	6
		민들레	풍 물	3
안산	대덕GDS	천재일우	풍 물	12
		땀	울 동	7
충남	새론오토모티브		울 동	7
충북	sk하이닉스청주	하울림	풍 물	7
충북	현대모비스	붉은투혼	울 동	8
충북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한우리	울 동	5
경남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예	풍 물	10
경남	유니크	한동지	울동	2
울산	영화공업	천지신명	울 동	6
울산	풍산	울림과 어울림	풍 물	6
대구	세아베스틸	불꽃	풍 물	6

3. 노동문화교육 1차

1) 목적

다가오는 12월은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현장은 장시간 근로에 허덕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들어지는 노동운동 위기속에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단위노조 간부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본노련에서는 문화일꾼들의 몸짓을 통한 노동조합의 역량강화및 연대를 위한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실시함.

2) 교육실시 및 장소

- ” ① 일 시 : 2012 년 12 월 5 일 - 12 월 7 일(2박 3일)
② 장 소 : 하내테마파크

3) 대 상 : 노동문화일꾼 남녀 동지 30명

4) 교육내용

- 현시기 정치와 노동운동
- 노래로 만나는 노동운동사
- 공동체 놀이
- 풍물 및 율동배우기

5) 교육평가

- ① 매년 1회 실시되던 노동문화교육이 2회 실시하게 됨
- ② 노동문화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풍물패의 증가로 풍물교육에 대한 갈증으로 교육을 계획함.
- ③ 율동과 풍물 교육으로 풍물교육생의 크게 기대함.
- ④ 연말에 교육일정을 하다보니 교육생이 저조함.
- ⑤ 적은 교육생이지만 알차고 서로에 대해 많이 공유할 수있었던 교육임..

4. 노동문화교육 2 차

1) 교육실시 및 장소

- ” ① 일 시 : 2013 년 3 월 20 일 - 3 월 22 일(2박 3일)
② 장 소 : 하내테마파크

2) 대 상 : 노동문화일꾼 남녀 동지 70명

3) 교육내용

- 박근혜정부와 노동운동정세
- 노래로 만나는 노동운동사
- 공동체놀이
- 율동배우기
- 문화패 활동의 사례발표

4) 교육평가

- ① 많은 동지들이 와서 좋았다.
- ② 레크레이션은 교육생이 너무 많아 효과가 떨어짐.
- ③ 활동중인 율동패의 공연을 보고 싶다.
- ④ 율동시간을 좀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 ⑤ 현장의 사례발표가 좋았다.
- ⑥ 사업장에서의 문화패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 ① 일 시 : 2012년 8월 16 일(목)

② 장 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여의도)

③ 참여사업장 : 한국보그워너T/S 한우리 율동패

""" ① 일 시 : 2012년 11월 17일(토)

② 장 소 : 여의도 문화마당

③ 참여사업장 : 현대모비스.한국보그워너T/S 연합문선대

"